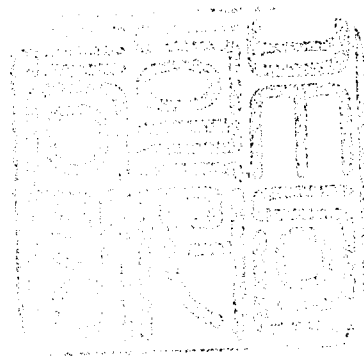


개성공업지구 법규·사업준칙집

2·0·1·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목차

Ⅰ 개성공업지구법 · 하위규정

● 개성공업지구법	3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9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 운영규정	12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16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9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35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38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42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48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50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53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62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66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74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78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84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90

Ⅱ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1. 기업창설 · 부동산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 운영준칙	99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173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	200
●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220
●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239
●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249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준칙	269
● 개성공업지구 신탁준칙	278

목차

2. 건축

-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289
- 개성공업지구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349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372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380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394
- 개성공업지구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417
-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자 선정지침 434

3. 안전관리

-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447
- 개성공업지구 건설안전관리준칙 483
-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492
-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519
-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546

4. 보건 · 위생 · 환경

-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575
-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647
-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664
-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세부지침... 711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724
- 개성공업지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 742
- 개성공업지구 소음 · 진동관리준칙 748
- 개성공업지구 공원 · 녹지 관리 준칙 755

5. 외화관리 · 광고 · 자동차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 771
-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 776
- 개성공업지구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781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788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
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808

6. 일반관리

-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815
-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818
- 개성공업지구 주차장관리준칙 823
-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837
-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841
-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843
- 개성공업지구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 850
- 개성공업지구 행정절차 운영준칙 851
- 개성공업지구 출입증발급준칙 859

7. 기업회계·감정평가·회계검증

-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 865
-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 898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 905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기준 908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967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970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974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977



4대 경험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985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990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002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007

목차



기타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1013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1018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024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030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03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045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6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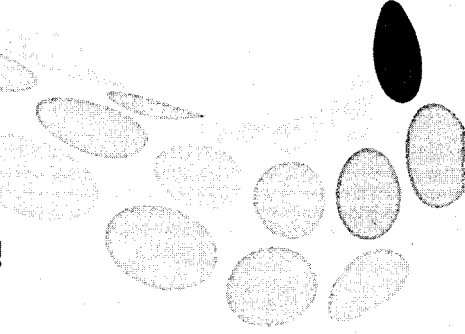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 남북협력기금법 1115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1123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1131



I.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 개성공업지구법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개성공업지구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02.11.20)

'03.4.24 제3715호로 1차 개정

제 1 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 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

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 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례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4.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5.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접수, 보관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 실현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외 조성외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 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 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분쟁해결

-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개발업자선정)** 개발업자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3조 (개발총계획의 작성)**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
- 제4조 (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제5조 (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내각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내각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대한 수정요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계획적 개발 및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 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 제8조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

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1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업자가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투자가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제13조 (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기업의 배치,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같은 사업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 (건설허가) 공업지구에서 건설허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 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과제설계문건의 보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접수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역사유적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역사유적 유물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개발사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노력, 물자, 용수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

제19조 (개발업자의 사업권)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네르기(에너지)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 등록, 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공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장려) 공업지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특별히 장려한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창설형식) 공업지구에서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제5조 (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이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 같은 내용을 밝힌다.

제6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되어야 한다.

제7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과 관련한 준칙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창설신청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업창설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 (투자기간)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투자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형태) 투자는 화폐재산이나 현물재산, 재산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2조 (기업등록신청)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공업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3조 (기업등록신청내용)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등록증사본, 투자실적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4조 (기업등록신청의 처리, 기업창설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5조 (세관, 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은 공업지구세관에, 세무등록은 공업지구세무소에 한다.

제16조 (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주식, 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

제18조 (경영물자, 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 없이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공업지구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19조 (반출입신고)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연계) 기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을 위탁가공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결산) 기업은 반년, 연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예비기금조성) 기업은 결산이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 수 있다.

제23조 (기타 기금조성)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 수 있다.

제24조 (이윤배당) 기업은 연간결산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가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제25조 (기업의 해산신고) 해산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총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해산신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6조 (청산위원회조직)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명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청산사업착수) 청산위원회는 성원명단을 승인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사업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28조 (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을 통보한다.
2.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3.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한다.
4.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5.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
8.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9. 이밖에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제29조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제30조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은 청산사업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공업지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31조 (청산사업의 결속내용)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증과 함께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32조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공업지구에서 지사, 영업소,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세무사업단위와 지도단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세무소가 한다. 공업지구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기업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세무등록은 세무소에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와 기업등록증사본을 낸다. 세무등록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제5조 (기업의 세무변경 및 취소) 기업의 세무변경등록은 통합, 분리되었거나 등록자본, 업종 같은 것을 변경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

제6조 (개인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182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의 세무등록은 20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낸다. 종업원의 세무등록수속을 기업이 할 수도 있다.

제7조 (세무등록증발급) 세무등록증의 발급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8조 (세무문건의 작성언어) 공업지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말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9조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년간회계결산서, 고정재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11조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폐) 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US\$로 한다.

제12조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납부자에게 세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업지구세무소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낸다.

제13조 (잘못 납부한 세금의 처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소득세는 다음연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전까지, 개인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는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60일안으로 한다.

제14조 (과납액, 미납액 처리)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의무자가 미납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납부하며 과납액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검토하고 30일안으로 돌려 준다.

제15조 (세무등록, 세금납부기간) 세무등록, 세금납부는 정해진 기간에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세무등록,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제16조 (합의서, 정부간 협정의 적용) 세금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세금의 부과, 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 개발과 관련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것이, 기타소득에는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률)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

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20조 (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리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결산리윤에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리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세무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24조 (경영손실금의 총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리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25조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6개월기간의 리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을 예정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검증)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기 전에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27조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연간회계결산서와 연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 통합, 분리시 세금납부기간) 해산,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부터 2개월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
2.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1년간 50%를 덜어준다.
3. 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준다.

제30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리윤이 나는 해부터 련속하여 계산한다. 이 기간 경영손실이 난 해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1조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기업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명칭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 연도, 총 투자액,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 것을 밝힌다.

제32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이 규정 제29조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 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

제33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률)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와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얻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리자소득은 소득액의 10%
2.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3.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제34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금납부기간 및 방법)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단위가 다음달 10일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기

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지불단위가 소득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35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에는 로동보수,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 기능공양성, 상담 같은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이 속한다.

제36조 (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세률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US\$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1에 따른다.
2. 증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이 1만 US\$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2에 따른다.
3. 리자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의 10%로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제37조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1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에 이 규정 부록 2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3.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38조 (현금이 아닌 개인소득의 가격계산) 물품, 유가증권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계산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며 공업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대신하여 공업지구밖에 있는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경우에는 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공제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 소득
3.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저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소득

제 4 장 재산세

제41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산세의 납부당사자) 재산세의 납부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건물소유자가 한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임대하였거나 저당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건물의 등록방법)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등록신청

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이름, 주소, 건물명, 단위, 수량, 건평, 내용년한, 건설년도, 취득가격 같은 것을, 양도받은 건물은 양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

제44조 (건물의 등록가격) 건물의 등록가격은 해당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45조 (건물의 재등록) 건물소유자는 등록된 건물의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하려는 건물소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변경된 건물의 가격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46조 (재산세의 부과대상) 재산세는 등록된 건물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건물등록증을 건물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3에 따른다.

제48조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등록된 건물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안으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건물소유자에게 발급하며 건물소유자는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건물을 폐기한 자는 건물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건물명, 폐기날짜, 납부한 재산세, 반환 받을 재산세 같은 것을 밝힌 재산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을 폐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 (새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52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화폐재산, 현물재산, 유가증권, 지적재산

권, 보험청구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

제53조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1.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2. 상속 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3.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4.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
5. 가족들의 부양료 30만 US\$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액이 10만 US\$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 부록 4에 따른다.

제56조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고 남은 상속재산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57조 (상속세의 납부재산) 상속세는 화폐재산으로 납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세를 화폐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품질,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힌 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승인받은 다음 현물재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58조 (상속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액, 공제액, 상속세금액 같은 것을 밝힌 상속세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속세의 분할납부) 상속세가 3만 US\$이상일 경우에는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60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의 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거래세의 부과대상) 거래세는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에 부과한다.

제62조 (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5에 따른다.

제63조 (거래세의 계산방법) 거래세의 계산은 생산물판매액에 이 규정 부록 5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의 계산은 따로 한다.

제64조 (거래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생산물판매자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20일안으로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부문같은 계절성을 띠는 생산부문 기업의 거래세납부 방법은 공업지구세무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 (거래세의 특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남측지역에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 7 장 영업세

제66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영업세의 부과대상) 영업세는 교통운수, 체신, 상업, 금융, 관광, 광고,서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 수입금에 부과한다.

제68조 (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6에 따른다.

제69조 (영업세의 계산방법) 영업세의 계산은 업종별 수입금에 이 규정 부록 6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기업의 영업세 계산은 업종별로 한다.

제70조 (영업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영업세를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하부구조부문기업의 영업세 면제) 전기, 가스, 난방 같은 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 8 장 지방세

제72조 (지방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 제73조 (도시경영세의 부과대상)**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로동보수, 리자소득,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같은 월수입총액에 부과한다.
- 제74조 (도시경영세의 세률)** 도시경영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7에 따른다.
- 제75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방법)** 도시경영세의 계산은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총액에 이 규정 부록 7의 세률을 적용한다.
- 제76조 (도시경영세의 납부방법)** 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도시경영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77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자동차리용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와 특수차가 속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세멘트운반차, 굴착기, 불도젤, 랭동차 같은 것이 속한다.
- 제78조 (자동차의 등록)**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소유자의 이름, 거주지 또는 체류지, 자동차번호, 종류, 좌석수, 적재중량, 소유날자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내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 제79조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은 이 규정 부록 8에 따른다.
- 제80조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자동차리용세의 계산은 종류별 자동차대수에 이 규정 부록 8의 세금액을 적용하여 한다.
- 제81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간 및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소유한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2조 (자동차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자동차를 폐기한 자는 자동차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자동차명, 폐기날자, 납부한 자동차리용세, 반환 받을 자동차리용세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리용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자동차를 폐기한 날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83조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 면제) 자동차를 60일이상 연속 리용하지 않는 자는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9 장 제재 및 신소

제84조 (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세금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85조 (제재대상과 벌금)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등록, 건물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연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하여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86조 (신소 및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세무소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1>

월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 US\$)

NO	월로동보수	세 률
1	500이상~1,000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1,000이상~3,000	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	3,000이상~6,000	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4	6,000이상~ 1만	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	1만이상	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 US\$)

NO	증여소득액	세 률
1	1만이상~10만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	10만이상~50만	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	50만이상~100만	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4	100만이상~300만	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	300만이상	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부록 3>

건물에 대한 재산세

NO	건물용도	세 률(%)
1	생산용건물	0.1
2	주택용건물	0.2
3	상업용건물	0.5
4	오락용건물	1

<부록 4>

상속재산에 대한 세률표

(금액단위 : US\$)

NO	상속재산액	세 률
1	10만이상~100만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2	100만이상~500만	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500만이상~1,500만	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1,500만이상~3,000만	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3,000만이상	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

NO	구 분	세 률(%)
1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1
2	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1
3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1
4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
5	술, 담배, 기타 기호품	15

〈부록 6〉

영업세의 세률표

NO	구 분	세 률(%)
1	건설, 교통운수, 체신부문	1
2	금융부문	1
3	상업부문	2
4	급양, 려관,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	1
5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1
6	부동산거래부문	2
7	오락부문	7

〈부록 7〉

도시경영세의 세률표

NO	납부의무자	세 률(%)
1	기업	0.5
2	개인	0.5

〈부록 8〉

자동차리용세의 금액표

NO	구 분	세액(US\$)
1	승용차 대당/년	40
2	버스	
	12석까지 대당/년	40
	13-30석까지 대당/년	50
	31석이상 대당/년	60
3	화물자동차 제톤당/년	3
4	자동차전차 대당/년	10
5	특수차 대당/년	20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의 채용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노동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로력의 채용원칙) 기업에 필요한 로력은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로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 (노동조건외 보장)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5조 (로임외 제정) 종업원의 로임은 종업원 월 최저로임에 기초하여 기업이 정한다.

제6조 (로력동원외 금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종업원을 동원시킬 수 없다.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종업원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로력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 2 장 로력의 채용과 해고

제8조 (로력외 보장자) 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업은 로력알선기업이 한다. 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로력알선기업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로력알선계약외 체결) 기업과 로력알선기업은 로력알선계약을 맺고 그것

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기능시험, 인물심사 같은 것을 통하여 필요한 로력을 선발할 수 있다. 로력알선계약에는 채용할 로력자수, 성별, 연령, 업종, 기능, 채용기간, 로임수준 같은 것을 밝힌다.

제10조 (로력의 채용계약) 기업은 선발된 로력자와 월로임액, 채용기간, 로동시간 같은 것을 확정하고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된다.

제11조 (로력알선료) 로력알선기업은 기업으로부터 로력알선료를 받을 수 있다. 로력알선료는 로력알선기업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납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채용) 납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것을 밝힌 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로력채용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로동규칙의 작성과 실시)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다. 로동규칙에는 로동시간과 휴식시간,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상벌기준 같은 것을 밝힌다.

제14조 (종업원의 해고조건)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자기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2.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을 경우
3. 기술과 기능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4.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생활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제15조 (종업원의 해고) 종업원을 내보내려는 기업은 그 사실을 3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보낸 종업원의 명단은 로력알선기업에 내야 한다.

제16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조건)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작업과정에 부상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병으로 치료받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 임신, 산전산후휴가, 어린이에게 젓먹이는 기간인 경우

제17조 (종업원의 사직조건) 종업원이 사직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2. 직종이 맞지 않아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제18조 (종업원의 사직절차) 사직하려는 종업원은 7일전까지 기업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기업은 사직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서 사직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보조금의 지불) 기업의 사정으로 1년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적용하여 한다.

제 3 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0조 (노동시간)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종업원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한다. 기업은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48시간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분의 기업은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 (노동시간의 준수)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력채용계약 또는 노동규칙에 정해진 노동시간안에서 로동을 시켜야 한다. 연장작업이 필요한 기업은 종업원대표 또는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명절과 공휴일의 휴식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공화국의 명절일과 공휴일과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5일안으로 대휴를 주거나 해당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3조 (휴가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2~7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한 여성종업원에게는 60일간의 산전, 90일간의 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4 장 로동보수

- 제24조 (로동보수의 내용)**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기업은 종업원의 로동보수를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 제25조 (종업원의 월최저로임)** 기업의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50US\$로 한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26조 (종업원월로임의 제정)** 종업원의 월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업준비기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과 견습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70%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27조 (휴가기간의 로임지불)** 기업은 정기 및 보충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종업원에게는 60일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28조 (휴가비의 계산방법)** 휴가비의 계산은 휴가받기 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한다.
- 제29조 (생활보조금)**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30조 (연장, 야간작업의 가급금)** 기업은 로동시간밖의 연장작업 또는 야간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명절일, 공휴일에 로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밖에 야간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야간작업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 로동이 속한다.
- 제31조 (상금의 지불)**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
- 제32조 (로동보수의 지불)** 기업은 로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내보낸 자에게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5 장 노동보호

제33조 (산업위생조건의 보장) 기업은 고열, 가스, 먼지, 소음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같은 사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여성로력의 보호) 임신 6개월이 지난 여성종업원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다. 기업은 여성종업원을 위한 노동위생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노동안전기술교육) 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기술교육기간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기업이 정한다.

제37조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노동보호물자의 공급기준은 기업이 정한다.

제38조 (노동재해위험 제거) 노동재해위험이 생긴 기업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심의를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회문화시책

제40조 (사회문화시책의 실시) 공업지구의 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의 종업원과 그 가족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문화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문화시책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같은 것이 속한다.

제41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 사회문화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보장한다. 사회문화시책기금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금으로 조성한다.

제42조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업은 공화국국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

로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시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보험료밖의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제43조 (사회문화시책금의 납부) 공화국국민인 종업원은 월로임액의 일정한 몫을 사회문화시책금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질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45조 (문화후생기금의 리용)**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

제 7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6조 (벌금 및 영업중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100~2,000 US\$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벌금 및 영업중지는 사전에 경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

제47조 (사회보험연체료)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매일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48조 (분쟁해결방법) 노동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동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49조 (신소 및 처리) 이 규정을 어긴것과 관련하여 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종업원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으로 된다.

제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은 개발업자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리사장의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리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제5조 (리사장의 임명과 해임) 리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리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제6조 (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리사장이 정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의 개발계획과 그 실행정도에 맞게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과 조건)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전문지식과 해당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자가 될 수 있다. 공업지구 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8조 (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은 리사장이 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그 명단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성원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리사장이 요구하는 성원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0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인과 명판을 가진

다. 공인, 명판의 규격과 형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준비 사업을 끝내고 기관명칭, 기구와 정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관등록신청서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 설립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등록을 한 날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일로 한다.

제1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 및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년간지구개발계획)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년간지구개발계획을 자체로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년간지구개발계획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단계별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업연계)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한다.

제17조 (의견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협의 및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총화자료는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으로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 (부족되는 운영자금의 보충) 부족되는 운영자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의 0.5%로 한다.

제2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낸다.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출입사업기관)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제4조 (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 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 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한다.

제5조 (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통로의 변경질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할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된 증명서를 가진 자

-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제8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발급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원의 출입) 인원은 여권(합의한 대상에 한함) 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열차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공업지구내에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지고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 (수송수단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열차는 당국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안전과 출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을 과학 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인원은 공업지구내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내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류기일연장) 공업지구내에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 전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체류등록) 공업지구내에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 기간 같은 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체류등록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
2.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 관광객
4.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제17조 (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 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사진(3×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 (거주지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생, 사망, 결혼등록) 공업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등록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한 등록을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자는 제때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제25조 (공업지구밖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 변경등록 수속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증명서의 소지)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2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 거주하던 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0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수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세관의 설치) 공업지구의 세관은 공업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기업활동 또는 세관검사, 감독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업지구로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제4조 (반출입신고제)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5조 (세관등록원칙) 공업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

제6조 (반출입금지물품)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

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0조 (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 (업종변경통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운수수단의 등록)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를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철도차량제외)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차종, 차형과 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 연장)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 수화인 같은 것을 밝힌 물자반출입 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

도 있다.

제19조 (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 지사는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할 경우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안의 해당 철도역이 한다. 철도역은 열차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짐부침표, 차무이표, 짐나름표, 출하명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 (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 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 (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 (외화, 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 수 있다.

제 3 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 (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공업지구 세관이 한다.

제25조 (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량의 산적짐이나 짐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 (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꾼 또는 우편물 임자, 대리인의 립회밀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공업지구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

제28조 (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 수 없거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쳐 보는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9조 (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또는 철도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 날 수 없다.

제30조 (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 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 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반출입물자를 짐함, 유개차와 같은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 량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제33조 (검사 및 감독협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지사, 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공업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 작업 같은 것은 세관의 감독 밑에 한다.

제 4 장 관세 및 세관요금

제36조 (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

제38조 (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정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

제39조 (관세의 반환, 추가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다.

제40조 (세관요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요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요금은 세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장 제재 및 신소

제41조 (억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2조 (몰수) 금지품, 밀수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이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 (신소 및 그 처리기일) 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 수 있다. 세관은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1] 공업지구에 들어 올 수 없는 물품

- 1) 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뇌관, 남포심지, 도폭선 같은 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2) 배율이 10배이상 되는 쌍안경, 망원경, 160mm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 4)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5)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6)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정해진 물품
- 7)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부록 2] 공업지구에서 내갈 수 없는 물품

- 1)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2) 무전기와 그 부속품
- 3)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4) 역사유물
- 5)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 6)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2004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외화관리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 전환성외화 현금
2.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
4.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

제5조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외화현금을 류통시킨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환자시세) 류통화폐의 환자시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

제7조 (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그 밖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할 수 없다.

제9조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 제출)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 돈 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

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제 또는 외화자금거래 업무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

제11조 (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리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 온 외화를 제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제16조 (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없이 들여 오거나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리윤, 로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2004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로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리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2. 《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를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3. 《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개인, 경제조직이다.
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이다.

제3조 (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기업, 개인, 경제조직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사업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광고업 합의,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6조 (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를 리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같은 것을 리용하여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제8조 (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에서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규칙,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비, 위약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광고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 수 없다.

1. 복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2. 퇴폐적인 광고
3. 허위적인 광고
4.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5.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제10조 (광고내용의 정확성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공용어나 그밖의 언어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리용동의) 제3자의 명칭 같은 것을 광고에 리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 경제조직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밝힌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4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앞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

제16조 (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역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공고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리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 (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8조 (야외광고물의 문화성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야외광고물의 철수, 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 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광고업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한 광고에 대하여 제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 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고중지, 광고업승인취소, 벌금부과 같은 제재를 둘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2004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3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거래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임대, 저당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이다.
2. 《개인》이란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다.
3. 《부동산》이란 토지리용권과 건물, 거기에 달린 물건이다.
4. 《토지임대기간》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5. 《분양》이란 부동산을 용도별로 분할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6. 《양도》란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형태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7. 《매매》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8. 《교환》이란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고 차이나는 금액을 청산하는 행위이다.
9. 《증여》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10. 《상속》이란 부동산을 가진 자 또는 임차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지

위가 무상으로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행위이다.

11. <<임대>>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행위이다.
12. <<등록임차권>>이란 임대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자의 권리이다.
13.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등록임차권을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제4조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범위)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에는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이 속하지 않는다.

제5조 (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등록과 취득, 양도, 임대, 저당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 2 장 부동산의 취득

제6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개발업자는 개발단계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취소사유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 (토지이용증의 발급과 토지이용권의 취득일)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토지이용증을 받은 날을 개발업자의 토지이용권소유일로 한다.

제8조 (토지임대기간의 계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산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승인된 단계별 공업지구개발계획에 반영된 공사기간만큼 토지임대기간을 늘여 줄 수 있다.

제9조 (부동산등록)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토지이용권, 건물별로 개발업자와 기업, 개인의 부동산관계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등록준칙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0조 (부동산의 분양, 임대 및 가격, 요금) 부동산의 분양, 임대는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개발원가에 기초하여 분

양가격과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의 토지리용권 소유와 효력) 공업지구에서 토지리용권은 분양, 양도 받는 방법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은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 안에서 분양 또는 양도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만큼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토지리용권등록신청서의 제출) 토지리용권을 취득한 자는 계약을 맺은 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토지리용권등록신청서에는 취득자의 이름과 주소, 토지의 위치와 면적, 분양 또는 양도 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분양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토지리용권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토지리용권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3조 (분양할 수 없는 토지의 명의변경등록) 개발업자는 분양할 수 없는 도로, 공원 같은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해당 토지의 리용권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소유한다.

제14조 (토지리용권소유자의 임무)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발업자에게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6조 (토지리용권의 취소조건) 합법적으로 소유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대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 1년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리용권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거나 같은 조건의 토지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의 반환)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10일 안으로 토지리용증 또는 토지리용권등록증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증 또는 토지리용권등

록증을 반환한 자는 6개월안으로 해당 토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이 공화국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관되거나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리용권이 취소되었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토지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정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토지리용기간의 연장)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필요에 따라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리용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연장신청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에 달린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에 대하여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건물소유조건) 건물은 그 부지에 해당한 토지리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가진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제20조 (건물의 소유방법) 건물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있던 건물을 분양 또는 양도받는 방법으로 소유한다. 건물소유권의 소유일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날로, 건물을 분양 또는 양도받았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21조 (건물의 건설조건) 건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리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토지리용권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22조 (건물소유권의 등록) 건물을 새로 건설한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 토지리용권등록증 또는 임차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을 분양, 양도받은 자는 계약을 맺은 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사본, 토지리용권등록증 또는 임차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제23조 (양도, 임대, 저당의 방법)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을 등록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리용기간 안에 제한없이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부동산의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저당할 수 있다.

제24조 (양도, 임대, 저당에서 지켜야 할 원칙) 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관계자는 공정성, 성실성,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기, 투기 같은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 (양도, 임대, 저당의 등록)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의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양도, 저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등록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차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양도, 임대, 저당의 변경등록) 양도, 임대, 저당사유가 없어진 것과 관련한 수속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가 한다.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도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같이 소유한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 저당) 토지리용권과 건물 소유권을 같이 소유한 자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을 양도, 임대, 저당할 경우에는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리용권도 함께 양도, 임대, 저당된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양도, 임대, 저당등록을 할 때 함께 한다. 건물에 달린 토지의 리용권을 소유하지 못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양도, 임대, 저당하려 할 경우 토지리용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사기, 강박으로 이루어진 양도, 임대, 저당의 취소)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임대하였거나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있다.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양도, 임대, 저당의 취소금지 사유)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양도, 임대, 저당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등록임차권을 주었거나 저당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없다.

제30조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매매, 교환, 증여에 의한 양도는 계약을 맺고 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매매는 협상, 입찰, 경매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입찰, 경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려는 자는 입찰 또는 경매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동산의 상속)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의무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도로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상속자 판정, 상속재산 분배비를 같은 것은 사망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따라 정한다.

제33조 (상속의 등록) 상속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제34조 (임차자에 대한 통지) 임대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자는 임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5조 (양수자의 권리의무) 부동산의 양수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양도받은 부동산의 리용기간은 양도자의 토지리용기간에서 남은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36조 (부동산의 임대기간) 부동산의 임차자는 임대자의 토지리용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까지 해당토지 또는 건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37조 (임차자의 임무) 임차자는 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부동산을 리용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임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는 임대차계약에서 밝히지 않은 한 제3자에게 임대받은 부동산을 재임대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제38조 (임대건물의 보수 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못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

다. 임차자는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이 없이 한 건물보수비용을 임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임대건물의 보수 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못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차자는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이 없이 한 건물보수비용을 임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임대자의 계약취소권리) 임대자는 계약에서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효력은 임차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제40조 (임대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정한 기간 안에 임대료를 3회 이상 물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1조 (임차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차자는 3개월 전에 임대자에게 계약취소 의향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자는 앞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약의 취소로 임대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임대차계약의 즉시 취소사유) 임차자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잘못으로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임차자의 책임이 없이 임차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임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그밖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3조 (임대보증금의 등록, 반환) 계약에 따라 임대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문 임차자는 임차권과 함께 임대보증금도 등록할 수 있다. 임대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을 반환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44조 (임차자에 대한 보호)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는 임대자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부동산을 경매한 자금으로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한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를 하여 얻은 자금은 임차자와 저당권자에게 등록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45조 (저당권의 설정, 처분)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자기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할 수 있다. 저당권을 소유하려는 자는 저당권과 함께 채무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상환시기, 리자 및 그 지불시기, 기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뒤틀저당) 저당자는 저당물을 다시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47조 (저당의 통지) 임대자는 임대한 부동산을 저당할 경우 임차자에게 그 사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48조 (저당물의 리용, 양도통지의무) 저당자는 저당물을 그대로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저당물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9조 (저당권자의 권리)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저당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떨어진 가치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저당권의 행사범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같은 사유로 저당자가 받을 보험보상금, 손해보상금 같은 금액에 대하여서도 행사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 같은 것이 지불되기 전에 지불자에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권리 및 저당계약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부터 보상금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채무가 저당계약에 맞게 상환되었을 경우
2.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상환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52조 (저당물의 처분)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채무상환기간 전에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저당물을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3조 (저당물처분액의 분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 세금, 수수료, 저당물의 처분비용 같은 정해진 우선공제 대상금을 납부하며 남은 자금을 임대 또는 저당 등록순위에 따라 임차자, 저당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저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차자에게 주는 분배금에는 선불임대보증금 같은 것이, 저당권자에게 주는 분배금에는 원금, 리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에 따르는 1년간까지의 지연손해보상금이 속한다.

제54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지불한 때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제55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 4 장 제 재

제56조 (천연자원, 매장물의 채취에 대한 제재)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을 비법적으로 채취하였거나 그것으로 부당한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7조 (토지리용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리용하였거나 또는 토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리용권등록증이 없이 리용하였거나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8조 (건물등록 및 양도, 임대, 저당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건물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2004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과 거주자, 체류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지구보험회사) 공업지구에서 보험사업은 공업지구보험회사가 한다. 공업지구보험회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지사, 사무소의 설치) 공업지구보험회사는 공업지구안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험사업원칙)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업지구보험회사(이 아래부터는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의무보험대상)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2.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사망, 부상당하게 하였거나 제3의 재산에 입힌 손해
4.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종업원은 제외)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피보험자라 한다)사이에서 맺는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제8조 (보험계약의 신청) 보험에 들려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

게 내야 한다. 보험계약신청서에는 보험대상, 보험가격 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된다.

제10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제12조 (보험료 납부지체와 계약의 효력상실, 취소)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보험료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증권을 양도하려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피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제14조 (보험위험의 변경통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더 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보험대상의 관리상태 조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대상관리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견한 결함의 퇴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사고통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피보험자의 손해경감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들인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보험사고감정)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다.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보상청구서의 제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안으로 보험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과 손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보상청구서를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보험보상금지불기일) 보험보상은 보험자가 보험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보상 금지불)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보상청구권의 확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권고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5. 이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4조 (보험계약의 취소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
2. 보험계약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보험계약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제25조 (보험보상청구시효)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 (벌금) 이 규정 제5조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27조 (분쟁해결)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제28조 (보험증권사항에 의한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 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2005년 6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회계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은 회계를 한다.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회사, 영업소와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도 회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업무)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이 한다.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4조 (회계화폐와 단위) 공업지구에서 회계화폐는 US\$로 한다. 기업의 경제거래 규모에 따라 화폐단위를 천, 만, 백만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연도)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된 기업의 회계연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이다.

제6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 회계문건의 작성은 조선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7조 (회계준거규정, 회계관습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회계는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8조 (기업회계기준의 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진다.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 2 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주기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산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회계계산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리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제13조 (회계서류의 작성) 회계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록을 검은색으로 한다.
2.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에 한다.
3. 양식에 따르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4. 금액을 조선말로 복기한다.
5. 경제거래를 지시하거나 집행을 책임진 자의 도장을 찍거나 그가 수표한다.

제14조 (회계서류의 발행, 접수) 기업은 경제거래를 시작하면 회계서류를 발행하거나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회계서류는 회계원이 보관한다.

제15조 (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회계서류를 접수한 기업은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효력을 가지지 못한 불비한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 보낸다.

제16조 (회계서류의 수정 및 재작성) 불비한 회계서류를 돌려 받은 기업은 해당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금액을 틀리게 쓴 회계서류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계시의 리용)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정한 회계계시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경제거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거래는 유사한 회계계시에 합쳐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장부의 준비) 기업은 회계장부를 종합계산장부와 세분계산장부로 나누어 갖추어야 한다. 종합계산장부는 경제거래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산할수 있게 분기일기장과 계시원장으로 나누며 세분계산장부는 계산대상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장부의 작성) 회계장부의 작성은 검토 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회계장부양식은 표준양식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1조 (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장부를 마감하기전에 틀리게 쓴것은 붉은 색으로 두줄을 긋고 다시 쓴다.
2. 회계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틀리게 쓴것은 해당 분기를 취소하고 경제거래내용에 맞게 다시 분기하여 기록한다.
3. 회계장부에 올린 금액을 틀리게 쓴것은 추가로 분기하여 바로 써넣는다.
4. 수정한 곳에 회계원의 도장을 찍는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은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한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3. 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재산의 생산, 구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리

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4. 취득원가는 재산형태별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나눈다.

제23조 (수입의 계산) 수입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품, 제품의 판매수입은 그것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2. 위탁판매수입은 위탁받는 자가 위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3. 건설물인도, 봉사제공, 예약판매수입은 실행정도에 따라 한다.
4. 장기할부판매수입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4조 (비용의 계산) 비용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산원가는 제품생산과정에 실지 발생한 소비액에 기초하여 한다.
2. 판매원가는 판매수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만을 포함시켜 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지 발생한 지출액에 기초하여 한다.
4. 리자와 기타 금융비용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5조 (대차대조표의 작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를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하며 재산과 채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류동재산과 고정재산, 류동채무와 고정채무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리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의 해당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대차대조표의 배열을 류동성배렬법으로 한다.

제26조 (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익을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한다.
2. 수입과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고 수입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을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처리한다.
4. 수입과 비용의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7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익처분정형을 미처분리익액, 자체기금인입액, 리익처분액, 다음년도 조월리익액으로, 손실처리정형을 미처리손실액, 손실처리액, 다음년도 조월손실

액으로 구분한다.

2. 미처분리이익액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를 리익처분액과 다음년도 조월리이익액의 합계와 대비하고 미처리손실액을 손실처리액과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리익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8조 (현금류동표의 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류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현금수입과 지출항목을 증가와 감소에 따라 상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련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한다.
2. 업종에 따르는 원가명세서를 첨부한다.
3. 당해년도와 지난해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한다.
4.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시식으로 한다.
5. 잘못 리해할 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하여서는 해석을 첨부한다.

제30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라 작성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월회계결산서는 다음달 6일까지
2. 분기회계결산서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3. 반년회계결산서는 반년이 지난 다음 30일까지
4.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까지

제32조 (회계결산서에 대한 수표) 회계결산서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3조 (회계검증의무) 기업은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안으로 년간 회계결산서를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제34조 (부당계산의 금지) 회계계산과정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책무, 자본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4. 리윤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고 허위리윤을 조성하거나 리윤을 숨기는 행위
5. 기타 공업지구 회계관련법규를 어기는 행위

제 3 장 회계문건

제35조 (회계문건의 구분과 양식)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양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회계서류의 정의와 구분) 회계서류는 경제거래를 반영하는 회계계산의 기초물건이다. 회계서류에는 증표, 전표, 분기표, 집계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7조 (회계서류의 반영내용) 회계서류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의 제목
2. 발행번호와 날자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경제거래근거와 내용
4. 경제거래용도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
6. 발행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8조 (회계장부의 정의와 구분) 회계장부는 회계서류에 반영된 경제거래를 일정한 양식 또는 계산표에 기록계산 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장부에는 분기일기장, 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 같은 것이 속한다.

제39조 (회계장부의 반영내용) 회계장부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년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기업명칭 같은 것을 밝힌다.
2. 첫페이지에는 목록을 쓰고 목록별 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이지부터 번호를 쓰고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와 분기표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 같은 것을 밝힌다.

4. 마지막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40조 (회계결산서의 정의와 구분)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류동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결산서에는 결산서, 결산서 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

제41조 (회계결산서의 반영내용)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간서,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재정상태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42조 (회계문건의 보존기간)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 5년
2. 회계장부 10년
3. 년간회계결산서 10년
4.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른다.

제43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서류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날부터 한다.
2. 회계장부는 장부를 마감한 날부터 한다.
3.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은 날부터 한다.

제44조 (회계문건의 보관) 회계문건은 회계부서책임자의 책임밑에 해당 기업에 보관한다. 통합, 분리, 해산되는 기업은 해당 리사회에서 보관인과 보관장소를 정한다.

제 4 장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4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는 기업의 회계감독사업을 담당할 감독부서를 둘 수 있다.

제46조 (회계감독방법) 회계감독은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

법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기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 기업은 종합계산장부작성업무와 재산보관업무, 내부회계검증업무를 분리시키며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투자, 재산처분, 자금공급 같은 중요경제업무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8조 (출납업무의 겸임금지) 기업은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록계산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를 겸임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9조 (회계업무인계) 조동, 동원, 병치료, 해임 같은 사유가 있는 회계원은 제3자의 립회밀에 회계사업을 인계하여야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의 책임자가 한다.

제50조 (손해보상) 회계업무집행과정에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업무중지) 회계결산서작성에서 중요자료를 루락시켰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6개월부터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킨다. 돈, 물품을 받고 사실과 어긋나게 회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무를 중지시킨다.

제52조 (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정당한 리유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업이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 계산,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몰수하고 1만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위법적인 회계계간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53조 (연체료적용)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보낸 다음 7일이 지난날부터 한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2005년 6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자본조성과 리용, 리윤분배, 자본청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재정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자본의 조성방식) 기업은 자본조성을 출자, 신용, 증여, 리윤저축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등록자본)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5조 (등록자본의 규모)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이상으로 한다. 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의 형태) 기업은 투자를 화폐재산,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폐재산의 투자는 전환성외화로 하여야 한다. 무형재산의 투자액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다.

제7조 (투자의 인정시점) 투자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재산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입금시켰을 때
2. 부동산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
4. 무형재산은 도입 또는 리용으로 경제적리익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 (투자재산의 가격)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제9조 (유형재산의 내용년한)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은 20년 이상
2. 철도차량, 선박과 기계 같은 생산설비는 10년 이상
3.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수송수단은 5년 이상
4. 전자설비와 취득원가가 300US\$ 이상인 공구, 비품은 3년 이상

제10조 (유형재산의 감가상각) 유형 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리용방식, 과학기술발전영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유형재산의 잔존가치평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이하로 평가할 수 없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를 5%이하로 평가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무형재산의 내용년한)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예상수익기간으로 하며 예상수익기간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무형재산의 감가상각)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제14조 (감가상각의 금지) 기업은 경영활동에 리용하지 않는 고정재산과 건설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물품구입과 생산제품판매) 기업은 물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16조 (원가, 비용계산의 금지대상) 원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지출 또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2. 자기 자본에 대한 리자
3. 일반리자률보다 높은 리자
4.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6. 기준을 초과한회수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7.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8. 당기순리윤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9.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제17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5년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대손충당금은 회수불가능한 판매채권, 대부금, 미수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일반기업은 당해년도말 채권잔고의 1%, 금융기업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 (퇴직보조금지불 대상자와 규모) 기업은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퇴직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퇴직보조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의 설정한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은 퇴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기업은 1년이상 일한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 (종업원의 로임) 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공업지구 종업원월 최저로임보다 낮지 않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2조 (관리성원의 로임) 기업은 관리성원의 로임기준을 세금납부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3조 (종업원의 상금)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전액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4조 (관리성원의 상금) 기업이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종업원의 상금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넣어 계산할 수 없다.

제25조 (대외사업비의 지출) 생산부문, 상업부문의 기업은 순판매액이 20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0.5%를, 200만US\$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0.3%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건설, 금융, 교통운수 같은 기타

봉사부문의 기업은 순영업액이 7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1%를, 70만US\$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0.5%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예비기금) 기업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

제27조 (자체기금) 기업은 당기순리윤에서 예비기금과 리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전 같은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제28조 (차입금상환) 기업은 차입금을 정한 기간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찾지 못하여 상환할 수 없는 차입금은 예비기금에 포함시킨다.

제29조 (채무의 평가) 기업은 채무를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 (감독 및 제재)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재정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200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회계검증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은 공업지구에 설립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한다.

제3조 (회계검증의 준거규정) 회계검증은 이 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제정 규정, 세금규정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제4조 (회계검증의 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 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항에서 지적하지 않은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5조 (회계검증에 대한 간섭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이다.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회계검증준칙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제7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가능수)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둔

다. 2개 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 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내오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심의등록, 설립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제11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 기본규약, 기구와 정원수, 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제13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정원수와 자격)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 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 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둔다.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이 아래부터는 회계검증원이라 한다)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이상 일한 자가 될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14조 (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 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 (장부기록)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정형을 해당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기록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17조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회계검증원은 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보고서의 부류, 검증과 관련한 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18조 (업무제한) 회계검증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 (위법행위처리)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정할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검증료)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 상담과 관련한 검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리윤의 10%를 직전 회계년도총수입액의 10%가 될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보상준비금의 류용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한다.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23조 (회계검증내용)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이 속한다.

제24조 (투자검증의무)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기업, 총투자액의 10% 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

우에는 출자증서의 발급, 리운분배, 투자상환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제25조 (투자검증대상) 투자검증은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 대하여 한다. 투자보고서에는 출자상태표와 화폐재산출자명세표, 현물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26조 (투자검증기간) 기업창설투자자에 대한 검증은 조업을 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통합, 분리에 대한 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끝낸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자에 대한 검증은 해당투자를 끝낸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한다.

제27조 (중고설비투자자에 대한 감정평가) 회계검증사무소는 중고설비투자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고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기업은 중고설비의 생산년월일과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내용년한, 사용한 기간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제28조 (결산검증의 대상) 결산검증은 기업의 월,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9조 (년간회계결산서의 제출기간)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회계업무량이 특별히 많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낼 수도 있다.

제30조 (결산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원은 결산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상태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 회계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2. 주요 회계정책 및 예측과 그 변경정형
3. 우발사항과 결산후 발생한 경제거래정형
4. 중요재산의 처분정형
5. 기업의 통합, 분리정형
6. 회계결산서의 중요항목
7. 회계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2조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생산 및 경영상태
2.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3.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태
4. 재정상태, 경영성적, 현금류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대차대조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3조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기간)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기업의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검증을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연장기간을 공업지구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청산검증대상) 청산검증대상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이다.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자금원천분배표, 재산실사표, 국가납부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5조 (청산검증의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청산사업을 끝낸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청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에 조직된 청산위원회의 사업을 종결할 수 없으며 기업등록을 삭제할 수 없다.

제36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사무소는 투자검증보고서, 결산검증보고서, 청산검증보고서의 사본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안으로 내야 한다.

제 4 장 감독통제

제3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감독통제방법)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사무소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 (업무중지처벌)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무락시켰거나 엄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6개월이상 1년까지 중지시킨다.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1년이상 중지시킨다. 회계검증원이 3회이상 업무중지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40조 (벌금)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연체료)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한다.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2006년 7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6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 통행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동차운행의 편의를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법인,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구밖에서의 자동차통행은 공화국의 도로교통법규에 따른다.

제3조 (자동차의 구분)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동자전차, 특수차 같은 것이 속한다. 자동차의 세부적인 분류는 이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 (자동차의 등록의무) 공업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동차의 등록은 의무적이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것을 목적으로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자동차의 번호판발급) 등록된 자동차에는 번호판을 준다. 립시로 리용하는 자동차, 등록수속중에 있는 자동차에는 립시표식판을 준다.

제6조 (자동차의 기술검사기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의 기술검사형식과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의 운전자격)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공화국의 운전면허심사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것을 자동차감독기관에 제기하여 교부받은 다음 자동차를 운전한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사유로 공업지구로 단기로 출입하거나 북과 남 해당 기관들사이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8조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사본의 제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기술검사증을 발급한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3일안으로 해당 문건의 사본을 자동차감독기관에 보낸다.

제9조 (수수료의 납부) 자동차를 등록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운전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한 수수료는 자동차감독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자동차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자동차의 등록

제11조 (등록의 구분) 자동차의 등록은 첫등록, 이동등록, 삭제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의 등록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의 첫등록) 자동차의 첫등록은 공업지구에 새로 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등록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 들어온 날부터 7일안으로 첫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자동차의 이동등록) 자동차의 이동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공업지구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15일, 증여받은 자동차를 20일, 상속받은 자동차를 3개월, 이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15일안으로 자동차이동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등록신청서의 검토, 등록증발급) 자동차의 첫등록신청서 또는 이동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3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한다.

제15조 (자동차번호판의 봉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등록된 자동차에 번호판을 맡아주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뜯을 수 없다.

제16조 (자동차의 립시표식판) 등록수속을 하거나 립시로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림시표식판을 달아준다. 림시표식판의 유효기간은 15일간이다.

제17조 (자동차의 등록삭제) 자동차의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폐기시켰을 경우
2. 구입한 자동차를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돌려 보냈을 경우
3. 충돌, 화재 같은 사유로 자동차를 다시 리용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완전히 내가려 할 경우
5. 이밖에 삭제등록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 (자동차등록의 삭제신청) 자동차소유자는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등록삭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19조 (등록을 삭제하였던 자동차의 등록) 삭제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은 제12조에 따른다.

제 3 장 자동차의 기술검사

제20조 (기술검사의 구분)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구조변경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술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동차의 첫기술검사) 자동차의 첫기술검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첫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기되어 수리,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히 파손되어 수리복구한 자동차는 해당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는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차종, 차형, 차체번호, 능력, 모양 같은 것이 달라진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자동차의 기술검사신청과 검사) 자동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기술

검사기관은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 날짜를 정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검사증의 발급)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에 따르는 기술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된 자동차에는 기술검사증을 발급하여 준다.

제26조 (자동차의 장치물설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표식을 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자동차의 통행

제27조 (교통지휘) 공업지구에서 교통지휘는 교통보안원이 한다. 자동차의 통행은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자동차의 달림선) 자동차는 자동차도로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달림선이 표시된 도로에서는 정해진 달림선으로 통행하며 달림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와 종류, 차형, 통행목적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동차의 저속통행) 자동차는 사립길, 건늬길표식이 있는 곳, 정류소,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것에 의하여 차의운전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저속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동차의 따라 앞서기) 자동차는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 앞선 자동차를 따라 앞서려 할 경우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자동차는 따라 앞서려는 자동차에게 길을 내주어야 한다. 좁은 도로, 따라앞서기금지표식이 있는 구간의 도로, 굽인돌이, 사립길, 건늬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늬길 같은 곳에서는 따라앞서기를 할 수 없다.

제31조 (자동차의 어기기) 경사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먼저 본 자동차 또는 내려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련결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서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동차의 정차와 주차장소) 멈추어서려는 자동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도로의 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다리, 사립길, 철길건늬길, 시야가 제한

된 경사길과 굽인돌이, 정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주차표식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적재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의 포장) 자동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싣지 말아야 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짐은 포장하여 실어야 한다.

제34조 (인원을 태울수 없는 자동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탱크식화물차, 련결차와 강재, 통나무,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 것을 실은 자동차는 적재함에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보행자의 통행) 자동차는 건늬길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도로를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36조 (자동차의 사궤길통행) 교통보안원,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궤길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선 다음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궤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들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동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자동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자동차부터 통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동차의 철길건늬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자동차는 건늬길 10M 앞에 세우고 련차가 통과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신호를 받은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자동차의 야간통행) 밤에 통행하는 자동차는 조명등을 켜고 보임거리를 보장하며 자동차가 서로 어길 경우 원거리등과 근거리등을 엇바꾸어 켜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제40조 (특수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도로시설관리차 같은 특수차는 해당 경보장치와 표식등, 표식기재를 사용하며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달림선에 표시한 속도보다 높은 속도 또는 낮은 속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41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즉시 자동차감독기관과 보험회사에 알리고 사고현장을 보존하며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자동차에 갖추어야 할 물건) 통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 자동차3자책임보험가입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운전사는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자동차의 통행금지사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 자동차3자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신호장치가 불비한 자동차, 번호판, 림시표식판을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제 5 장 제재 및 신고

제44조 (벌금과 부과)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에 따르는 벌금의 부과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자동차의 억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7일까지 억류시킬 수 있다.

제46조 (추방) 이 규정을 어긴 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47조 (신고와 처리기일)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통행, 제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기술검사시관, 자동차감독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2006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2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 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의 기업과 개인(외국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속한다.

제3조 (환경보호사업의 담당자)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사업의 선행) 환경보호사업은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공업지구에서 개발, 건설, 생산을 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기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환경보호기준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방사성오염, 악취오염기준과 소음, 진동기준 같은 것이 속한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6조 (자연환경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사람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보호구의 설정)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 (산림자원의 보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지구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할 수 없다.

제9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지 말며 그 서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제1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의 보존) 기업과 개인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의 자연풍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의 건설금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봉사시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

제12조 (수림화, 원림화) 기업과 개인은 공장, 도로, 철길의 주변과 공지에 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와 잔디, 꽃을 많이 심어 공업지구의 풍치를 돋구어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13조 (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공업지구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에는 해당 대상의 개발, 건설, 운영계획과 대상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환경보호계획의 제출)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검사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16조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주민지구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17조 (가스, 먼지의 배출승인)**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기중에 가스와 먼지를 직접 내보내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륜전기재의 운행금지)** 기업과 개인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 제19조 (악취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악취발생물질을 불태울 수 없다.
- 제20조 (소음, 진동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다른 기업이나 주민들이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1조 (오수, 폐수의 정화)** 오수, 폐수를 내보내려는 기업과 개인은 오수나 폐수를 수질오염배출기준아래로 정화하여야 한다.
- 제22조 (수역에서의 금지행위)** 기업과 개인은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거기에 오물을 버리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3조 (토지의 오염, 류실방지)** 기업과 개인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대책을 세워 토지오염을 막아야 한다.
절토 또는 성토로 인한 토사의 류출을 방지하며 폭우로 흙과 모래가 하천과 수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 제25조 (지반침하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 제26조 (유독성물질의 취급)** 유독성물질을 취급하려는 기업은 유독성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유독성물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며 종류, 수량, 용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폐기폐설물의 배출량보고) 기업은 폐기폐설물의 배출량을 정확히 장악기록하며 그 정형을 월에 1차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폐기폐설물의 보관) 폐기폐설물을 보관하려는 기업은 보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주변에 울타리와 경계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을 담은 용기겉면에는 폐기폐설물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폐기폐설물의 운반) 폐기폐설물을 운반하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며 운반도중에 폐기폐설물이 섞이거나 류출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폐기폐설물의 처리)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폐기폐설물처리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업지구 밖으로 내보내려는 폐기폐설물의 처리신청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폐기폐설물처리신청서에는 폐기폐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1조 (환경의 오염경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정확하여 내보낸 오수, 폐수가 특수한 기상수문조건과 사정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상태의 조사, 측정, 분석)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 측정, 분석방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자료기록)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폐기폐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대장에 기록하고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계획실행,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에 1차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독통제

제3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

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며 기업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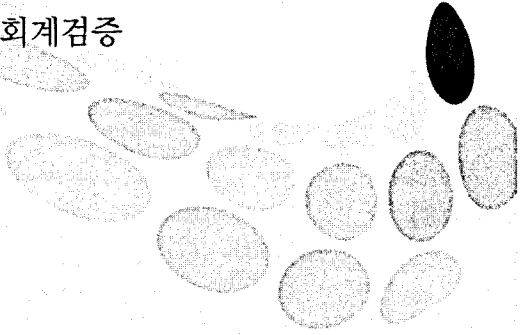
제37조 (환경보호시설의 관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보수주기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재)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제39조 (분쟁해결)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상사중재절차로 한다.



II.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1. 기업창설 · 부동산
 2. 건축
 3. 안전관리
 4. 보건 · 위생 · 환경
 5. 외화관리 · 광고 · 자동차
 6. 일반관리
 7. 기업회계 · 감정평가 · 회계검증
- 

1. 기업창설 · 부동산

- 기업창설 · 운영준칙
- 부동산등록준칙
- 부동산집행준칙
- 지적준칙
-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준칙
- 신탁준칙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 운영준칙

[제정 2005.1.27]

제1편 통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기업을 창설, 등록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의 종류)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제3조 (기업의 법인성, 주소) ①기업은 법인으로 한다.

②기업의 주소는 본사 주소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기업의 성립) 기업은 창설 및 등록 승인을 받고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기업의 합병) ①기업은 합병을 할 수 있다.

②해산 후의 기업은 존립중의 기업을 존속하는 기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제6조 (동전-설립위원) ①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기업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제7조 (기업의 해산명령) ①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기업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기업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여 기업

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4. 기업이 기업등록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기업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기업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기업이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기간의 기산점) 본 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록기간을 기산한다.

제 2 편 주식회사

제 1 장 창설 및 등록

제9조 (투자자)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투자자가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약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투자자는 규약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투자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창설목적 및 업종
2. 명칭 및 본사의 주소
3. 설립시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
4. 1주의 금액
5. 주식 및 채권의 발행사항
6.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기업책임자, 이사,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8. 이익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에 관한 사항
9. 기업이 공고를 하는 방법
10.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②기업의 설립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기업의 공고는 관리기관이 설치한 게시판, 발행하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기업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투자가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제12조 (규약의 인증) 규약은 공증인(투자가 본국의 공인된 공증인도 가능, 이하 공증인에 대하여 동일함)의 인증을 받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면을 관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13조 (창설신청) ①투자는 별지 제1호의 기업창설신청서에 의해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을 신청한다.

②제1항의 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설기업의 규약(투자가 기명날인 포함)
2. 사업계획서
3. 투자가 신용확인서
4.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본
5. 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투자가 기업등록원부 등본(투자가 본국의 법인등기부 등본)
6. 기업임원(기업책임자, 이사와 재정검열원)의 선임과 수임수락을 증명하는 서면

제14조 (임원선임) ①투자는 창설신청시에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재정검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투자가의 의결권은 사업계획서에서 인수하기로 정한 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15조 (투자자의 의사록작성) 투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 관리기관은 기업의 신청서 및 첨부문서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창설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심사결과 통보) ①관리기관은 기업창설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업창설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관리기관은 기업창설을 승인하는 경우 투자기간을 정한다. 투자자가 지정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투자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기업창설을 부결하는 경우 부결의 이유와 권고내용을 명시한 부결통지서를 투자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투자자는 전항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창설원부의 작성)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업창설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19조 (투자자의 주식인수) 각 투자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투자자는 투자기간 내에 기업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물출자를 하는 투자자는 투자기간 내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재정검열원의 조사·보고) ①이사와 재정검열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기업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규약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재정검열원중 투자자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기업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재정검열원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조사, 보고) ①회계검증사무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계검증사무소는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회계검증사무소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투자자

는 이에 대한 설명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기관의 심사) 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조사보고서와 투자가의 설명서를 심사할 수 있다.

제24조 (기업등록사항) ①주식회사의 기업등록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업등록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사항
2.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지사의 주소
6. 기업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2조에 정한 사항
8. 이사와 재정검열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9. 기업을 대표할 기업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10. 수인의 기업책임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명칭 및 본사의 주소

제25조 (기업등록신청) ①투자가는 별지 제4호서식 기업등록신청서에 의해 기업등록을 신청한다.

②제1항의 기업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업창설승인서 사본과 투자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투자실적확인서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창설기업명의를 잔고증명서 및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한다.

제26조 (심사결과통보) ①관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업등록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②관리기관은 기업등록 신청을 부결할 경우에는 부결의 이유와 권고내용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③제17조제4항은 전항의 부결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조 (기업등록) ①관리기관은 법, 규정 및 이 준칙에 의한 기업등록업무를 담

당할 등록관을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은 기업등록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등록용지(기업등록 및 인감등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에 편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등록원부를 작성한다.

③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28조 (변경등록) ①기업창설 또는 등록을 신청한 기업이 창설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사 주소지에서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의 당초내용 및 변경내용, 변경사유를 적시하고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기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변경신청에 대한 절차는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준용하며, 관리기관은 기발행된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기업등록증을 회수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투자가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기업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 (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기업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1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기업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투자가는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32조 (투자가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기업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기업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투자가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기업성립 후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투자가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투자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 ①투자자가 기업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투자자는 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투자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투자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 (투자자,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재정검열원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투자자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재정검열원과 투자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투자자의 책임면제) 제119조의 규정은 투자자에 준용한다.

제36조 (기업불성립의 경우의 투자자의 책임) ①기업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기업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37조 (설립무효의 신청) ①기업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재정검열원에 한하여 기업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관리기관에 무효 신청을 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다.

②설립무효의 신청이 있으면 기업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설립무효의 신청이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기업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설립무효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결정 전에 생긴 기업과 주주 및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설립무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을 한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설립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업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⑦설립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 식

제38조 (주식의 발행) 주식회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본을 분할하여

주식으로 발행한다.

제39조 (등록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등록자본은 10,000US\$ 이상이어야 한다.

②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1주의 금액은 1U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주식의 분할) ①기업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257조 내지 제2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제42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로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제45조 (주주의 기업에 대한 상계금지)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기업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6조 (주식의 양도) ①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기업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기업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기업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기업에게 통지하거나 기업이 확정일자 있는 승낙한 경우에는 기업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7조 (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기업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업이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8조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기업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47조제2항,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50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업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업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1조 (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2조 (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3조 (주식의 등록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기업이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한 때에는 질권자는 기업으로부터 리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기업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주식의 질권자는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을 준용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54조 (자기주식의 취득) 기업은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기업의 합병 또는 다른 기업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기업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55조 (자기주식의 질취) 기업은 발행주식의 총수 및 등록자본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5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업은 제54조와 제55조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자기기업에 의한 모기업 주식의 취득) ①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기업(이하 “모기업”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기업(이하 “자기기업”라 한다)이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기업의 합병 또는 다른 기업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기업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자기기업은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기업 및 자기업 또는 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기업은 이 준칙의 적용에 있어 그 모기업의 자기업으로 본다.

제58조 (다른 기업의 주식취득) 기업이 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기업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수종의 주식) ①기업은 리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리익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기업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제60조 (상환주식) 전조의 경우에는 리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리익으로써 소각할 수는 없다.

제61조 (전환주식의 발행) ①기업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62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61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63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64조 (전환의 청구) 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

하여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5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제69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 (전환의 등록)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록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기업 본사주소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4.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62조에 정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 (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기업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기업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9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기업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기업이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기업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기업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1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기업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2. 기업의 성립연월일
3. 기업의 등록자본
4. 1주의 금액
5. 기업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연월일
6.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62조에 정한 사항

제72조 (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업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기업은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은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기업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 (주권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주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주권의 소지인은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주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기업의 기관

제 1 절 주주총회

제74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 준칙 또는 규약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75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 준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76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업은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주주제안권)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76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규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8조 (소집지) 총회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기업의 본사주소지 또는 이사회가 정한 상당한 장소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79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80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발행주식의 총수 및 등록자본의 100분의 3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1조 (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 (감사인의 선임)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재정검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3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준칙 또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기업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 (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기업이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기업, 모기업 및 자기기업 또는 자기기업이 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모기업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86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 ①기업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으

로 리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규약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②전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7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0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기업이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155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 기업의 영업전부의 양수
4. 기업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업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제91조 (사후설립) 제90조의 규정은 기업이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营业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결의취소의 신청)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규약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재정검열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신청을 관리기관에 할 수 있다.

②제37조제2항, 제4항 본문과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93조 (신청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신청을 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기업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재정검열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업이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주주의 신청이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94조 (결의취소의 등록) 결의한 사항이 등록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업의 본사주소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제95조 (관리기관의 재량에 의한 신청기각) 결의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결의의 내용, 기업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96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신청) 제37조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 제93조와 제94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관리기관에게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신청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관리기관에게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신청) ①주주가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신청 또는 변경의 신청을 관리기관에 할 수 있다.

②제37조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 제93조와 제9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 2 절 이사와 이사회

제98조 (선임, 기업과의 관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기업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따른다.

제99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사는 법규와 규약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0조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록자본의 총액이 100,000US\$ 이하인 기업은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규약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제4호,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71조제7호, 제116조제1항·제2항, 제117조, 제134조 본문, 제16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7조, 제220조제2항 본문 및 제227조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107조 내지 제111조, 제112조제2항, 제118조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7조제3항 및 제252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기업을 대표하며, 제75조, 제77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102조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기업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3조 (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규약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은 이사, 재정검열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본사주소지에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 (자격주) 규약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재정검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105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규약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06조 (기업책임자)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기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기업책임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기업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기업책임자의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기업책임자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기업책임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업은 그 기업책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제103조의 규정은 기업책임자에 준용한다.

제107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재정검열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규약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이사 및 재정검열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0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8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9조 (재정검열원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재정검열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재정검열원은 이사가 법규 또는 규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재정검열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 (이사회 연기·속행) 제88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 (이사회 권한) ①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사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기업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기업책임자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이사와 기업간의 분쟁에 관한 대표) 기업이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기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본 준칙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재정검열원은 그 소, 중재 또는 신청에 관하여 기업을 대표한다.

제114조 (표현기업책임자의 행위와 기업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기업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기업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15조 (규약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기업의 규약,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사주소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기업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 (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업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기업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기업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17조 (이사와 기업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제118조 (기업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9조 (기업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120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1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 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118조 및 제120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 3 절 재정검열원

제122조 (선임) ①재정검열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 및 등록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재정검열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기업은 규약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23조 (재정검열원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재정검열원은 주주총회에서 재정검열원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4조 (임기)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125조 (겸임금지) 재정검열원은 기업 및 자기업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126조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재정검열원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재정검열원은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7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기업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재정검열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총회의 소집청구) ①재정검열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재정검열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 (자기업의 조사권) ①모기업의 재정검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업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기업의 재정검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자기업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30조 (조사·보고의 의무) 재정검열원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

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31조 (재정검열록의 작성) ①재정검열원은 재정검열에 관하여 재정검증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정검증록에는 재정검열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재정검열을 실시한 재정검열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2조 (재정검열원의 책임) ①재정검열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재정검열원은 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재정검열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재정검열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재정검열원이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재정검열원과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3조 (준용규정) 제98조제2항,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19조, 제120조의 규정은 재정검열원에 준용한다.

제 4 장 신주의 발행

제134조 (발행사항의 결정) 기업이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등록자본을 변경한 후 다음의 사항으로서 규약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준칙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규약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135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업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기업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69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기업은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4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37조 (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2.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3.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
4. 제13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138조 (주식인수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134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기업은 동조 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136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137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140조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49조제2항 및 제73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주식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42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신주에 대한 납입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회계검증규정에 의하여 회계검증사무소의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3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4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회계검증사무소는 조사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조사보고서를 심사할 수 있다.

제145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6조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사의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7조 (준용규정)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148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149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록이 있는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0조 (신주발행무효의 신청)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재정검열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 (준용규정)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및 제93조의 규정은 제150조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2조 (신주발행무효결정의 효력) ①신주발행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기업은 지체 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기업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3조 (무효결정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업은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 제1항의 결정 확정시의 기업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기업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제52조와 제5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5 장 규약의 변경

제154조 (규약변경의 방법) ①규약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규약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5조 (규약변경의 특별결의) 제154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156조 (종류주주총회) ①기업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157조 (동전) 전조의 규정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와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 준용한다.

제 6 장 기업의 계산

제158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4. 현금류동표

제159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 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 사
채의 상황
2.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
을 포함)
3. 모기업과의 관계, 자기기업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기업이 대처할 과제
6.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 재정검열원의 성명,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기업과의 거래관계
7.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자기기업이 보유
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기업과의 거래관계와 기업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8. 기업, 기업 및 그 자기기업 또는 기업의 자기기업이 다른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
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
른 기업의 명칭과 그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수
9.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수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0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58조 및 제
159조의 서류를 재정검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 (검증보고서) ①재정검열원은 제160조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
에 검증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증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규약에 따라 기업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여 기업의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규약에 따라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규약에 적합한지의 여부
8.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가 기업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158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검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제162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이사는 결산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58조 및 제159조의 서류와 검증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58조 및 제159조의 서류와 검증보고서를 기업 본사주소지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3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이사는 제158조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59조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4조 (이사, 재정검열원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재정검열원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재정검열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 (등록자본) 기업의 등록자본은 본 준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166조 (예비기금) 기업은 등록자본의 100분의 10이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비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67조 (자본잉여금) 기업은 다음의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제168조 (예비기금과 자본잉여금의 사용) ①전2조의 예비기금과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예비기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잉여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169조 (예비기금 및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①기업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예비기금 및 자본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규약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2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업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69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

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65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5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0조 (리익의 배당) ①기업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리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잉여금과 예비기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예비기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리익을 배당한 때에는 기업채권자는 이를 기업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1조 (리익 등의 배당의 기준) 리익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 (배당금지금지시기) ①기업은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163조제1항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제1항의 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73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 및 등록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은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4조 (기업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기업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 및 등록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업책임자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사와 재정검열원은 지체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이익공여의 금지) ①기업은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기업이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업이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기업이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제176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기업과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기업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제 7 장 사 체

제 1 절 통 칙

제177조 (사채의 모집) 기업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제178조 (총액의 제한) ①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기업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 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79조 (사채모집의 제한) 기업은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

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제180조 (사채의 금액) ①각 사채의 금액은 10U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81조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율이어야 한다.

제182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2. 등록자본과 예비기금 및 자본잉여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기업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제178조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때에는 그 뜻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있는 때에는 그 명칭과 주소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3조 (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사채의 일

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184조 (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은 그 명의로 위탁기업을 위하여 제182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5조 (채권의 발행) 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업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182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 정한 사항

제186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업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50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7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 (수탁기업의 사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채를 발행한 기업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같다.

제189조 (수탁기업의 해임)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190조 (수탁기업의 사무승계자) ①전2조의 경우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없게 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기업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1조 (수탁기업의 권한)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기업이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2조 (2개 이상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기업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93조 (이권흡결의 경우) ①이권(利卷)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흡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4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91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95조 (사채원부) 기업은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182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와 제13호에 정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5. 채권의 발행년월일
6. 각 사채의 취득년월일
7.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

제196조 (준용규정) ①제68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44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2 절 사채권자집회

제197조 (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본 준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198조 (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기업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소집한다.

②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전항의 기업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99조 (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00조 (사채발행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대표자의 출석) ① 사채를 발행한 기업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은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201조 (사채발행기업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2조 (결의의 방법) ① 제155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188조 내지 제190조와 전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203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관리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04조 (결의의 불인가 사유) ① 관리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전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205조 (결의의 효력) ①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관리기관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06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7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208조 (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없는 때에는 전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그러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192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210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191조, 제192조제2항과 제194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1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2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기업이 사채의 이자의 지급을 해태한 때 또는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보다 짧을 수 없다.

②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업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제213조 (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4조 (수탁기업 등의 보수, 비용)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 대하여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요할 비용은 사채를 집행한 기업과의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상환을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전항의 보수와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215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부담한다.

②제203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제216조 (수종의 사채 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 종류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7조 (준용규정) ①제76조, 제83조제2항, 제3항, 제85조제2항과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그 본사 주소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과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8조 (수탁기업에 의한 취소의 신청) ①기업이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은 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으로써만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채권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기업이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③본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19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신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한다.

제 3 절 전환사채

제220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규약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규약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제155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1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

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5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2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36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3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24조 (전환사채의 등록) ①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기업의 본사 주소지에서 전환사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2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제2항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업의 본사 주소지에서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록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록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25조 (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6조 (준용규정) ①제61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5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2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기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규약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규약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233조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7.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간에 관하여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제155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20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7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9조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30조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2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30조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제22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기업은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기업의 명칭
3. 제2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229조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는 그 규정

제231조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49조제2항 및 제73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록) ①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22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제22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3조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기업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제1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29조 및 제143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234조 (주주가 되는 시기) 제2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5조 (준용규정) 제66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221조 및 제22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8 장 해 산

제236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규약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관리기관의 해산명령

5. 주주총회의 결의

제237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38조 (기업의 계속) 기업이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규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239조 (휴면기업의 해산) ①관리기관이 최후의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기업은 관리기관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업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한 기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기업은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155조의 결의에 의하여 기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40조 (해산의 통지, 공고) 기업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41조 (해산신고 및 등록) ①기업이 해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산 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238조에 의하여 기업이 계속되는 경우 이미 기업의 해산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2주간 내에 기업의 계속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합 병

제24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기업이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76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43조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24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 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사주소 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기업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②주주 및 기업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업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4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기업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총투자액을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총투자액
2. 존속하는 기업의 증가할 등록자본과 예비기금 및 자본잉여금의 총액
3. 존속하는 기업이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기업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규약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리익의 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업에 취임할 이사와 재정검열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245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기업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기업의 본사 주소지
2. 설립되는 기업이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기업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기업의 등록자본과 예비기금 및 자본잉여금의 총액
4. 각 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전조 제5호와 제6호에 정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업의 이사와 재정검열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24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합병을 하는 기업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252조의 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제260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합병으로 인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252조의 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260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서는 규약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76조제1항·제2항, 제78조, 제83조제2항·제3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제92조 내지 제97조와 제156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제248조 (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49조 (설립위원의 보고) ①설립위원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

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50조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재정검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51조 (이사·재정검열원의 임기) 합병을 하는 기업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기업의 이사 및 재정검열원으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제252조 (채권자보호절차) ①기업은 제24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기업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253조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252조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로부터 6월간 본사주소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24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4조 (합병의 등록) ①기업이 합병을 한 때에는 제24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24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기업의 본사주소지에서 2주내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록,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록,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기업에 있어서는 제24조에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과 동시에

사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5조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사주소지에서 전조의 등록을 함으로써 생긴다.

제256조 (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57조 (주식병합의 절차) 기업의 합병으로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기업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기업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58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59조 (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기업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기업은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0조 (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5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1조 (합병무효의 신청) ①합병무효는 각 기업의 주주·이사·재정검열원·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대한 신청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제254조의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제262조 (준용규정) 제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기업의 채권자가 전조의 신청을 한 때에 준용한다.

제263조 (합병무효의 등록) 합병을 무효로 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주소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기업의 변경등록,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기업의 회복등록,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기업의 해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 (무효결정의 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합병을 무효로 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기업은 합병 후 존속한 기업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기업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합병 후 존속한 기업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기업의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기업의 공유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각 기업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 당시의 각 기업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265조 (합병무효신청의 공고) 합병무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업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6조 (하자의 보완 등과 신청의 기각) 합병무효의 신청이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기업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병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267조 (결정의 효력) 합병무효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결정 확정 전에 생긴 기업과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8조 (신청인의 책임) 합병무효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을 한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9조 (준용규정) ①제40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57조 내지 제260조의 규정은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52조와 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 10 장 청 산

제270조 (청산중의 기업) 기업은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71조 (청산위원회의 조직) ①기업이 해산한 때에는 해산등록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 대표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지 9명의 청산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제1항에 의하여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2조 (대표청산인의 선임) 청산위원회는 청산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청산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선임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3조 (청산위원회의 등록) ①대표청산인은 그 선임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산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4조 (청산위원회의 직무권한) ①청산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기업의 채권채무 관계 확정,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청산안의 작성
4. 기업 재산의 관리, 가치평가 및 환가처분
5. 잔여재산의 분배
6. 채권자회의의 소집

②청산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대표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기업을 대표하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275조 (기업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위원회는 조직된 후 지체 없이 기업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6조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검증·공시·승인) ①청산위원회는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검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검열원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검증보

고서를 청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위원회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검증보고서를 본사주소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6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청산위원회는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7조 (기업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로부터 2월 내에 기업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278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청산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은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279조 (채무의 변제) ①청산위원회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자 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80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281조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기업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②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2조 (청산위원회 위원의 해임) ①청산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 및 관리기관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위원회 위원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 및 등록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관리기관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 (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업은 청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위원회 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기업의 본사주소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4조 (서류의 보존) ①기업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기업의 본사주소지에서 청산종결의 등록을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위원회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제285조 (준용규정) 제75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07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5조 내지 제130조, 제132조제3항, 제163조제3항, 제164조와 제173조의 규정은 청산위원회 및 청산위원회 위원에 준용한다.

제 3 편 외국기업

제286조 (대표자, 지사 또는 영업소의 설치) 외국기업(개성공업지구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지사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외국기업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제287조 (지사, 영업소의 설치신청) ①지사, 영업소(이하 지사 등)의 설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사 등의 설치신청서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사 등의 사업계획서, 본사의 정관, 남북협력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분양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8조 (준용규정) 지사 등의 설치신청에 대한 심사, 심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단, 지사 등의 설치승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관리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사 등의 설치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지사 등의 영업등록) ①개성공업지구에서 지사 등이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사 등의 영업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지사, 영업소의 설치승인서 사본 및 토지이용권등록증(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업설립의 준거법과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밝혀야 한다.

제290조 (준용규정) 지사 등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통보, 등록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사 등의 설치등록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제291조 (준용규정) 제28조는 지사 등의 창설 및 등록에 준용한다.

제292조 (등록기간의 기산점) 외국기업의 지사, 영업소의 등록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록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93조 (등록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기업은 그 지사,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289조 및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4조 (적용법규) 외국기업이라도 개성공업지구에 그 본사를 설치하거나 개성공업지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개성공업지에서 설립된 기업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95조 (준용규정) ①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185조 제1항, 제186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외국기업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사로 본다.

제296조 (지사, 영업소폐쇄명령) ①외국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지사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지사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지사,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지사, 영업소의 설치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기업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7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그 기업 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산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는 제271조를 준용한다.

②제270조 내지 제274조, 제277조 내지 제281조, 제283조제3항, 제285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기업이 스스로 지사나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98조 (외국기업의 지위) 외국기업은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본다.

제 4 편 개인의 영업등록

제299조 (개인의 영업등록) ①개성공업지구에서 개인이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업등록신청서에는 영업계획서, 토지분양계획서, 남북협력사업승인서 사본, 주민등록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0조 (준용규정) 개인의 영업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통보, 등록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개인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개인영업등록원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8조는 개인영업등록에 준용한다.

제 5 편 벌 칙

제302조 (시정명령 등)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지사 등과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법, 규정 및 준칙에서 정한 승인 또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때
2. 연간회계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법, 규정 및 이 준칙의 목적에 비추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지사 등에 대하여 3월이내의 영업중지의 조치를 취하거나, 승인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규정 및 이 준칙에서 정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2. 제1항에 의한 관리기관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부 칙(2005. 1. 27)

제1조 (관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해결) ①관리기관은 본 준칙 제37조, 제92조, 제150조, 제218조, 제219조,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기업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기업분쟁해결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리기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관리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60일 이내에 불복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결정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업창설신청서 서식

접 수 번 호		기 업 창 설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기 본	창 설 기 업 명	영 문 명		
	기 업 대 표 자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창 설 기 업 소 재 지			
	창 설 기 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항	투 자 가 명	투 자가 대 표 자 명		
	투 자 가 소 재 지			
	투 자 가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체 현 황	총투자액	US\$	등록자본	US\$	투자기간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종(생산품목)				생산 규모			
	연간 수입액 및 이윤			사업장 규모				
	수입액	이윤액	전체	공장	사무실	기타		
			m ²	m ²	m ²	m ²		
	임대차 계약기간(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사업 개시예정일			
	20 ~ 20				년 월 일			
	관 리 직 원 수		비 고					
	종 업 원 수							

“개성공업지구법” 제35조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기업창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기업규약(정관) 1부	수수료
	2. 투자가총회 의사록	
	3. 취임승낙서	없음
	4. 사업계획서 1부	
	5. 거래은행이 발급한 투자가 신용확인서 1부	
	6. 남북협력사업승인서 사본 1부	
	7. 투자기업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8. 인감등록	

[별지 제2호서식] 기업창설승인서 서식

(승인번호 :)

기 업 창 설 승 인 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사업장 소재지 :
업 종 :
규 모 :
총 투 자 액 :
등록자본금 :
투 자 가 명 :
투 자 기 간 :
관 리 직 원 수 :
종 업 원 수 :



개성공업지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기업의 창설을 승인함.

년 월 일

개 성 공 업 지 구 관 리 기 관 이 사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기업등록신청서 서식

접 수 번 호		기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기본 사항	기 업 명	기업대표자명		
	기 업 소 재 지			
	기 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투 자 가 명		대 표 자 명	
	투자가 소재지			
	투자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체 현 황	총투자액	US\$	등 록 자 본 금	US\$	기 업 창 설 승 인 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업 종	사업장 규모							
		전체	m ²	사무실	m ²	공장	m ²	기타	m ²
	임대차 계약기간(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 개시예정일			
	20 . . . ~ 20 . . .					년 월 일			
	관 리 직 원 수				비 고				
	종 업 원 수								

<p>“개성공업지구법” 제36조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기업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비 서류	1.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2. 투자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기업등록증 서식

(등록번호 :)

기 업 등 록 증

기 업 명 :

대 표 자 :

사 업 장 소 재 지 :

업 종 :

규 모 :

총 투 자 액 :

등 록 자 본 금 :

투 자 가 명 :

기 업 창 설 승 인 일 :

개성공업지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기업을 등록함.

년 월 일

개 성 공 업 지 구 관 리 기 관 이 사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기업등록부 및 인감등록서 서식

등록번호		등록부 (말소사항 포함)
기 업 명		
본 점		
공 고 방 법		
1 주 의 금 액	금 _____USD	
업 종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등록자본의 총액	금 _____USD	
목 적		
1.		
2.		
3.		
임원에 관한 사항		
기업창설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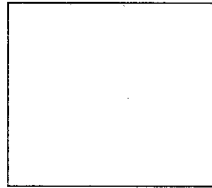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등기관

인 감 등 록



상 호 : (주)지에스

주 소 :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1-1

기업책임자 : 유 창 근

생 년 월 일 : 1958. 01. 03

위 인감을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사용인감으로 등록 신청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기업해산신고서 서식

접 수 번 호		기업해산 신고서		
기본사항	기 업 명		전화번호	(사업장)
	대 표 자 명			(대표자)
	기 업 창 설 일	년 월 일		(Fax)
	창 설 승 인 번 호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해 산 사 유			

<p>“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기업의 해산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또는 출자자총회 회의록 사본 1부 2. 해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지사(영업소,사무소) 설치신청서 서식

접 수 번 호		지사(영업소,사무소) 설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기본 사항	명 칭	영 문 명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 사 명 칭		본사 대표자명	
	본사 소재지			
	본사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체 현 황	본사 자본금	US\$	본사 사업개시연도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종(생산품목)			생산 규모		
	사업장 규모					
	관리직원수	종업원수	전체	공장	사무실	기타
			m ²	m ²	m ²	m ²
	임대차 계약기간(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 개시예정일	
	20 ~ 20				년 월 일	
비 고						

“개성공업지구법” 제45조에 의거 지사(영업소,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본사의 기업규약(정관) 1부	
	3. 남북협력사업승인서 사본 1부	없음
	4.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토지분양계약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지사(영업소, 사무소) 설치승인서 서식

(승인번호 :)

영업소 설치승인서

명 칭 : 아라코(주) 개성공업지구 지점
대 표 자 : 정 순 석
소 재 지 : 개성시 봉동리 관리기관 식당동
업 종 : 위탁경영 단체급식
본 사 명 칭 : 아라코주식회사
본사대표자명 : 정 순 석
본 사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526

개성공업지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영업소의 설치를 승인함.

2004년 12월 일

개 성 공 업 지 구 관 리 기 관 이 사 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지사(영업소) 영업등록신청서 서식

접 수 번 호		지사(영업소) 영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본사항	명 칭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 사 명	대 표 자 명		
	본사 소재지			
	본사 연락처	(전화)	(팩스번호)	

업체	총투자액	US\$	등록자본	US\$	기업창설 승인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현황	업 종	사업장 규모						
		전체	m ²	사무실	m ²	공장	m ²	기타
현황	임대차 계약기간(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 개시예정일			
	20 . . . ~ 20 . . .				년 월 일			
	관 리 직 원 수			비 고				
	종 업 원 수							

<p>“개성공업지구법” 제45조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지사(영업소,사무소)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p>1. 지사(영업소,사무소) 설치승인서 사본 1부</p> <p>2. 토지이용권등록증(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p> <p>3. 인감등록</p>	수수료
		없음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영업등록신청서 서식

접 수 번 호		개인영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본	사 업 자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체 명			
사항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체 현 황	총투자액	US\$	등록자본	US\$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및 규모								
	업 종	사업장 규모							
		전체	m ²	사무실	m ²	공장	m ²	기타	m ²
	임대차 계약기간(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영업 개시예정일			
	20 . . . ~ 20 . . .					년 월 일			
	관 리 직 원 수			비 고					
	종 업 원 수								

“개성공업지구법” 제45조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개인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영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토지분양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협력사업승인서 사본 1부	없음
	4. 주민등록등본 1부	

[별지 제14호서식] 지사(영업소) 영업등록증 서식

(등록번호 :)

영업소 영업등록증

명 칭 : 아라코(주) 개성공업지구지점
대 표 자 : 정 순 석
소 재 지 : 개성시 봉동리 관리기관 식당동
업 종 : 위탁경영 단체급식
본 사 명 칭 : 아라코주식회사
본사대표자명 : 정 순 석
본 사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26

개성공업지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영업소를 등록함.

2004년 12월 일

개 성 공 업 지 구 관 리 기 관 이 사 장 (인)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영업등록증 서식

(등록번호 :)

개 인 영 업 등 록 증

사 업 자 명 :

사 업 체 명 :

사 업 장 소 재 지 :

영 업 의 종 류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자를 등록함.

년 월 일

개 성 공 업 지 구 관 리 기 관 이 사 장 (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개정 2008. 5. 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부동산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은 부동산이나 등록임차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담보로 세우는 자를 “저당자”, 담보로 받는 자를 “저당권자”라 한다.
2. “등록관”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서 이 준칙에 의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지권”은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으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말한다.
4. “공장”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이 준칙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등록할 사항) 등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양도,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토지이용권
2. 건물소유권
3. 저당권
4. 임차권

제4조 (등록한 사항의 법적 순위) ①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법적 순위는 등록의 전후(前後)에 의한다.

②등록의 전후는 등록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 2 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5조 (등록부의 종류) 등록부는 토지이용권등록부와 건물등록부의 2종으로 한다.

제6조 (물적편성주의) 등록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록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 (등록부의 양식) ①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區)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사항란에는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⑦토지이용권등록부와 건물등록부에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토지이용권등록부에는 별지 제2호양식, 건물등록부에는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한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의 등록부 표지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용지의 양식) 토지이용권의 등록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또한 건물의 등록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별지 제6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7호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제9조 (등록용지에의 날인) 등록용지에는 관리기관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0조 (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 3 장 등록절차

제11조 (신청주의) ①등록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12조 (등록신청인)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관리기관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등록 기타 성질상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등록은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
4.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법인이 등록권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②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제13조제1호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연월일

②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건물의 경우) ①등록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4조 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 내용연한, 건설연도, 취득가격 및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4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의 순서) 등록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의 각하) 등록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등록관의 보정명령을 받고 즉시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부와 저촉되는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8.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의 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19조 (등록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등록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이용권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록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의2 (토지합필의 제한) 토지이용권 및 임차권의 등록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록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토지분필의 등록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임차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토지의 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9조의5 (토지의 분필) ①제19조의4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록용지로부터 토지이용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란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록용지로부터 을지의 등록용지에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의 등록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신청서의 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의 등록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록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6 (토지의 분필) ①제19조의5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3의 경우에 갑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제19조의5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의3인 경우에 을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제19조의3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임차권에 관한 등록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7 (토지의 분합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제멋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록용지에서 토지이용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지의 등록용지에 임차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

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토지이용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록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그 등록에 당해 등록이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⑥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내지 제6항과 제19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8 (토지의 합필) ①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몇호의 토지의 등록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9조의9 (토지의 합필) ①제19조의8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록용지에서 토지이용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지의 등록용지에 임차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7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19조의7제5항의 규정은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함에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지권인 취지의 등록) 건물의 등록용지에 대지권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을 등록한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과 그 연월일,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지권인 취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증의 교부 및 과세자료의 송부) 등록관이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개성공업지구 세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이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록관이 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23조 (착오 또는 빠짐의 통지) 등록관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빠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24조 (직권에 의한 등록의 경정) ① 등록관은 등록의 착오 또는 빠짐이 등록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2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록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24조의3 (동전) ① 신탁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4 (동전) ①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록의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수익자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5 (동전) ①신탁의 등록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록과 동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6 (동전) ①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준칙 제24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7 (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관리기관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제24조의6 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

제24조의8 (동전) ①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9 (신탁원부) ①제24조의8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신탁원부는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24조의10 (신탁원부에의 기재) 관리기관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11 (동전) 제24조의10 규정은 관리기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12 (동전) 관리기관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13 (동전) 제24조의10 내지 제24조의11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4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4조의6 또는 제24조의7 경우에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관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14 (동전) 제24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등록관은 직권으로써 등록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의 보존등록) 토지이용권대장등본에 의해 토지이용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토지이용권에 대해 보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건물의 보존등록)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해 보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저당권의 경우)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동담보의 경우)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기재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3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 (임차권의 경우) ①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前給)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②등록임차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장저당의 경우) ①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이용권 및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나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③공장에 속하는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공장저당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제37조 (말소등록)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록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이의신청) ①등록관의 등록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시정한다.

부 칙(2005.1.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부동산등록과 관련하여 법, 규정 및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이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2006.1.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1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양식] 토지이용권(건물) 등록부 표지

토지이용권(건물) 등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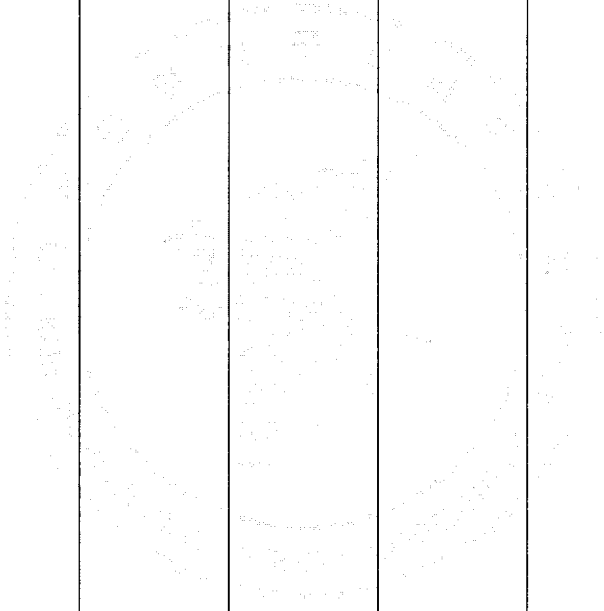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별지 제2호양식) 토지이용권 등록부 표지

등록번호	편성연월일	대조인	제거연월일	대조인	비고

[별지 제3호양식] 건물 등록부 표지

등기번호	건물번호	편성연월일	대 조 인	제거연월일	대 조 인	비 고
						

[별지 제4호양식] 토지등록용지

등록 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카드의 장수								
1	1-2	1-3	1-4	1-5	1-6	1-7	①	
2	2-2	2-3	2-4	2-5	2-6	2-7	②	
없음	3	3-2	3-3	3-4	3-5	3-6	3-7	③

표 제 부(부동산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표시번호	표시란

갑		구(토지이용권)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을		구(토지이용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별지 제5호양식] 건물등록용지

건물의 명칭	등록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①~○
		제 호	1	2	3	4	5	6	7	
		제 호								
표 제 부										
표시 번호	표 시 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갑		구(소유권)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별지 제6호양식] 1등의 건물 표제부 등록용지

건물의 명칭	등록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①~〇
		제 호	1	2	3	4	5	6	7	
		제 호								
표 제 부										
표시번호	표 시 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별지 제7호양식] 구분건물 등록용지

등록번호	제 호		카드의 장수							① { ○	
	제 호		1	1-2	1-3	1-4	1-5	1-6	1-7		
	제 호		없음	2	2-2	2-3	2-4	2-5	2-6		2-7
			없음	3	3-2	3-3	3-4	3-5	3-6	3-7	
표 제 부											
표시번호	표시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대지권의 표시)				

동	제	호
동	제	호
동	제	호

③~○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 항 란	순위번호	사 항 란

[별지 제8호양식] 신탁원부

신탁원부			
위탁인			
수탁인		제 호	
신청대리인			
신청서 접수	년 월 일		
	제 호		

	위탁자의 성명주소		신탁원부 장	신탁조항	
	수탁자의 성명주소			예비란	예비란
	수익자의 성명주소				
	신탁관리 인의성명주소				
신탁조항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

[제정 2005.9.1]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집행'이라 한다)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대상) 집행은 개성공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등록임차권 및 부동산등록준칙 제36조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의 공용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집행기관) ①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은 부동산규정에 의한 집행을 담당할 기관으로 집행기구를 둔다.

②집행기구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규정에 의한 집행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집행기구는 학식과 경력을 고려하여 부동산규정에 의한 집행을 실시할 집행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④집행은 이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목적물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저당자 또는 임대인 포함, 이하 같음)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기구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조서) ①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대상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9조 (송달·통지) ①이 준칙에 의한 송달·통지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채무자가 개성공업지구 이외 지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조 (개성공업지구 이외 지역 송달의 특례) ①집행절차에서 개성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개성공업지구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집행에 관하여 집행기구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집행기구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기구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구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집행기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집행비용 및 담보제공 등) ①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기구가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집행기구가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기구는 신청 또는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④이 준칙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제13조 (집행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집행기구에 제출되면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의 등록이 말소된 부동산등록부의 등본
2.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명한 중재판정의 정보
3.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의 등록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중재판정의 정보
4.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집행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저당채권액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②제1항제1호 내지 3호의 경우와 제4호의 경우 공증된 서류에 의한 경우에는 집행기구는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집행신청의 방식)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집행기구에 제출하여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채무자·저당자 또는 임대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과 저당채권액 또는 임대보증금의 표시
3. 집행대상의 표시
4. 저당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제15조 (첨부서류) 집행신청을 함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소유(또는 권리)를 증명할 서류
4. 채권액 또는 임대보증금을 증명하는 서면

제16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집행기구는 경매개시결정 후 즉시 저당자 또는 임대자,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부에의 기입) ①집행기구는 경매개시결정 후 즉시 그 사유를 부동산등록부에 기입하도록 등록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등록부에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①저당자 또는 임대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기입이 된 때에는 저당자 또는 임대자는 저당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집행대상에 대한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3자가 집행대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집행기구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대상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이 저당자 또는 임대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록이 경료된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기구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집행기구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26조제4항 단서의 등록임차권자 및 집행기구에 알려진 제23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제18조제1항에 정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구는 제75조제3호의 채권자 및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기구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75조제3호의 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의 채권액은 등록부 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집행기구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현황조사) ①집행기구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집행 대상의 현상, 점유관계, 차입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집행대상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및 저당자 또는 임대자 또는 집행대상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대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집행기구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집행기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저당자 또는 임대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 (경매의 경합)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집행대상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기구는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기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기구는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집행기구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당요구) ①경매개시결정이 등록된 뒤에 저당권 및 임차권을 등록한 자, 그 밖의 다른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집행기구는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 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저당권자 및 등록임차권자
2. 채무자, 저당자 및 임대자
3. 등록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26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등록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등록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등록임차권자가 제23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27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는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43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부동산이 없어지는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기구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집행기구는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0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하는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기구의 허가를 얻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고, 원조 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감정인에 대한 보수는 집행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일괄매각) ①토지이용권과 그 위의 건물은 일괄매각한다.

②집행기구는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본문의 경우에 저당자 또는 임대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⑥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행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집행취소) ①집행기구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집행기구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 (집행대상의 매각방법) ①집행대상의 매각은 집행기구가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집행대상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집행기구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제 31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가 제31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따로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집행기구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34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①집행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집행대상의 표시
2. 집행대상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②집행기구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집행기구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대상의 표시
2. 매각취지와 그 매각방법
3. 집행대상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집행기

구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제36조 (매각장소) 집행관은 집행기구 안 또는 집행기구가 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지시한 사람

제38조 (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집행기구 안 또는 집행기구가 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집행기구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40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집행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행기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41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집행기구가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집행기구가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 (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4조 (매각기일의 종결)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절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제45조 (매각기일조서) ①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대상의 표시
2.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8.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9.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10.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46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기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47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개성공업지구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기구는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48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집행기구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집행기구는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제50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대상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집행대상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청을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37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집행대상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집행대상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집행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51조 (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제52조 (매각의 불허) ①집행기구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50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53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저당자 또는 임대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①제50조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50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방법)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매각결정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한다.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집행기구의 담당자,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출석 상황, 매각결정기일의 장

소와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집행기구의 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내용과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56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50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57조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집행대상,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제58조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59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규정에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다거나,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집행기구가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제2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채무자, 저당자 또는 임대자가 한 제2항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채무자, 저당자 또는 임대자 외의 사람이 한 제2항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집행기구가 별도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이의신청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60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61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및 효과) ①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②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저당권 또는 등록임차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3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집행기구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저당자, 임대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행기구는 매수인 또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을 정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집행기구는 매수인 또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집행기구가 채무자, 저당자 또는 임대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채무자, 저당자, 임대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65조 (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69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집행기구는 직권으로 집행대상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집행기구가 별도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66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록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42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기구는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저당자 또는 임대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43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68조 (경매개시결정등록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집행기구는 제17조와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록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69조 (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기구는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집행기구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집행기구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제71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집행기구는 매각허가

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또는 등록임차권을 이전하는 등록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록
 3. 제17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록을 말소하는 등록
- ②제1항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72조 (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집행기구는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기구는 법과 규정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제73조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기구는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저당자 또는 임대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74조 (배당할 금액 등) 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65조제3항 및 제69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59조제4항의 보증(제5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9조제5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이의신청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5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낸 금액(각각 제5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제75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7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신청을 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저당권자 또는 등록임차권자
3. 저당권·등록임차권, 그 밖의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록 전에 등록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제75조의 1 (배당의 순위)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배당시 제1순위로 한다.

1. 최종 3월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보조금
 3. 재해보상금
- ②집행대상에 대한 세금(상속세, 재산세, 자동차리용세) 및 연체료는 제2순위로 한다.
- ③세금의 법정기일(신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종기, 부과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등록된 저당권, 등록임차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제3순위로 한다.
- ④제1항 기재 이외의 임금·퇴직보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제4순위로 한다.
- ⑤제2항 기재 이외의 세금 및 연체료는 제5순위로 한다.
- ⑥수수료(개성공업지구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포함)는 제6순위로 한다.
- ⑦기타 채권은 제7순위로 한다.
- ⑧같은 순위의 채권은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제76조 (배당표의 확정) ①집행기구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집행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구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7조 (배당표의 기재 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구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79조 (이의의 완결) ①제78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제78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78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0조 (불출석한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1조 (배당이의의 신청 등) ①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집행위원회에 배당이의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82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81조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3조 (배당이의 신청의 판정)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4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①집행기구는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85조 (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제81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 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86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집행기구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기구는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85조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 신청에서 진 때에는 집행기구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③제85조의 채권자가 집행기구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부 칙(2005.9.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제정 2005.9.7]

[개정 2009.2.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이용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별지 1, 별지 4),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별지 2)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별지 3) 및 이에 관한 전산정보처리 기록·저장자료를 말한다
2.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토지이용권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구획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다만, 중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4.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5.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6.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8.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0.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1.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3.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신설 2009.2.26>
17.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지적측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9.2.26>
18. “공사좌표”라 함은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사측량에 사용한 좌표를 말한다.<신설 2009.2.26>

제3조 (지적공부 관리자)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한다)은 지적공부 및 지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2.26>

제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관리기관은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이용권 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번의 부여 등) ①지지번은 관리기관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2. 본번은 개발단계별로 블록별 순서대로 부여하고, 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개정 2009.2.26>
3.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9.2.26>
5.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나 이 경우 토지이용권의 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垓)·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창고용지	창	묘지	묘	도로	도	잡종지	잡

③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1.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2.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7조 (면적의 단위 및 결정 등)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면적결정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한다.<개정 2009.2.26>

제8조 (지적측량의뢰 등) ①토지이용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의뢰서(별지 7)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별표 1).

②관리기관은 지적측량의뢰 사유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 5일 이내에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의뢰서를 검토하여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보완 또는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한 신청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의 7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과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측량은 해당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④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3일 이내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별지 8)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⑤측량일자는 지적측량수행자, 관리기관, 지적측량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09.2.26>

제9조 (현지측량방법 등) ①지적측량을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권자 또는 대리인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측량에 필요한 질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현장업무가 완료되면 입회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측량성과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26>

제10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성과도 교부)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지 않는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도(별지9, 별지10)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그 측량성과도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0.1>

제11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①관리기관은 지적원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년1회 이상 망실유무를 확인하여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26>

제12조 (지적측량 업무 위탁 등) ①관리기관은 지적측량과 관련한 업무 일부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9.2.26>

제13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토지이용권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법인, 영업소, 지사 등은 그 등록번호를 말하고, 개발업자 및 경제협력사무소는 별도로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6. 그 밖에 별지1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

②토지이용권 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별지 4)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이용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5. 그 밖에 별지4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별지2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별지3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별지5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이용권의 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이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6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분할 신청) ①토지이용권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때 관리기관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분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분할신청서(별지6)에 분할사유를 기재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8.10.1>

제19조 (합병 신청) ①토지이용권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합병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신청서(별지6)에 합병사유를 기재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이용권, 임차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장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의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2.26>

제20조 (등록사항의 정정) 토지이용권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관리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토지이동신청) ①개성공업지구 개발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개발사업자가 관리기관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개성공업지구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개발사업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22조 (토지이용권 소유자의 정리)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이용권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부동산 등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이용권의 소유자는 관리기관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토지이용권 등록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③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토지이용권 등록부의 부합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이용권 등록부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이용권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적용의 특례

제23조 (사업준공전 등록) ①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도 건물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업자의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임시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임시지번 부여 절차는 신규등록절차를 준용한다.

③관리기관은 지번이 확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임시지번을 확정지번으로 변경하여 등록한다.

제24조 (경계점 및 좌표의 등록) ①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지적측량 전에 관리기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개발업자의 “공사좌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적측량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된 좌표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③공사좌표라 함은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북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공사에 사용한 좌표를 의미한다.

④제2항의 경우 관리기관은 지적측량으로 인한 좌표변경, 면적증감 등에 대하여 면책된다.

제2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이 준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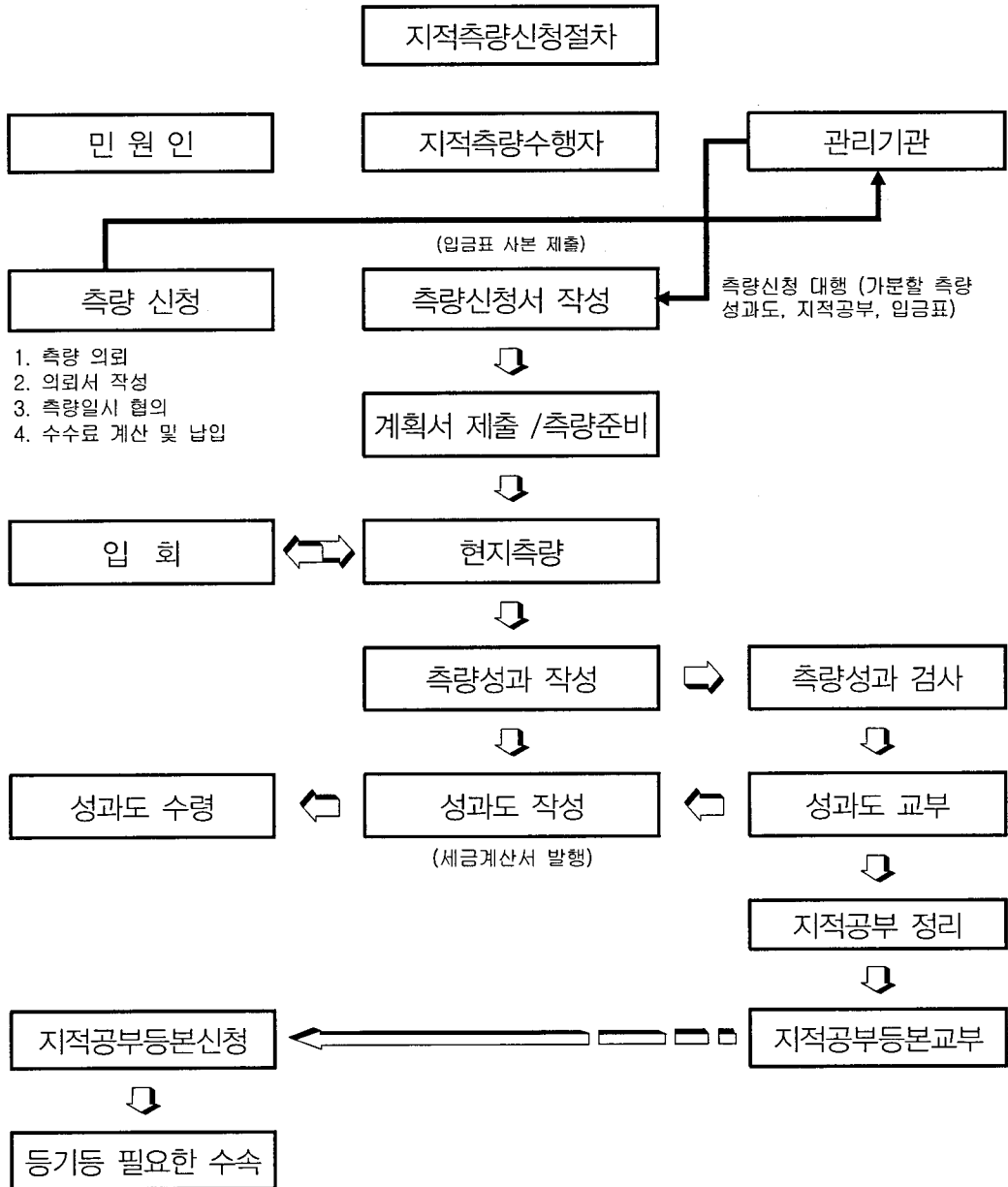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후 15일 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적측량 의뢰 및 처리절차 (제8조 내지 제10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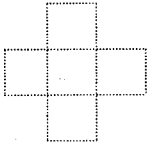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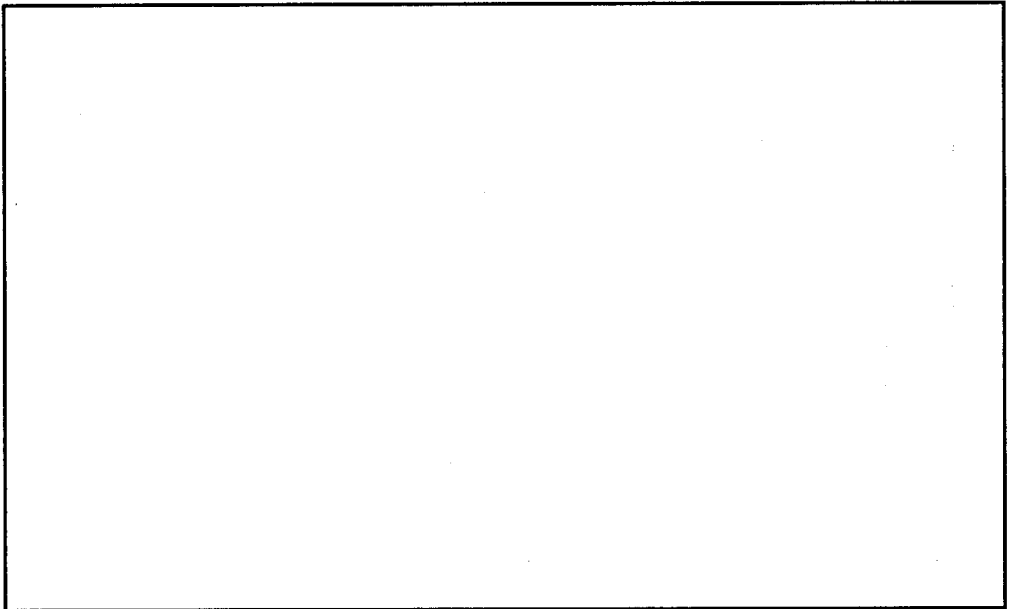
고유번호		토 지 대 장		도면번호	장번호
		지면	축척		
토지소재		토지이용권자			
지목	토지표시		사유	주 소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면적	변동일자 변동원인			
					용도지역 등
<p>200년 월 일</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p>					

[별지 제2호서식]

| 지적도 |



축척 분의 1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토지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좌표
		X Y

200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별지 제4호서식)

고유번호		공유지연명부										장번호	
토지소재		지번		이용권지분		토지이용권자		변동일자		이용권지분		토지이용권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변동원인				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또는 명칭	

200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별지 제5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열 략 지적공부 등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등본교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일자	접수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수수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토지대장 (최종연혁, 전체연혁) () <input type="checkbox"/> 지적도 () <input type="checkbox"/> 경계점좌표등록부 ()		\$
생년월일				
신청토지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번지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집합건물 : APT·B/D 동 층 호)			대 조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전산접수번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신규등록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분할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지목변경 <input type="checkbox"/> 등록진환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합병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input type="checkbox"/> 해면성 말소												처리기간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유코드 축 척		토지이동 사유코드 결의일자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고유번호		대장코드		대장코드		지목코드		사유코드		결의일자			
시·구·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	
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수수료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지적측량의뢰서											
접수번호 :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측량일시 :											
토지소재		지번	지목	원면적 (㎡)	분할후 예정 면적	축척	측량 종목	필지수	단가	수수료	용도 지역
지구	단계										
측량종목 또는 요망사항											
측량성과도 받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본인수령 <input type="checkbox"/> 우 송							
지적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소유자와의 관계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지적측량수행계획서(제8조 제4항 관련)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수신자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제목 :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지적준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측량의뢰 월일 번호		측량 종목	토지소재			측 척	지번수 또는 점수	측량수수료		측량수행		변경 사유	비 고
			지구	단계	지번			단가	금액	착수일 (측량일)	완료일		

년 월 일

발신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측량성과도(제10조 제2항 관련)

OO측량성과도

교부번호 : 번

토지소재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단계 번지 필	축 척		용도 지역	
측량자	년 월 일	검사자	년 월 일		
	지적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번	지목	면적(m ²)	OO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div>		
비 고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번·지목 및 면적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제정 2005.4.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및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총계획 :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법 제13조 및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중앙공업지지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관한 총 계획을 말한다.
2. 단계별계획 : 개발총계획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기반시설 :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규정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규정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규정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아파트형 공장 : 산업집적 효과를 높이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공단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

제3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용도지역은 개발총계획 또는 단계별계획에 의거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및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 (용도지역의 구분) ①공업지구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지역 :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 보건위생 및 공업지구의 쾌적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관광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개발총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의 구분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내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60% 이하
2. 상업지역 80% 이하
3. 공업지역 60% 이하
4. 녹지지역 20% 이하
5. 관광지역 50% 이하

제6조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200% 이하
2. 상업지역 800% 이하
3. 공업지역 180% 이하
4. 녹지지역 50% 이하
5. 관광지역 100% 이하

제7조 (건폐율·용적률 적용특례) ①개발총계획 또는 단계별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범단지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한다.

③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공업지역내의 공장부지에서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전체 공단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제8조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 ①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물
2.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물
3. 공장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물
4. 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물
5. 관광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필요시 이사장이 별도 고시

②개발총계획 또는 단계별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2.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공업지구의 미관 및 경관계획
4. 공업지구의 장래 발전계획

②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의 여건과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의 용도지역 지정) ①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의 각각의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용도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며, 국토개발승인(국토환경보호성 승인 제12-1호)신청 당시 개발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른다.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것에 따른다. 다만, 면적은 개발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다.

부 칙(2005. 4. 29)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7.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10.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2.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15.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16. 별표 1 제17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7.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나. 방송국
 - 다. 전신전화국
 - 라.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 통신용시설
-

{별표 2}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7.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8.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1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1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13.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4.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5.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6.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3]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제13호의 공장
4.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5.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9.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10.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11. 별표 1 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12.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은 제외한다)
1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4]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건축세부규정 별표의 다음과 같다.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적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7.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8.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적 내지 자목적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9.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적 및 라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의 용도지역 지정

1단계 개발구역의 용지 구분		용도지역
생산시설용지		공업지역
복합용지		상업지역
지원시설용지		상업지역
공공시설 용지	폐수종말처리장, 변전소, LPG저장· 충전소, 주유소, 도로, 광장, 오수펌프장	공업지역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녹지지역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정 2005.9.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와 보전·유지, 사용 및 그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부구조시설”이란 전력, 통신, 용수 및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일반교통의 공용되는 도로로서 차도·보도·교량·터널·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하며,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상수도”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제3조 (하부구조건설) 개성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4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분의 투자자는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전기·가스·용수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 및 위탁) ①하부구조시설물은 투자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리기관이 개발업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시설물 및 부속물의 구조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설물을 수탁 받아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기관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각 시설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 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휴대장비·접근장비 등)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관리기관이 정하는 시설물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료 및 동 시설의 유지·보수·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해 관리기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등) ①사용자가 제9조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을 기간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시설물 이용 또는 사용금지 처분 외에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체납금과 연체이자 또는 압류 등에 소요된 비용 전부를 관리기관에 납부한 후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손괴자 부담금) ①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도 로

제13조 (도로관리자) ①개성공업지구내 도로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한다.

②관리기관은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내의 도로노선에 대하여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관리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1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기관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기관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19조 (비관리자의 공사시행) 도로관리자가 아닌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도로공사의 시행) ①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장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
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 라. 기타 안전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2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별지 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
4.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관리기관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③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점용료의 징수) 관리기관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25조 (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 만료, 점용허가 취소 및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아니 할 수 있다.

②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또는 대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 3 장 하 수 도

제27조 (하수도관리자) 개성공업지구내 하수도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한다.

제28조 (공사의 유지와 시행) 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이하 “하수도에 관한 공사”라 한다)는 관리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제29조 (비관리자의 공사시행 등) 하수도관리자가 아닌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제30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관리기관은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행
5.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6. 배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7. 기타 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업무

제31조 (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폐수처리시설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수

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기준으로 정한다.

②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매일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3조 (배수시설의 설치 등) ①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암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설치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리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준공검사(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세칙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제34조 (배수시설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하수도의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 개시등의 신고) ①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상수도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점용료 등) 관리기관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사용료 징수) ①관리기관은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

제40조 (오수배출량의 인정) ①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오수배출량이 다를 때에는 담당직원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수 측정기를 설치하고 동일사업장의 모든 오·폐수 등이 동 기기를 통하여 배출될 경우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③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41조 (배출량 등의 조사) ①관리기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3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치를 아
니할 수 있다.

제 4 장 상 수 도

제42조 (상수도관리자) 개성공업지구의 상수도는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제43조 (공사의 유지와 시행) 상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
지(이하 “상수도에 관한 공사”라 한다)는 관리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제44조 (용수공급 신청) 사용자가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용수공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각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용수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리기관이 특
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신고) 수도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배, 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6. 기타 관리기관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47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급수장치(배수관으로 부터 분기관, 계량기, 기타 급
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다.

②사용자는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8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권리의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급수장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용수공급의 제한 및 정지) ①관리기관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관리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0조 (단수처분)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기타 이 규정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봉인을 파손하거나, 위치의 변동 등 용수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이상 신고를 태만히 한 자
6. 소화용 급수시설이나 단수처분 등의 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관리기관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기타 이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수처분을 받은 수요자중 체납요금 및 추징금 등을 납부하거나 단수처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단수처분을 해제한다.

제51조 (요금의 징수) ①용수의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요금의 고지 및 징수방법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

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 신고) 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제5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원상회복) 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규정에 의한 허가 등 취소 또는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3.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또는 대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5조 (수질검사) ①관리기관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시설물 관리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2005. 9. 7)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점 용 목 적			
⑤ 점용장소 · 면적			
⑥ 점 용 기 간		⑦ 굴 착 기 간	
⑧ 공작물(시설)구조			
⑨ 공 사 실 시 방 법			
⑩ 공 사 시 기			
⑪ 도 로 복 구 방 법			
⑫ 도 로 종 류			
⑬ 노 선 명			
<p>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p>			
<p>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2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설 치 자	법 인 명			
	성 명(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신 고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 수 설 비 의 종 류 및 물 량	종류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 속 방 법
		관경	∅ mm	기계뚫기, 인력 뚫기, 맨홀접속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설 치 위 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배 출 수 량	m/일			
고	공사착공연월일	년 월 일	공 사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도급, 직영	대행업자(시공자)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 용 개 시 신 고	배 출 수 량	수 량	(m ³ /일)	
	수 질	수 질(mg/l)	BOD : , COD : , SS :	
	사 용 개 시 일	년 월 일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 배출시설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1/200)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시공사	주 소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배수설비현황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배제			
	설치위치	시 구 동 번지 (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검사 검사일자 (. .)	보완사항	2차검사 검사일자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 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또는인)	성명 (서명또는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지 제4호서식]

용수공급신청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 4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용수용도 :
2. 용수신청량 : m³/일
3. 수도계량기의 구경 : m/m
4. 급수개시요구일 : 년 월 일
5. 급수공사 착공일 : 급수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
6. 급수공사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7. 시공자 :

신청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첨부서류
1. 분양계약서 사본 1부
 2. 각 서
 3. 공사장소 약도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각 서

귀 관리기관으로부터 급수공급을 받는 조건으로 관리기관이 제시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단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급수장치소유자명의변경신고서

아래 급수장치에 대하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48조에 의하여 명의 변경코저 신고합니다. 신고인은 20 년 월 일자로 급수장치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 하였습니다.

급수장치 소재지 :

전 소유자 :

명의변경사유 :

20 . . .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개발·이용 내역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경도, 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역	굴 착 깊 이	m	굴 착 지 름	mm	
	취수계획량	m ³ /일	소 요 수 량	m ³ /일	
양수설비 내역	동 력 장 치	HP	토출관안쪽지름	mm	
	설 치 깊 이	m	양 수 능 력	m ³ /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p>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이용종료시 원상복구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 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또는 성 명(개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또는 주 소(개 인)		(전화:)	
위		치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설치 내 용	굴 착 깊 이	m	굴 착 지 름	mm
개 발 · 이 용 종 료 일		년 월 일	종 료 사 유	
<p>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1.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 음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준칙

[제정 2008. 5. 1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공업지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건축준칙(이하 “건축준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양사업자”라 함은 건축준칙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피분양자”라 함은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준칙은 건축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 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개성공업지구건축에관한세부지침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 가.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건축하거나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관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분양시기 등)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후
2.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완료후

②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준공검사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
3. 그 밖에 관리기관 이사장이 정하는 기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⑤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분양자의 토지이용권등록 및 건물 소유권 등록 전일까지의 토지이용권과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⑥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회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4.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5.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 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6. 신탁회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7.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방법·시기
8. 분양계약의 관리
9.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시공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청구시 시공사의 예정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10.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11. 그 밖에 신탁회사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⑦신탁회사는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신탁회사가 피분양자에 대한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관리내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관리하여야 하고, 분양개시일부터 3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건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일 것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고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2배 이상 일 것

⑩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토지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분양사업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등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분양승인) ①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광고안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대보증서·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이용권등록증, 분양광고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방법 등) ①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양승인번호 및 일자
2. 대지의 지번
3. 건축물 연면적 또는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분양가격(토지매입비·건축비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8.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연대보증을 한 2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준공 및 입주예정일

11.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2. 전매제한에 관한 사항
 13. 아파트형공장은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14. 아파트형공장은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15. 아파트형공장은 층별·공장별 허용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 ③분양광고는 납축의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④분양사업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 분양승인 번호 및 승인증 교부일자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2 이상의 연대보증을 한 건설업자의 명칭(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준공일 또는 입주예정일
 10. 분양계약증서 고유번호
 11. 분양사업자가 관리기관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피분양자가 해약을 할 수 있다는 사항
 12.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설계의 변경) ①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은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은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에관한세부지침」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난방기기·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으로 증감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서면동의를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

를 제외한다.

5.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①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분양대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 계약체결시
2. 중도금 :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 준공검사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준칙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의 잔금은 준공검사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제9조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피분양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외부인을 주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피분양자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에관한세부지침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 ②전항에 따른 피분양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분양자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명령) ①관리기관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당해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위반행위가 행해진 일간신문 등 당해 간행물과 분양사업장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⑥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당해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⑧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2008. 5. 1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준칙은 이 준칙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개성공업지구 신탁준칙

[제정 2008.5.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과 정의) ①본 준칙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조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 (신탁영업)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한다.

제5조 (목적의제한) ①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이다.

③신탁의 목적이 2개 이상이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제7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

제8조 (점유하자의 승계)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 2 장 신탁관계인

제9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①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청산위원회는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

제10조 (수탁자의 자격상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특정자격에 기하여 수탁자가 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임무는 종료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사임) ①수탁자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관리의 계속) 제10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한 수탁자는 신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3조 (수탁자의 해임)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위탁자,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기관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1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 관리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신수탁자의 선임) 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선임된 수탁자에게 사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16조 (신탁관리인) ①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신탁행위로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전항의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전조 제2항의 규정은 신탁관리인에게 준용한다.

제 3 장 신탁재산

제17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8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제19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신탁재산의 불혼동) 신탁재산이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경우에 수탁자가 그 목적인 재산을 취득하여도 그 권리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부합, 혼화, 가공)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많은 때에도 관리기관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탁재산의 이전) ①수탁자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전 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재산을 신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에 그 1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제25조 (강제집행의 속행) 제19조제1항 단서에 기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이를 속행할 수 있다.

제 4 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26조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제29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속이나 기타 포괄명의로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1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30조 (유한책임)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31조 (장부비치의무) ①수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의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류의 열람) ①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탁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 ①신탁행위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관리기관이 정한 관리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신탁사무의 위임) ①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선임, 감독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수탁자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35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분별관리의무위반) ①전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손실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7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그 임무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관여한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8조 (보수) 수탁자는 영업으로써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9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권리행사요건) 전2조에 규정된 수탁자의 권리는 수탁자가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 및 신탁재산복구의 의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제42조 (공동수탁자) ①수탁자가 수인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1인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3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책무로 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또한 같다.

제44조 (신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35조와 제36조에 규정하는 권리는 신수탁자도 이를행사할 수 있다.

제45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①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에 신수탁자는 전수탁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4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46조 (사무의 인계) ①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에는 신, 구수탁자와 기타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전항의 계산을 승인한 때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이로써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제47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①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②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48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3조의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전득자가 그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전항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49조 (동전) 수익자가 수인있는 경우에는 그 1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0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48조에 규정하는 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처분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장 신탁의 종료

제51조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제52조 (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수탁자의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3조 (동전)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 (동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

제55조 (신탁종료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제56조 (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제57조 (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

제58조 (동전) 제25조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 기타의 자에게 귀속한 때에 준용한다.

제59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신탁의 감독

제60조 (관리기관의 감독) ① 신탁사무는 관리기관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6)

제1조 (시행일) 본 준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건 축

- 건축준칙
-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 건설사업자 선정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제정 2004.11.1]

[개정 2008.3.21]

[개정 2008.9.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건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개발총계획 및 단계적개발계획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이사장”)이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깃발, 계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사장”이 정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6. “주요 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9.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개발총계획에 표시되거나 “이사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10.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와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3.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사시공자”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이사장이 인정하는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관광휴게시설
21. 다중이용시설
22. 기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준칙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사장은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4조 (건축허가) ①“공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와 건축계획서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위탁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공업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한다.

⑥“이사장”이 건축을 허가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신고) 소규모건축물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미리 신고함으로써 제4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건축허가 및 신고대장) “이사장”은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거나 제5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당해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 및 재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제1항의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①“이사장”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용도변경)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②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시설군

③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11조 (가설건축물)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닐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홍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④“이사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받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착공신고 등) ①제4조, 제5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이사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받은 “이사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착수기간의 연장)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아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4조 (건축물의 준공검사 등) ①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전기공급확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및 가스완성검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008. 3. 3. 본항개정)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준공승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건축주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임시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5조에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기재한다.

⑤준공검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는 소방설비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검사합격확인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준공검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는 전기설비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결과서를 전기공급자에게 제출하여 전기공급자가 발행하는 전기공급확인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준공검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는 가스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기, 소방 및 가스관련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별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⑨준공검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는 승강기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축물의 설계) ①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전문설계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준칙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준칙과 “이사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관리기관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하는 때는 공사감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 선임신고서에는 공사감리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조 2항의 다중이용시설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⑦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9.19>

⑨삭제<2008.9.19>

⑩삭제<2008.9.19>

⑪“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수행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복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건설공사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9.19>

⑫제1항의 감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9.19>

제16조의2 (건축물의 시공) ①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준칙 및 이 준칙에 따라 만들어진 세부지침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준칙이나 이 준칙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부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여건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허용오차) 이 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사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이사장”은 이 준칙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통계 등)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승인 현황
5.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제 3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제21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이사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이 준칙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기 7일 전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축물대장) “이사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장등록) ①제14조 제2항에 의한 준공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비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공장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 (대지의 안전 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5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이사장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①“이사장”은 도로를 지정한다.

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은 “이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

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업지구”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 (구조내력 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①“이사장”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 주택 등의 건축물에는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1천 제곱 미터를 넘는 것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 샷다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35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방화지구 안에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이사장”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이사장”은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37조 (지하층) “이사장”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6 장 구역 및 지역안의 건축물

제38조 (대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사장”이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39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이사장”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다. 다만, 이사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건축물의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이사장”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건축물 사전심의) ①건축준칙 제40조의3에 의한 상업용지, 제40조의4의 아파트형공장 용지, 주거지역 용지, 차폐녹지에 인접한 대지 및 하천녹지에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계획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전심의 내용은 건물의 외벽 색상 및 재료, 형상, 주변과의 조화, 광고물(간판)의 설치 등이며, 그 외의 사항은 건축준칙 및 관련 세부지침보다 강화된 요구를 할 수 없다.

③사전심의를는 경관심의와 일반심의로 구분하며, 대상구역 및 세부기준은 개성공업지구 건축심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의3 (상업용지에서 건축) 상업용지에는 주거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며, 바닥난방의 설치, 욕실의 욕탕설치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설계안에 대하여서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40조의4 (아파트형공장) ①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은 바닥면적합계의 20%를 초과하여 건립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미하는 지원시설은 아파트형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경우 당해 준공되는 바닥면적의 20%를 초과하여 건설될 수 없으며, 일부만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준공면적의 20%이상의 지원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단, 북측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제외한다.

제 7 장 건축설비

제41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

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2조 (승강기) 건축주는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장”은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이사장”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4조 (관계전문기술자) ①“이사장”은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건축물이 이 준칙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기술적 기준) “이사장”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장의2 건축의 하도급

제45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삭제<2008.9.19>

제45조의3 (하도급의 신고) 삭제<2008.9.19>

제 7 장의3 시정명령등<개정 2008.9.19>

제45조의4 (시정명령등) “이사장”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규정(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하도급대금의 지급,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건축물의 검사 및 인도, 시공·자재 관련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실태조사(“이사장”이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실태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를 위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이 되거나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45조의5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이사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준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준칙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가스의 설비 설치 또는 공급을 중지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의6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이사장”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7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①공사감리자는 건설업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건축주와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의8 (설계·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금지 등) ①관리위원회는 설계·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업지구 내 설계·감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설계 및 감리업무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설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의9 내지 제6조의10에서 규정한 공사감리자 협의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②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책임감리등의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9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 ①관리위원회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대리인의 업무 정지, 해당현장의 건설업무 정지, 건설업체의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건설업무 정지 등을 명하거나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공사감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

2. 제47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공사를 시공한 자.

②이 준칙을 위반하여 시공 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45조의10 (이행강제금 등) “이사장”은 이 준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US \$ 2,000이하의 벌금,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의11 (청문) “이사장”이 제45조의5, 제45조의6, 제45조의8, 제45조의9에 의한 제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2 (관계기관의 통보) 관리위원회는 제45조의5, 제45조의6, 제45조의8, 제45조의9에 의한 제재를 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46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사장”은 “공업지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삭제<2008.9.19>

제48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삭제<2008.9.19>

제49조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당해 공작물 등을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 (청문) 삭제<2008.9.19>

제52조 (제재) 삭제<2008.9.19>

제53조 (건설업 사전심사) ①개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건설업 사전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를 사전에 받아 적합함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은 개성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부 칙(2004.11.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19)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구분-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건축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변경		
건축주	성명·기업명	거주(기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용도지역		
I. 전체 개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폐율(%)		연면적(m ²)	
용적율산정용연면적(m ²)		건축물명칭	
용적률(%)		주용도	
총주차차량대수(대)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m ²)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일괄처리사항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축허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개성공업지구내 건축에 관한 준칙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허 가 번 호			
건 축 주		거주(기업)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건 축 물 명 칭		주 용 도			
건 축 면 적(m ²)		건 폐 율(%)			
연 면 적(m ²)		용 적 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m ²)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m ²)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신 청 구 분	※ 변경하고자하는 항목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공사시공자		
허 가 (신 고) 번 호		허가(신고)일자	
대 지 위 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①건 축 주			
성 명 (기 업 명)		전화번호 :	
거 주 (기업) 등 록 번 호			
주 소			
②공사시공자			
대 표 자 명			
기 업 명		면허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시 공 기 간	~	~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허 가 (신고) 번 호	
신 고 인(신고기업)		거 주(기업) 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변 경 전		변 경 후	
건 축 주		건 축 주	
공 사 시 공 자		공 사 시 공 자	
<p>년 월 일</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3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기업명)				거주(기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폐율(%)				연면적(m ²)	
용적률산정용연면적(m ²)				건축물명칭	
용적률(%)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주용도		호(가구)수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m ²)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적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일괄처리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공작물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사도개설허가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접도구역내허가 등 <input type="checkbox"/> 하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배수설비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정화조설치신고 등 <input type="checkbox"/> 상수도공급신청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3면중 제2면)

구비서류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개성공업지구내 건축에 관한 준칙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준칙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수선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II. 동별개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input type="checkbox"/> 주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input type="checkbox"/> 주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주 용 도	
<input type="checkbox"/> 호		※ 호수/가구수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가구
		주 구 조	
		지 붕	
		※건축면적(m ²)	
		※연 면 적(m ²)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m ²)	
지하:	층, 지상	층 수	지하
		높 이(m)	층, 지상:
		승용승강기	층
		비상용승강기	

III-1. 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m ²)	구 분	구 조	용 도	면 적(m ²)	
			층구분	건축구분			

III-2. 층 별 개 요							
동명칭 및 번호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신고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m ²)	구 분	구 조	용 도	면 적(m ²)	
			층구분	건축구분			

(3면중 제3면)

IV. 대수선개요	
대 수 선 용 내	※수선 또는 변경되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지붕틀 [개] <input type="checkbox"/> 기둥 [개] <input type="checkbox"/> 보 [개] <input type="checkbox"/> 내력벽 [m ²] <input type="checkbox"/> 방화벽 [m ²] <input type="checkbox"/> 방화구획 [m ²] <input type="checkbox"/> 주계단 [m ²] <input type="checkbox"/> 피난계단 [m ²] <input type="checkbox"/> 특별피난계단 [m ²] <input type="checkbox"/>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 담장의 변경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종류		축척	/
도면종류		축척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별지 제7호서식]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거주등록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m ²)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m ²)		건폐율(%)			
연면적(m ²)		용적률(%)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m ²)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m ²)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신청서		신고/허가번호(연도-구분-신고/허가일련번호) □□□□-□□□□-□□□□□			
건축주	성명 (기업명)				
	거주 (기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소유 <input type="checkbox"/> 타인소유	면적(m ²)		
I. 전체 개요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수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공단관리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허가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신 고 번 호		허 가 번 호	
건 축 주		거주/기업등록번호	
대 지 위 치			
건축면적(m ²)		연 면 적(m ²)	
존 치 기 간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민/기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p>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주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별지 제12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거주등록번호	
대지위치			
종전존치기간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거주(기업)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허 가(신고) 일		
대 지 위 치		지 비 번		
착 공 예 정 일				
①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 명		도 급 금 액	
	회 사 명		도급계약일자	
	주 민 (기 업) 등 록 번 호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③관 계 전 문 기 술 자				
분 야	자 격 증	자 격 번 호	주 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div>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설계도서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허 가 (신고) 번호	
건 축 주		거주/기업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m ²)			
건 축 물 명 칭		주 용 도	
건 축 면 적(m ²)		건 폐 율(%)	
연 면 적(m ²)		용 적 륜(%)	
착 공 예 정 일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거주/기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위치		지 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연기사유			
<p>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건축주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없 음		
신 청 안 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따라 착공연기신고확인서를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거주/기업등록번호	
대지위치			
연기전예정일			
연기후예정일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17호서식]

(3면중 제1면)

건축물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일부		가설건축물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거주(기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구역				
동기축타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위와 같이 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소방설비 합격 결과서 2. 전기공급확인서 3.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4. 수질, 대기환경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필요시)				
※임시사용승인·준공검사(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I. 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폐율(%)			연면적(m ²)		
용적률산정용연면적(m ²)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③주용도	호(가구)수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m ²)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일괄신고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3면중 제2면)

II. 동별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 [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input type="checkbox"/> 주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input type="checkbox"/> 주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 축 주	
		설 계 자	
		시 공 자	
		주 용 도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 호 수 / 가 구 수	<input type="checkbox"/> 호 <input type="checkbox"/>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용 적 률 산 정 용 연 면 적 (㎡)	
지하: 층, 지상: 층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 (m)	
대	승 용 승 강 기	대	
대	비 상 용 승 강 기	대	
III-1. 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3면중 제3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이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거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⑯소유권지분		
				/	
			/		
			/		
			/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이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층구분	⑱호구분	⑮소유자성명(명칭) 거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⑯소유권지분	※⑲구분기호
			/			
			/			
			/			

VI.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이기에만 기재합니다.		
※⑲구분기호			⑳구 조	㉑용 도	㉒면 적(m ²)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			
※⑲구분기호			⑳구 조	㉑용 도	㉒면 적(m ²)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			
※⑲구분기호			⑳구 조	㉑용 도	㉒면 적(m ²)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			

[별지 제18호서식]

준공검사필증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허 가 (신 고) 번 호	
건 축 주		거주(기업)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건 축 물 명 칭		주 용 도	
건 축 면 적(m ²)		건 폐 율(%)	
연 면 적(m ²)		용 적 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거주등록번호	
대지위치		
승인기간		
승인내용		
동명칭및번호	주용도	승인면적(m ²)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20호서식)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 고 번 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 치		
	④용 도	⑤구 조	
	⑥건축물수	⑦연 면 적	
	⑧세 대 수		
소유자	⑨성 명	⑩거주등록번호	
	⑪주 소		
공 사 시공자	⑫성 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 소		
철 거 또 는 멸 실	⑮사 유		
	⑯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⑰착 공 예 정 일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면허번호 :)
시공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 · 지정 · 등록번호 :)
관 계 전문기 술 자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대장										장 번호	1 -	
고유번호	대지위치		지 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소 유 자		현 황	소유권 지 분	변동일자	
	연 면 적	지 면 적	지 번	지 번			성명(명칭)	주 소				
※	m ²	m ²	※	※	※	※	지 구	구 역				
건축면적	m ²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m ²	주구조	주용도	층 수					층	층/지상: 층
※	%	※	%	높 이	m	부속건축물	지 방				동	m ²
건축물 현황												
구분	총면	구 조	용 도	면적(m ²)	성명(명칭)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0304-16631비

'97. 10. 9 승인

297mm×210mm
켄트지260g/m²

고유번호		장 번호 2 -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번호(등록)번호	※ 차 장				승용	승강기	대	허가일자	대
			주	차	장	승용					
건축주			육내	자주식	대	m ³	비상용		대	작성일자	
설계자			육외	기계식	대	m ³	※ 오수정화시설		대	사용승인일자	
공사감리자				자주식	대	m ³				관련지번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m ³		인용			
변 동 사 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기타 기재 사항								

※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고유번호		건 축 물 현 항 도				장 번호	3 -
대지위치		지 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작성자	(서명 또는 인)			

비고 : 1.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공장등록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기업명	(기업등록번호 :)						
		(전화 :)						
	기업책임자성명	(거주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종업원수			생산품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변경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성명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업종(분류기호)	토지(건축물) 사용권(기간등)
	변경전							
	변경후							
개성공업지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제조시설 명세서 1부.								

(별지 제23호서식)

공 장 등 록 증 명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기 업 명					
	기 업 대 표 자 성 명			거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등 록 내 용	공 장 소 재 지			지 목	보유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공 장 등 록 일	사업시작일		종업원수	남 : 여 :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공장부지 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등 록 조 건						
등록변경·증설 등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날자 및 내용)						
						수수료
건축시행준칙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도로폐지 <input type="checkbox"/>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폐지/변경사유					
<p>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위치도	축척: 임의

폐지·변경후 현황도	축척: <input type="checkbox"/> 1/600, <input type="checkbox"/> 1/1200

[별지 제26호서식]

도 로 대 장			지정번호 □□□□-□□□□		
대 지 위 치				지 번	
건 축 주		거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거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치 도	축척 : 임 의

현 황 도	축척 : <input type="checkbox"/> 1/600, <input type="checkbox"/>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별지 제27호서식]

위반건축물표지

허가번호 □□-□-□□□□

①위 치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④착공일자	년	월	일
⑤주 용 도		⑥부 속 용 도	
⑦위 반 사 항			
⑧조 치 사 항			
<p>이 건축물은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제()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동 준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p>			

[별지 제28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 축 주	성 명(기업명)	거주(기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지 조 건	대 지 위 치			
	지 번			
	지 목			
	지 구			
※ 설 계 자	성 명			
	사 무 소 명			
	주 소			
※ 공사시공자	성 명			
	회 사 명			
	주 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미터의 굴뚝 · 높이[]미터의 □옹벽, □담장 · 바닥면적[]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높이[]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 높이[]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높이[]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높이[]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기타건축물조례로 정한 공작물()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p>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건축주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 비 서 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축 조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별지 제29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신 고 번 호			
건 축 주		거주(기업) 등록번호	
대 지 위 치			
공 작 물 의 종 류			
공 작 물 의 규 모	높이(m) :	면적(m') :	건폐율(%) :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관리번호 □□□□-□□□□		
신 고 번 호				
신 고 일		년 월 일	사 용 승 인 일	년 월 일
건축주	성 명 (기업명)	거주(기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조 건	대지위치			
	지 역			
	지 구	구 역		
※ 설계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공 사 시공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공작물의 종류	구 조	길 이(m)	높 이(m)	면 적(m ²)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개성공업지구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4.11.1]

[개정 2008.3.21]

[개정 2008.9.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건축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지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규정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제3조 (대수선의 범위) 준칙에서 규정한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4조 (건축물의 종류) 준칙 제2조 제2항의 각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토지이용등록증과 별표5의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착공신고) 건축공사의 착공신고시는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별표6의 설계도서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제6조의2 (공사감리자의 배치기준) 건축준칙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착공신고 시 별지1의 서식을 이용하여 감리자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다중이용시설물이란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④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당해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개정 2008.9.19>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개정 2008.9.19>
3. 아파트의 건축 공사

제6조의3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등) 삭제<2008.9.19>

제6조의4 (건설업자의 업무정지 등) 삭제<2008.9.19>

제6조의5 (공사감리자의 지도·감독등) ①관리기관은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의6 (공사감리자의 책무) 감리등을 수행하는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7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삭제<2008.9.19>

제6조의9 (공사감리자 협의회) ①“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공사감리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개성공업지구에서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감리 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 협의회는 운영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19>

제6조의10 (공사감리자 회의) ①공사감리자는 월1회 공사감리자 협의회 등에서 시행하는 감리자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 회의 참석자는 월간 감리실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제 3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7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공업구역인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3m까지는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건축물의 옥상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 이상

3. 플랜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

②조경면적 1㎡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하며 식재할 교목은 흉고직경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관폭 0.8m 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으로 한다.

1.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3.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4.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③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m 이상이고 흉고직경 12cm 또는 근원직경 15cm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m 이상이고 수관폭 2m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cm 또는 근원직경 20cm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m 이상이고 수관폭 3m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3.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흉고직경 25cm 또는 근원직경 30cm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m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제9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선) ①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3	2	6이상 8미만
120°미만	2	2	4이상 6미만

②공업지역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에서 5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로 한다. 단 차폐녹지를 인접하고 있거나 천변의 녹지를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1m로 한다.

- ③상업지역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에서 3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로 한다.
- ④주거지역의 건축선은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로 한다. 단 사전에 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이사장은 공업지구안의 관광구역의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 4 장 구역안의 건축물

제11조 (구역의 지정) 삭제<2004.11.16>

제12조 (용도구역안의 건축제한) 삭제<2004.11.16>

제13조 (건폐율) 삭제<2004.11.16>

제14조 (용적률) 삭제<2004.11.16>

제15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2004.11.16>

제1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생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③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 5 장 공개공지 등

제1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건축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준칙 제53조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2배이하, 용적률의 1.2배이하
2.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제 6 장 기 타

제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준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 가.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 나. 대지안에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나.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정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생활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

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 ③제1항제5호 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 제20조 (허용오차) 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범위는 별표 7에 의한다.

부 칙(200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9)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바. 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력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품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유해물질을 기준치내로 배출하는 것
- 아.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

곱미터미만인 것

-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마. 철도역사
- 바. 공항시설
-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관리기관의 청사등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

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라. 카지노업소
-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액화가스취급소
- 바. 액화가스판매소
-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야.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버섯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야.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나.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다. 전신전화국
- 라.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2. 다중이용시설

- 가.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 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별표 2] 생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삭제(2004.11.16)

[별표 3] 상업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삭제(2004.11.16)

[별표 4] 공업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삭제(2004.11.16)

[별표 5] 건축허용오차

[별표 6]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별표 7]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별표 5}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 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 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 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 두께	3퍼센트 이내

[별표 6]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향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별표 7]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임 의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구조도(구조안 전확인 대상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방서	임 의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 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 의	○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관련설비
건축설비도	임 의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 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구조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4.11.1]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조안전의 확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각 학회에서 정한 규정과 규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이사장이 정한 것

③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높이 7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비정형건축물

제3조 (관계기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계기술

자가 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16층 이상의 건축물
3. 경간 30m 이상의 건축물
4. 깊이 10m 이상의 토지의 굴착
5. 높이 5m 이상의 옹벽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력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응력(應力)”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힘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3.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 부위에 생기는 응력도가 최대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4.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허용응력도설계법”이라 함은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극한강도설계법”이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

력의 값이 극한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고정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0.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과 적재되는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1. “등가정적해석법(等價靜的解釋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계산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동적해석법(動的解釋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구조동력학이론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 (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내력부분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6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①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靱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구조계산) ①이 세부지침 제2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허용응력도설계법 또는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거나 이사장이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②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할 것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3. 설계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불균등하중의 분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준(학회의 기준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허용응력도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극한설계하중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하중계수를 곱한 극한설계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2. 내력부분의 극한설계응력은 그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 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극한강도설계법에서 사용되는 하중계수·강도저감계수 기타 구조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제8조 (설계하중 및 외력) ①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 1. 고정하중 | 5. 지진하중 |
| 2. 적재하중 | 6. 토압 및 수압 |
| 3. 적설하중 | 7. 온도하중 |

4. 풍하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9조 (지반의 허용응력도) 지반의 허용응력도는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 하되,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압력이 허용지내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의 내력이 그 허용지내력 이하이어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0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중 및 외력의 조합 (제7조제2항제2호 관련)

응력의 종류	하중 및 외력의 작용상태	일반지역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적설량이 1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비 고
장기응력	평상시	D+L	D+L+S	-
	적설시	D+L+S	D+L+S	-
단기응력	폭풍시	D+L+W	D+L+W	기둥이 넘어져 뽑히는 등의 경우에는 L은 당해 건축물의 실제상황에 따라 적재하중을 뺀 값으로 한다.
			D+L+S+W	
	지진시	D+L+E	D+L+S+E	-
D+E		D+E		

비고 : 위 표에서 D는 자중에 의한 응력, L은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S는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W는 풍하중에 의한 응력, E는 지진하중에 의한 응력을 말한다.

(별표 2)

등분포적재하중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종 류	구분	건축물의 부분	적재하중
1	주택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00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300
2	병원	가. 병실과 해당 복도	200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300
3	숙박시설	가. 객실과 해당 복도	200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500
4	사무실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250
		나. 로비	400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500
		라. 문서보관실	500
5	학교	가. 교실과 해당 복도	300
		나. 로비	400
		다. 일반 실험실	300
		라. 중량물 실험실	500

6	판매장	가. 상점, 백화점(1층 부분)	500	
		나. 상점, 백화점(2층 이상 부분)	400	
		다. 창고형 매장	600	
7	집회 및 유흥장	가. 로비, 복도	500	
		나. 무대	700	
		다. 식당	500	
		라. 주방(영업용)	700	
		마. 극장 및 집회장(고정식)	400	
		바. 집회장(이동식)	500	
8	체육시설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00	
		나. 스탠드(고정식)	400	
		다. 스탠드(이동식)	500	
9	도서관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300	
		나. 서고	750	
10	주차장	옥내 주차구역	가. 승용차 전용	400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0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00
	옥내 차로와 경사로	가. 승용차 전용	600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0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00	
옥외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00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1,600		
11	창고	가. 경량품 저장창고	600	
		나. 중량품 저장창고	1,200	
12	공장	가. 경공업 공장	600	
		나. 중공업 공장	1,200	
13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100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00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0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00	
14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0	
15	광장	옥외광장	1,200	

[별표 3]

기본풍속 및 지상적설하중

기본풍속(개성공업지구)	30m/sec
기본적설하중의 기본 값(개성공업지구)	50kg/m ²

[별표 4]

중 요 도 (제6조제1항 관련)

중요도	특	1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 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중요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표 5]

지반의 허용응력도 (제8조 관련)

(단위 : kg/cm²)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경암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각각의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	
자갈		3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	
모래 또는 점토		10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4.11.1]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덕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단 별도로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련 학회의 기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①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의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의 활용을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건축물에는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5%이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중 아래 각호의 시설을 하는 건축물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11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 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2조 (개별난방설비) ①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5.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 6.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제13조 (배연설비) ①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 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준칙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14조 (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 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구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제15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청소가 용이하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절한 규격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제16조 (피뢰설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 물질과는 20센티미터 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 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 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 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 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 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할 것

제17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이 사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난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제18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①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업구역 및 생활구역에서도(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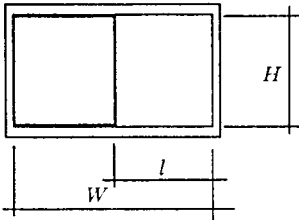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 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 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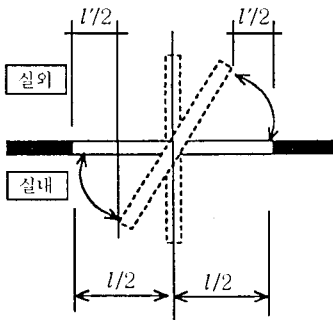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1. 미서기창 : $H \times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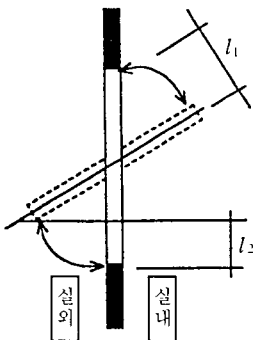
l : 미서기 창 의 유효폭
 H : 창 의 유효높이
 W : 창문 의 폭

2. Pivot 중축창 : $H \times l' / 2 \time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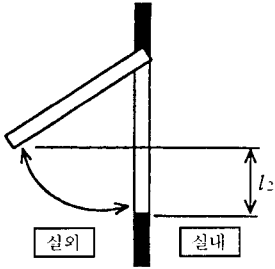
H : 창 의 유효높이
 l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l' : 90° 미만 0° 초과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3. Pivot 횡축창 : $(W \times l_1) + (W \times l_2)$



W : 창 의 폭
 l_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l_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수평투영거리

4. 들창 : $W \times l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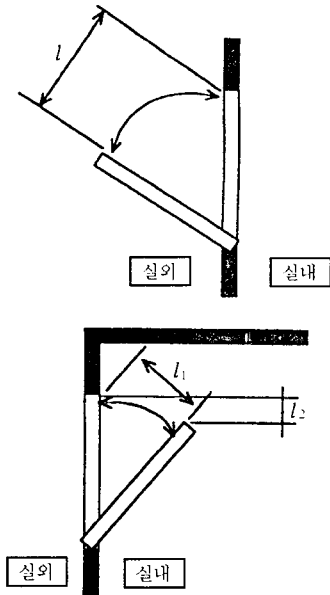


W : 창외 폭
 l_2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 수평투영 면적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times l$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times l_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 : $W \times l_2$)



W : 창외 폭
 l : 실외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l_1 : 실내측으로 열린 상호창호의 길이방향으로 개방된 순거리
 l_2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 수평투영 면적
 * 창이 천장(또는 반자)에 근접된 경우 창외 상단에서 천장면까지의 거리 $\leq l_1$

[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 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밀리미터)	15	20	25	32	40	50

비고 :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

(단위 : mm)

설치장소		관경 (mm, 외경)	20 미만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설계용 외기온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기에 노출된 배관 • 옥상 등 그밖에 동파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부위 	-10 미만	200 (50)	50 (25)	25 (25)	25 (25)	25 (25)	
	-5 미만~-10	100 (50)	40 (25)	25 (25)	25 (25)	25 (25)	
	0 미만~-5	40 (25)	25 (25)	25 (25)	25 (25)	25 (25)	
	0°C 이상 유지	20					

- 1) ()속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kcal/m²·h·°C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 3) 설계용 외기온도 :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별표 5]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² · K, 괄호안은 단위 : Kcal/m² · h · °C)

건축물의 부위		지 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 이하 (0.55)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0 이하 (0.9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25)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 이하 (0.30)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그밖의 경우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 이하 (3.30) 이하	4.19 이하 (3.60) 이하	5.23 이하 (4.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 이하 (4.70) 이하	6.05 이하 (5.20) 이하	7.56 이하 (6.50) 이하

비고 : 개성공업지구는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4.11.1]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개성공업지구내 건축에 관한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갯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5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제6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9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0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거실반자의 설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거실의 채광 등) ①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거실 등의 방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15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제16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 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21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 (내수재료)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23조 (내화구조) 내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라. 철골조
 - 8. 기타 이사장이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서 인정한 것
- 제24조 (방화구조)**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흠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이사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25조 (난연재료) 난연재료라 함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불연재료)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이사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제27조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라 함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야.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을 것
- ③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3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규정

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 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제33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34조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 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 등(당해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 등(당해 위락시설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35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횟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

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 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영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36조 (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의한 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38조 (거실 등의 방습) ①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3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이사장이 인정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제4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 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이사장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제42조 (방화벽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43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①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4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이 세부지침 20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이 세부지침 제20조 각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

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이 세부지침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제45조 (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4.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5.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46조 (방화문의 성능)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 칙(200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거실의 용도구분		조도구분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1. 거주	독서·식사·조리		150
	기 타		70
2. 집무	설계·제도·계산		700
	일반사무		300
	기 타		150
3. 작업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700
	일반작업·제조·판매		300
	포장·세척		150
	기 타		70
4. 집회	회의		300
	집회		150
	공연·관람		70
5. 오락	오락일반		150
	기 타		30
6. 기타			1칸 내지 5칸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 (제41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15541	얼음제조업
15542	생수 제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211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3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 분류번호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개성공업지구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4.11.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②“설계”라 함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④“계획설계”라 함은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⑤“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⑥“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

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 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⑦“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개성공업지구내의 건축물 건설을 위하여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②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제5조 (설계도서의 제출) ①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준칙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준칙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에 제출한다.

제7조 (재료의 표기) ①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제8조 (공사시방서의 작성) ①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9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제10조 (구조계산서의 작성) ①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 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②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이사장이 별도로 규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별도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고 적용기준을 구조계산서에 명기한다.

제11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①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련전문기술자가 시행한다.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전문 설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토목구조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법, 준칙, 세부지침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부 칙(200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 : 기본업무

빈칸 : 추가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도서작성 구분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설계구상안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건축 도면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각층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 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 (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 재료	○
	단면도 (중·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상 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 평· 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기 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단면도	○
		용량 계산서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무대·조명	
		전시·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설계 설명서		
도면	기초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진 확정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도면 목록표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 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중·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 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바. 조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평면도		
	단면도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설개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산출표		○
	대지 중·횡단면도		○
	배치도	1/100이상	○
	주차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중·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각종 설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옹벽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상 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잡 상세도	1/5~1/50	
	가구도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캐노피	1/5~1/50	
		파라펫	1/5~1/50	
		TRUSS	1/5~1/50	

다.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1/100이상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이상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 평면도	1/5 ~ 1/50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 등에 대한 확대평면	1/5 ~ 1/50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 ~ 1/50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 ~ 1/50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상세	1/5 ~ 1/50	
	각종 장비 상세도		1/5 ~ 1/50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라.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법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설명서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포장상세도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옹벽 상세도		1/5~1/100	○
	담장 입·단면도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방음벽 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바.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자 선정지침

[제정 2008. 9. 1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업의 영위) 개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평가를 사전에 받아 적합함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을 할 수 있다.

제3조 (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개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설업 사전승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 신청서<별첨양식 1>
2.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3. 업체 현황조사 확인서
4.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5.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2, 2-1>
6.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7. 사업계획서 및 공사계약서 사본(시공능력평가)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심사방법 및 기준) ①신청된 사전심사는 신청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은 「대한건설협회」 등의 공인기관이 평가한「경영상태 및 시공여

유율 확인서」 「업체 현황조사 확인서」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를 근거로 심사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채비율에 의한 요건

가. 부채비율은 동종업계 평균의 50 % 미만

2. 유동비율에 의한 요건

가. 유동비율은 동종업계 평균의 150 % 이상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한다. 또한, 시공경험평가에서는 개성에서의 공사실적을 점수화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확인서는 사전심사 신청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평가 확인서로 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는 최근 3년간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⑦사전심사 담당자는 세부심사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격요건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감점사항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①사전심사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 등 사실 누락 등)제출로 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 통보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고의로 부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 승인 이전일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해당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
2. 사전심사 및 승인 이후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사업승인을 취소

제6조 (심사결과 통보) ①사전심사 담당자는 사전심사 결과가 도출된 경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사전심사의 면제 및 포괄승인) ①사전심사 담당자는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위한 건설업 사전심사를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사전심

사 승인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동안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개성에서 포괄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관리기관 이사장이 인정한 건설업체의 경우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기타사항) ①사전심사 담당자는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 단계 점수를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관리기관이 공포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합계	103	시공능력, 기술능력, 가산점 합산한도	
소계	100	시공능력, 기술능력 합산한도	
1. 시공 경험	50	가.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로 평가	50
2. 기술 능력	50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50
3.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5)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건축, 노동안전, 환경, 전기, 가스, 소방준칙을 위반하여 시정지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별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마. 최근 5년간 개성에서의 공사실적(가산점)	-2 +2 -3 +2 -1 -2 -0.5 -1 -1 -2 -5 +5

주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의 입찰방법에 따라 택일 적용

주2) 신인도평가는 각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가점은 +3점, 감점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별표 1-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시공경험평가(50점)

○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로 평가(만점 50점)

- A : 200%이상 50점(3년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계약금액)
- B : 180%이상 47.5점
- C : 160%이상 45.0점
- D : 140%이상 42.5점
- E : 120%이상 40.0점
- F : 100%이상 37.5점

2. 기술능력평가(50점)

○ 당해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만점 20점)

- A : 4 이상 : 20점
- B : 3 이상 : 17.3점
- C : 2 이상 : 14.7점
- D : 1 이상 : 12점

- 일반기술자(만점 30점)

- A : 15인 이상 : 30점
- B : 12인 이상 : 27점
- C : 10인 이상 : 24점
- D : 5인 이상 : 21점

3. 개성에서의 공사실적 평가(만점 5점)

- 공사실적 건당 1점씩 가점부여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 3)에 의하며, 당해 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 라 한다), 일반기술자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가) 별첨양식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대상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 후 포함)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당 해 공 사 명 :

개성지역에서의 건설업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건설업 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 기관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 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붙임 : 1.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2. 업체 현황조사 확인서
3.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최근3년)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5.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6. 사업계획서 및 공사계약서 사본(시공능력평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귀하

〈별첨양식 2〉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정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 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협회장(인)

〈별첨양식 3〉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일 반 기 계 · 기 환 경 술 자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정, 소방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별첨양식 3-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합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1								증명서 첨 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합 계								

※ 경력기술자 현황은 필요시 별지 추가하여 작성

3. 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준칙
- 건설안전관리준칙
- 노동안전준칙
- 소방준칙
- 전기안전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정 2005.7.20]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라 함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말한다.
2. “고압가스”라 함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및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섭씨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아세틸렌가스·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장설비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액화가스(기화가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도시가스”라 함은 도로에 매설된 지하배관을 통하여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를 말한다.
5. “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용기 등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한 가스공급자의 시설(공동주택 등 다수의 사용자가 공용으로 소유하여 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가스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스를 저장·사용하기 위한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액화가스는 5톤(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는 1톤, 허용농도 100만분의 1 미만인 독성가스는 100킬로그램) 이상 또는 압축가스는 500세제곱미터(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는 100세제곱미터, 허용농도 100만분의 1 미만인 독성가스는 10세제곱미터) 이상을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사용시설”이라 함은 공급·저장시설외의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스사용자의 전용시설을 말한다.
8. “가스제품”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저장·공급·운반·사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용품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9. “용기”라 함은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저장설비”라 함은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가스의 공급·저장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4. “냉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계로서 별표 3에서 정한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3냉동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스시설의 설치 허가 등) ①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장자”라 한다), 냉동능력 50냉동톤(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냉동톤) 이상의 냉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이하 “냉동제조사”라 한다) 및 가스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자(이하 “제품제조사”라 한다)는 그 공급시설, 저장시설, 냉동시설 또는 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마다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가스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공급·저장시설에 특정사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2.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3.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4.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5.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시설
6. 배관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고압가스 사용시설
7. 월사용예정량[사용시설에 설치된 각 연소기마다 월 270시간(취사용은 90시간)을 사용하는 가스소비량을 합산한 양]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가스 사용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받은자”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 설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공사
2. 공급·저장·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변경(열량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압력변경 공사
3. 공급·저장시설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용량증가 공사
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공사
5. 배관의 호칭지름 변경 또는 배관 길이를 20m 이상의 이설·교체·위치변경 공사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허가의 기준 등) 관리기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하 “가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의 가스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사전 서류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가스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시공자는 관리기관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한 자일 것
5. 관리기관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①관리기관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공급·저장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급·저장시설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이 준칙 또는 이 준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저장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시공기록의 작성·교부 등) ①가스의 공급·저장·사용시설의 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허가 받은자 또는 신고자(이하 “가스시설관리자”라 한다)의 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시공기록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1. 비파괴검사 실시에 관한 기록·도면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 실시에 관한 기록·도면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필름

3.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4.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5. 일일시공기록(시공관리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및 도면 등을 포함한다)
- ②시공자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공기록 사본 및 완공도면을 가스시설관리자 및 가스안전전문기관에 교부하여야 하며, 가스시설관리자는 교부받은 시공 기록중 완공도면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검사 및 완성검사 등) ①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등 완공 전에 검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하여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의 공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용접·용착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4.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그밖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②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시설 및 제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공정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 시설별 검사기준 및 검사신청 등은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가스시설관리자로부터 완성검사(공정검사를 포함한다)의 신청·검사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시공자는 이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정기검사)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자는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정기검사의 검사대상 시설별 검사기준 및 검사신청 등은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제품검사 등) ①제품제조자 또는 제품수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가스시설관리자는 그의 가스시설에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가스제품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가스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제품별 검사기준 및 표시방법, 검사신청 방법 등은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안전관리자) ①가스시설관리자는 가스시설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가스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선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사용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5와 같다.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점검기록의 작성·보존
2.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3.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4.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의 개선
5. 사업소 또는 수요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6. 가스제품의 품질 및 제조공정관리
7. 그밖의 위해방지조치

③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장자 또는 특정사용자

(이하 “수요자”라 한다)가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안전관리지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지원 점검비용은 별표 6과 같다.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2회
2.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월 1회

제12조 (안전관리규정) ①허가받은 자는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작성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가스안전전문기관은 허가받은 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검사하는 때마다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급자의 의무 등)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제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수요자시설 전부에 대한 정기점검
 2. 가스를 공급하는 때에 저장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작동상태 점검
- ②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공급자는 수요자가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 (가스배관매설 등) ①가스배관을 도로·공동주택단지에 매설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 전에 관리기관의 굴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정하는 지역의 도로·공동주택단지 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스공급자에게 확인요청(이하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가스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설배관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굴착 공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결과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에서 지하철도·지하차도·지하보도 또는 지하건축물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은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교육) ①가스시설관리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6조 (가스의 운반 등) 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탱크로리”라 한다)로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가스의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제17조 (사고의 통보 등) ①가스시설관리자는 그의 가스시설·제품 또는 공급받는 자의 가스시설·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1의 규정

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사고재해방지 기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 전문기관에게 사고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조사를 완료한 가스안전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등) ①가스시설관리자가 허가·신고를 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가스시설관리자가 가스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검사·안전관리지원 점검 또는 검토의견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해방지조치) ①관리기관은 이 준칙에 의한 가스시설관리자 또는 가스 시설관리자 이외의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②관리기관은 가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 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중지 등) 가스시설관리자는 이 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사용정지 및 가스공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사항) 준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용어정의 또는 공급자의 세부 구분 등 이 준칙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따로이 정할 수 있다.

부 칙(2005. 7. 20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대상 가스제품의 범위 (제2조제8호 관련)

1.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이상을 말하며, 그 부속품인 밸브를 포함한다), 냉동기
2.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스설비(이하 “특정설비”라 한다)
 - 가.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 나. 기화장치
 - 다. 압력용기
 - 라.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 마. 냉동설비(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및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 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사.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3.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사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
 - 가.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가스누출자동차 단장치
 - 나. 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을 제외한다)
 - 다. 매몰형정압기
 - 라. 호스
 - 마. 배관용밸브(볼밸브 및 글로우브밸브에 한한다) 및 콕
 - 바.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 1) 전기절연이음관
 - 2) 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
 - 3)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
 - 4) 콕카플러
 - 마. 세이프티커플링
 - 바.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6호에 의한 온수보일러 및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연소기(연소장치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자. 로딩암
-

[별표 2]

저장능력산정기준 (제2조제12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의 산식에 의하여,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의 산식에 의하여,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Q = (10P+1)V_1$

나. $W = 0.9 d V_2$

다. $W = \frac{V_2}{C}$

위의 산식에 있어서 Q, P, V_1 , W, d, V_2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 저장능력(단위: m³)

P :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 MPa)

V_1 : 내용적(단위 : m³)

W : 저장능력(단위 : kg)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 kg/ℓ)

V_2 : 내용적(단위 : ℓ)

C :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에 있어서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중 최고의 온도에 있어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 kg/ℓ)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가스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 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 수
액화에틸렌	3.50	액화염화비닐	1.22
액화에탄	2.80	액화4불화에틸렌	1.11
액화프로판	2.35	액화후레온 152a	1.08
액화프로필렌	2.27	액화산소	1.04
액화부탄	2.05	액화후레온 500	1.00
액화부틸렌	2.00	액화후레온 13	1.00
액화싸이크로프로판	1.87	액화후레온 22	0.98
액화암모니아	1.86	액화후레온 502	0.93
액화부타디엔	1.85	액화6불화황	0.91
액화트리메틸아민	1.76	액화후레온 115	0.90
액화메틸에테르	1.67	액화아르곤	0.87
액화모노메틸아민	1.67	액화후레온12	0.86
액화염화수소	1.67	액화크세논	0.81
액화시안화수소	1.57	액화염소	0.80
액화황화수소	1.47	액화취화수소	0.80
액화질소	1.47	액화아황산가스	0.80
액화탄산가스	1.47	액화후레온13B ₁	0.79
액화아산화질소	1.34	액화후레온114	0.76
액화산화에틸렌	1.30	액화후레온 C318	0.74
액화염화메탄	1.25	그밖의 액화가스	1.05를 당해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 누어 얻은 수치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³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동일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3]

냉동능력의 산정기준 (제2조제14호 관련)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출력 1.2 kW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 6천640kcal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R = \frac{V}{C}$$

위의 산식에서 R, V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 1일의 냉동능력(단위:톤)

V :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다음 ①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③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④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 그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m³)

① $VH + 0.08VL$

② $60 \times 0.785 t n (D^2 - d^2)$

③ $K \times D^3 \times \frac{L}{D} \times n \times 60$

④ $0.785 \times D^2 \times L \times N \times n \times 60$

위의 ①내지 ④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및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m³)

VL :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 위 : m³)

t :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 m)

n :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직경) (단위 : m)

d :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 m)

K :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

구 분	대칭치형	비대칭치형
3%어텐덤	0.476	0.486
2%어텐덤	0.450	0.460

L :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단위 : m)

N : 실린더수

C :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

냉매가스의 종류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cm ³ 이하인 것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cm ³ 를 넘는 것
후레온 21	49.7	46.6
후레온 114	46.4	43.5
노말부탄	37.2	34.9
이소부탄	27.1	25.4
아황산가스	22.1	20.7
염화메탄	14.5	13.6
후레온 134a	14.4	13.5
후레온 12	13.9	13.1
후레온 500	12.0	11.3
프로판	9.6	9.0
후레온 22	8.5	7.9
암모니아	8.4	7.9
후레온 502	8.4	7.9
후레온 13B1	6.2	5.8
후레온 13	4.4	4.2
에 탄	3.1	2.9
탄산가스	1.9	1.8

비 고

1.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한다.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의한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다.

$$C = \frac{3320V_A}{(i_A - i_B)n_v}$$

위 식에서 V_A, i_A, i_B, 및 n_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_A :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비체적(단위 : m³/kg)

i_A :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kcal/kg)

i_B : 응축온도 30℃, 팽창밸브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단위 : kcal/kg)

n_v :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cm³ 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cm³를 초과하는 경우는 0.8로 한다.

(별표 4)

가스제품의 재검사기간 (제9조제2항 관련)

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제품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내의 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중인 시설내의 특정설비에 대해서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 도래 당시 소화용 충전 용기 또는 고정 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그 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

용기의 종류		재 검사 주 기		
		신규 검사 후 경과연수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용접용기	500ℓ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ℓ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ℓ 이상	5년마다		
	500ℓ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용기에 부착된 것(압축천연 가스자동차용기용밸브 외의 내용적 125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을 제외한다)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당해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고]

- 재검사일은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인 것은 신규검사를 필한 날부터,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이상인 것은 신규검사를 필한 후 15년이 경과된 날부터 산정한다.
-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인 500ℓ 미만 용접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서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 다.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 내용적 20리터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 에어졸제조용·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없는 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 기로서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는 사용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리터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당해 용기의 첫번째 재검사를 받게 된 때 폐기한다. 단, KS B 6214(고압가스용기용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와 그밖의 것으로서 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중 다음의 것
 - 가.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 나.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 다. 항공기 및 시험연구용 용기부속품
 - 라.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부속품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50ℓ 미만인 액화석유가스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주기는 4년으로 한다.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평저형 및 이중각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 나. 역화방지장치
-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 라.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 마. 냉동용특정설비
- 바. 초저온가스용 대기식기화장치
-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아니한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중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정하는 것
- 자.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비닛

특정설비 종류		재 검사 주기		
		신 규 검사 후 경 과 연 수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당해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저 장 탱 크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당해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시마다		
기화 장치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탱크의 재검사시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마다		
	설치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압 력 용 기		4년마다. 다만,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법에 의하여 재검사 주기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주기(그 주기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를 재검사주기로 한다.(개정 04.3.8) 1. 부식율계산기법에 의하여 내부에 대한 검사주기를 산정한 경우에는 잔여 내구연한의 2분의 1 2. 위험성판단기법에 의하여 내부에 대한 검사주기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주기		
[비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 자체정기보수(overhaul)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시까지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제11조제1항 관련)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구 분	
고압 가스 공급 시설 (제조·충전 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천 4백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2인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2인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고압 가스 공급 시설 (판매 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책임자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한다)
	냉동 제조 시설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2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이하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구 분
고압 가스 저장 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자총괄자 : 1인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다만, 그중 1인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안전관리원 : 2인이상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초과 1만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안전관리원 : 1인이상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고압 가스 사용 신고 시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 1인이상	가스기능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가스 제품 (용기) 제조 시설	용기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일반기계기사 · 용접기사 · 화공기사 · 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생산기계산업기사 · 금속재료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가스 제품 (냉동기) 제조 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일반기계기사 · 용접기사 · 금속기사 · 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 제품 (특정 설비 · 가스 용품) 제조 시설	저장탱크 · 압력용기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일반기계기사 · 용접기사 · 금속기사 · 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특정설비 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일반기계기사 · 용접기사 · 금속기사 · 화공기사 · 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수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액화석유가스공급(충전) 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이하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 (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 한한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공급(공동주택 등) 시설	수용가 500가구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이상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가구마다 1인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수용가 500가구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공급(판매) 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이하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안전관리원 : 1인이상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수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액화 석유 가스 저장 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도시 가스 공급 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마다 1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인이상 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초과 1천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인에 200킬로미터마다 1인씩 추가한 인원이상 3. 배관길이가 1천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월사용예정량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1인이상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 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6]

안전관리지원 점검 수수료 (제11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저장능력	수수료(원)	비 고
저장시설	5톤 초과 10톤 이하	350,000	
	10톤 초과	350,000원에 10톤을 초과한 5톤마다 20,000원을 가산한 금액	
사용시설	250kg 초과 500kg 이하	223,000	
	500kg 초과	223,000원에 500kg을 초과한 500kg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 1회 안전관리지원 점검수수료이며,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에 한하여 수수료의 1/2적용

예) 저장시설 30톤일 경우

$$- 350,000\text{원} + 4 \times 20,000\text{원} = 430,000\text{원} \times 1/2 = 215,000\text{원}$$

예) 사용시설 4.9톤일 경우

$$- 223,000\text{원} + 8 \times 10,000\text{원} = 303,000\text{원} \times 1/2 = 151,500\text{원}$$

[별표 7]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자(액화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자 및 도시가스공급자를 제외한다)는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가. 목적
 -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 라.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사.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 아. 자율검사(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 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계도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권고 미 이행시 가스공급중지
 -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 차. 용기 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1) 용기 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 (2) 용기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용기 등의 자율검사방법·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카.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파.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하. 기타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 액화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자 또는 도시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 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자. 훈련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8]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제13조제5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안전점검자	자 격	인 원
충 전 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이상 받은 자	충전소요인원
수요자시설 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 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이상 받은 자	수용가 3,000개소마다 1인

2. 점검장비

점검장비	가스별					
	액화석유 가스 및 도시가스	산 소	불연성 가 스	가연성 가 스	독 성 가 스	
가스누출검지기	○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시험지					○	
가스누출검지액		○	○	○	○	
그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	○	○	○	

3.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시설

- (1)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및 화기와의 거리
- (2)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 (3) 충전용기,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에서의 누출여부 및 그 가스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 (4)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여부

나.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시설

- (1)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여부 및 마감조치 여부

- (2) 가스제품의 검사 합격표시(재검사를 포함한다)
 - (3)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 (4) 호스의 “T”형 연결 여부 및 호스밴드 접속 여부
 - (5) 목욕탕 또는 화장실에의 보일러·온수기의 설치 여부
 - (6) 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밀폐식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여부
 - (7) 배기통 재료의 내식성·불연성 여부
 - (8) 배기통의 막힘 여부
 - (9) 그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별표 9]

안전교육실시방법 (제15조제2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가스안전전문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 가. 전문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가스안전전문기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기간 및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를 제외한다)	신규종사후 6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때
	(2) 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 운반책임자	
나.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신규종사시 1회
	(2) 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	
	(3)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5) 운반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6) 충전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7) 플리에탈렌 용착원이 되고자 하는 자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교육을 실시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0]

가스의 운반 등의 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거나 탱크로리로 가스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독성가스의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추가한다)라는 경계표시와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 나.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하여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할 것
- 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때에는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묶어야 하며, 충전용기 승·하차용 리프트를 설치한 가스 전용운반차량에 세워 운반할 것
- 라. 충전용기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지역에서 용기전용적재함에 20kg 이하의 용기 2개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운반할 수 있다
- 마. 납뽀입용기 및 접합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그 용기 등에 흠이나 찌그러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용도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에 한하여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 바. 가스의 종류에 따른 소화설비, 방독면, 고무장갑(장화) 그밖의 보호구 및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제독제 포함) 및 공구 등을 휴대할 것
- 사.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 아.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자 외에 가스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운반책임자”라 한다)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

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동승시킬 수 있다.

가 스 의 종 류		기 준
압축가스	가연성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200 이하의 독성 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1 이하의 독성 가스 조연성가스	300m ³ 이상 100m ³ 이상 10m ³ 이상 600m ³ 이상
액화가스	가연성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200 이하의 독성 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 1 이하의 독성 가스 조연성가스	3천kg이상 1천kg이상 100kg이상 6천kg이상

2. 탱크로리(이동식충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운반기준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산소탱크의 내용적은 1만8천ℓ,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탱크의 내용적은 1만2천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나. 충전탱크는 그 온도(가스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용기에 있어서는 가스의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액화가스가 충전된 탱크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는 그 내부에 액면요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 등을 설치할 것

라. 탱크(그 탱크의 정상부에 설치한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정상부의 높이가 차량정상부의 높이 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마. 탱크 및 부속품의 보호

(1)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데 사용되는 밸브(이하 “탱크주밸브”라 한다)를 후면에 설치한 탱크(이하 “후부취출식탱크”라 한다)에는 탱크주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에 속하는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가 40c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후부취출식탱크외의 탱크는 후면과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가 30cm

이상이 되도록 탱크를 차량에 고정시킬 것

(3) 탱크주밸브·긴급차단장치에 속하는 밸브 그밖의 중요한 부속품이 돌출된 저장탱크는 그 부속품을 차량의 좌측면이 아닌 곳에 설치한 단단한 조작상자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조작상자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거리는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부속품이 돌출된 탱크는 그 부속품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액화가스중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충전된 탱크에는 손상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된 액면계를 사용할 것

사. 탱크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에는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위한 표시 등을 할 것

아. 2개 이상의 탱크를 동일한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경우

(1) 탱크마다 탱크의 주 밸브를 설치할 것

(2) 탱크상호간 또는 탱크와 차량과의 사이를 단단하게 부착하는 조치를 할 것.

(3) 충전관에는 안전밸브·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를 설치할 것

3. 그밖에 운반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하는 운반기준에 따를 것

[별표 11]

사고의 통보방법 등 (제17조제1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의 방법·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속보	즉시	
라. 가스시설의 누출 또는 손괴사고(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속보	즉시	
비 고 가스안전전문기관이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의 사고의 통보 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 나. 사고발생 일시
- 다. 사고발생 장소
- 라. 사고내용
- 마. 시설현황
- 바.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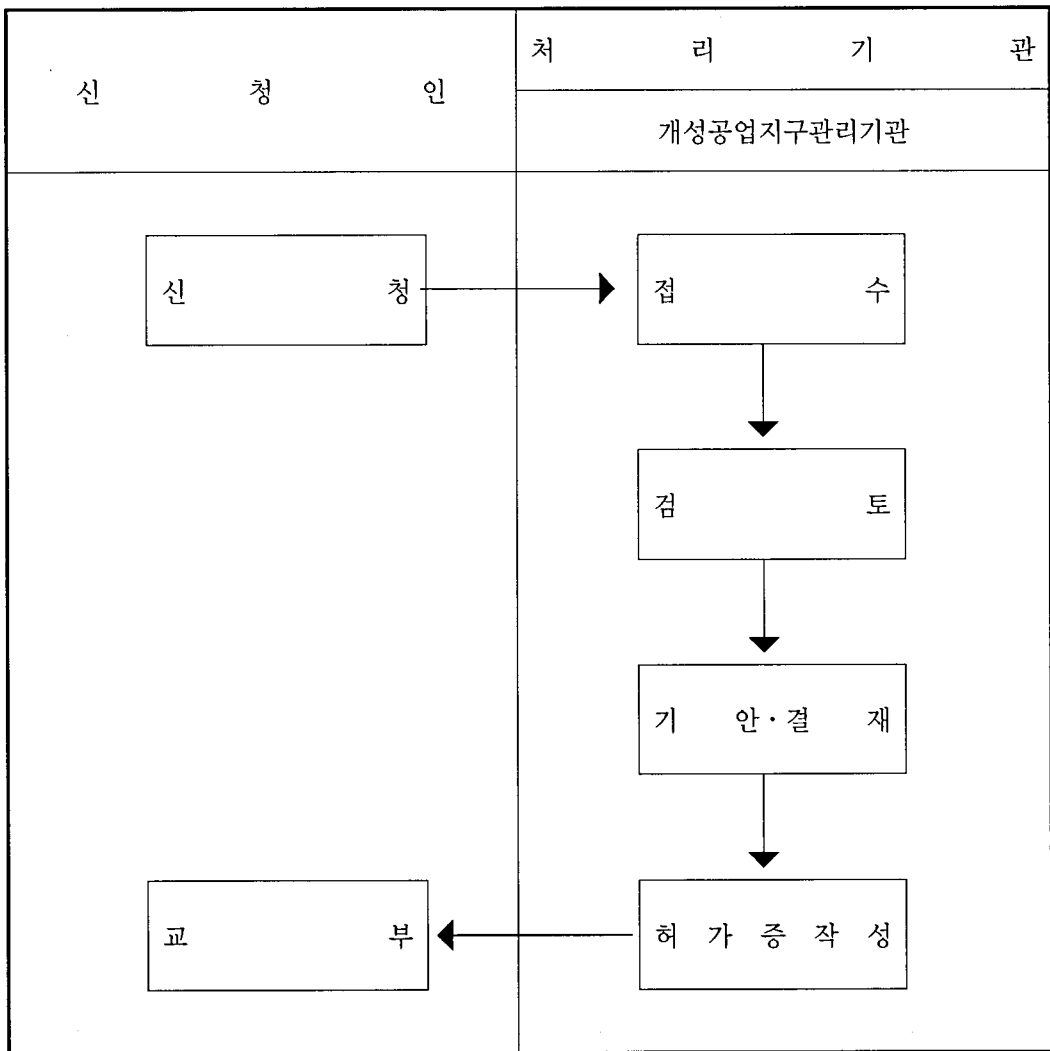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가스공급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스저장시설 <input type="checkbox"/> 냉동시설 <input type="checkbox"/> 제품제조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무 소 소재 지	(전화 :)
④ 사 업 소 소재 지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냉동시설, 가스제품제조시설)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등록증 1부 3. 기술검토서 1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가스안전전문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뒤쪽 참조

허가구분별 수수료

(뒤 쪽)

허 가 구 분	수 수 료
가 스 공 급 시 설	USD 24
가 스 저 장 시 설	
냉 동 시 설	
가 스 제 품 제 조 시 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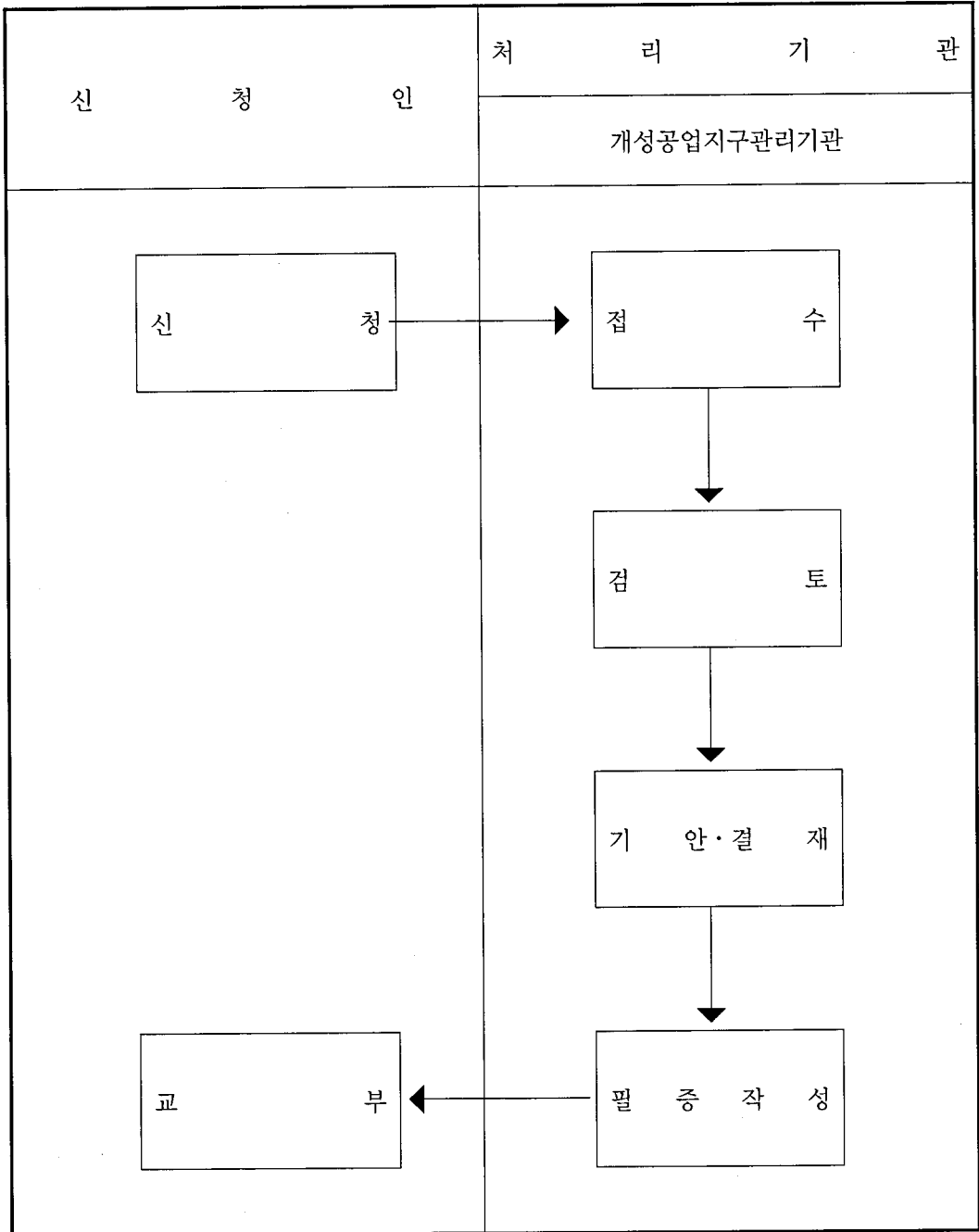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가 스 사 용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상	호				
	②성	명(대 표 자)				
③사 용 처 주 소			(전화 :)			
④가 스 의 종 류			⑤저 장 능 력			
⑥사 용 목 적·방 법						
⑦월간사용량 및 수용정원						
안 전 관 리 자 선 임 내 역						
구 분	성 명	자 격	자격증번호	채용연월일	취업동의인	
⑧안전관리 총괄자						
⑨안전관리 책임자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20px;">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div>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성공업지구 건설안전관리준칙

[제정 2005.1.3]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내에서의 건설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준칙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화, 모사전송등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조 (산업재해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6조 (안전표식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8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

피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별표 1의 건설안전 11대 기본수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9조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10조 (작업중지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작업을 중지한 경우 사업주는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며 관리기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

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다음 각호의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제1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등) ①개성공업지구에서 건축을 착공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조직도, 안전관리자선임계 및 해당 자격증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상의 조치) ①관리기관은 이 준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이 안전미비사항을 지적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미비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은 1차 서면 경고를 하고, 경고가 이행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상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부 칙(2005. 1. 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사 업 개 시 번 호		공 사 현 장 명	
소 재 지			
업 종		생 산 품	
사업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원도급 <input type="checkbox"/> 1차수급 <input type="checkbox"/> 2차수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도급업체명	공사종류
		공 정 료	공사금액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재해발생지역	
인 적 피 해	사망()명, 부상()명	방 호 설 비	
물 적 피 해	천원	개 인보 호장 비	
작 업 형 태		기 인 물	
발 생 형 태		재 해유 발공 정 및 내 용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재 해 방 지 계 획			
* 아래항목은 재해자별로 작성하되 다수발생된 경우 별도서식 추가 기재			
성 명	주민번호	입 사 일	동종근무 근속기간
고 용 형 태		발 생 시 점	
근 무 형 태		근 로 손 실	
직 위	상해종류	상해부위	가 해 물
평상시 수행 작업 공정, 내용			
재 해 당 시 작업공정, 내용			

관계자 확인	사업주	(서명, 인) 근로자 대표 (재해자)	(서명, 인)
--------	-----	----------------------	---------

{별표 1}

건설안전 11대 기본수칙 및 세부실천방안

1) 작업전 안전점검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대상 작업 및 기계·기구 선정 ○ 점검표, 「안전점검중」 표지판 제작 ○ 점검요령·주기 등에 대한 교육 ○ 안전점검 결과 미비사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 안전점검시 안전·보건사항준수

2) 안전통로 확보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정검관리 ○ 안전통로의 채광·조명 시설 설치 ○ 통로의 주요부분의 주요 표시 ○ 통로상부 낙하 위험 부분에 방호 선반 등 낙하 방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 안전통로내 장애물 등 위험상황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3)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지급·착용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합격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관리 ○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보호구 성능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요구시 즉시 교체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받은 보호구 착용 ○ 보호구의 성능 유지·관리 ○ 결함이 있는 경우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요구

4)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설치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 현장 반입시 누전 차단기 부착여부 등 확인 ○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성능 확인치 ○ 전기기계·기구 사용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 노후 불량 전기기계·기구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가 양호한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전기기계·기구의 외함 절연저항 수시 측정 및 확인 ○ 반드시 누전차단기에서 접속 사용 ○ 사용중 이상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요구

5) 등근톱, 용접기 등에 방호장치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선정·구입 ○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후 방호장치 이상여부 확인 ○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요구 ○ 사용 후 현장주변 정리정돈 ○ 방호장치 임의 해체 금지

6) 중량물 낙하 위험구역내 접근금지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 중량물 운반 또는 취급에 따른 전용 운반용구 준비 ○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상황을 지휘 감독 ○ 근로자에게 작업전 안전작업방법에 대하여 교육 ○ 작업위험 구역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전 운반용구의 안전장치 부착 및 정상작동 여부 ○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르며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에 적극동참 ○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 위험구역 접근금지 사항 준수

7) 추락, 낙하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 ○ 낙하위험장소에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 적합한 검정합격 안전방망 선정 및 구입 ○ 안전방망의 훼손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방망 또는 방호선반의 임의 해체 또는 훼손금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요구

8)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 설치·유지 관리 ○ 바닥 개구부에 유동이 없는 견고한 덮개 설치·유지 관리 ○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한 작업발판의 충분한 수량 준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개구부 안전난간, 바닥 개구부 덮개 등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주위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9) 용접시 인화성 물질 격리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 장소 마련 ○ 화기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교육 ○ 화기작업시 표지판 부착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 소화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화기작업 설치 ○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준수 ○ 작업허가서외의 임의 화기작업 금지 ○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10)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면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 ○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수칙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숙지 및 준수 ○ 작업전·작업중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여부 확인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면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11) 작업후 정리정돈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후 정리정돈 및 확인 대상 기계·기구와 작업 선정 ○ 정리정돈 및 확인 요령에 대한 교육 ○ 공구·공구함 등 비치장소 지정 ○ 정리정돈 및 확인 결과 미비사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정돈 요령에 의한 정리정돈 실시 ○ 정리정돈 및 확인 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요구 ○ 정리정돈 및 확인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제정 2005.3.23]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하 ‘노동규정’이라 한다) 및 노동안전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재해”라 함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라 함은 노동재해중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산업사고”라 함은 기업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기업내 종업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기업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내 종업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과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감독통제) ①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노동규정, 세칙 및 이 준칙의 시행을 위하여 기업,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공표) 관리기관은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업지구내 기업의 노동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6조 (노동안전담당일군의 배치 등) ①기업은 노동안전담당일군을 선임하고 세칙에서 정하는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사항의 건의
2. 기업내 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과의 협력
3.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일선공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②기업은 노동안전담당일군의 수, 자격, 임무,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안전규칙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기업은 노동안전담당일군이 제1항에서 정한 직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안전규칙) ①기업은 종업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안전규칙을 작성하여 종업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알려야 한다.

1. 노동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조직과 그 구성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노동안전담당일군의 수, 자격, 임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4. 노동재해 발생보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노동재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기업은 노동안전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노동안전담당일군 또는 종업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업과 종업원은 노동안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유해·위험예방 시설과 조치

제8조 (안전보건 표식의 부착) 기업은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안전시설과 노동재해 예방 조치) 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세칙 제16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준수 이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5. 작업중 종업원의 추락위험,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위험,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위험, 기타 천재지변으로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설과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산업위생보장시설과 직업성질병 예방 조치) ①기업은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세칙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준수 이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설과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작업중지 등) ①기업은 노동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업원을 작업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은 노동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은 관리기

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업은 제2항의 종업원의 작업중지 및 대피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업이 세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절대로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작업장소로서 이 준칙에서 정하는 노동안전시설 또는 산업위생보장시설의 설치나 노동재해 예방 조치 또는 직업성 질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1. 붕괴·전도의 전조현상이나 징후가 외관상 명백히 확인되는 작업
2. 추락방지장치가 미설치된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장소의 끝
3.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프레스·전단기·로올러기·화물용리프트·크레인
4. 장시간 밀폐된 장소안에서의 작업
5. 환기장치 미설치 공간내에서의 중금속·유기용제 다량 취급 작업
6. 기타 노동재해의 위험이 명확히 확인되는 작업

제12조 (기술상의 지침 등) ①관리기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또는 종업원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기업은 당해 기업내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성과 이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내용·시간·방법은 당해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시간은 채용 또는 전환 배치시 8시간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월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내용에 관하여 기업이 이 준칙의 준수를 위하여 종업원에게 알리거나 주지시킨 것도 교육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기업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근거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자체검사) ①기업은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표에서 정하는 주기와 항목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조치결과 포함)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소속 종업원중에 해당 기계·기구 등을 취급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기업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 평가 대상에 제1항의 기계·기구를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화학물질 유해성 주지 등) 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사용·취급·제조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당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사용·취급방법 및 신체에 흡입 또는 접촉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하여 교육 또는 주지시킨 후 관련 내용을 종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 4 장 종업원 보건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제16조 (건강진단) ①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2.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3. 연 취급업무
4. 4알킬연 등 취급업무
5.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업무
6.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7. 코우크스 제조업무
8. 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9.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10. 기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종업원

②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주기와 항목, 방법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종업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의사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업은 제1항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작업전환, 요양,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보장시설과 직업성 질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 (작업환경측정) ①기업은 종업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로서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물질 및 인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농도 또는 그 세기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업은 제1항의 측정결과에 따라 종업원이 건강장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역학조사) ①관리기관은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업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물질 또는 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역학조사 실시결과 같은 종류의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독과 명령 등

제19조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행) ①기업은 종업원의 노동재해 및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업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2. 유해·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유해·위험성 평가) ①기업은 제19조의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험 기계·기구,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유해·위험성 평가방법은 보유설비 및 취급물질, 작업방법, 작업장 내 설비 등의 배치 등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기관의 감독 및 조정 등) ①관리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 및 시행 현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확인결과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 현황이 해당 기업의 노동재해 및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의 수정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 평가의 재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기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노동재해 등의 보고 및 조사 등) ①기업은 노동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피해자 인적사항 포함)
2. 조치사항 및 전망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기업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노동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

업에 대하여 노동재해 발생원인과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 및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기계·기구 등에 의한 신체일부 절단 또는 협착 재해
2.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추락재해
3. 낙하물에 종업원이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
4. 고열물 등에 접촉으로 인한 화상재해
5. 화학물질이나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6. 중대재해
7. 중대산업사고
8. 기타 관리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 수정 또는 유해·위험성 평가 재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⑤기업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공업지구내 중대산업사고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재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 및 작업·사용중지) ①관리기관은 노동재해 및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이 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조사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거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③기업은 제2항의 작업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작업 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기업은 해당 작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는 노동재해 및 직업성 질병 예방조치를 취한 후 관리기관에 명령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종업원은 기업이 노동규정, 세칙 또는 이 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기업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종업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행정제재

- 제25조 (개선명령)** 관리기관은 이 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준칙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은 제25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준칙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금의 부과,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2005. 3. 2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안전기준

1-1. 일반안전기준

1-1-1. 작업장 안전기준

- 1-1-1-1. 작업장 바닥은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 1-1-1-2. 작업장소에 채광, 조명 및 적정조도를 유지할 것
- 1-1-1-3. 추락 또는 전도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덮개를 설치할 것
- 1-1-1-4. 낙하물 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설치할 것

1-1-2. 통로기준

- 1-1-2-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것
- 1-1-2-2. 통로에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할 것

1-1-3. 보호구 관리기준

- 1-1-3-1.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할 것
- 1-1-3-2.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것

1-2. 기계안전기준

1-2-1. 일반안전기준

- 1-2-1-1. 원동기 등 종업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는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1-2-1-2. 기계의 정비 등의 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할 것
- 1-2-1-3. 기계에 설치한 방호장치는 해체 등을 하지말 것

1-2-2. 프레스 안전기준

- 1-2-2-1. 프레스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할 것

1-2-2-2. 금형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안전블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3. 전단기 및 목재가공용기계 안전기준

1-2-3-1. 전단기의 칼날 전단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1-2-3-2. 목재가공용동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것

1-2-3-3. 목재가공용띠톱기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할 것

1-2-4. 원심기 등 안전기준

1-2-4-1. 원심기, 분쇄기 등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

1-2-4-2.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등의 작업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1-2-5. 산업용로봇 안전기준

1-2-5-1. 로봇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1-2-5-2. 로봇의 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운전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6. 보일러 안전기준

1-2-6-1.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등 방호조치를 설치할 것

1-2-7.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안전기준

1-2-7-1.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벨트 등 위험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할 것

1-2-7-2. 압력방출장치 등 방호조치를 설치할 것

1-2-8. 사출성형기 등 안전기준

1-2-8-1. 사출성형기 등에는 게이트가드 등을 설치할 것

1-2-8-2. 히터 등의 감전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할 것

1-2-8-3. 연삭기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

1-2-9. 크레인 안전기준

1-2-9-1.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1-2-9-2. 설치된 방호장치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해 둘 것

1-2-10. 리프트 안전기준

- 1-2-10-1.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 1-2-10-2. 탑승장에 안전을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1-2-11. 승강기 안전기준

- 1-2-11-1.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1-2-12.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기준

- 1-2-12-1. 심하게 변형된 로프 등은 사용을 금지할 것

1-2-13. 지게차 안전기준

- 1-2-13-1. 화물적재시 편하중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1-2-13-2. 전조등, 헤드가드 등을 설치할 것

1-2-14. 컨베이어 안전기준

- 1-2-14-1.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 1-2-14-2. 운전중인 컨베이어에 탑승하거나 컨베이어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

1-2-15. 건설기계 등의 안전기준

- 1-2-15-1. 차량계건설기계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설치할 것
- 1-2-15-2. 차량계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두는 등 안전조치를 할 것
- 1-2-15-3. 향타기 또는 향발기의 도괴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화재·폭발 재해예방기준

1-3-1. 위험물 취급 등의 안전기준

- 1-3-1-1. 인화성 물질의 증기 등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통풍 등의 조치를 할 것

1-3-1-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 등의 작업시에는 환기 등의 조치를 할 것

1-3-1-3.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

1-3-1-4. 화재·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것

1-3-2. 화학설비 등의 안전기준

1-3-2-1. 배관의 플랜지 등에는 가스켓을 사용하여 상호 밀착시킬 것

1-3-2-2. 안전밸브의 전, 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1-3-2-3.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등을 설치할 것

1-3-2-4. 인화성 액체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등을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1-3-2-5.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할 것

1-3-3. 건조설비의 안전기준

1-3-3-1. 위험물 건조설비에는 직화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1-3-4.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준

1-3-4-1. 아세틸렌용접장치에는 취관 등에 안전기를 설치할 것

1-4. 전기안전기준

1-4-1. 충전부 방호기준

1-4-1-1.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는 방호조치 할 것

1-4-2. 접지기준

1-4-2-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는 접지를 실시할 것

1-4-3.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1-4-3-1.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등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1-4-4.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설치기준

1-4-4-1.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1-4-5. 배선 및 이동전선의 안전기준

1-4-5-1. 임시사용 전등 등에는 보호망을 부착할 것

1-4-5-2. 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1-4-6. 정전작업 안전기준

1-4-6-1. 정전작업시 개로된 전로에는 통전금지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할 것

1-4-7.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안전기준

1-4-7-1. 저·고압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시에는 절연보호구 등 안전조치를 할 것

1-4-7-2. 특별고압 활선작업시에는 활선작업용 기구 등을 사용할 것

1-4-7-3. 특별고압 활선근접작업시에는 접근한계거리 유지 등의 조치를 할 것

1-4-8. 정전기 안전기준

1-4-8-1.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1-4-8-2. 화약류 등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2. 보건기준

2-1. 일반적 조치기준

2-1-1. 일반기준

2-1-1-1. 종업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할 것

2-1-1-2.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 할 것

- 2-1-1-3. 상시 작업종사 종업원을 위한 작업면의 조도는 적절하게 유지 할 것
- 2-1-1-4.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할 것
- 2-1-1-5.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 할 것
- 2-1-1-6.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게시 할 것

2-2. 유해물질취급 작업기준

2-2-1. 설비기준

- 2-2-1-1. 유해물질 취급, 발생하는 실내 작업장소에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할 것
- 2-2-1-2. 발산 면적이 넓거나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작업장소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 할 것
- 2-2-1-3.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외기로 향하도록 설치하여 배출되는 분진 등 유해인자가 작업장으로 재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2-1-4. 환기장치는 작업중에는 정상적으로 가동 할 것

2-2-2. 관리기준

- 2-2-2-1. 환기장치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2-2-2-2.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장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 할 것
 - 2-2-2-3. 유해물질을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 할 것
 - 2-2-2-4. 유해물질 취급 종업원이 긴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 할 것
 - 2-2-2-5. 유해물질 취급 종업원에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 할 것
 - 2-2-2-6. 유해물질 보관 용기 또는 포장에는 유해성을 나타내는 경고표지를 부착 할 것
-

2-3. 소음 작업기준

2-3-1. 설비 기준

- 2-3-1-1. 강렬한 소음 작업장소에는 설비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의 소음감소 조치를 할 것
- 2-3-1-2.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 할 것

2-3-2. 관리기준

- 2-3-2-1. 소음,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2-3-2-2. 소음이 90dB(A)를 초과하는 작업장의 종업원에게는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 할 것

2-4. 밀폐공간 작업기준

2-4-1. 설비기준

- 2-4-1-1. 밀폐공간작업시에는 적절한 공기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를 실시할 것
- 2-4-1-2.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시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않도록 할 것

2-4-2. 관리기준

- 2-4-2-1. 작업장 출입시 인원을 점검하고 관계종업원의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할 것
- 2-4-2-2. 작업장 내·외부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 및 대피용 기구를 비치 할 것
- 2-4-2-3.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작업종업원에게 교육 할 것

2-5. 고열·한랭 작업기준

2-5-1. 설비기준

- 2-5-1-1.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온·습도 장치를 설치 할 것

2-5-1-2. 고열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격리하는 등 조치 할 것

2-5-2. 관리기준

2-5-2-1. 종업원이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 할 것

2-6. 근골격계질환예방 작업기준

2-6-1. 설비기준

2-6-1-1. 근골격계질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 설비 등을 설치 할 것

2-6-1-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 할 것

2-6-2. 관리기준

2-6-2-1. 중량물 취급시의 올바른 작업자세에 대하여 주지시킬 것

3. 건설안전기준

3-1. 일반기준

3-1-1. 일반사항

3-1-1-1. 작업장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리정돈 할 것

3-1-1-2. 작업장에는 적절한 조명과 배수시설, 환기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할 것

3-1-1-3.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3-1-2. 통로 및 가설도로

3-1-2-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것

3-1-2-2. 가설통로는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1-2-3. 사다리식 통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할 것

3-1-2-4. 공사용 가설도로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할 것

3-1-3. 고소 작업장

3-1-3-1.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과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

3-1-3-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것.

3-1-3-3. 방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것

3-1-4. 붕괴, 낙하위험 작업장

3-1-4-1. 굴착지반의 경사는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경사로 할 것

3-1-4-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3-1-5. 보호구

3-1-5-1.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3-2.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안전기준

3-2-1. 조립

3-2-1-1.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3-2-1-2.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할 때에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해 작업할 것

3-2-1-3. 동바리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고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2-1-4.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수평연결재 등을 설치하여 수평변위를 방지할 것

3-2-2. 콘크리트 타설

3-2-2-1. 콘크리트 타설 작업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

3-2-2-2. 펌프카의 붐이 주변전선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3. 비계 안전기준

3-3-1. 조립

3-3-1-1. 비계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3-3-1-2.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3-3-1-3. 비계 재료의 연결·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3-2. 강관비계

3-3-2-1. 비계기둥 하부에는 침하방지조치를 할 것

3-3-2-2. 강관비계의 벽이음은 수직, 수평 각 5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3-3-2-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3-2-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3-3-2-5.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3-2-6.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3-3. 강관틀비계

3-3-3-1.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

3-3-3-2. 강관틀비계는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설치할 것

3-3-4. 달비계 및 달대비계

3-3-4-1.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

3-3-4-2. 추락에 의한 종업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3-5. 말 비계 및 이동식비계

3-3-5-1.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

3-3-5-2. 이동식비계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썩기 등을 설치하고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할 것

3.4. 굴착작업 안전기준

3-4-1. 굴착작업

3-4-1-1. 굴착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에 대하여 미리 조사를 실시할 것

3-4-1-2.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를 확보할 것

3-4-1-3.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위험이 있는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종업원의 출입금지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3-4-1-4. 굴착사면에는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예방 조치를 할 것

3-4-1-5. 매설물 등이 손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4-1-6. 흙막이지보공 조립시 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도에 의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4-1-7.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4-1-8. 굴착기계 및 운반기계 등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할 것

3-4-2. 발파작업

- 3-4-2-1. 화약류의 관리, 천공, 장약, 점화 등 발파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3-4-2-2. 벼락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킬 것

3-5. 터널작업 안전기준

3-5-1. 터널굴착작업

- 3-5-1-1. 작업전 지형, 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할 것
- 3-5-1-2. 터널작업시 가연성 가스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3-5-1-3. 터널작업시 낙반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5-1-4. 터널 입구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흠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5-1-5. 터널내부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시계를 유지할 것
- 3-5-1-6. 터널내부에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연성물질 관리, 점화물질의 휴대금지,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3-5-1-7.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벨 등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3-5-2. 터널지보공

- 3-5-2-1.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할 것
- 3-5-2-2. 지반상태와 굴착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지보공을 설치할 것
- 3-5-2-3. 터널지보공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할 것

3-5-3. 터널거푸집동바리

- 3-5-3-1. 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는 변형, 부식,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 3-5-3-2. 터널 거푸집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것

3-6. 철골작업 안전기준

3-6-1. 철골조립

- 3-6-1-1. 철골조립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기 전에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하지 말 것
- 3-6-1-2. 수직방향으로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할 것
- 3-6-1-3. 악천후시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할 것

3-6-2. 중량물 취급

- 3-6-2-1.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양중기·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할 것
- 3-6-2-2. 양중기로 철골, 철근 등 장척의 재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2점 이상을 묶어서 운반할 것

[별표 2]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자체검사 대상·주기 및 내용

기계·기구 명	주기	내 용
1. 동력프레스	1년에 1회 이상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그밖의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다. 클러치·브레이크 그밖의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라.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상태의 이상유무 바. 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그밖의 유압(流壓)제품의 이상유무 사. 전자밸브·유압펌프 그밖의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아. 리미트스위치·릴레이 그밖의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자. 배선·퓨즈·배전반·조작반 등 전기계통 이상유무
2. 전단기	1년에 1회 이상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다.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라.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바.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 원심기	1년에 1회 이상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회전체의 이상유무 다. 주축 베어링의 이상유무 라.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마. 외함(外函)의 이상유무 바.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부분의 볼트·너트의 풀림유무
4. 보일러	6월에 1회 이상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다.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라. 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1) 압력방출장치의 토출(吐出)상태 (2) 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3)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제어 설비의 작동상태 (4) 화염검출기와 그밖의 제어장치의 기능상태 마. 밸브의 정상작동상태
5. 압력용기 등	6월에 1회 이상	가. 압력용기 등의 본체의 상태 나.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에 의하여 토출 시험을 마친 압력방출장치가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여부 다. 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공기압축기에 한한다) 라. 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마. 그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유무

기계·기구 명	주기	내 용
6. 양중기(승강기 및 차량 정비용 간이 리프트를 제외한다)	6월에 1회 이상(단, 리프트는 3월에 1회 이상)	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 손상유무 라. 혹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마. 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제어반의 이상유무
7. 승강기	1월에 1회 이상	가.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다. 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 라. 가이드레일의 상태 마.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8.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2년에 1회 이상	가. 그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나.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변형 및 부식의 유무 다.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라.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그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마.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攪拌)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바.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9.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년에 1회 이상	가.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틀 등의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다. 액체연료 또는 가연성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 있어서 연소실 그밖의 점화하는 부분의 환기를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라. 감시창·출입구·배기구 등 개구부의 이상유무 마. 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바.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10.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년에 1회 이상	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11.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년에 1회 이상	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12. 국소배기장치	1년에 1회 이상	가. 후드의 구조 및 설치 위치, 성능의 적정성 나. 닥트의 구조 및 설치 위치, 성능의 적정성 다. 배풍기의 적정 작동 유무 라. 배기구의 구조 및 설치 위치, 성능의 적정성

(별지 제1호서식)

노동재해조사표

기업명		소재지				
종업원수	업종		생산품			
발생일시	년월일	발생부서		인적피해	사망()명 부상()명	
물적피해	천원	조업정지일		작업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복수()명	
발생형태		기인물	재해유발공정 및 공정작업내용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재해자 개요 <input type="checkbox"/> 남측 <input type="checkbox"/> 북측	성명	생년월일		동종업무 근속기간		
	발생 시점	<input type="checkbox"/> 정규작업 <input type="checkbox"/> 식사·휴식 <input type="checkbox"/> 작업전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휴일근무 <input type="checkbox"/> 시간외 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위	
	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가해물	
평상시 작업 수행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시 작업 수행공정 및 내용						

※ 기재 요령

1. 종업원수 : 정규, 일용·임시, 가족종업원, 훈련생 등 노임을 받은 전년도 모든 종업원의 월평균을 기재함.
2. 재해발생지역(부서) : 재해가 최초로 발생된 지역·장소(부서)를 기재함.
 ※ 근접작업장의 사고로 인한 경우 재해자의 작업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발생 근접작업장을 기재함.
3. 인적피해, 물적피해, 조업정지 : 동일재해로 야기된 당해 사업장 현황을 기재함(동시에 야기된 다른 사업장 현황은 제외)
4. 작업형태 : 2인 1조의 작업인 경우에도, 재해자의 작업장소가 단독작업장소가 될 수 있음
 【예 : 2인 1조로 승강기를 이용 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5. 발생형태 : 재해가 발생한 형태 또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을 말함
 【예 : 추락, 낙하·비래, 협착, 전도·전복, 충돌·접촉, 이상온도노출, 유해위험물질노출, 화재·폭발, 감전 등】
6. 기인물(재해원인물체·물질) : 재해 발생을 일으킨 직접원인이 된 설비, 시설, 물질 등으로 기인물을 말함.
 【예 : 프레스, 크레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 등】
7. 재해유발공정 및 내용
 - 가. 작업공정 : 재해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작업공정(재해자 작업공정이 아닌 동료 작업공정일 수 있음)을 기재함.
 【예 : 용해공정, 용접공정, 성형공정, 절단공정, 운반공정, 반응고정, 기계·건축물의 설치·보수공정 등】
 - 나. 작업내용 : 재해발생 작업공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작업수행 내용 또는 행위를 기재함.
 【예 : 재료가공물의 투입·취출, 조립·연결·해체, 기계·차량 등 운전·조작, 상·하역, 적재, 휴식, 단순이동중 등】
8. 동종업무근속기간 : 과거 타 회사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업무 근무경력)

까지 합하여 기재함(질병은 관련작업 근무기간)

9. 직업(직위) : 재해당시 수행하던 업무 등을 기술하지 말고 평소에 수행하는 정규 직업(직종)과 직위를 기재함.
 - 가. 직업(직종) : 사무원, 전기공, 배관공, 벽돌공, 미장공, 단열공, 철근·콘크리트공, 목공, 용접공, 기계설비·조립공, 조경원, 지게차운전기사, 건물관리원, 청소관련단종업원, 무용가, 요리사 등
 - 나. 직위 : 조원, 조장, 반장, 총무, 직장장 등
10. 상해종류(질병명) :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상해형태를 기재함.

【예 :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11. 상해부위(질병부위) :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부위를 기재함.

【예 :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두 곳 이상이면 상해정도가 심한 것부터 기재함.
12. 가해물 :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기계, 물체 또는 물질을 말함 (재해원인 물체·물질 “예” 참조)
13.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 재해자가 평소에 맡고 있거나 수행하던 업무 및 작업공정을 기재함

※ 운전, 공사 등 이동, 잦은 변경이 되는 불특정한 장소의 업무라도 동 업무형태가 정규적인 업무인 경우 평소업무로 규정함
14.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 재해당시 재해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던 업무 또는 상태를 기재함

※ 동료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재해유발 작업공정, 내용이 아닐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제정 2005.1.5]

[전문 개정 2007.2.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 및 인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내 건축물, 차량,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집회장·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6. “제조소 등”이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말한다.
7. “주유취급소”라 함은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 2 장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①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방대를 운영한다.

②관리기관은 필요시, 남북측의 소방전문인력 및 설비의 파견을 받아 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관리기관 직원 중에서 소방업무를 전담 지휘·관리할 자를 지정

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이 준칙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 및 소방대장은 개성공업지구를 관할하는 관리기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3 장 소방시설 설치

제4조 (소방시설의 설치) ①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화설비

가.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나.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판매 및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다.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로서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라. 물분무등소화설비

-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

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기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통신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각의 소방대상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인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바. 소화설비의 전원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또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의 공급을 위한 자가발전 또는 축전지설비는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소화설비의 수원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의 소화설비의 수원은 유효수량(화재진압 용도로 사용되는 소화용수)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소화설비,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른 펌프 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제곱미터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시각경보기

- 공업지구내의 공장 또는 소방대상물(소방대상물 중 차량을 제외한다)마다 설치할 것
- 소방대상물의 복도·통로·수신반 등이 설치되는 장소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설비

가. 공업지구내의 공장 또는 소방대상물(소방대상물 중 차량을 제외한다)마다 각각 설치할 것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소화용수시설은 소방대상건축물과 수평거리로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라. 소화용수시설별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수도소화전
 - 소화용수시설의 상수도소화전은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65밀리미터)은 소방용 호스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상수도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용이한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 급수탑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저수조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줄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다만, 시범단지 단계에서는 관리기관이 소화용수시설별 설치기준은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것

②관리기관 및 소방대는 건축관련 인허가시 제1항의 기준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시설 설치 면제)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또는 방화문·자동방화셔틀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이를 면제한다.

②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제 4 장 소방응원

제7조 (소방응원) ①관리기관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남·북측의 소방관련 부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관리기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북측의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제8조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①관계인은 공장 등의 소방대상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을 받은 소방대상물은 정기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②관리기관은 공장 등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 점검(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 및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③정기점검은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관계인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점검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서 요구하는 지적사항을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조치) 관리기관은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 화재 예방에 필요하거나, 화재시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대상물을 개수·이전·제거·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소방시설등의 안전관리

제11조 (방화관리자 선임)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방화관리

자를 방화관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방화관리) ①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의 방화관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13조 (관계인의 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관계인의 자체 훈련이나 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소방활동

제14조 (화재 등의 통지) ①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관리기관 또는 소방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공업지구 내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사전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

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경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18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 또는 관리기관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관리기관 이사장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 장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기준

제19조 (위험물 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주유취급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 마다 관리기관 이사장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별표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리기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이사장이 인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의 선임·해

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술자격자의 자격증(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2.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술자격자의 자격증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
3. 소방 경력증명서(경력이 3년 이상인 경력자에 한한다)

제 9 장 소방시설의 허가·착공·완공 및 감리

제21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대장(소방업무를 전담 지휘·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담당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시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대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적당하게 설치된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⑤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건축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등의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제22조 (착공신고) ①공사업자가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소방대상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소방대상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3.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③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시공자, 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소방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소방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이 있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하도급 통지서 사본

제23조 (완공신고) ①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기관 또는 소방대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공장시설,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소방대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소방대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①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소방준칙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 8.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주공사감리 대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설비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일반공사감리 대상

가.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25조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관계인이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기관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 다만,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이사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⑤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배치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고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5.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경우 : 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제26조 (감리결과와 통보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감리결과를 건축주·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리기관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별 칙

제27조 (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별칙을 가할 수 있다. 별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제4조의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2항의 소방시설등의 정기점검을 관리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한 자
3.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자
4. 제10조의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6. 제13조제1항의 관계인의 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자

제28조 (양벌규정) 기업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그 관계인에 대하여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9조 (변상금) 제14조 제1호의 행위 기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시설 복구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제19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 모든 종류의 위험물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모든 종류의 위험물
	위험물관리기능사	-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증에 기재된 종류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아세톤, 휘발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 알코올류(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에서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변성알코올 포함)) - 등유, 경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다만,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다만,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방화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방화관리자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연면적	층, m ² ,	지상 바닥면적	층 m ²	
방 화 관 리 자	선 임	성 명		방문증명서 번호		
		주 소	(전화 :)			
		직 위		선 임 일 자		
	해 임	성 명		방문증명서 번호		
		주 소	(전화 :)			
		선 임 일 자		해 임 사 유		
소방시설 관리 주요 경력 (필요시 별지 기재 가능)						
<p>소방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귀하</p>						
구비서류 1. 방문증명서 사본 1부 2. 소방시설 관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수신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발신 :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소방대상물	소재지					
	명칭					
	용도					
	건물구조	조 바닥면적	지붕 m ²	/층 연면적	동 m ²	
점검기간						
소방시설등의 종류						
특기사항						

점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1부. 끝.

(뒤쪽)

점 검 결 과 지 적 내 역 서			
① 소방대상물상호(명칭)		② 소 유 자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			
④ 점 검 결 과			
⑤ 점검자(직위 및 성명)			
⑥ 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 방 기 구			
경 보 설 비			
소 화 설 비			
피 난 설 비			
소 화 용 수 설 비			
소 화 활 동 설 비			
화 재 취 약 시 설			
그 밖의 소방시설등			

[별지 제3호서식]

소방계획서					처리기간	
					7일	
방화관리 대상물	상호(성명)				방화관리자	
	소재지		(전화 :)		수용 인원	
	구조	공장동	지하 연면적	층 m ²	지상 바닥면적	층 m ²
		사무동	지하 연면적	층 m ²	지상 바닥면적	층 m ²
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전기시설			
	방화시설		기타 위험물 시설			
화재 예방	자체점검계획					
	진압대책					
	소방·피난·방 화점검 및 정비 계획					
	불연재 등 설비 유지·관리 계획					
소방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소방대상물별 사진 1부 2.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사본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년월일 : . .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관계인	성명 (업체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방화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직위		방문증명서 번호	
훈련·교육일지				
훈련·교육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교육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교육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교육
훈련 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육자	(서명 또는 인)
피교육자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 작성요령 · 관리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훈련·교육 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상호(성명)		용도구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 :)				
감리대상 소방시설 의 종류				감리구분	<input type="checkbox"/> 상주감리 <input type="checkbox"/> 일반감리	
소방공사 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상호 (기관명)		등록번호	제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책임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구분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소방준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하는 책임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3.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 소방시설공사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상호(명칭)		용도구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 :)				
	소방시설공 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소방시설 의 종류						
책임시공 관리자	성명		주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교부년월일		자격증 번호		
		착공일		완공일		
공사종류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input type="checkbox"/> 개설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정비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공사					
변경사항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소방준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변경신고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3.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책임시공 관리하는 주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수첩 사본 4.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별지 제7호서식]

(1 쪽)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		
사업소	명칭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선임된 안전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무상의 직위				
	자격의 종류				
	자격증번호 및 취득 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선임 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관리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
	해임(퇴직)사유				
소방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선임신고서에 한합니다) : 2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4.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연월일		없음	

(2 쪽)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위험물 현황	유 별	품 명	수 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위험물 현황	유 별	품 명	수 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위험물 현황	유 별	품 명	수 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위험물 현황	유 별	품 명	수 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위험물 현황	유 별	품 명	수 량	지정수량의 배수

[별지 제8호서식]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취급소					처리기간
					5일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 지역등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 ·취급방법의 개요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p>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주 소 (전화) 성 명 서명(또는 인)</p>					
첨부서류 : 2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p>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p> <p>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p> <p>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기재합니다.</p> <p>4.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p>					
※ 접수란		※ 경과란		※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연월일		없음	

(2 쪽)

- 비고 1. 이 설치허가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용도지역등란에는 개성공업지구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준칙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기재합니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5.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위치, 구조, 위험물지정수량 등을 기입합니다.
 6.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처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중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정 2005.6.2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건축물의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2.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 밖의 전기설비의 총 합체를 말한다.
6. “개폐소”라 함은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송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8.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9.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10.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11.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12.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13.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 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 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4. “특고압”이라 함은 7천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제3조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별표 1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관리기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별표 1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 받은 사항중 이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발 총계획에 기반시설로 반영되어 시행되는 공사는 인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의한 “이사장이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제3조제3항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설비안전검사 및 전기설비안전점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안전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설비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결과서를 전기공급자에게 제출하여 전기공급자가 발행하는 전기공급 확인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전기설비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안전검사·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용접부에 대한 전기설비안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어빈·압력용기·액화가스 저장소·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다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써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에

-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공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공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공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외의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공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에 있어서는 제공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전기설비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전기설비안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⑤전기설비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설비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이사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설계도면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제8조 (정기안전검사)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표 5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정기안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기안전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안전검

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5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안전전문기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전기안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당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11조 (검사결과와 통지 등) ①검사기관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

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제13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
 -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

제1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제13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선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 및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등) ①제6조 및 제8조,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이사장이 지정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2005. 6.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제3조, 제4조 관련)

공사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1. 변전소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송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3. 배전선로 (공동구 또는 전력구에 한한다)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설치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공사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4. 전기수용설비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 용설비의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 용설비의 설치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의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 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의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 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별표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시 인가사항 (제4조제2항 관련)

공 사 의 종 류		변경시 인가를 요하는 것
가. 공통사항		가. 발전소 준공시기
1. 변전소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송전선로	(가)전선로 (나)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3. 배전선로	(가)전선로 (나)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별표 3]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 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대상기관	서 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 · 신고	제3조제1항 전단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별지 제1호 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제3조제2항 전단		별지 제2호 서식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또는 별표 1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변경인가 신청· 변경신고	제3조제1항 후단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별지 제1호 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바. 변경이유서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3조제2항 후단		별지 제2호 서식	가. 설계도면 나.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3조제2항 후단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비 고

1. 변경공사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첨부서류중 나목의 서류를,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중 나목 내지 마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기설비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신청 또는 신고부분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검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중 마목의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하여야 할 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변전소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기재할 것) (2) 변전소의 출력	(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가. 변압기	(1) 종류·용량·전압(1차·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하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 및 탭수를 기재할 것)·상·결선법 및 냉각법(상용 및 예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상 단락용량 계산서
나.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조상설비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제어장치	제어방법	
2. 송전선로	(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기재할 것)	(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가. 전선로	(1) 길이(가공·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2) 전기방식·중성점접지방식·회선수(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회선수도 기재할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굵기 및 1회선당 가닥수 (4)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전선상호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가공지선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가공·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경과지(동·리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 기타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 5천분의 1(시가지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 한한다)

<p>나. 개폐소</p>	<p>개폐소의 위치(동·리 까지 기재할 것)</p>	<p>주요설비의 배치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p>
<p>3. 배전선로(공 동구 및 전력 구에 한한다)</p>	<p>(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p>	<p>(1) 배전선로 계통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p>
<p>가. 전선로</p>	<p>(1) 길이 (2) 전기방식·중성점 접지방식·회선수 및 재폐로방식 (3) 전선의 종류·굵기 및 1회선당의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p>	<p>(1) 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동·리 까지 표시할 것)와 전선로에서 좌우 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 전선로·철도·도로·건축물 기타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부설도</p>
<p>나. 부대설비</p>		<p>조명·환기·배수설비의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p>
<p>4. 수용설비</p>	<p>(1) 수용설비의 위치(동·리까지 기재하고 사업자의 명칭도 기재할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1) 주요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p>
<p>가. 차단기</p>	<p>(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의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에 한한다)</p>
<p>나. 변압기</p>	<p>(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의한다.</p>
<p>다. 전선로</p>	<p>(1) 가공·옥축·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 접지방식 (3)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상호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탍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p>	<p>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p>

[별표 4]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시기 (제7조제4항 관련)

1. 송·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안에 시설된 배전설비에 한함)에 관한 공사가. 지중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 나. 송·변전 및 배전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다.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2.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 가.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지중 전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 나. 전기수용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다.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3. 제2호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5]

전기안전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발전기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 및 (2)의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보일러·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	2년 이내	
(3) 수차·발전기계통	4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월전후	전기설비로서 구내 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배전선로가 포함된다.

비고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중에 실시한다.

[별표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 인력
1. 송·변전 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동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3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2. 전기 수용설비	(1) 모든 전기수용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비 고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별표 7)

안 전 검 사 수 수 료

1.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기본료	kw당 요금		비고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용설비	저압	80,000		335	○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기 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 수용설비 용량이 100,000kw 를 초과시 100,000kw까지 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kw까지	255,000		566		
		고압 300kw초과	431,000	500kw까지 501~1,000kw미만 1,000kw이상	391 238 128		
	발전설비	300kw까지	77,000				163
		300kw초과	253,000	500kw까지	151		
				501~1,000kw까지	94		
				1,001~5,000kw까지	74		
				5,001~10,000kw까지 10,000kw초과	40 6		
	50,000kw초과	3,311,000	100,000kw까지 100,000kw초과	29 14			
	전기설비 정기 안전검사	수용설비	저압	81,000			335
고압 300kw까지			254,000		506		
고압 300kw초과			391,000	500kw까지	391		
				501~1,000kw까지 1,001~5,000kw까지 5,001~10,000kw까지 10,000kw초과	239 113 40 18		
발전설비		50,000kw까지	33,000	1,000kw까지 1,000kw초과	56 6		
		50,000kw초과	3,121,000	100,000kw까지 100,000kw초과	23 13		

*수용가 요청으로 야간(22:00~익일08:00), 공휴일, 토요일에 검사시는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적용.

*재검사 -전기안전검사 : 검사수수료의 기본료의 1/2 적용
 -정기안전검사 : 수전설비 : 검사수수료의 기본료의 1/2 적용
 발전설비 : 검사수수료의 1/2 적용

2.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저압	49kw까지	32,350	1. 선납 수용가(당월 수수료 포함)할인 ○ 3개월 이상 : 2% ○ 6개월 이상 : 3% ○ 12개월 이상 : 5%
	50~99kw까지	36,950	
	100kw이상	42,700	
고압	99kw까지	43,900	2. 장기계약 수용가 할인 ○ 15 ~ 19년 : 3% ○ 20 ~ 24년 : 4% ○ 25년 이상 : 5%
	100~199kw까지	56,200	
	200~299kw까지	62,600	
	300~399kw까지	90,550	3. 다수계약 수용가 할인 ○ 10 ~ 19년 : 3% ○ 20 ~ 29년 : 4% ○ 30년 이상 : 5%
	400~499kw까지	105,900	
	500~599kw까지	143,350	
	600~699kw까지	180,150	
	700~799kw까지	214,850	
	800~899kw까지	270,050	
	900~999kw까지	309,650	
1,000~1,199kw까지	405,150	4. 자동이체 수용가 1% 할인	
1,200~1,499kw까지	486,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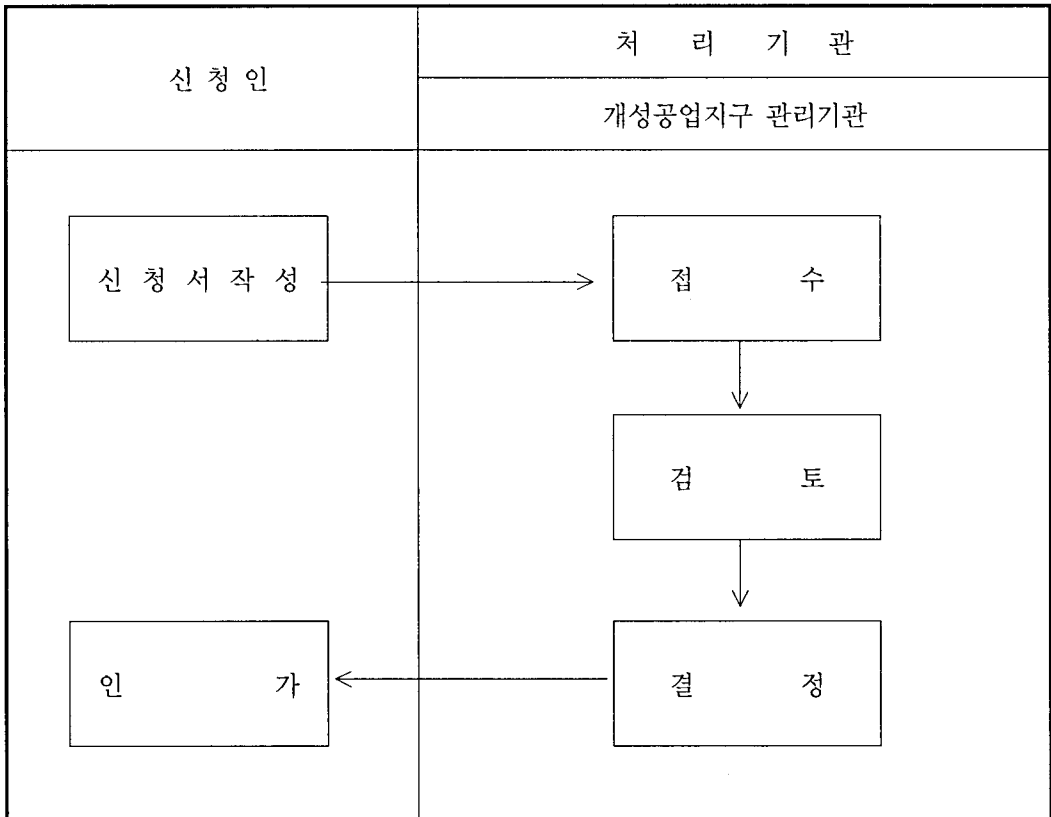
※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범위내에서 수용가와 관리기관간에 협의 결정

(뒤 쪽)

※ 첨부요령

1. 변경공사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중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중 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기설비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신청부분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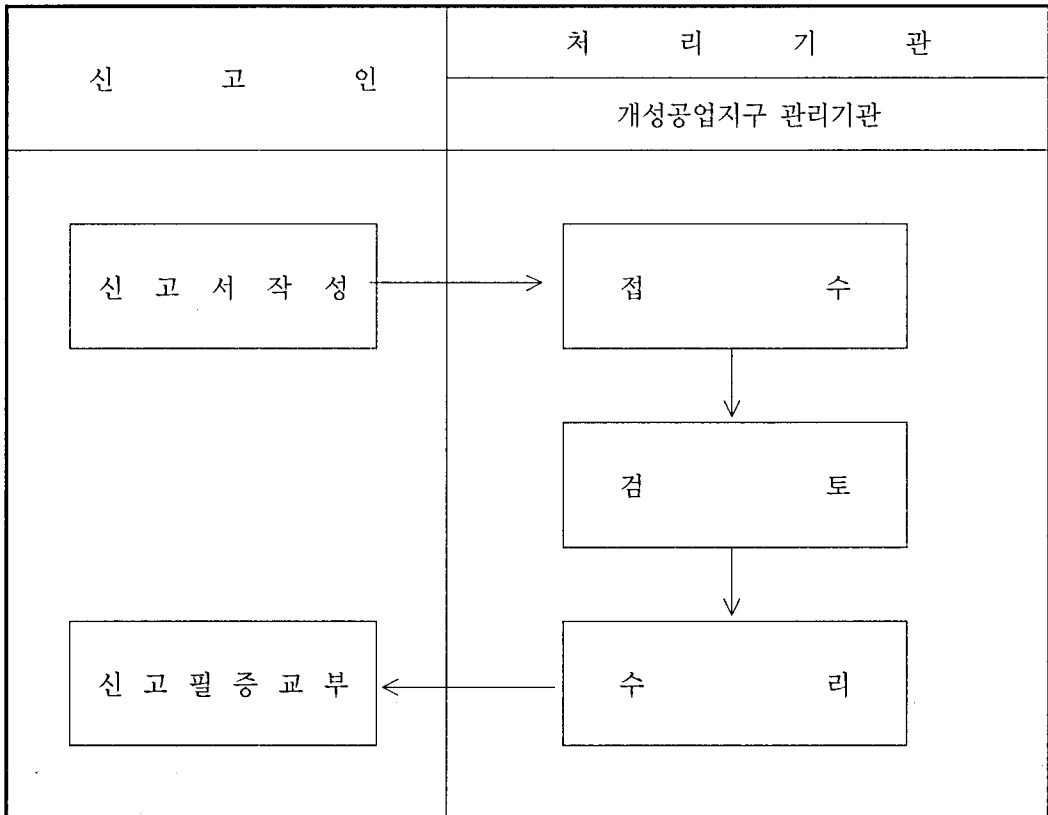


(뒤 쪽)

※ 첨부요령

1. 변경공사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중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중 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기설비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부분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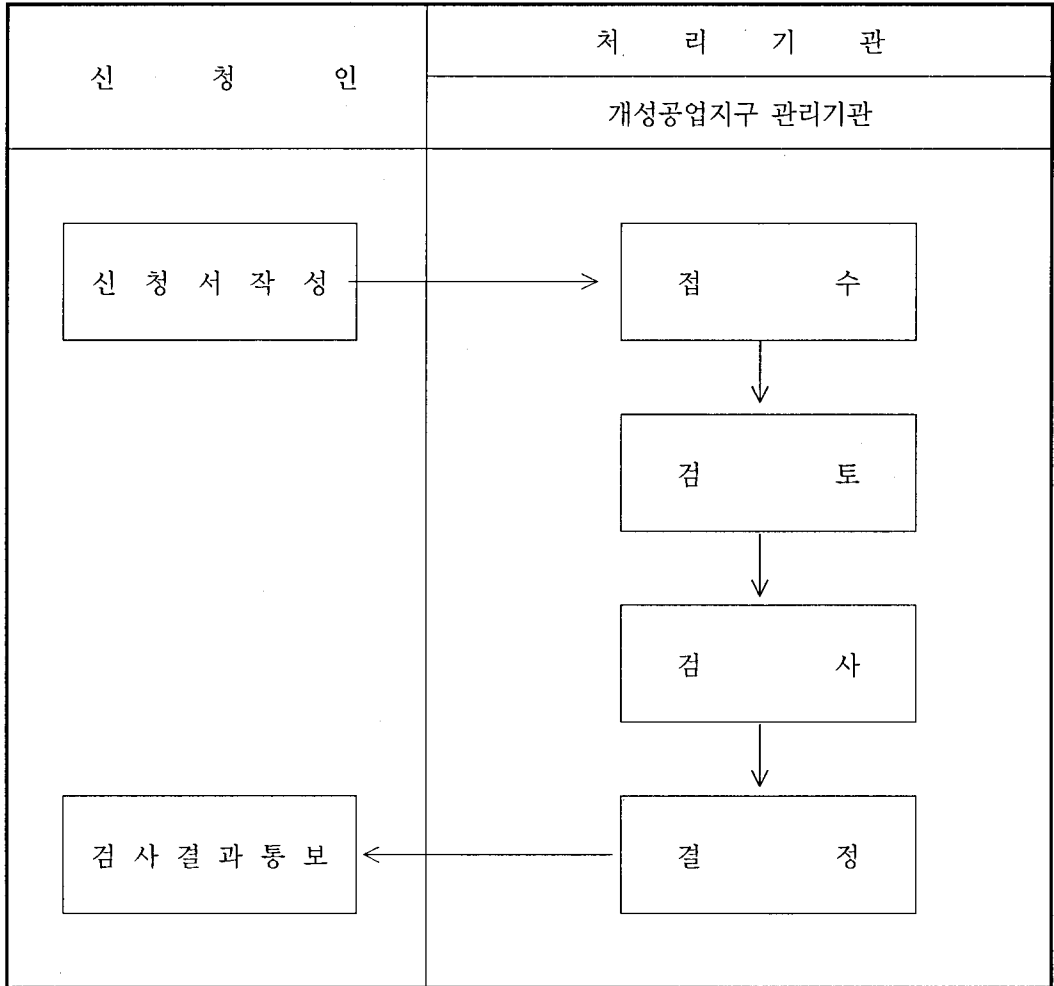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전 기 안 전 검 사 신 청 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공사	대표자성명	(인)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 사 받 을 공 사 공 정				
검 사 희 망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용 개 시 예 정 년 월 일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 하</p>				
※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를 제외합니다) 1부 1의2. 설계도면 및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 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의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부 ※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기재합니다.				수 수 료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 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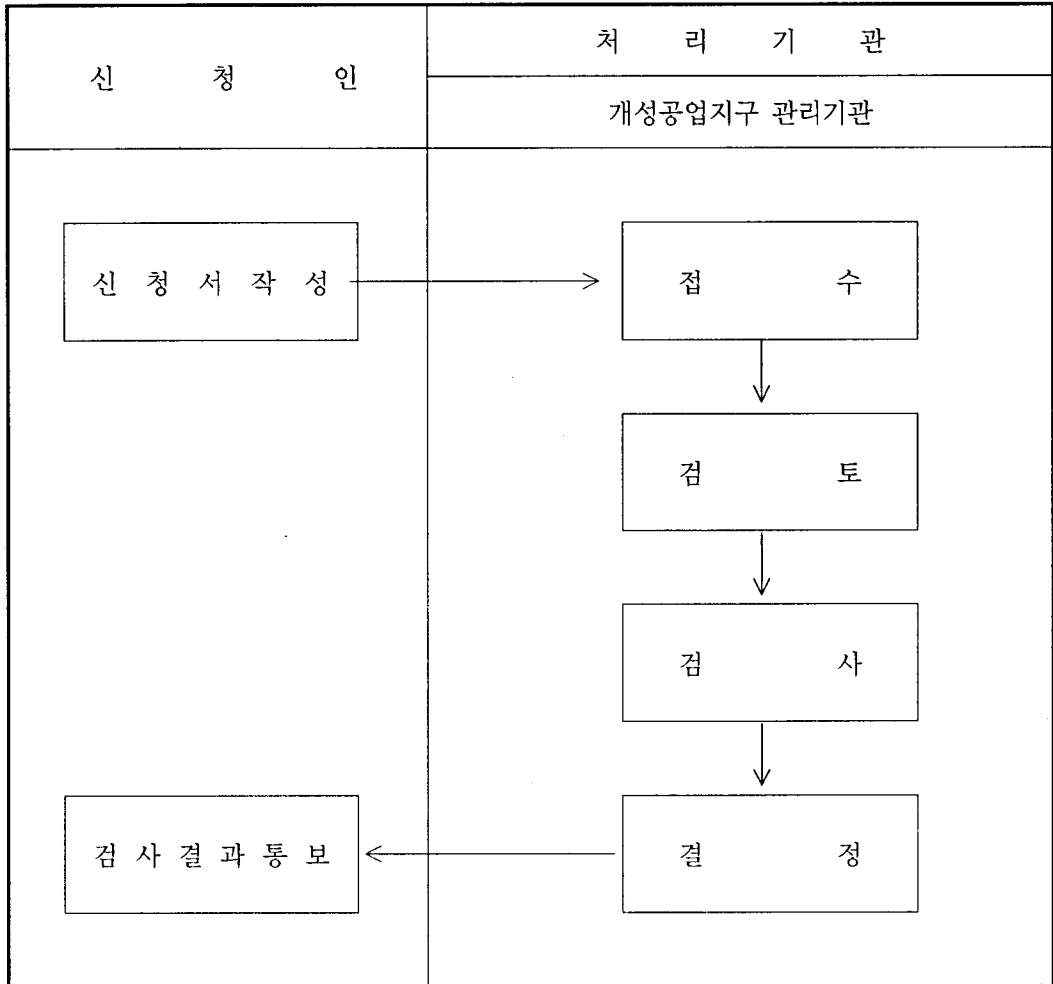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정 기 안 전 검 사 신 청 서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 사 명 또는 상 호		
	주 소 또는 소 재 지		
전 기 설 비 설 치 장 소			
전 기 설 비 개 요			
검 사 회 망 연 월 일			
<p>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검사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기재요령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검사 필증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검사년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판정	(차기검사 : 년 월)			
임시사용	허용사유 : 사용기간 : 사용범위 및 방법 :				
기 타 :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립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인) </div> 검사신청인 귀하					
※ 기재요령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기재합니다.					

4. 보건·위생·환경

- 대기환경관리준칙
-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 수질환경관리준칙
-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세부지침
- 폐기물관리준칙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
- 소음·진동관리준칙
- 공원·녹지 관리 준칙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제정 2005.2.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입주민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입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보호계획상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 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미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별표 1과 같다.
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제 2 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3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보호 계획으로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 (배출시설의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건축 허가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사항

1. 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③ 신고사항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④ 변경허가사항 (별지 제3호서식)

1.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⑤ 변경신고사항(별지 제3호서식)

다음 각 호중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 제외)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사설의 일반도

4. 방지사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⑦관리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필증(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준칙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5조 (방지사설의 설치 등) ①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3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사설(이하 “방지사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3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방지사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3.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4조제1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방지시설업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같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호와 같이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지시설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 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나.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증설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자는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나. 공정도

다.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라.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마.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제8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

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준공검사시 관리기관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의 증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2. 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 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중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제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치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준칙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3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 물질배출량, 자가 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일지는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11조 (개선명령)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리기관에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관리의 내용
 - 나.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 다.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 나.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다.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⑤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가 정상가동 된 최근 3월간의 배출농도중 최고농도이며,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

⑥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측정기기 주요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에는 관리기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개선계획서) ①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 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 나. 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 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 (2) 개선기간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 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다.
 -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 ②관리기관은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시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동조 제1항 각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6항제1호 또는 동조 제7항제1호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 제11조제6항 제2호·제3호 또는 동조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리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 여부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리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관리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

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3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입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출부과금) ①관리기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가목 또는 다음 나목의 연료와 다음 가목 또는 다음 나목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가목 또는 다음 나목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합유량 0.3퍼센트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연료, 발전

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 100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나.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다.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2.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4종 및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준칙으로 정한다.

⑦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준칙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준칙을 준용한다.

제16조 (허가의 취소 등)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준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17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관리기관은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제7호로 정한다.

제19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신고(별지 제13호서식) 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준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 측정은 정확히 할 것(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 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 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

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 측정 및 자가 측정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 6에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3.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 3 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20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 중 별표 8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 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서를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정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환경보호계획상 정한 것으로 한다.

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 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보호계획에서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환

경보호계획의 의하여 별표 3과 같다.

제22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환경보호계획의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관리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준칙에 의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제10조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관리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이 준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와 같다.

②관리기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청취) 관리기관은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제26조 (수수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다음 호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8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4

제 5 장 벌 칙

제27조 (벌금) ①관리기관은 별표 10의 각 항목별 벌금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5. 2.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정대기유해물질 (제2조제8호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크롬화합물
 4. 비소 및 그 화합물
 5. 수은 및 그 화합물
 6. 염소 및 염화수소
 7. 불소화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염화비닐
 10. 페놀 및 그 화합물
 11. 벤젠
 12. 포름알데히드
-

[별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2조제9호 관련)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가. 시간당 300kW 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나. 노상면적 4.5㎡ 이상의 반사로
 - 다.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의 용선로
 - 라.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도가니로
 -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 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 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아. 용적 1㎡ 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가. 용적 1㎡ 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 (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 가. 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 질제조시설
 - (1) 용적 1㎡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용적 3m³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

나.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2) 용적 30m³ 이상의 탄화시설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2) 분당 방사속도가 50m 이상의 방사시설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나. 용적 3m³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 3m³ 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석유정제품제조시설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나. 용적 1m³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코크스로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³ 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다. 용적 3m³ 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라.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집면시설, 절단시설
 -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8.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 가. 용적 10m³ 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³ 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9.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 가.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 나.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재시설
 -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 가. 용적 3m³ 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11. 담배제조시설
- 가. 용적 3m³ 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 침향시설, 순환식조화시설
 -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kg 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12.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³ 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 나.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분시설
 - 다.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
-

13. 섬유제품제조시설

- 가. 동력 3마력 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³ 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kg 이상 또는 용적 1m³ 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4. 공통시설

-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kW 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kcal 이상의 보일러.
-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마.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바. 용적 50m³ 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 사. 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 이상 또는 용적이 2m³ 이상인 기타로

차. 시간당 처리능력이 0.5m³ 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폐수·폐기물농축 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m³ 이상의 폐액건조시설

-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 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연료별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산계수
무연탄	kg	1.00	유연탄	kg	1.34
코크스	kg	1.32	갈탄	kg	0.90
이탄	kg	0.80	목탄	kg	1.42
목재	kg	0.70	유황	kg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납사	L	1.80	엘피지	kg	2.40
액화 천연가스	Sm ³	1.56	석탄타르	kg	1.88
메타놀	kg	1.08	에타놀	kg	1.44
벤젠	kg	2.02	톨루엔	kg	2.06
수소	Sm ³	0.62	메탄	Sm ³	1.86
에탄	Sm ³	3.36	아세틸렌	Sm ³	2.80
일산화탄소	Sm ³	0.62	석탄가스	Sm ³	0.80
발생로가스	Sm ³	0.2	수성가스	Sm ³	0.54
혼성가스	Sm ³	0.60	도시가스	Sm ³	1.42
전기	kW	0.17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공인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kg당 발열량은 4,600kcal로 한다.

4.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6. “습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라샤·카드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7. “원료”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 첨가제 등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8. 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9. 용적규모가 50,000m³ 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0. 위의 표의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고체입자상물질”이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이하인 것에 한한다.
12.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표 제14호 공통시설중 라목 내지 차목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별표 3]

대기오염방지시설 (제2조제10호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14.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1. 내지 14.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별표 4]

배 출 허 용 기 준 (제3조 관련)

1. 가스상 물질

구 분		배출시설	적용기준 (ppm)	비 고
No.	오염물질			
1	염 소	모든 배출시설	10	
2	염화수소	금속표면의 산처리시설	5	
		화학제품생산을 위한 염화수소 및 염산반응시설	10	화학비료제조시설
		소각로, 소각보일러(소각보일러)	50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40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30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 시설물 용융로, 용해시설	2	
기타시설	6			
3	불소화합물	유리제조 소성로, 용융로, 불산을 만드는 응축 흡수시설	5	
		소각로, 보일러 소각용량	3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2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2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기타시설	3	
4	연화합물	유리 만드는 소성로, 용융로	-	
5	암모니아	연료 및 연료제조시설	70	
		연제품 만드는 용해로	100	
6	질소산화물	액체연료사용보일러, 공업로 10000m ³ /시간 이상	200	
		고체연료사용보일러	150	
		디젤발전설비	300	
		광학유리, 전기유리제조용 용융로, 사기 입히는 시설	350	
		암모니아로 폐수처리하는 시설, 가스소각로	200	
		금속가열로, 배출가스 3만m ³ /시간 이하	200	

No.	구 분		적용기준 (ppm)	비 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7	이류화탄소 (이황화탄소)	모든 배출시설	30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80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150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8	류화수소 (황화수소)	"	10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2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2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9	비소화합물	소각로, 소각보이라	0.5	
10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10	
11	아류산가스 (아황산가스)	중유보이라, 공업로	540	기타지역
		발전기 500MW	270	
		고체폐기물소각로, 보이라	100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70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30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12	일산화탄소	액체(가스)보이라, 공업로	-	
		액체연료 발전설비	-	
		고체폐기물 소각로	300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200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50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13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	
14	브롬화합물	"	5	
15	벤젠화합물	"	30	
16	페놀화합물	"	10	
17	수은화합물	소각로, 소각보이라	0.1mg/m ³	
18	염화비닐	염화비닐 중합반응시설	150	
19	탄화수소	도장시설, 배출가스량 10000m ³ /시간 미만	100	

주 : g/m³ 단위를 % 및 ppm으로 환산시 배기가스(150℃, 1atm, 가정)을 기준으로 하였음

$$[\text{ppm}] = [\text{mg}/\text{m}^3] \times (22.4/\text{분자량}) \times ((273 + \text{온도})/273)$$

2. 입자상물질

No.	구 분	배출가스량	오염물질	단위	적용기준 (ppm)	비 고
1	고체, 액체 혼합보이라	6천m ³ /시간 이하	먼 지	g/Sm ³	0.08	
2	액체연료사용 발전기	발전용량 100MW 이상	"	"	0.02	
		발전용량 100MW 미만	"	"	0.02	
3	고체, 액체 혼합발전기	발전용량 500MW 이상	"	"	0.02	
		발전용량 500MW 미만	"	"	0.03	
4	소각로, 소각보이라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	"	0.1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	"	0.03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	"	0.03	
5	가열로		"	"	0.07	가열로
6	석유화학제품 가열로		"	"	0.05	
7	유리제품제조 용융 및 용해시설	3만 이하	"	"	0.05	기타시설
8	골재건조로		"	"	0.10	기타시설
9	안료건조로	3만 이하	"	"	0.10	기타시설
10	동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동화합물	"	0.01	
11	카드미움화합물	소각로, 소각보이라 배출가스 200kg/시간 미만	카드미움	"	0.0002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	"	0.000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	"	0.00002	
		기타시설	"	"	0.001	
12	연화합물	소각로, 소각보이라 배출가스 200kg/시간 미만	연	"	0.005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	"	"	0.0016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	"	0.0002	
		기타시설	"	"	0.005	
13	크롬화합물	소각로, 소각보이라 배출가스 200kg/시간 미만	크롬	"	0.0005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기타시설	"	"	0.001	
14	니켈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니켈	"	0.02	
15	아연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아연	"	0.01	
16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매연	"	2	링겔만비탁도
17	반응로, 진화로	무기화학제품연료사용 식료품생산	먼지	"	0.10	기타시설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사용연료	구분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여지반사식)	공기과잉률	
휘발유·가스·알콜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1997년12월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1±0.1 이내. 다만, 기화기 식 연료공급 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		
		승용자동차	1987년12월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198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휘발유·알콜차) 400ppm 이하(가스차)	-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	1985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4.5% 이하	1,200ppm 이하	-		
			경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1.2% 이하	220ppm 이하		-
			승용자동차	2002년 6월30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
			다목적자동차	2002년 6월30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중형·대형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4.5% 이하	1,200ppm 이하	-		
			경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
			승용1·승용2 승용3·승용4·화물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1.2% 이하 2.5% 이하	220ppm 이하 400ppm 이하		- -
	경유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1995년12월31일 이전	-	-		40%(2도)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하
중량자동차			1992년12월31일 이전	-	-	40%(2도) 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하		
			1996년1월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	-	30%(2도) 이하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시내버스	-	-	25%(2도) 이하	
			2000년12월31일까지	시내버스외	-	-	30%(2도) 이하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자동차		승용·다목적·중형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	-	30%(2도) 이하		
		대형자동차	2002년 6월30일까지	-	-	25%(2도) 이하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승용1·승용2·승용3·화물1·화물2	2002년 7월 1일 이후	-	-	25%(2도) 이하		
		승용4·화물3		-	-	20%(2도) 이하		

4. 냄새(악취) 배출허용기준

No.	오염물질	단위	측정장소	측정방법	적용기준
1	류화수소(H ₂ S) (황화수소)	PPM	작업장	기구분석	0.06
2	암모니아(NH ₃)	"	"	"	2
3	류화메틸 ((CH ₃) ₂ S) (황화메틸)	"	"	"	0.05
4	메틸메르captan (CH ₃ SH)	"	"	"	0.004
5	이류화메틸 (CH ₃ SSCH ₃) (이황화메틸)	"	"	"	0.03
6	스티렌 (C ₆ H ₅ CH=CH ₂)	"	"	"	0.8
7	아세트알데히드 (CH ₃ CHO)	"	"	"	0.1
8	트리메틸아민 ((CH ₃) ₃ N)	"	"	"	0.02

[별표 5]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제15조 관련)

1. 부과금 산정방법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 대기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 세제곱 미터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 별 부과 계수								지역별 부과 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황 산 화 물	0.25		1.2	1.56	1.92	2.28	3.0	4.2	4.8	5.4	1				
면 지	0.38		1.2	1.56	1.92	2.28	3.0	4.2	4.8	5.4					
암 모 니 아	0.7		1.2	1.56	1.92	2.28	3.0	4.2	4.8	5.4					
황 화 수 소	3		1.2	1.56	1.92	2.28	3.0	4.2	4.8	5.4					
이 황 화 탄 소	0.8		1.2	1.56	1.92	2.28	3.0	4.2	4.8	5.4					
특 정 유 해 물 질	불소화합물	1.15	1.2	1.56	1.92	2.28	3.0	4.2	4.8	5.4					
	염화수소	4.7	1.2	1.56	1.92	2.28	3.0	4.2	4.8	5.4					
	염 소	4.7	1.2	1.56	1.92	2.28	3.0	4.2	4.8	5.4					
	시아니화수소	4.7	1.2	1.56	1.92	2.28	3.0	4.2	4.8	5.4					
악 취		0.25											1.7	2.12	2.55

비고 :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3. 대기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가.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

구 분	오 염 물 질	산 정 방 법
오 염 물 질	황산화물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64 ÷ 22.4
	먼 지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암모니아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17 ÷ 22.4
	황화수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34 ÷ 22.4
	이황화탄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76 ÷ 22.4
	불소화합물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19 ÷ 22.4
	염화수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36.5 ÷ 22.4
	염 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71 ÷ 22.4
	시안화수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 ⁶ × 27 ÷ 22.4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2.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먼지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Sm³)으로 하고, 그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³/HR)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시간으로 표시한다.

4.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대기)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처음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로, 2차 이상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별표 6]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제15조제5항 관련)

구 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관리기관이 능력을 인정하는 자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 1. 4종 및 5종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 및 2종사업장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인을 각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관리인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관리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7]

자가측정대상 · 항목 및 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주 1회 이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월 2회 이상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매 2월 1회 이상	
위에 규정된 시설외의 시설	매반기 1회 이상	

- 비고 : 1.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측정항목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8〕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제20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m ²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m ² 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 ³ 이상에 한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m ³ 이상, 공사면적 1,000m ²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m ² 이상에 한한다)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5. 건설업	라. 기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써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에 한한다)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1.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행정처분기준 (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나)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제17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2) 제4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제1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제8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사업장의 경우	제11조 제14조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7)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16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30일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8)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5)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제16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9)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10)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조 제16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11)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제16조	조업정지 경 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제16조 제19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명령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변경명령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 비고 :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1)의 (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3)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6), (10) 및 (11)의 (가)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 (6)의 (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 위반행위를 한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 (7)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7)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전의 위반횟수를 합산한다.

나. 비산먼지발생사업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제2항·제3항	경 고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제3항	사용중지		

다. 기타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경 고		

[별표 10]

벌금 기준 (제27조 관련)

항 목	금액(\$)	비 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각 각 \$5,000	
②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각 각 \$3,000	
②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500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각 각 \$200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각 각 \$100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항 목	금액(\$)	비 고
④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각 각 \$100	
⑥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각 각 \$50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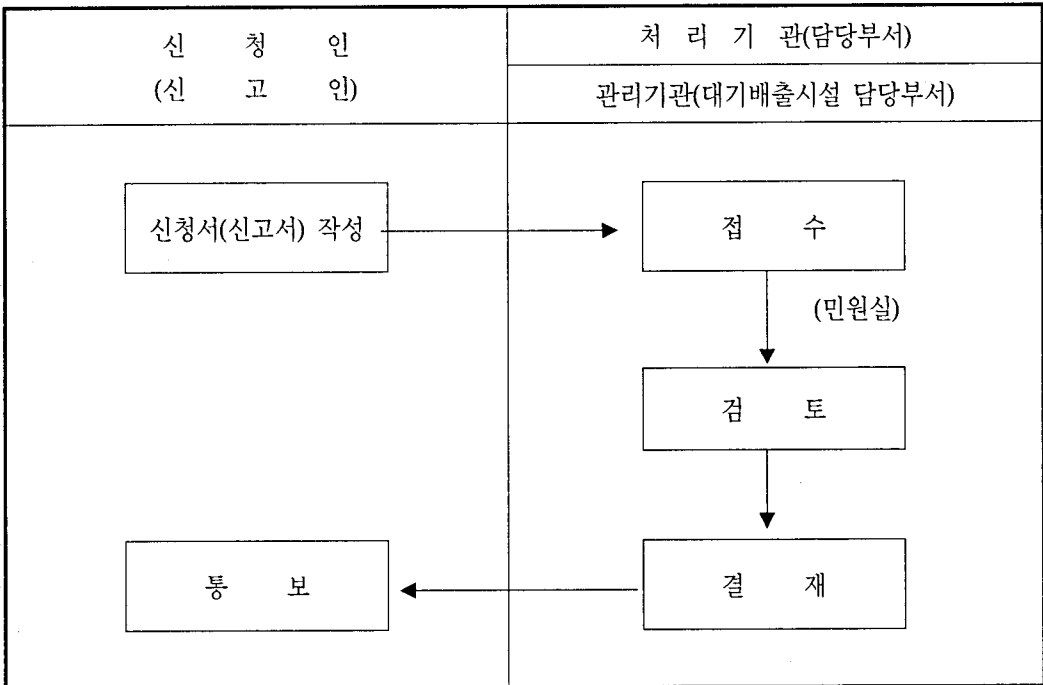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설치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10일	
신청 (신고) 인	①상 호 (사업장명칭)						③생년월일				
	②성명(대표자)						④주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업종		⑦주생산품명		
			⑧설치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청 (신고)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내용	⑪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⑫오염물질 발생량(먼지, SO ₂ , NO ₂)				⑬오염물질 배출량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일일조업 (예정)시간 (연간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 사 용 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환경관리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input type="checkbox"/> 설치허가를 신청 <input type="checkbox"/>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사업장 배치도 - 공정흐름도(시설별 명칭, 용량, 수량 기재 및 원료 등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 표시) - 방지시설 도면 2.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3.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1부											

※ 작성요령

(뒤쪽)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크기·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제 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종	별	종				
③성명(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⑥업	종	⑦일	일	조	업	시		
⑧연	료	사		용		량		
	/년							
허가 (신고) 사항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⑩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종류 (먼지, SO ₂ , NO ₂)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⑪허 가 조 건							
대기환경관리준칙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input type="checkbox"/> 설 치 허가 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설치신고 수리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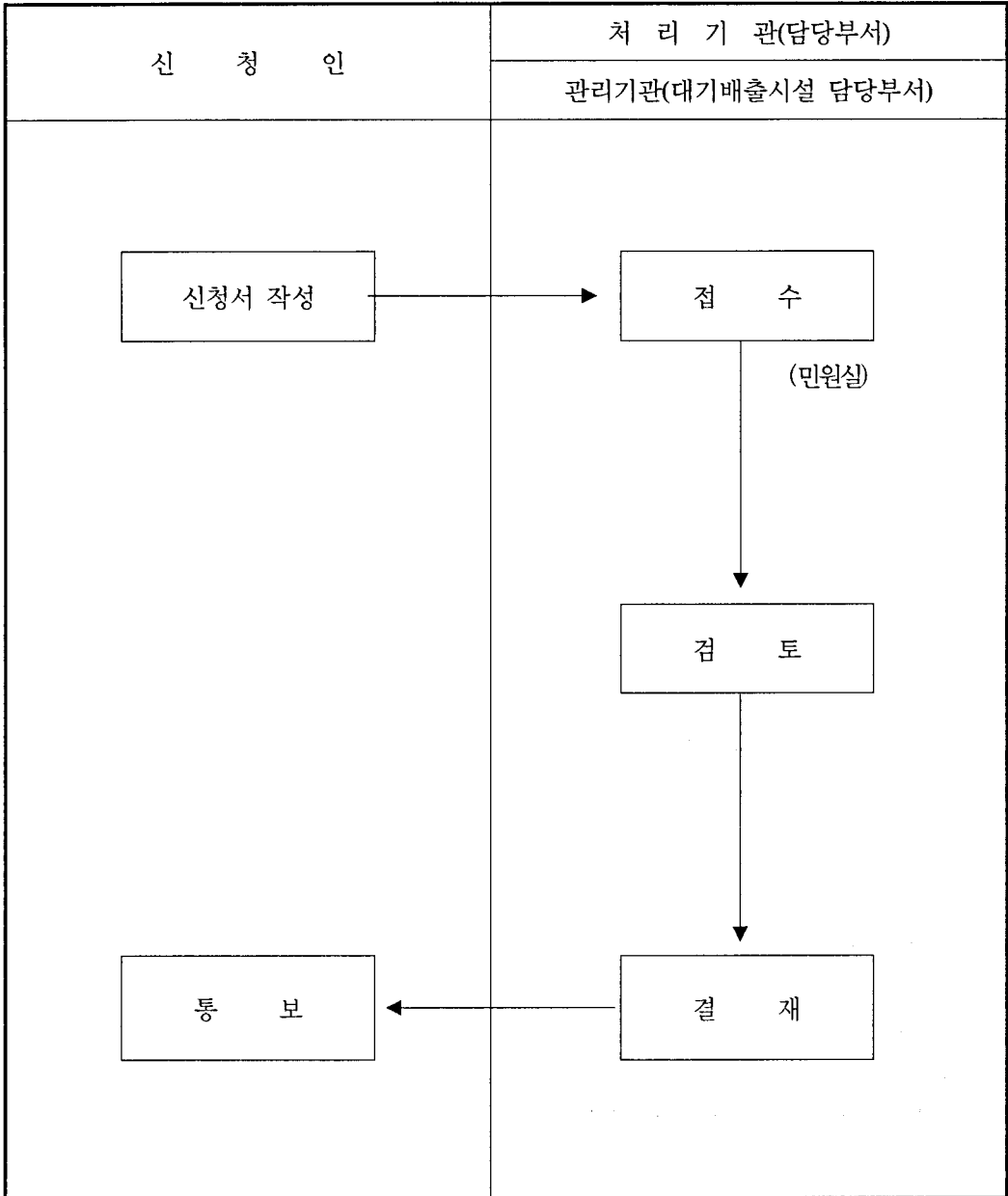
신고번호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참조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변경사유									
⑦설치예정일		⑧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시설변경	⑨기존사항				⑩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기타 변경								
<p>대기환경관리준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p>※ 구비서류</p> <p>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p> <p>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뒤쪽)

※ 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즉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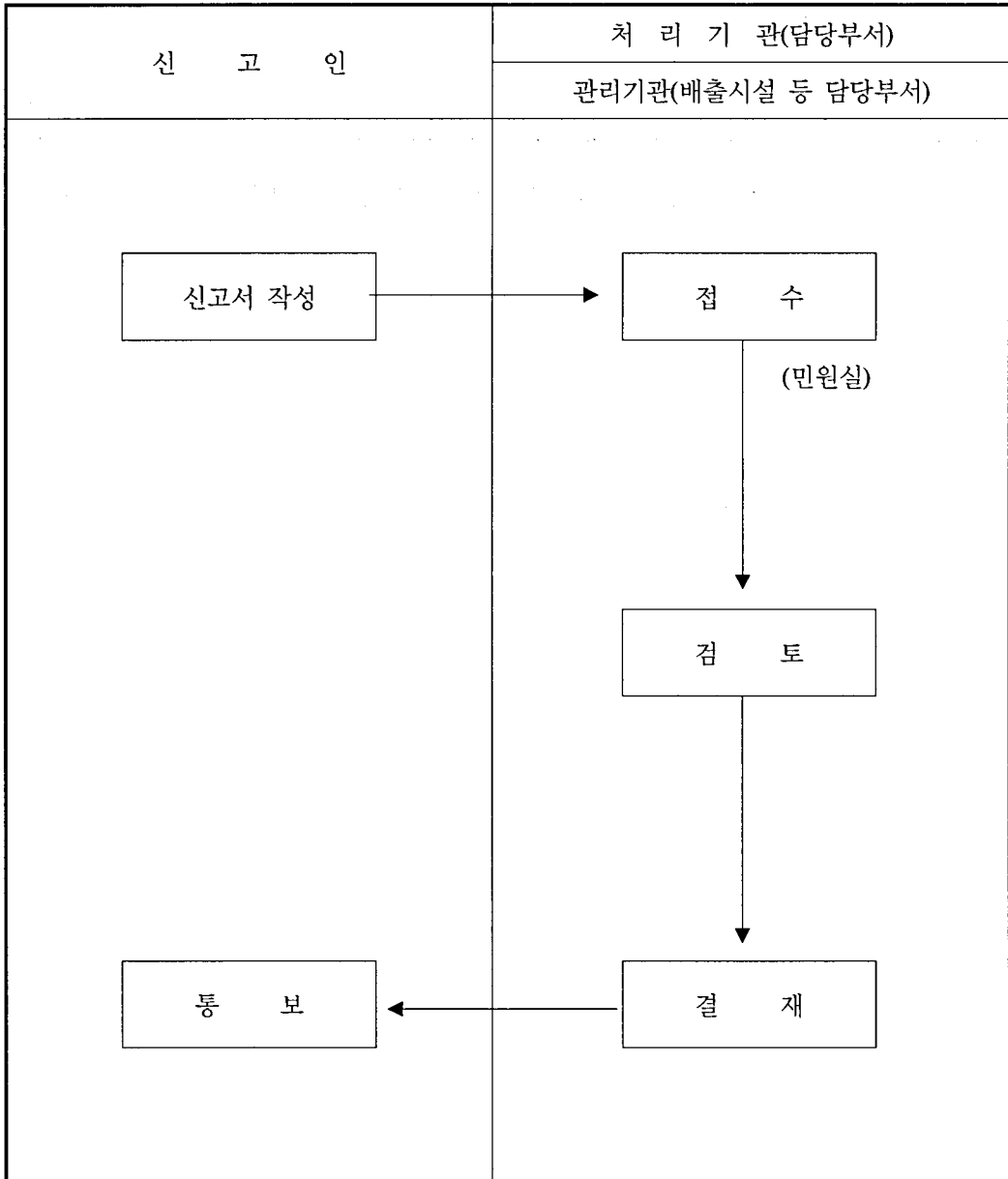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참조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업종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⑧설치명세				
<p>대기환경관리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또는 변경)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 구비서류 : 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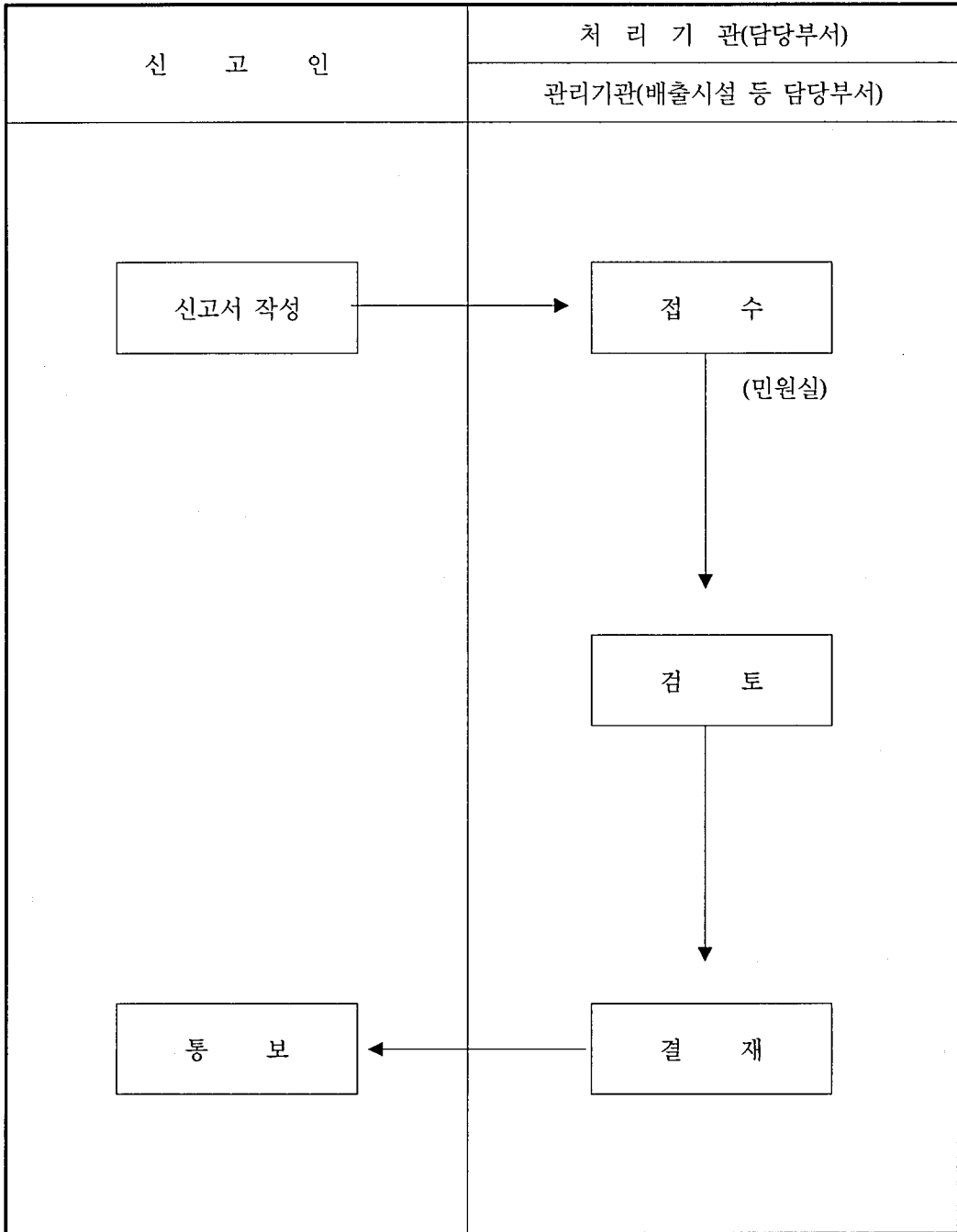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①상 호(사업장명칭)					
③성 명(대표자)			③생 년 월 일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⑤신 청 명 세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변 경 전			변 경 후		
⑥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⑦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⑧변 경 신 청 사 유					
대기환경관리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나. 방지사설 보수사항

방지사설명	배출구별	보수기간	보수자	보수명세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상 <input type="checkbox"/> 맑음, <input type="checkbox"/> 흐림, <input type="checkbox"/> 구름, <input type="checkbox"/> 눈, <input type="checkbox"/> 비			②기온 ℃	③습도 %	④기압 mb	⑤풍향 풍	⑥풍속 m/sec
⑦ 배출구 번호	⑧ 주요배출 시설명	⑨ 측정 항목	⑩ 측정농도 (ppm, mg/Sm ³)	⑪ 일일유량 (Sm ³ /일)	⑫ 일일배출량 (kg/일)	⑬ 검사 기기명	⑭ 검사 방법
⑮연료명 및 사용량 (일)							
⑯원료명 및 사용량 (특정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경관리인의 의견							
⑱기 타							
환경관리인 직급 :				성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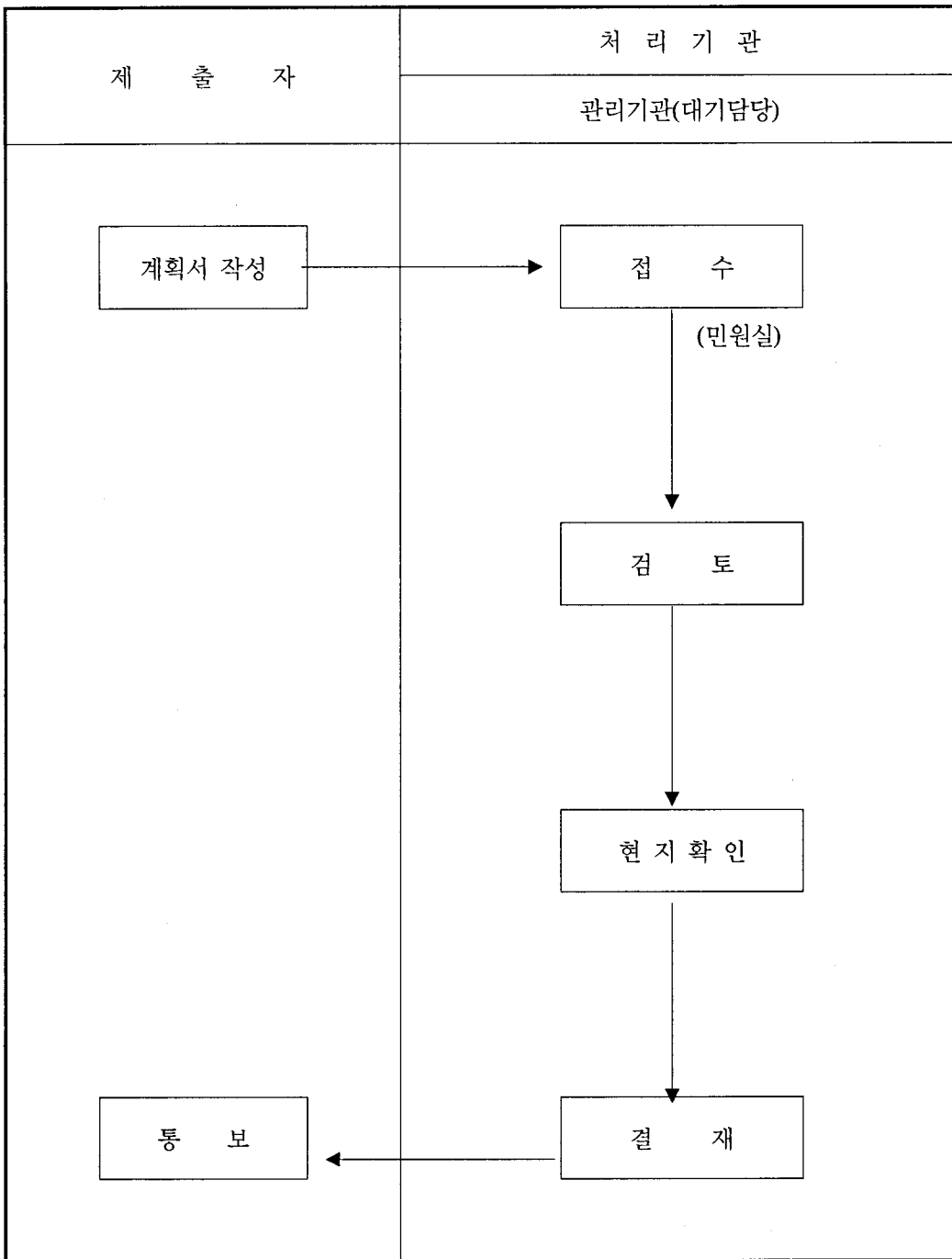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처리기간
제 호					7일
사업자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측정기기 부적정 운영(예정)일					
⑨개선완료예정일					
⑩개선명세	부품명	규격	수량	<input type="checkbox"/> 결함내역 <input type="checkbox"/> 고장	
⑪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월간 배출농도의 평균농도	항목				
	농도				
⑫개선기간중 예상평균 배출가스량			m ³ /hr	⑬일일가동예상시간: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의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2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음

(뒷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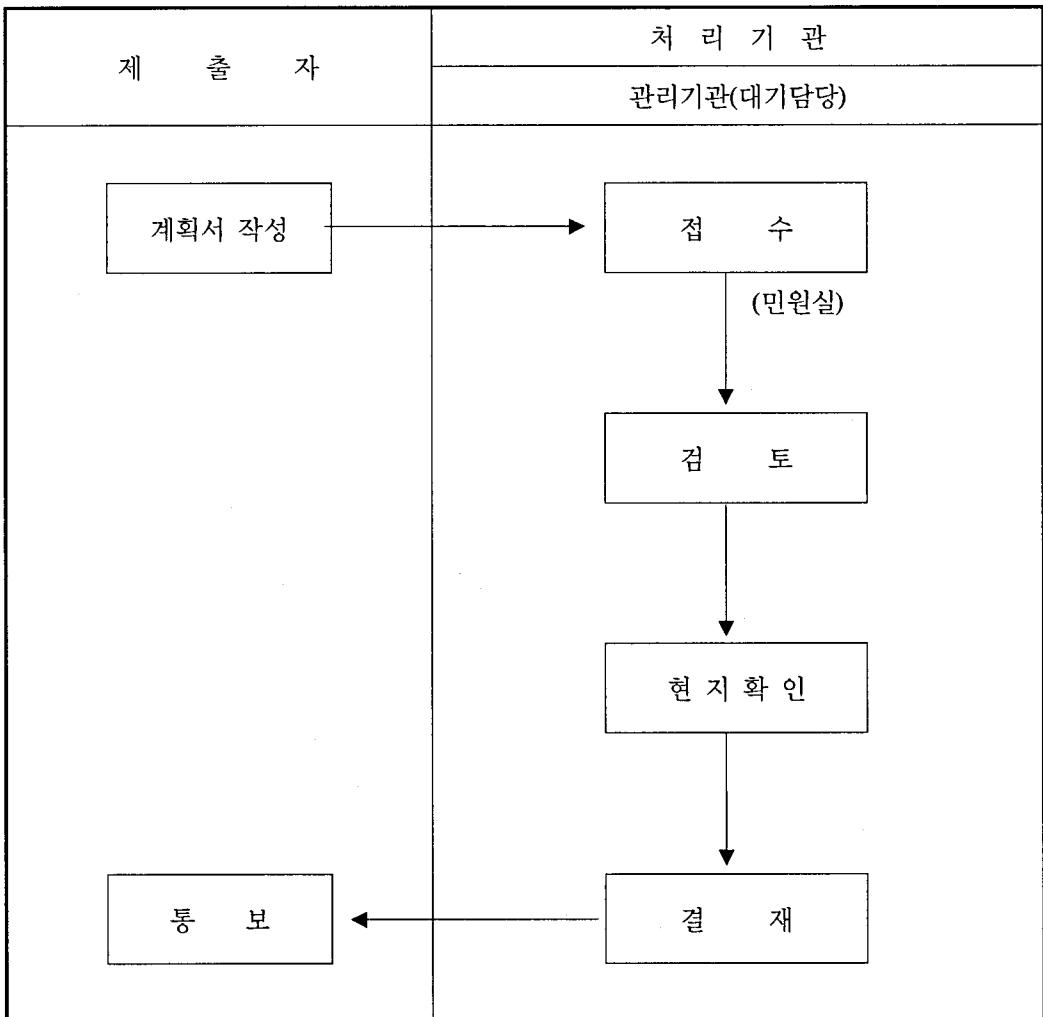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처리기간
제 호					7 일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⑥ 업 종			⑦ 주 생산품		
⑧ 배출시설(방지시설) 부 적 정 운 영(예정)일					
⑨ 배출시설(방지시설) 변경 또는 개선완료일					
⑩ 부 적 정 운 영 명 세	시설명	규 격	수 량	<input type="checkbox"/> 결합내역 <input type="checkbox"/> 고 장	
⑪ 오염물질 배출 예상 농 도	항 목				
	농 도				
⑫ 예상 평균 배출 가스 량	m ³ /hr		⑬ 일일가동예상시간: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2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뒷쪽)

※작성요령

1.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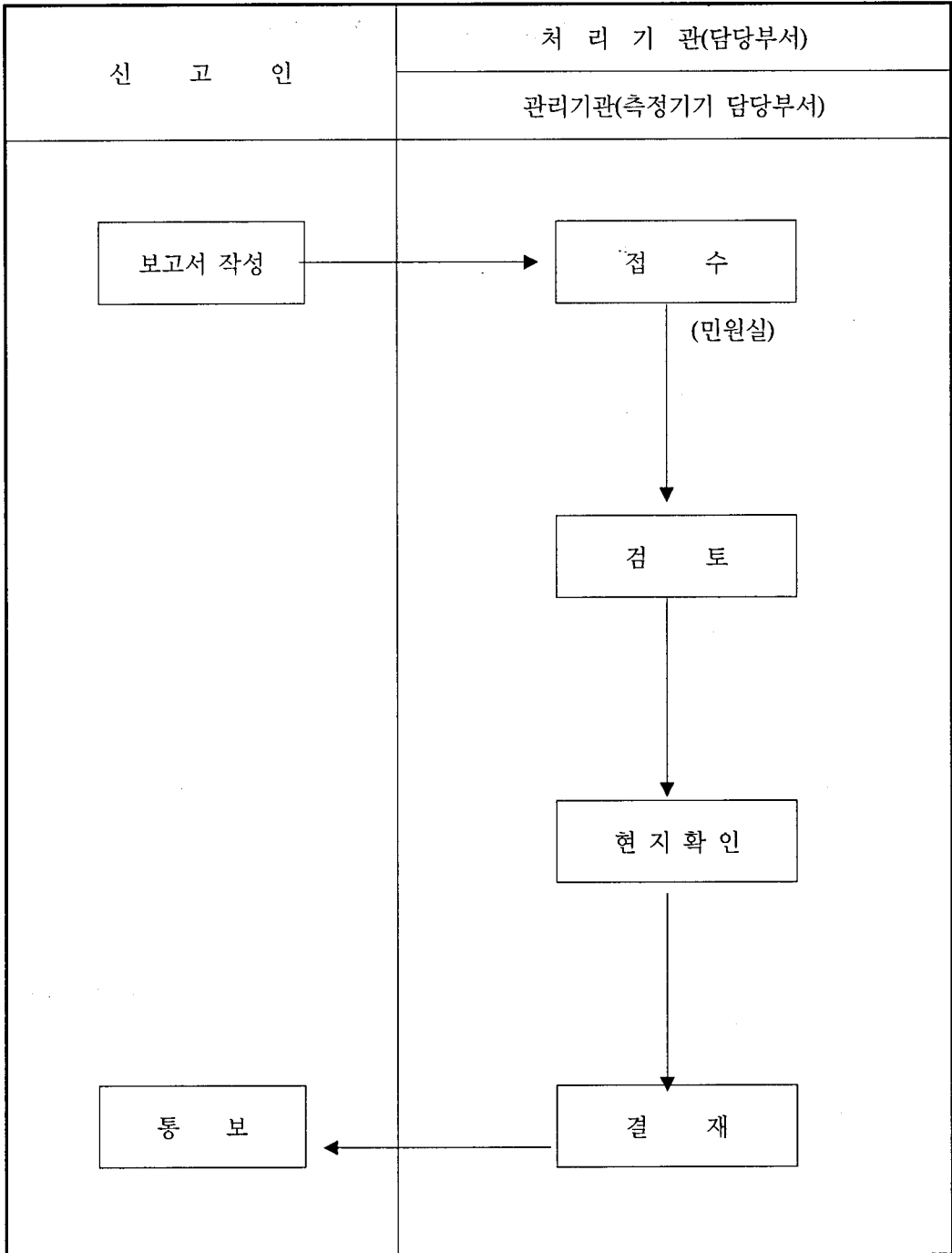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보고서			처리기간
제 호					7일
보 고 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대표자)		③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⑧측정기기의 부적정운영 (시 작)		년 월 일			
⑨측정기기의 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⑩부적정운영 개 선 내 역	측정기기명	규 격	수 량	개 선 내 역	
<p>대기환경관리준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인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뒤쪽)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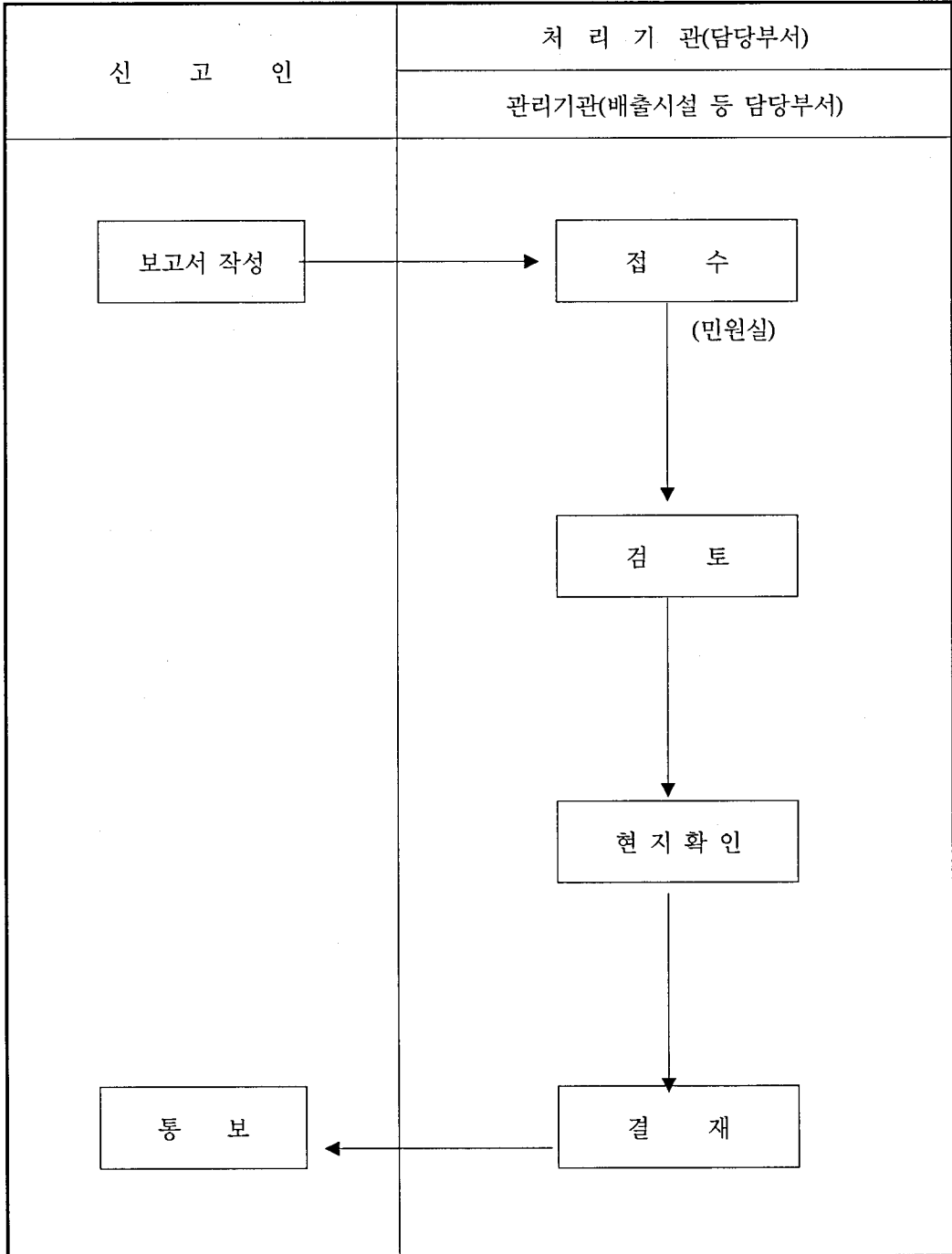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보고서		처리기간
제 호							7 일
보 고 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대 표 자)		③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⑧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 시작일		년 월 일					
⑨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⑩부적정운영 개선내역	시 설 명	규 격	수 량	개 선 내 역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		의 개선을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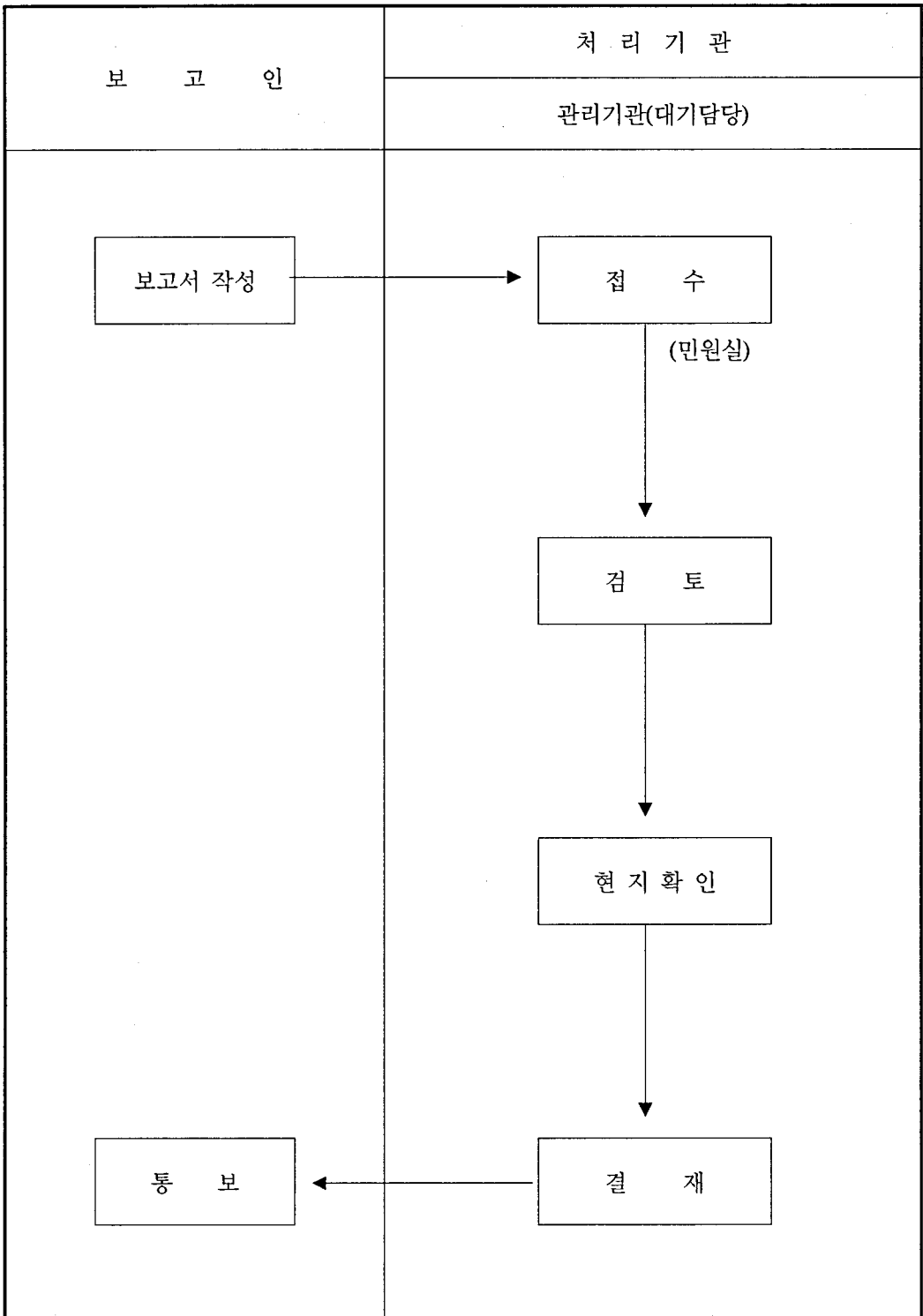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측정기기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제 호					7일
보 고 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⑥업 종					
⑦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측정기기명					
⑧측정기기 조치 명령의 내용					
⑨조치명령이행사항					
⑩조치명령이행일자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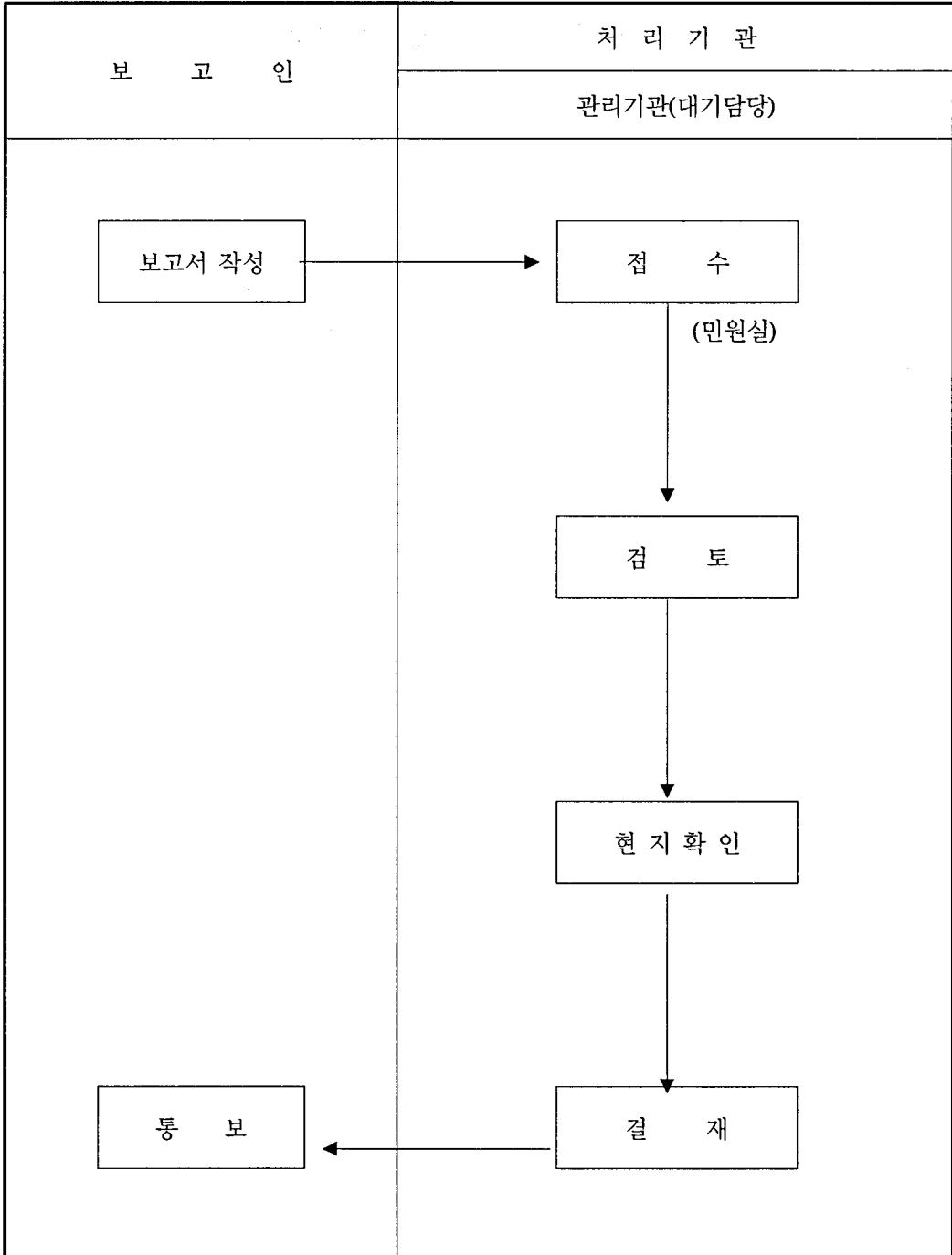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제 호					4일 (검사시간제외)
보 고 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⑥업종					
⑦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위치					
⑧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명					
⑨개선사항					
⑩개선이행일					
<p>대기환경관리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인 (서명 또는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뒷쪽)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대기 <input type="checkbox"/> 수질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					환경관리인 <input type="checkbox"/> 임명 <input type="checkbox"/> 개임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신고인	상 호(사업장명칭)										
	성 명(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⑦ 환경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업일	직 위	비 고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9조제1항, 수질환경관리준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input type="checkbox"/> 임명 <input type="checkbox"/> 개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구비서류 :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 기록 후 반환) 또는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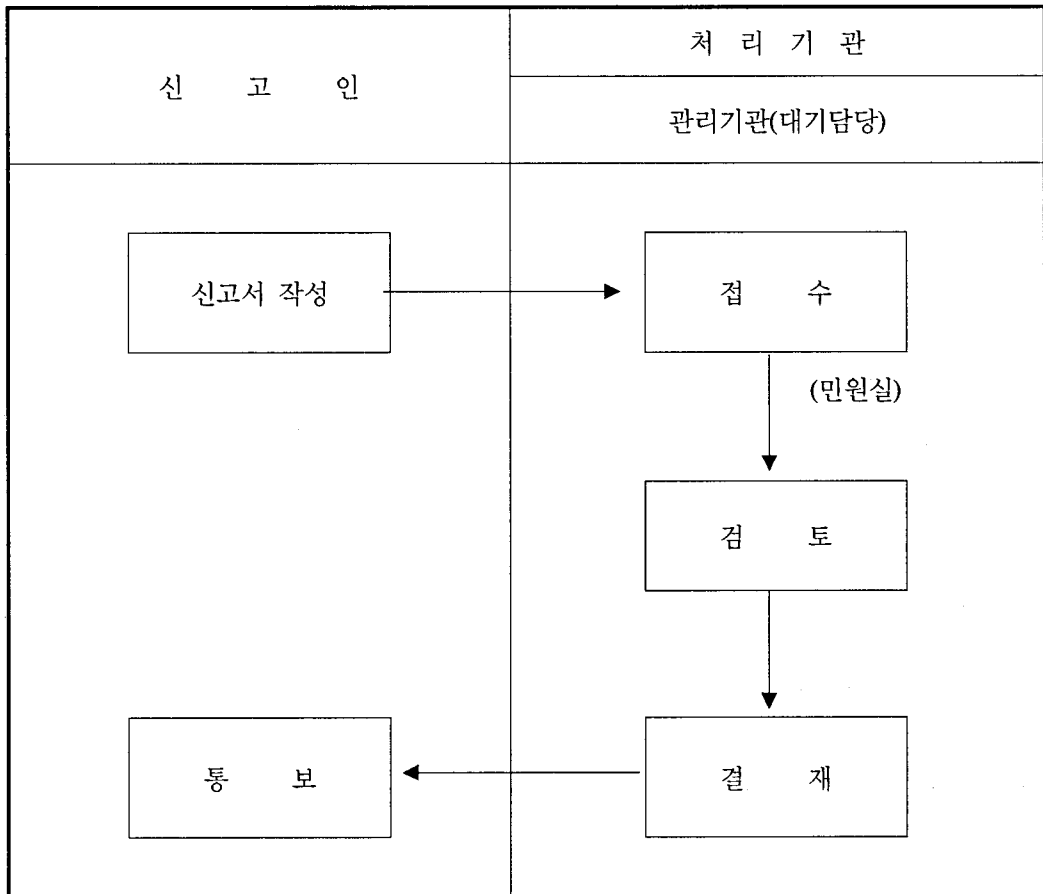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⑥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⑧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관리준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뒷쪽)

※ 작성요령

1. ⑥설치기간(공사기간)은 설치운영시기를 기재하고, 기존시설은 최초 설치시기를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기재합니다.
2. ⑦발생사업에는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종류(건축물축조공사·토목건설공사·조경공사 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⑧시설관리기준의 설치명세 또는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관계도면을 첨부합니다.
4. ⑨해당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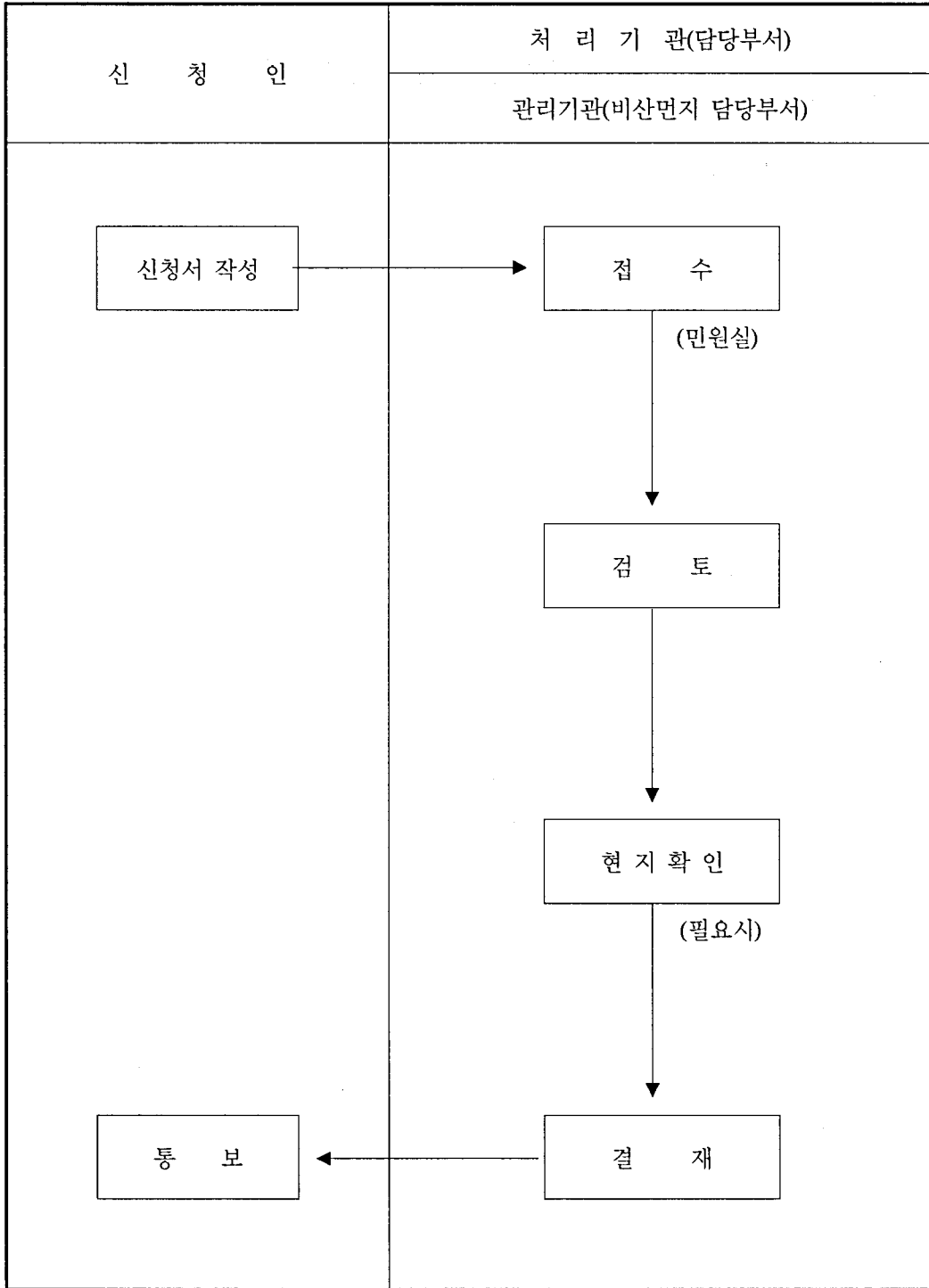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 시설관리기준변경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	사유
대기환경관리기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신고번호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제 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 명(대표자)		③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고 사 항	⑦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⑧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관리준칙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인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제정 2005.12.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생활하는 인원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4.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5.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7.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9.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1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제1군 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페스트
- 다. 장티푸스
- 라. 파라티푸스
- 마. 세균성이질
-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
- 다. 파상풍
- 라. 홍역
- 마. 유행성이하선염
- 바. 풍진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쯤쯤가무시증
- 카. 렘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탄저
- 하. 공수병
- 거.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출혈열)
- 너. 인플루엔자

-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외부로부터 공업지구 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전염병으로서 긴급한 방역대책을 요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 10.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의사의 진단 또는 적정 진단능력을 보유한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 11.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의사의 진단 또는 적정 진단능력을 보유한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
- 12.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13.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 등”이라 한다)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1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식품위생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판매 및 집단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것
6.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한 것

제5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관리기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영업 및 단체급식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 또는 영업관계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할 수 있다.

제6조 (식품위생검사 실시 및 위탁) 관리기관은 식품 등의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

정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영업 등 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2. 식품접객업
3. 집단급식소 운영(직영) 또는 위탁급식업(위탁)

제8조 (영업 등의 허가 및 신고) ①식품제조 및 가공업,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건강진단) ①관리기관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다.

②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는 제1항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 (위생교육) ①관리기관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등과 집단급식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등 및 집단급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업자는 개성공업지구내 영업을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관리기관이 정한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식품 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알리고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의사·한의사·또는 영업자는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염병 예방

제14조 (관리기관의 역할) ①관리기관은 식중독 및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 입주기업, 각종 사무소 등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인원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 ①의사가 전염병환자 등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 등·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고지하고, 관리기관에 즉시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 각종 사무소, 병원, 식당 등 기타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서 그 기관의 장은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구하거나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 진단기준 및 신고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 (환자의 격리 및 치료) ①제1군전염병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숙소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전염병환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전염병환자 등의 명부작성)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전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역학조사) ①관리기관은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 3군 또는 지정 전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역학조사 업무를 적정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의료인, 의료기관, 입주기업, 각종 사무소 등 개성공업지구의 출입인원은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예방접종 등) ①관리기관은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환경에 있는 자(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 결과에 대해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①관리기관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내 입주기업, 각종 기관 및 출입인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개성공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 등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우물 및 간이우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유행 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콜레라·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금지기간에 식수를 공급하여야한다.

제22조 (소독조치) ①다음 각호의 1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2.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4.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5. 병원
 6.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7. 관리기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전염병병원체가 오염된 장소, 운송 수단
- ②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별표 5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4 장 행정 제재

제23조 (개선명령) 관리기관은 이 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칙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은 제23조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준칙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금의 부과,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제3조 관련)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업종별 시설기준 (제7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물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기타

- (1)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용도 외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

품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 (1)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 그 위생이 보증되어야 한다.
-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뚜껑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 (1)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집단급식소 운영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창고 등 보관시설

- (1)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2) 창고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운반시설

- (1)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 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식재료 처리시설 등

-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의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기타

- (1)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영업자 등 준수사항 (제11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 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2.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 가. 물수건·손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 첨가물인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등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관리기관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 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업자 준수사항

- 가. 물수건·손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별표 4]

전염병 진단기준 및 신고범위 (제15조 관련)

1. 전염병 진단 기준

가. 제1군전염병의 경우

- 제1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제2군전염병의 경우

- 제2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항원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만으로도 환자로 판정한다.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 제3군전염병의 경우

- 제3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아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라. 제4군전염병의 경우

- 제4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마. 지정전염병

- 지정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2. 신고범위

가. 제1군전염병의 경우

- 제1군전염병환자
- 페스트를 제외한 제1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나. 제2군전염병의 경우

- 제2군전염병환자
- 파상풍 및 B형간염을 제외한 제2군전염병의 의사환자
- B형간염중 주산기B형간염 또는 산모B형간염의 병원체보유자

다. 제3군전염병의 경우

- 제3군전염병환자
- 말라리아, 한센병, 클라미디아감염증 및 연성하감,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및 레지오넬라증을 제외한 제3군 전염병의 의사환자
-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병원체보유자

라. 제4군전염병의 경우

- 제4군전염병환자
- 황열, 바베시아증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을 제외한 제4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바. 지정전염병의 경우

- 지정전염병환자
- 지정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자

(별표 5)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제22조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증기소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자비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규격품)
- (7) 기타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소독방법

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

가. 물리 환경적 방법

- (1) 서식장소를 완전히 없애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트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없애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포식하는 천적 등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 등을 담은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 또는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없앤다.

나. 방서처리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창문, 전선 등을 통하여 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처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살서제 사용

살서제를 적절히 이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제정 2005.2.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버릴물(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말한다.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3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보호관리계획으로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치 허가 혹은 신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②허가사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2. 배출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원료, 부원료, 공법등의 변경에 따라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③신고사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④변경허가사항(별지 제2호서식)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⑤변경신고사항(별지 제2호서식)

1.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별표 7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 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7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 혹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 혹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

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관리기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준칙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5조 (허가조건) 관리기관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누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인접주민의 건강·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점검·사후감시 등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방지사설의 설치 등) ①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3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사설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가. 당해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사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이

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다.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등 관련자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9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준공검사서 관리기관에 가동개시 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3.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

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명령) ①관리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리기관에 6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관리기관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공정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조업정지명령) 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배출부과금) ①관리기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호와 같이 부과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 초과배출부과금

가. 오염물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장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준칙에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준칙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관리기관의 운영 세입으로 한다.

⑦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 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질소
19. 총인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①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밖에 이 준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0조,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지정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①관리기관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한다.

제15조 (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신고(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준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에 의한 4·5종 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7조 (공공수역의 배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 폐기물관리에 따른 지정폐기물, 유독물, 농약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척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수를 현저이 오염시킨 행위

②관리기관은 제1항1호 내지 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기업 및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행위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관리기관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관리기관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이 준칙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존과 입주

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 (수수료)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 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제2항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8\$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는 관리기관의 준칙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별 칙

제21조 (벌금) ①관리기관은 별표 12의 각 항목별 벌금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5. 2.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수질오염물질 (제2조제2호 관련)

- | | | |
|--------------------|-------------------|---------|
| 1. 구리(동) | 2. 납(연) | 3. 니켈 |
| 4. 대장균군 | 5. 망간 | 6. 부유물질 |
| 7. 비소 | 8. 수은 | 9. 시안 |
| 10. 아연 | 11. 총인 | 12. 총질소 |
| 13. 철 | 14. 카드뮴 | 15. 크롬 |
| 16. 플루오르(불소) | 17. 산 및 알칼리류 (추가) | |
| 18. 유기물질 (추가) | 19. 동식물류 (추가) | |
| 20. 광물류 (추가) | 21. 페놀류 (추가) | |
| 22. 황 및 그 화합물 (추가) | | |

[별표 2]

특정수질유해물질 (제2조제3호 관련)

- | | | |
|-----------------------|-----------------------|-------------------|
| 1. 구리(동) | 2. 납(연) | 3. 비소 |
| 4. 수은 | 5. 시안화물 | 6. 총인 |
| 7. 총질소 | 8. 카드뮴 |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1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11.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
| 12. 음이온계면활성제(ABS)(추가) | 13. 페놀(추가) | |
| 14. 크롬(추가) | | |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제2조제5호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m³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도축, 고기·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 제외
5.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 유지제조 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1540 1541 1543 1544 1549	-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리판매용시설 제외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중 100m ² 미만의 제과점·떡 방앗간 제외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0 1720 1730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21. 신발 제조시설	1930	
22. 목재·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 필름 처리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유 전화(분해, 개질) 석유정제, 운할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 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젠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 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2431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 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 시설	24334	-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 10만kW/시간 미만 제외
71. 수도사업시설	4100	- 역세를 하지 아니하는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 정수능력 1,000m ³ /일 미만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 시설 제외 - 취수능력 10m ³ /일 미만 제외
73. 수산물 판매장 (면적 700m ² 이상)	51313 522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 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m ³ 이상 또는 용수 1m ³ /시간 이상)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m ³ /시간 이상)	공통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m ³ /일 이상)	공통 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m ² 이상)	공통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80. 도금시설	공통 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포함 - 기타수질오염원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p>82. 기타 폐수배출시설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p> <p>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 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m³/시간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0.2m³/일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시설</p> <p>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m³/시간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2m³/일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시설</p>	<p>공통 시설</p>	<p>※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과 같이 분류하되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p>
---	--------------	--

[별표 4]

수질오염방지시설 (제2조제6호 관련)

<p>1. 물리적 처리시설</p>	<p>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p>
<p>2. 화학적 처리시설</p>	<p>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p>
<p>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p>	<p>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 또는 산화지)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툼발발효시설</p>
<p>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처리시설</p>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중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5)

버릴물(폐수) 배출허용기준 (제3조제1항 관련)

No.	오염물질	단위	배출허용기준
1	페 하 (pH)		5.8~8.6
2	온 도	도	40 이하
3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mg/ℓ	원폐수
4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800 이하
5	부유물질 (SS)	"	원폐수
6	린(인) (T-P)	"	20 이하
7	질 소 (T-N)	"	200 이하
8	대장균 (MPN)	개/100ml	원폐수
9	광물유	mg/ℓ	5 이하
10	동식물유	"	30 이하
11	비 소 (As)	"	0.5 이하
12	수 은 (Hg)	"	0.005 이하
13	카드미움 (Cd)	"	0.1 이하
14	동 (Cu)	"	3 이하
15	아 연 (Zn)	"	5 이하
16	철 (Fe)	"	10 이하
17	크 롬 (Cr)	"	0.5~2 이하
18	시 안 (Cn)	"	0.1~1 이하
19	페 놀 (Phenol)	"	0.1~3 이하
20	연 (Pb)	"	1 이하
23	불 소 (Ni)	"	7~15 이하
24	망 간 (F)	"	10 이하
2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	0.003 이하
26	트리클로르에틸렌 (TCE)	"	0.3 이하
27	테트라클로에틸렌 (PCE)	"	0.1 이하
28	음이온계면활성물질 (ABS)	"	5 이하

- 1)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은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수정·보충한다.
- 2) 크롬, 시안, 페놀, 불소의 적용기준은 3년간 임시 합의 기준임.

[별표 6]

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수 질 기 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mg/ℓ)	30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g/ℓ)	40 이하
부유물질량 (SS) (mg/ℓ)	30 이하
총 질 소 (T-N) (mg/ℓ)	60 이하
총 인 (T-P) (mg/ℓ)	8 이하

[별표 7]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조제5항제3호 관련)

종 별	배 출 규 모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 2,000m ³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 700m ³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 200m ³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상기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 1.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사용량에는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하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내 청소수,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중증발량 + 기타 방류구로 배출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중발생량

2. 최초 배출시설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별표 8]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6조제3항 관련)

1.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 부원료 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 자가 처리의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9)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제12조 관련)

1. 부과금 산정방법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수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금액단위 : \$)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 그램당 부과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유기물질	0.13	3.0	4.0	4.5	5.0	5.5	6.0	6.5	7.0	2	
부유물질	0.13	3.0	4.0	4.5	5.0	5.5	6.0	6.5	7.0		
총질소	0.25	3.0	4.0	4.5	5.0	5.5	6.0	6.5	7.0		
총인	0.25	3.0	4.0	4.5	5.0	5.5	6.0	6.5	7.0		
크롬 및 그 화합물	37.5	3.0	4.0	4.5	5.0	5.5	6.0	6.5	7.0		
망간 및 그 화합물	15	3.0	4.0	4.5	5.0	5.5	6.0	6.5	7.0		
아연 및 그 화합물	15	3.0	4.0	4.5	5.0	5.5	6.0	6.5	7.0		
특정 유해 물질	페놀류	75	3.0	4.0	4.5	5.0	5.5	6.0	6.5		7.0
	시아나화합물	75	3.0	4.0	4.5	5.0	5.5	6.0	6.5		7.0
	구리 및 그 화합물	25	3.0	4.0	4.5	5.0	5.5	6.0	6.5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50	3.0	4.0	4.5	5.0	5.5	6.0	6.5		7.0
	수은 및 그 화합물	625	3.0	4.0	4.5	5.0	5.5	6.0	6.5		7.0
	유기인 화합물	75	3.0	4.0	4.5	5.0	5.5	6.0	6.5		7.0
	비소 및 그 화합물	50	3.0	4.0	4.5	5.0	5.5	6.0	6.5		7.0
	납 및 그 화합물	75	3.0	4.0	4.5	5.0	5.5	6.0	6.5		7.0
	6가크롬 화합물	150	3.0	4.0	4.5	5.0	5.5	6.0	6.5		7.0
	폴리클로리네티드베닐	625	3.0	4.0	4.5	5.0	5.5	6.0	6.5		7.0
트리클로로에틸렌	150	3.0	4.0	4.5	5.0	5.5	6.0	6.5	7.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50	3.0	4.0	4.5	5.0	5.5	6.0	6.5	7.0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2) 수질 일일기준 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가. 일일기준 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기준 초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times 10^{-6}$$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 농도
 2.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ℓ)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ℓ/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함.

3) 수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 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사업장 규모	2,000m ³ /일 이상 4,000m ³ /일 미만	4,000m ³ /일 이상 7,000m ³ /일 미만	7,000m ³ /일 이상 10,000m ³ /일 미만	10,000m ³ /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2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 1.4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3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 1.3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4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 1.2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5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 1.1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제16조제5항 관련)

구 분	환 경 관 리 인
1종 사업장	관리기관이 정하는 능력을 갖춘자 1인 이상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비고 :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및 5종사업장은 3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³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및 2종 사업장중 1개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관리인을 각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의 관리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지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4.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2·3종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0조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2)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포함)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13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제13조				

위 반 사 항	근거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제13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오염물질 처리계통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관리기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 반 사 항	근거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마)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희석 배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 소
(바)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6)에 해당하여 취소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제13조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8)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9)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 반 사 항	근거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1조 제13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1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4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 명 령			
(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1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제13조 제16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관리인 선임명령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관리인이 비상근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 비고 :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기간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9)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 기간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완료일까지, (9)의 (가)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5)와 (11)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전의 위반행위 차수를 합산한다.
5. (6)의 (라)에서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라 함은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2), (4), (5), (6), (7), (9)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규정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7.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10)의 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기준(당해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를 제외)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 이상 600%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 이상 300% 미만)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8.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 (8), (11)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1단계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배출시설의 변경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별표 12)

벌금의 기준 (제21조 관련)

항 목	금 액	비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각 각 \$3000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500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각 각 \$200	
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 직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각 각 \$100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제4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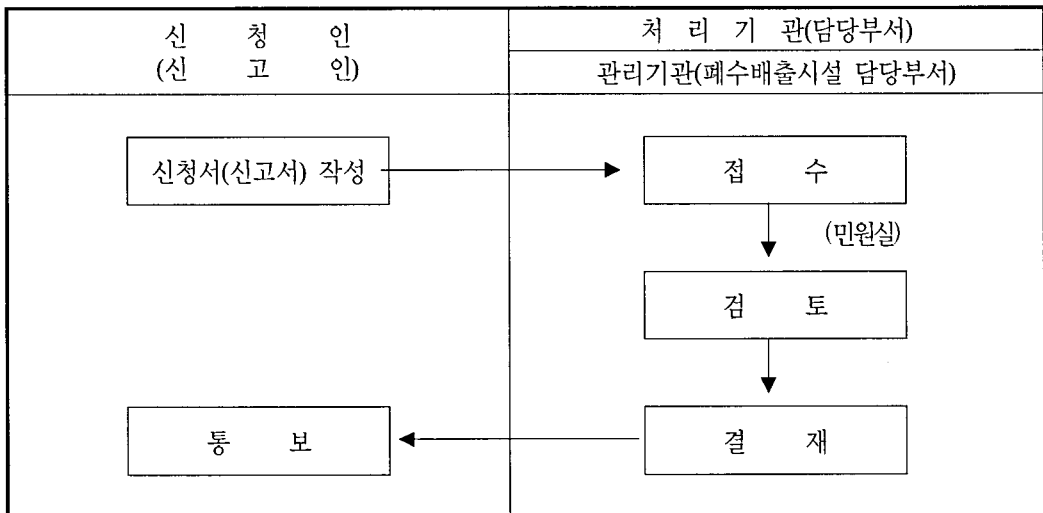
(앞쪽)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처리기간
				10일
신청 (신고인)	①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③생년월일	
	④주 소	(전화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신청 (신고 내 용)	⑥업 종 (분류번호)	⑦주 생 산 품		
	⑧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⑩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일)	폐수배출량(m ³ /일)	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⑪배출시설의 조 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⑫방 지 시 설 의 조업 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⑬오 염 물 질 배 출 항 목			
수질환경관리준칙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고를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신고)인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div>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작성요령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나타내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에는
 -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균량을 기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용수는 공급원(지하수, 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 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오염물질발생예측서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오염물질처리계획서는 오염물질을 자체 처리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자가처리·위탁처리)이 포함되어야 하고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해당사업장에 한함),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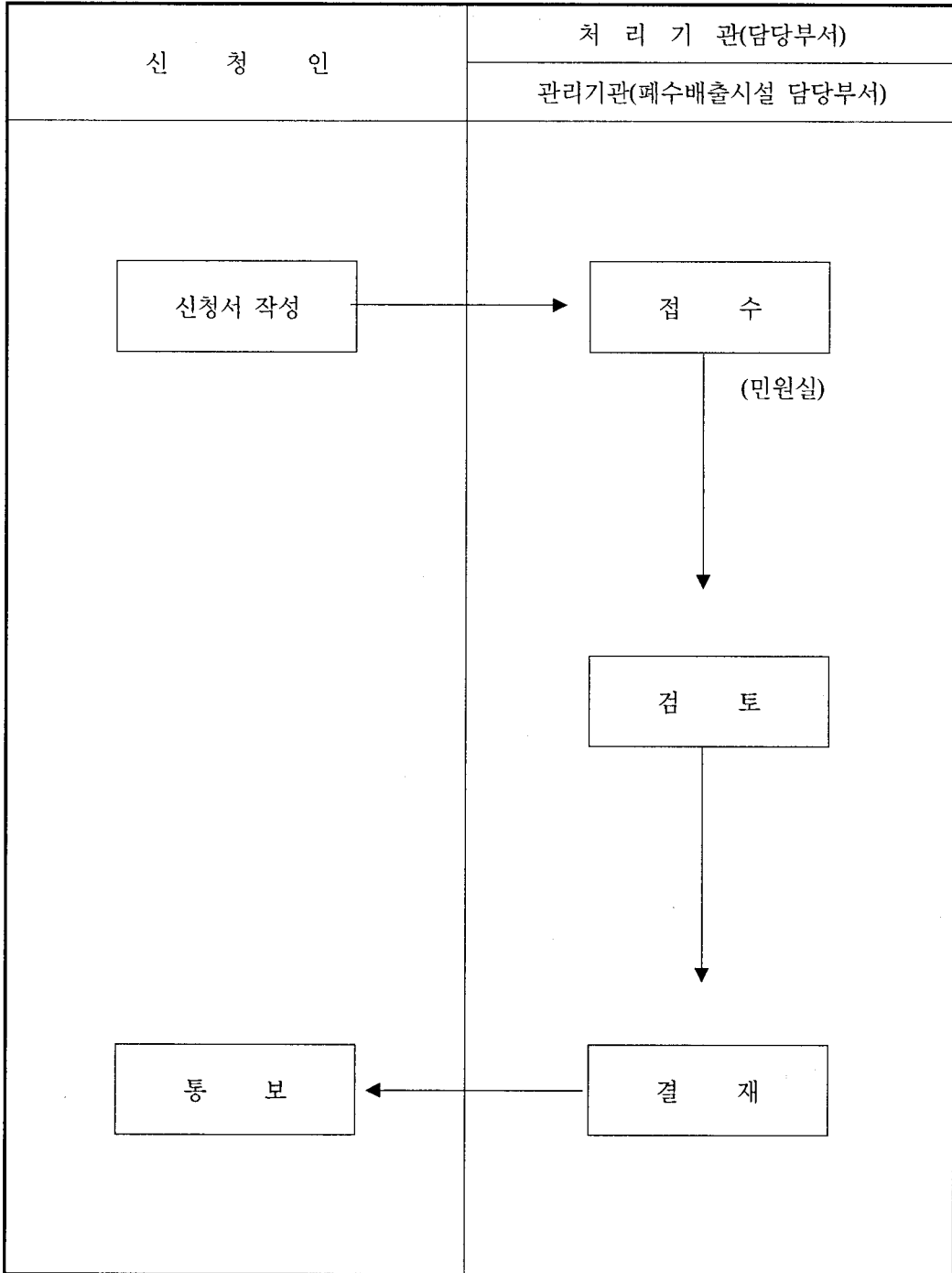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 참조	
신 고 인	①사 업 장 명	(기업등록번호:)			
	②대 표 자		③생 년 월 일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변 경 사 항	⑥변 경 전		⑦변 경 후		
수질환경관리준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허가)신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필증 원본				없 음	
2.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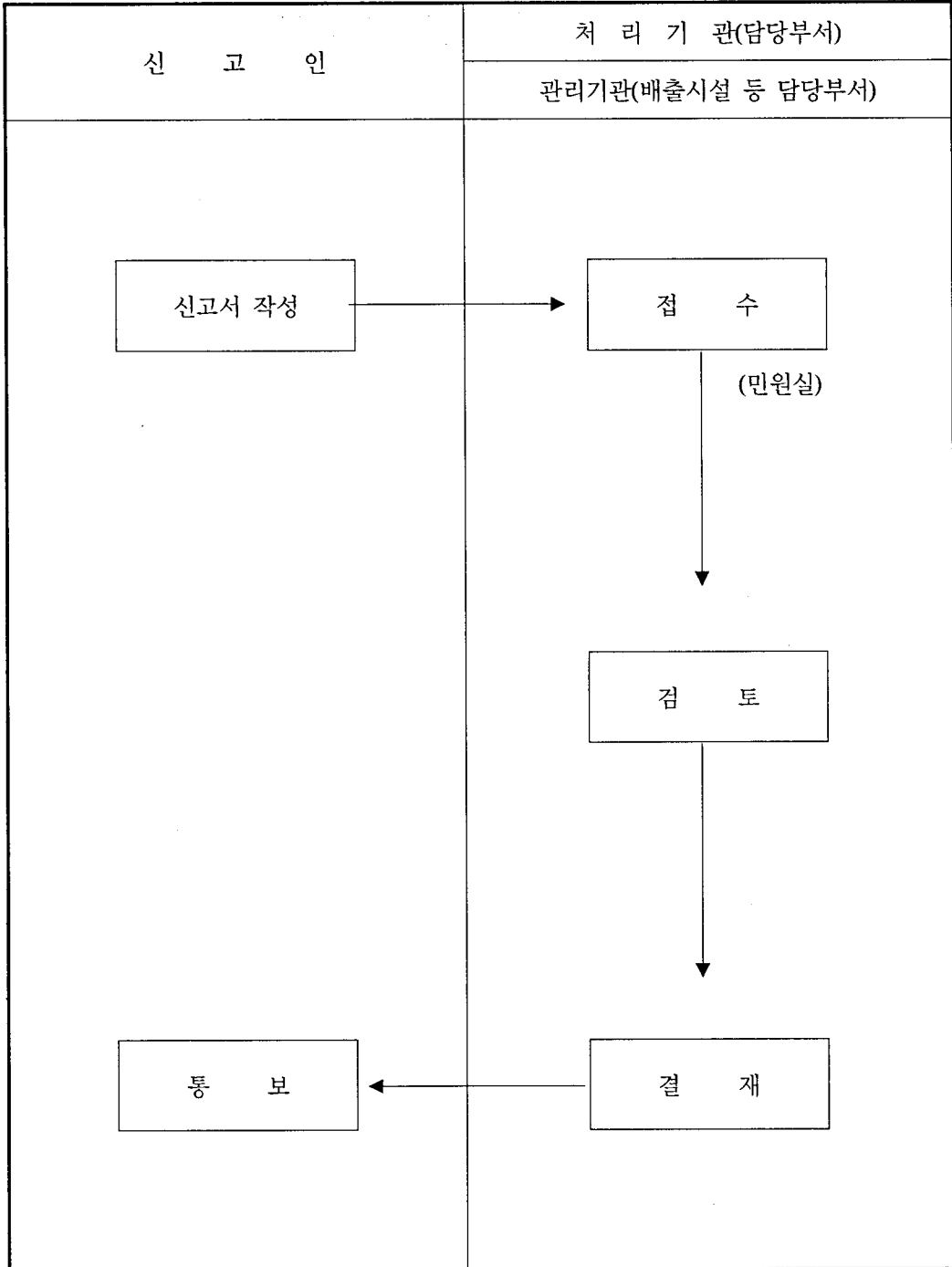
신고번호	□허가증 □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제 호					
①사업장명		②기업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업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분류번호)	⑦종별	종		
⑧배출시설일일조업 시간및연간가동일		⑨방지시설일일가동 시간및연간가동일			
⑩폐수배출요인명세					
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허가또는 신고사항	⑪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따로붙임				
	⑫폐수배출및처리명세				
	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오염물질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⑬폐수처리계통도 : 따로붙임					
⑭신고수리조건					
수질환경관리준칙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input type="checkbox"/> 설치를 허가 <input type="checkbox"/> 설치신고를 수리 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 일
신 고 인	①상 호 (사업장 명칭)			
	②성 명 (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업 종				
⑦가동개시에정일		년 월 일		
⑧설 치 명 세				
<p>수질환경관리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p>※ 구비서류 : 신고필증 원본</p>				수수료
				없 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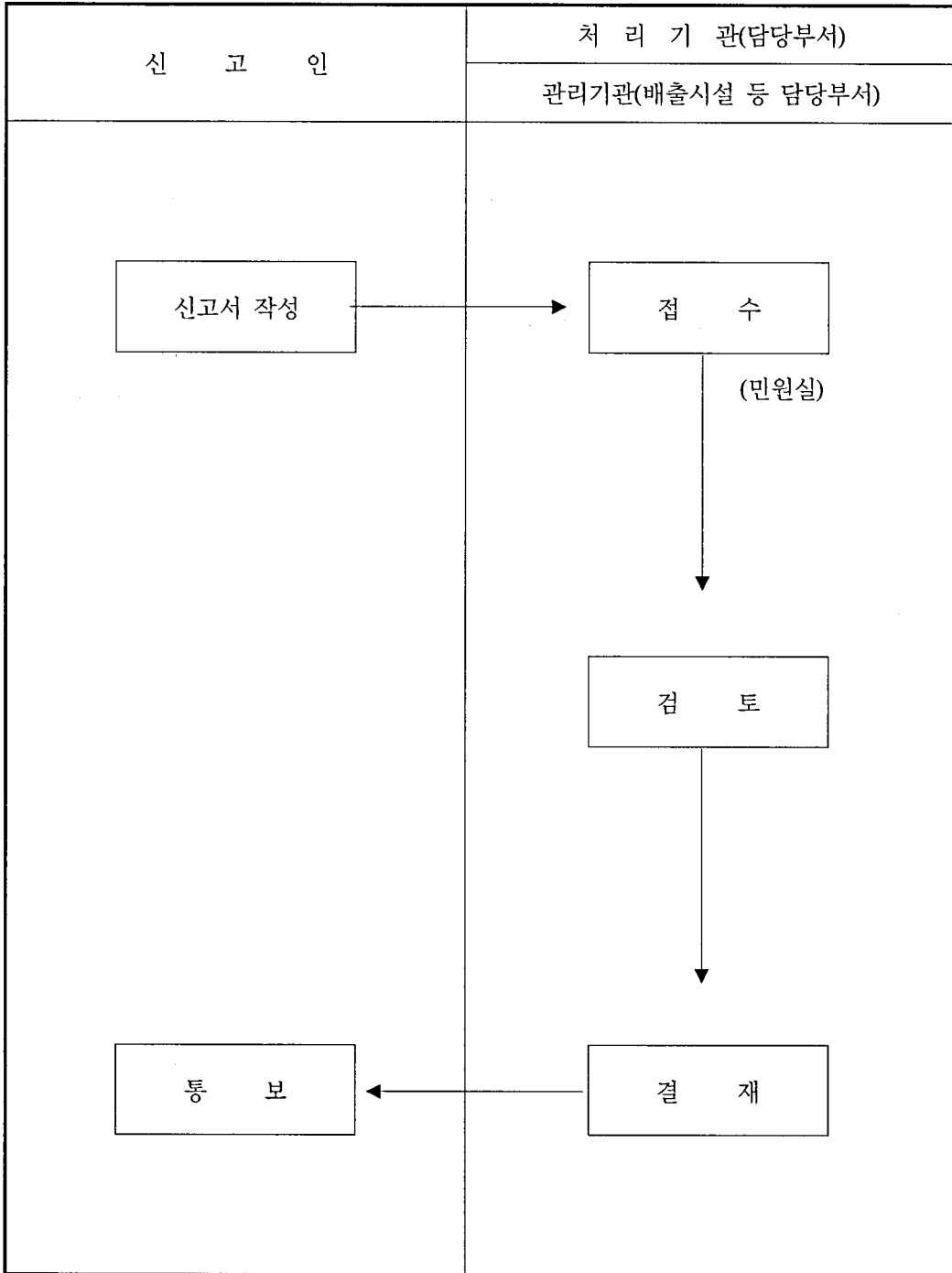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청인	①상 호 (사업장명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사업장소재지	(전화 :)		
당 초		변 경		
⑤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⑥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⑦변 경 신 청 사 유				
<p>수질환경관리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 개시일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제9조제2항)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구분 \ 시간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구분 \ 시간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시간대 표시는 흑색																							

3.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구분	항목	전일지침 (m ³)	금일지침 (m ³)	사용량 (m ³ /일)	검침 시간대	구분	항목	전일지침 (m ³)	금일지침 (m ³)	배출 및 사용량 (m ³ /일)
상수도	1호									
	2호									
공업용수	1호									
	2호									
지하수	1호									
	2호									
하천수	1호									
	2호									
해수 등 기타	1호									
	2호									

4. 슬러지의 발생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m ³)	처리량(m ³)	보관량(m ³)	함수율(%)	보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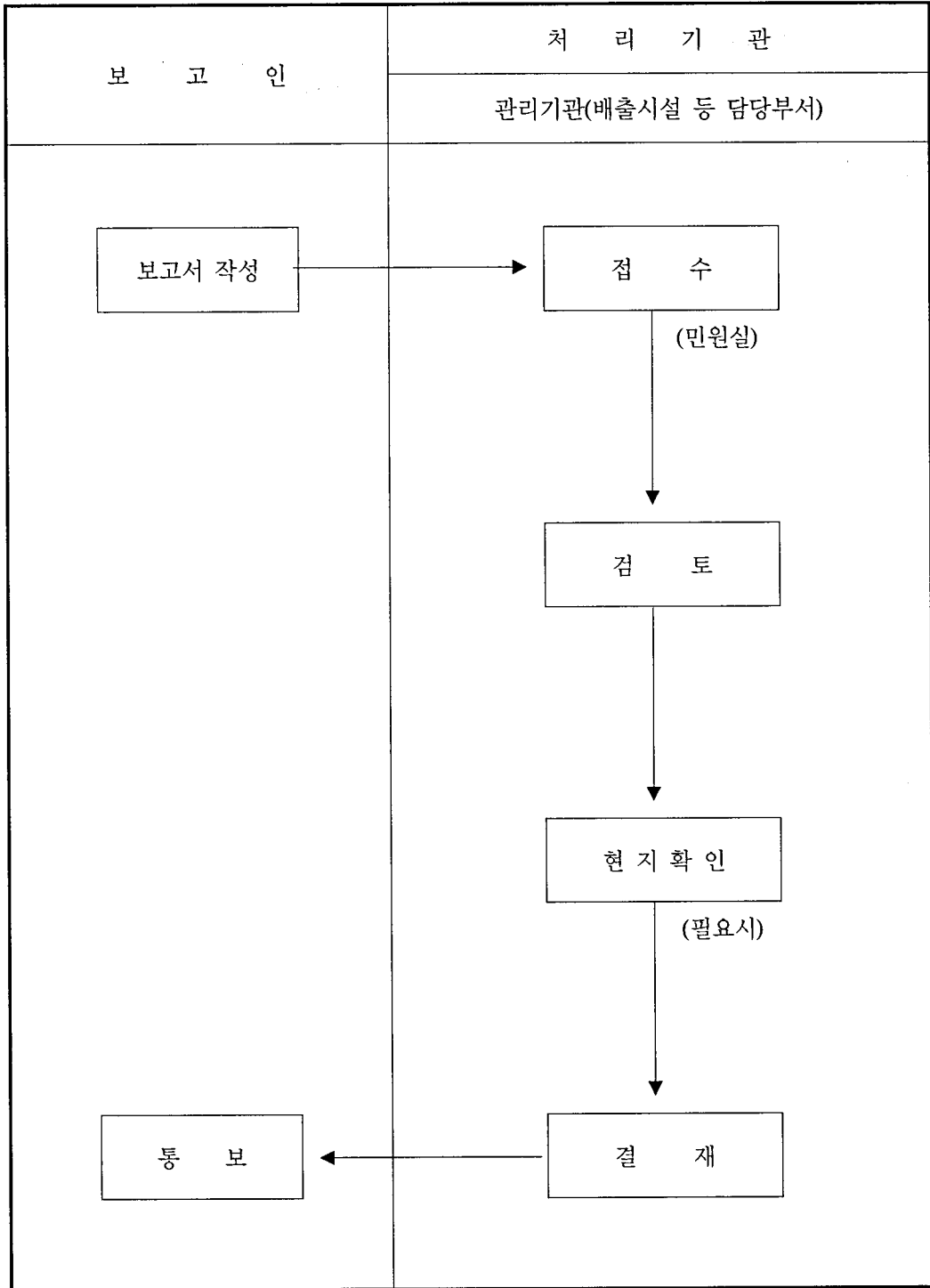
※ 자가처리장소 :

위탁처리업소명 :

[별지 제7호서식]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폐수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개선 <input type="checkbox"/> 조업정지 <input type="checkbox"/> 사용중지 <input type="checkbox"/> 폐쇄	선 명령이행보고	처리기간
제 호						4 일 (검사기간 제 외)
보 고 인	①상 호 (사업장명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 종						
⑦배출시설및방지시설명						
⑧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사항						
⑨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이행일						
수질환경관리준칙 제1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input type="checkbox"/> 개선, <input type="checkbox"/> 조업정지, <input type="checkbox"/> 사용중지, <input type="checkbox"/>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대기 <input type="checkbox"/> 수질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					<input type="checkbox"/> 임명 <input type="checkbox"/> 개입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환경관리인							즉 시
신고인	①상 호(사업장 명칭)							
	②성 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중, 수질 중							
⑦ 환경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업일	직위	비 고	
대기환경관리준칙 제19조제1항, 수질환경관리준칙 제16조 <input type="checkbox"/> 임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을 신고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세부지침

[제정 2008.11.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개성공업지구의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9조」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세부지침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관리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거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 적립금, 관거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라 함은 오·폐수의 배출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4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처리구역 면적은 3,306천㎡(100만평)이다.

제5조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기타 수질환경관리준칙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6조 (사업자 대표회 구성 및 운영)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구성 및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오 · 폐수의 유입처리

제7조 (오 · 폐수의 유입승인) ①처리시설에 오 · 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유입 오 · 폐수의 농도 및 오 · 폐수량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별지 제1, 2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은 승인 전 처리장의 시설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장과 유입승인사항을 협의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 · 폐수, 분뇨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③사업소장은 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 · 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오 · 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제7조의 지침에 의거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 · 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3조』에 의해 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지침에 의거 오 ·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3조』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 및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5조 제1항』에 의해 관리기관에게 신고(변경)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사업자는 오·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써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출지침) 사업자는 제5조의 조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COD)과 나머지 오염물질을 환경보호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폐수배출허용지침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입승인의 취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 세부지침에 의한 오·폐수의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지침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지침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한 자

제15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소장은 제13조의 세부지침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자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19조 제1항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 (자료의 제출) 관리기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7조 (관리운영)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기관이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39조』에 의거,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 뿐만 아니라 시설재투자적립금, 관거유지관리비를 포함한다.

③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를 포함한다.

④시설재투자적립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을 말한다.

⑤관거유지관리비는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①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세부지침에 의하여 업소별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부

과하되, 당해월의 부담금은 익월 15일까지 고지하고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액 산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를 매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익년 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오염물질배출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지관리비의 추징) ①사업소장은 사업자가 제15조 세부지침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세부지침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의견을 조회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되, 부담금 추징대상의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소장 및 사업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1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①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외 방류수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제1항의 세부지침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관리기관이 원인 분석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의 세부지침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관리기관은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 5 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3조 (부담금의 사용) ①시설투자적립금 및 기본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개선, 장비의 교체·고정자산의 구입·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기본부과금 선납부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유예기간은 6개월,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세부지침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세부지침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지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세부지침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 신청) ①사업자는 본 세부지침에 의해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담금 증빙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담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세부지침에 의한 이의가 인정되는 계산이 잘못된 부담금은 익월 부

담금 부과시 정산한다.

제26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단, 휴업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시는 제외한다.

제 6 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 (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매일 0.0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가산금은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28조 (부담금의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기관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2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한 사업자는 전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사업장을 양수,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의 제한)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동을 위해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리기관은 사유가 적정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지침) 이 세부지침 시행일 이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유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BS = T \times f(Li)$$

가. BS : 업체별 월간 유지관리비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관거유지관리비)

①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를 포함한다.

②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의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 재산가액(원) x 처리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000)

③ 관거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별도의 산출공식을 따른다.

나. T : 오염부하량당 처리단가(원/kg)

다. f(Li) : 개별사업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 계수를 곱하여 다음으로 산출한다. (kg/월)

$$f(Li) = aQ_i \times \left(\frac{b \cdot BOD_i + c \cdot COD_i}{2} + d \cdot SS_i + e \cdot T-N_i + f \cdot T-P_i \right)$$

① Q_i : 개별사업자의 오·폐수 배출량

② BOD_i , COD_i , SS_i , $T-N_i$, $T-P_i$: 개별사업자의 BOD, COD, SS, T-P, T-N 배출농도

③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유량 계수(a)

유 량(m ³ /d)	a	비 고
$Q_i \leq 1,000$	1.0	
$1,000 < Q_i \leq 3,000$	1.1	
$3,000 < Q_i$	1.2	

- BOD 계수(b)

BOD 값 (mg/L)	b	비 고
$BOD \leq 200$	1.0	
$200 < BOD \leq 300$	1.2	
$300 < BOD \leq 400$	1.4	
$400 < BOD \leq 500$	1.6	
$500 < BOD \leq 600$	1.8	
$600 < BOD$	2.0	

※ BOD, SS의 오염농도가 600(mg/L)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염농도를 600(mg/L)으로 산정하되, 누진계수는 초과계수(b=2.0)를 적용한다.

- COD 계수(c)

COD 값 (mg/L)	c	비 고
$COD \leq 200$	1.0	
$200 < COD \leq 300$	1.2	
$300 < COD \leq 400$	1.4	
$400 < COD \leq 500$	1.7	
$500 < COD \leq 600$	2.0	
$600 < COD \leq 700$	2.3	
$700 < COD \leq 800$	2.6	
$800 < COD$	3.0	

- SS 계수(d)

SS 값 (mg/L)	d	비 고
$SS \leq 200$	1.0	
$200 < SS \leq 300$	1.2	
$300 < SS \leq 400$	1.4	
$400 < SS \leq 500$	1.6	
$500 < SS \leq 600$	1.8	
$600 < SS$	2.0	

- T-N 계수(e)

T-N 값 (mg/L)	e	비 고
T-N ≤ 45	1.0	
45 < SS ≤ 100	1.2	
100 < SS ≤ 200	1.4	
200 < T-N	1.6	

- T-P 계수(f)

T-P 값 (mg/L)	f	비 고
T-P ≤ 6	1.0	
6 < SS ≤ 8	1.2	
8 < SS ≤ 16	1.4	
20 < T-P	1.6	

라. 다만, 아래 업종으로서 미생물 생육저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서 BOD 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거 산정한다.

① 산정공식

$$f(Li) = a \cdot Qi \times \{c \cdot CODi + d \cdot SSi\}$$

② 대상업종

-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제1차금속 제조시설 중 도금 시설, 표면처리시설이 포함된 업종
- 가공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시설이 포함된 업종
- 섬유제조시설 중 산알칼리 제조시설, 정련시설이 포함된 업종

2.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

가. 오·폐수량의 산정

1) 폐수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지침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②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의 측정을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아니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월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

사업장의 오수 : BOD 200mg/L

COD 200mg/L

S S 200mg/L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기업창설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지면적	㎡
승인 신청 사항			
<p>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p> <p>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p> <p style="margin-left: 20px;">BOD : mg/L, COD : mg/L, SS : mg/L</p> <p style="margin-left: 20px;">기타 오염물질 :</p> <p>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p>			
<p style="text-align: center;">비용부담세부지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고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p>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폐수 해당)</p> <p style="margin-left: 20px;">2. 공장건물 배치도 1부.(오·폐수 해당)</p> <p style="margin-left: 20px;">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폐수 해당)</p> <p style="margin-left: 20px;">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오·폐수 해당)</p> <p style="margin-left: 20px;">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오수 해당)</p> <p style="margin-left: 20px;">6.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폐수 해당)</p>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기업창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비용부담세부지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p>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제정 2005.2.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별표 1과 같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가 부담한다.

제4조 (입주기업의 책무) ①입주기업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설비의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준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리기관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3.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에 의한 경매,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①지정폐기물(제2조제4호에 정하는 량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지정폐기물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관리기관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5일 이내에 그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증가(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③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⑤제1항 본문에서“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

- 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3.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감염성폐기물
 7. 기타 지정폐기물 : 관리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제 3 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계승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2조 (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사업자가 폐기물을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5 장 벌 칙

제13조 (벌금) ①관리기관은 별표 3의 각 항목별 벌금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5. 2.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2조제4호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나.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가.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한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젠족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목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페페인트 및 페락카(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체상태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

10. 감염성폐기물(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관리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2조제7호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 (1) 일반소각시설
- (2) 고온소각시설
- (3)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 (4) 고온용융시설
- (5) 열처리조합시설[(1) ~ (4)중 2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 (6)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

나. 기계적 처리시설

-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2)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8) 유수분리시설
- (9) 탈수·건조시설
- (10) 멸균분쇄시설

다. 화학적 처리시설

- (1) 고형화·안정화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시설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기타 관리기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기타 관리기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3]

벌금의 기준 (제13조 관련)

항 목	금 액(\$)	비 고
1. 벌금		
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5,000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2,000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각 각 \$1,000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각 각 \$100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input type="checkbox"/> 신 고 서		처리기간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7일	
신 고 인	①상 호 (명 칭)				②기 업 등 록 번 호						
	③성 명 (대 표 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 (사 업 장)								(전화 :)		
⑥업 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 (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 (톤/연)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 기 물 의 종 류		⑪ 성상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연)	
⑮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⑯ 변경사유											
<p>폐기물관리준칙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input type="checkbox"/> 신 고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p>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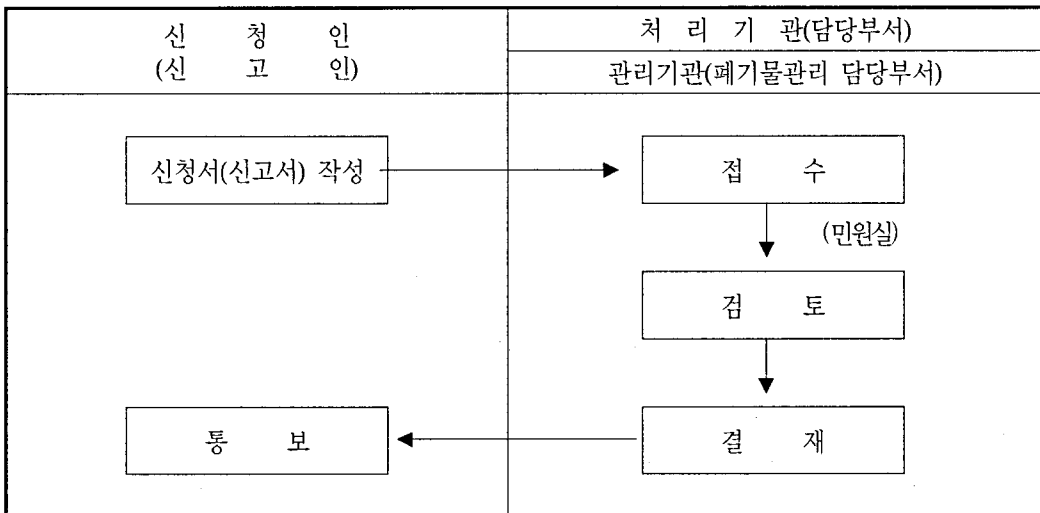
<작성요령>

1. ⑥란은 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기재하되,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⑭은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매립·수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7.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⑤, ⑮ 및 ⑯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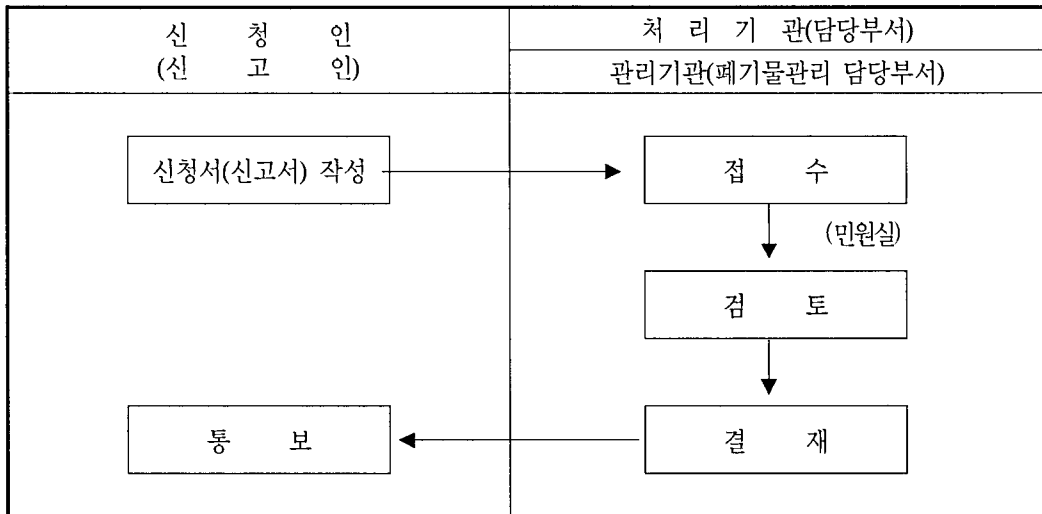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 상 호 (명 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 명 (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배출현장(주 소)	(전화 :)					
	⑥ 업 종			⑦ 기 업 등 록 번 호			
⑧ 공 사 명				⑨ 공 사 기 간			
⑩ 발 주 자	상 호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 폐 기 물 의 종 류	⑫ 배 출 량	⑬ 운 반		⑭ 처 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 기 물 보 관 방 법							
⑰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⑱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input type="checkbox"/> 신 고 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 관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없 음	

(뒤쪽)

<작성요령>

1. ⑥란은 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공정을 작업단 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기재하되,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⑭은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매립·수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7.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⑤, ⑮ 및 ⑯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고 인	①상 호 (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대 표 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 (사 업 장)		(전화 :)						
⑥업 종		⑦주원료 및 사용량(톤/연)			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	⑪배출량		⑬운 반		⑭처 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 반 량 (톤/연)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연)	
⑮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 관 인									

(뒤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앞쪽에서 계속)							
⑩폐기물의 종류	⑪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톤/연)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 호 (명 칭)		②기 업 등 록 번 호			
	③성 명 (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 (사 업 장)	(전화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연)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현황 (업소명·업종·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연)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 (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 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⑧공동 수집·운반, 처리사유						
준칙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인						

(뒤쪽)

공동 수집·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쪽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개성공업지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9. 8. 5]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개성공업지구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47조에 따라 수도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의 소독·청소,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생상의 조치)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건축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저수조를 직접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기관의 교육이수 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저수조 청소를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자에 한해 가능하며,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건축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매년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를 위탁의뢰 받는 기관은 실비차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별표 4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 및 보관)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제5조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제7조 (용수공급의 제한 및 단수조치)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개성공업지구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제49조 1항 및 제50조에 따라 제2조 내지 제5조를 위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수공급의 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저수조설치기준(제3조 관련)

1.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2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2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경우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수준이상 넘거나 일정수준이하로 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의 세목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유입된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排水)용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별표 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16㎡ 이상)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 운반차량(0.85톤 이상)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HP 이하, 5HP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DC 6V~24V) : 1대 이상 - 위생의·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별표 3]

저수조 위생점검기준(제4조제1항관련)

건축물의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공장·병원·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 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별표 4)

저수조 수질관리기준

항 목	단 위	수질기준	비 고
탁 도	NTU	0.5이하	
수소이온농도	-	5.8~8.5	
유리잔류염소	mg/L	0.1이상	
일반세균	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	/100mL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	/100mL	불검출	
대장균	/100mL	불검출	

개성공업지구 소음·진동관리준칙

[제정 2005.12.1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 내의 공장·건설공사장·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개성업지구내의 입주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별표 1과 같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별표 2와 같다.

제3조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3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당해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사업장
2. 기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새로운 공장시설이 설치되거나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관리기관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명령) 관리기관은 조업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칙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은 제8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준칙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준칙 위반금의 부과,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2005.12.1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 (제2조제3호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 (10) 20마력이 상의 원심분리기
 -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 (18)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19)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캐스팅기를 포함한다)
 - (20)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0)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

(21)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2) 제관기계
- (3)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 (4)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 (5)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

-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 (4)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에 한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한다)

-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 라.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마.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바.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비고 :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 \times (3\text{분의 } 4)$ 으로 하며, 소숫점 이하는 끊어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제2조제4호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 (1) 소음기
- (2) 방음덮개시설
-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4) 방음외피시설
- (5) 방음벽시설
- (6) 방음터널시설
-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 (8) 흡음장치 및 시설
- (9) (1) 내지 (8)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2) 방진구시설
 -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4) (1)내지 (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별표 3]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제3조 관련)

1. 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측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낮 (06시~19시)	아침, 저녁 (05시~08시) (19시~22시)	밤 (22시~05시)
공업지구	공업구역	70dB	65dB	60dB

2. 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측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낮 (06시~19시)	밤 (19시~06시)
공업지구	공장	75dB	70dB
	건설장	70dB	65dB

[별지 제1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배출시설 소음·진동 <input type="checkbox"/> 방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4일 (검사기간 제외)
보 고 인	상 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위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명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 정지명령 등) 사 항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 정지명령 등)의 이행일						
소음·진동관리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인 또는 서명)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개성공업지구 공원·녹지 관리 준칙

[제정 2009. 12. 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공업지구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계획 및 이용준칙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장의자 등 휴양시설
 - 라. 민속놀이마당·그네·웃놀이터 등 유희시설
 - 마. 축구장·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전시관·야외 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매점·변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시설
3. “녹지”라 함은 공업지구 내에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주변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계획 및 이용준칙 제2조제3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도로

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제 2 장 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3조 (공원의 세분) 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근린공원

주로 근린거주·근로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설치 및 관리) 공원은 개발업자가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를 인수받아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제5조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원의 점용허가) ①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해 관리기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지 2호서식에 의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원상회복)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또는 대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징

수할 수 있다.

제8조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공원 및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기관 이사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취사 행위
3.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내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5. 그 밖의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녹지와 가로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2. 경관녹지
공업지구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3. 연결녹지
공업지구 안의 공원·하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용자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제10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녹지는 개발업자가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를 인수하여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제11조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 ①관리기관의 이사장은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녹지의 점용허가)** ① 녹지안에서 녹지의 구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녹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7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비 용

- 제13조 (비용부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와 녹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준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제14조 (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관리기관은 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공원에 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목 또는 시설물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 ③ 수목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녹지와 가로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관리대장)** ① 관리기관은 공원·녹지, 가로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관리기관이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준칙 제6조제1항>

1. 전주·전선 및 통신시설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의 설치
3. 도로·교량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4. 초소·표지의 설치
5.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6.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7.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8. 관리기관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9.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10.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10의2.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수목의 벌채 및 재식

□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준칙 제11조제1항>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시설의 설치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3.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3의2.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4.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별표 2]

부담금 산정기준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운반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10%+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운반비)× 50%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이식비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운반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운반비

1.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 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2.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지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4. 예치금 예치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 책임담보기간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원 <input type="checkbox"/> 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소(소재지)		
④ 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⑤ 점용목적 및 대상			
⑥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⑦ 점용기간			
개성공업지구 공원·녹지 관리준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 1부 2.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 각 1부 3. 공사시행방법 : 1부 4. 원상회복방법 :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공원·녹지 점용허가증		
제 - 호		
주 소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공원·녹지 종류		공원·녹지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 공원·녹지 관리준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녹지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p>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원 <input type="checkbox"/> 녹지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주소			
종 류				
공 원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공 작 물 또는 시 설 물 구 조				
허 가 연 월 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개성공업지구 공원·녹지 관리준칙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공 원 대 장

작성년월일

번호-

① 도시공원 종	③ 소재지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번지의 호외	필지	지 적 고 시 고유번호() :	m ²
	④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							
② 공원명칭	시설계획인가 시행허가	사업착수	공용개시	⑥ 비		율	건축물의 건폐율	m ² : 건폐율 %
		사업준공	기 타					
⑤ 연	협						부 지 비 율	m ² : 건폐율 %

시 설 내 역

⑦ 조 경 시 설	수 목		
	잔 디	⑧ 휴양시설	
⑨ 유희시설	기 타		
		⑩ 운동시설	

⑫ 편의시설	⑭ 기타시설
⑪ 교양시설	⑬ 관리시설

5. 외화관리·광고·자동차

- 외화관리준칙
- 광고준칙
-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 자동차등록준칙
-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

[제정 2006.4.3]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폐) 개성공업지구내 기준화폐는 US\$로 한다.

제3조 (환자시세) 개성공업지구내 류통화폐의 환자시세는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당일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한다.

제4조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 제출) 개성공업지구내 설립된 투자은행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돈자리별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 안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외화예금거래의 비밀보장) ①은행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외화예금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은행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기관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구서로 은행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6. 관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은행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

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은행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은행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업지구밖의 외화돈자리 개설 신고) 개성공업지구 밖의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돈자리개설 전에 외화돈자리 개설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외화수입지출보고) 공업지구 밖의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개설한 기업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외화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6. 4. 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 년 반기 외화입출금 변동보고서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20 년도 상(하)반기 당 지점의 외화입출금 변동현황을 보고합니다.

일 자	구 분	금 액	내 용	조달방법	출 처	누계액	비 고
							전기잔액

20 년 월 일

주 소 :

은행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돈 자 리 개 설 신 고 서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은행명	은행지점
은행소재지	
예금주	
개설날자	

위와 같이 외화계좌를 개설함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외화수입지출 보고서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20 년도 제 분기 당사의 외화수입지출 현황을 보고합니다.

통 화 별	전기말잔액	당기수입	당기지출	당기말잔액	비 고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

[제정 2005.3.23]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광고업 및 광고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야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야외광고물은 이를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2. 이 준칙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광고업의 승인) ①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의 등록신청서에 그 등록신청서의 비고란에 종업원증 자격증소지자를 표시하고, 그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개발업자의 신청자에 대한 광고업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신청자가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적법성을 검토하여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의 등록승인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이사장이 광고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⑤이사장은 광고업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수수료를 징구한다. 이 규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4조 (광고내용) ①개성공업지구에서의 광고는 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에 위반

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광고가 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고업자 또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광고가 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에 위반되는 경우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의 중지, 정정광고 및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①모든 야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야외광고물설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접수한 후 광고의 적법성 및 정확성, 공업지구 전체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야외광고물설치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야외광고물설치의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접수한 이사장은 7일 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야외광고물설치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치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구한다. 이 규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개성공업지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6조 (야외광고물의 안전검사) 이사장은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야외광고물의 안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의 배제) 관리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에는 규정 및 본 준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이사장은 이 준칙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업자에 의한 광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야외광고물, 제6조에 의한 안전검사 결과 공중에 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외광고물의 철거를 광

고업자, 광고주 또는 기타 철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

②이사장은 규정 및 이 준칙에 위반하여 광고업을 영위하는 광고업자에 대해 영업중지 또는 광고업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미화 5,000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외에 규정 및 이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미화 3,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2005. 3. 2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광고와 관련하여 법, 규정 및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이 결정한다.

(별지 1호서식)

야외광고물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광 고 주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기 업 명		기 업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광고업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기 업 명		기 업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광고의 내용	광 고 물	광고물의 형식		
		광고물의 규격 및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 고 문 안			
<p>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광고물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광 고 주 : 인</p> <p>광고업자 :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p>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광고물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인</p>				

〔별표 1〕

야외광고물의 분류

번호	분류	내용
1	가로형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에드벌론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야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열차,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취 광고물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개성공업지구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제정 2005.1]

제1조 (목적) 이 세부지침은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이하 “광고준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야외광고물의 분류) 야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광고준칙 제5조제2항과 같이 분류한다(별표 1 : 야외광고물 설치 예시도)

제3조 (허가 절차 등)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준칙 제5조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

제5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광고물 등은 제6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

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로 또는 야광도로(도로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합판, 슬레트, 5mm 미만의 아크릴, 합석 등 광고물 파손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가로·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2 : 가로·세로형간판 예시도)

1.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의 8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로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로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8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3 :

돌출간판 예시도)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과 이·미용 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 이내(상업지역은 30미터)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4 : 지주이용간판 예시도)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제11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5 : 선전탑, 아취간판 예시도)

1. 관리기관 이사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③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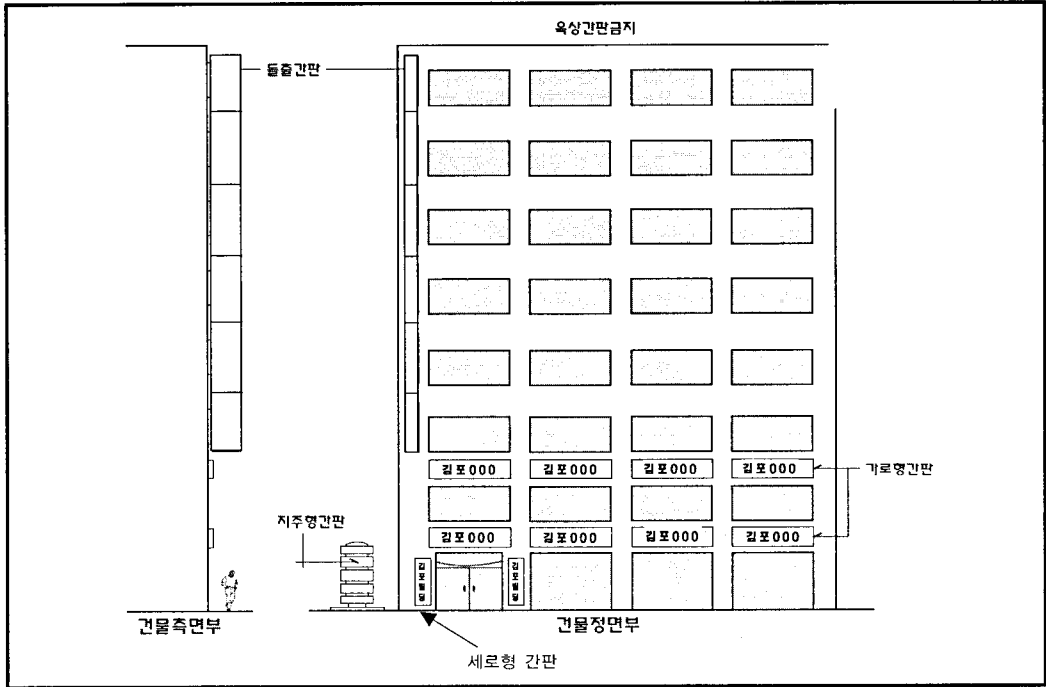
제13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자재는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결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관리기관이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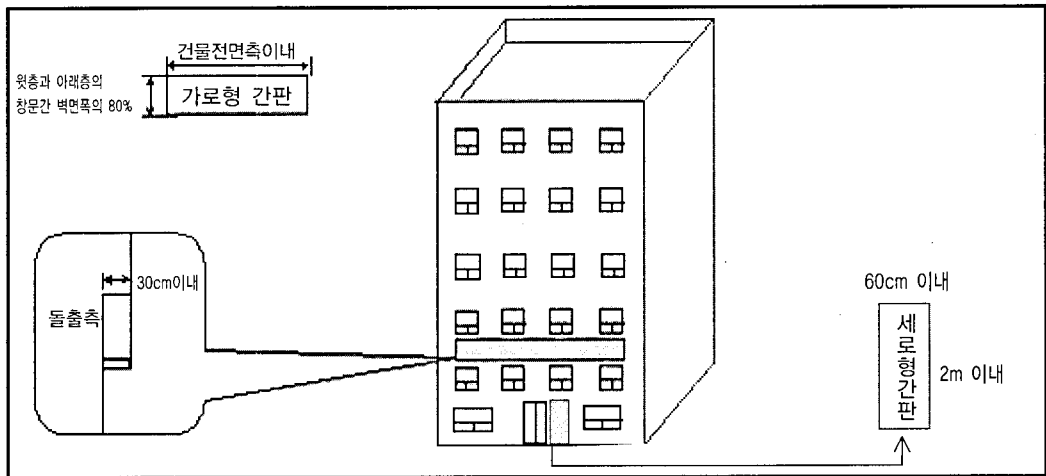
[별표 1]

옥외광고물 설치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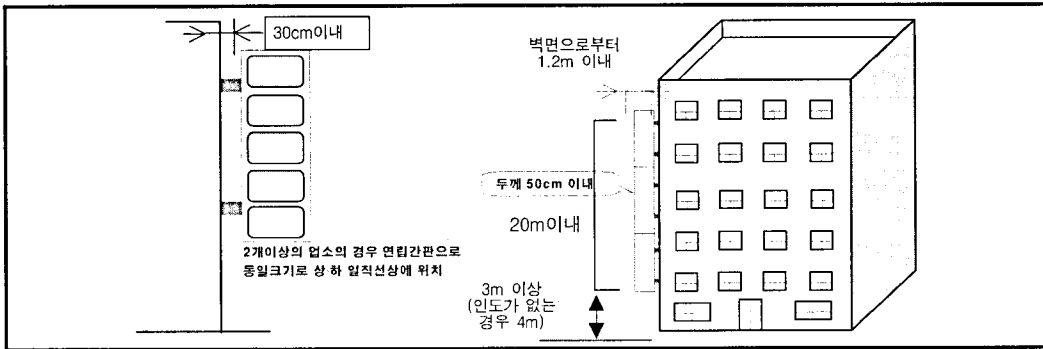
[별표 2]

가로, 세로형간판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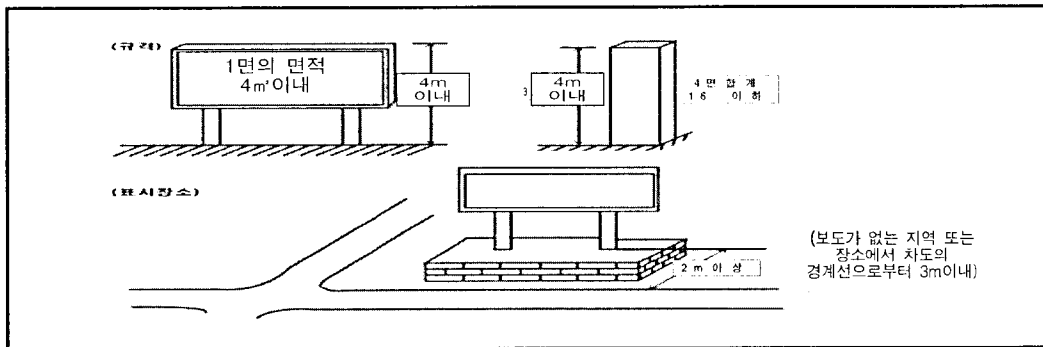
[별표 3]

돌출간판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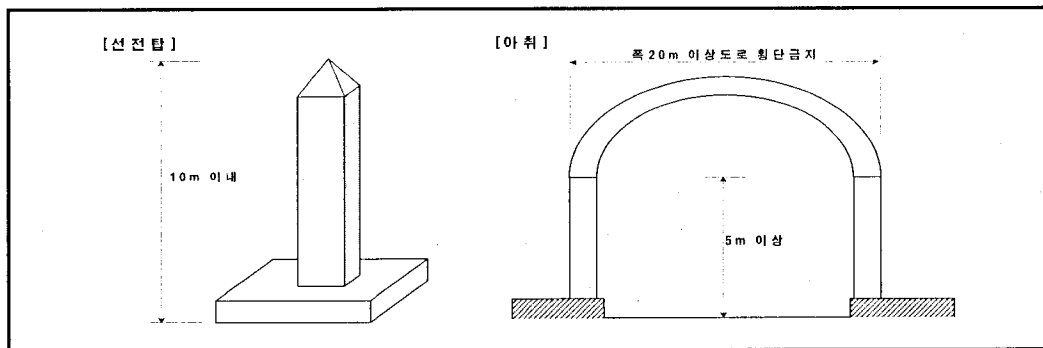
[별표 4]

지주이용간판 예시도



[별표 5]

선전탑, 아취간판 예시도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정 2005. 6.26]

[개정 2006.11.20]

[개정 2008.10.30]

[개정 2009.10.2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개성공업지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에서의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와 특수차를 말한다.
2. “승용차”라 함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3. “버스”라 함은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라 함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특수차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자전차”라 함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6.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시멘트운반차, 굴착기, 불도젤, 냉동차 같은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 (자동차의 등록의무) ①공업지구에서 상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남측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자동차는 남측에 등록하고 “개성공업지구 출

입·체류·거주규정” 제8조에 의한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③남측에서 공업지구로 년 15일 이상 출입하는 남측등록차량의 경우 임시표식판(상)을 발급받아 부착 후 공업지구에서 운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임시표식판(상)은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갱신한다.<신설 2009.10.26>

제4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동일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하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등록원부) ①관리기관은 자동차별로 등록원부를 작성·비치·관리한다.

②등록원부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이름과 사용본거지·등록번호·차대번호·차종·좌석수·적재중량·등록날자·정기검사유효기간 등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등록원부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 (첫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첫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첫자동차등록(이하 “첫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출(입)신고필증(반입차량인 경우에 한한다)
4. 말소사실증명서(남측 및 외국에서 삭제등록 후 반입한 차량에 한한다)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공업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거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말하며,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개발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말한다.)
6.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첫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동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동등록(이하 “이동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4.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동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등록신청을 접수한 관리기관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동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관리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삭제등록(이하 “삭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3.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4. 공업지구에서 반출되는 경우. 다만 재반입이 예정된 일시적 반출은 제외한다.
5. 기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삭제등록을 하고, 수수료 및 소요비용을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운행하지 않고서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삭제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삭제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리기관에 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등록을 신청한 자는 관리기관에 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삭제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삭제등록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삭제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첫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변경등록)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중 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업명, 거주등록번호 또는 기업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매

(2006.11.20 본조신설)

제10조 (반출이행여부의 신고)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등록 후 자동차를 반출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차등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①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관리기관은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차등록번호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측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자동차는 남측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한 후 공업지구에서 운행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자동차기술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첫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검사(이하 “자동차기술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첫기술검사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첫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기술검사 : 첫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기술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기술검사 : 이 준칙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과 자동차검사시설의 설치요건 및 검사기준과 방법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관리기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 번호 및 원동기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첫기술검사 : 첫기술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기술검사·구조변경기술검사 또는 임시기술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⑤관리기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14조 (검사명령 등)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에 대하여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기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시기술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징구) ①관리기관은 이 준칙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와 제13조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관리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하여 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과세자료의 송부) 관리기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의2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증사본 또는 신고서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관리기관이 행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시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뜻과 해당한 조치내용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재 및 벌칙) 이 준칙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기관이 이 준칙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운행중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 칙(2005. 6.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관리기관”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자동차등록과 관리와 관련하여 법, 규정 및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이 결정하기로 한다.

부 칙(2006.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준칙이 제정되기 전 개성공업지구에 반입된 차량으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가 곤란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은 신청인의 별도 확인문건을 받는 등의 조치로 불비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08. 10. 30)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버스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t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t 초과 10t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자동자전차	배기량이 100cc 이하(정격출력 1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한다)이 60kg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정격출력 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특수차	총중량이 3t 이하인 것	총중량이 3t 초과 10t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주 :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2. 자동자전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차인 것
버스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벤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자동 자전거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특수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건설기계형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별첨의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별첨)

건설기계형 자동차

차명	범위
1. 불도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우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7. 모우터 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8. 로올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9. 노상안정기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0. 콘크리트 베틱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1.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2.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4.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5.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6.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7.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8.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0.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1.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2.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3.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4. 특수건설형 차량	제1호 내지 제23호의 차량과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차량으로서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자 동 차 등 록 원 부						
* 제		호		총 1 면 중 제 1 면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제원관리번호)		적 재 중 량		
좌 석 수		차 종		차 명		
차 대 번 호		원 동 기 형 식		주 용 도		
연 식		색 상		규 격		
최 초 등 록 일		최 초 접 수 번 호		제 작 연 월 일		
최 종 소 유 자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사 용 본 거 지 (차 고 지)				삭 제 등 록 일		
검 사 유 효 기 간				등 록 사 항 확 인 일		
점 검 유 효 기 간				폐 쇄 일 자		
순위번호		사항란		소유자명 및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
주 등록	부기 등록					
<p>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p>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자동차첫등록신청서			
자 동 차	차 대 번 호		색 상
	차 종		차 명
	좌 석 수		적 재 중 량
	(구)등록번호		
차	사용본거지(차고지)		(전화번호 :)
	연 식	주 용 도	
소 유 자	성명(기업명)		
	거주(기업)등록번호		
	거주지/체류지		(전화번호 :)
주 사 용 차	성 명	국 적	<input type="checkbox"/> 남측 <input type="checkbox"/> 북측 <input type="checkbox"/> ()
	소 속	직위 / 직책	
<p>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거주지/체류지 성 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조차·수입차		삭제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량에 한합니다) 1부 3. 수출(입)신고필증(반입차량에 한합니다) 1부 4. 말소사실증명서(남측 및 외국에서 삭제 등록 후 반입한 차량에 한합니다) 1부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등록증사본·기업등록증사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말소사실증명서 1부 3. 신규검사증명서 1부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주등록증 사본·기업등록증 사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5.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문건

[별지 제3호서식]

자 동 차 등 록 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주 용 도
차 명		형식 / 연식		
차 대 번 호		원동기 형식		
사 용 본 거 지 (차 고 지)				
소유자	성명(기업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주 사 용 자	거주지/체류지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				

제 원	길 이	mm	승 차 정 원	명
	너 비	mm	정 격 출 력	ps
	높 이	mm	최 대 적 재 량	kg
	총 중 량	kg	기 통 수	기통
	배 기 량	cc	연료종류/연비	(km/L)
	주 행 방 식			규 격
형식승인번호 (제원관리번호)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구 분	번호판 교부일	봉 인 일	교부대행자 확인

검사유효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검 사 장 소	주 행 거 리	검사책임자		
	(첫등록일)						
정기점검· 정비기록	점검종별	점검·정비유효기간		점검·정비실시자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고유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정비 책임자명
변경등록사항	성 명	거주지/체류지			등록일자	확 인	
구조 및 장치 변경사항	내 용		검 사 일 자		검사책임자 확인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자동차삭제등록신청서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소 유 자	성 명 (기 업 명)		
	거 주 등 록 번 호 (기업등록번호)		
	거주지 / 체류지		
삭제등록의 원인 <input type="checkbox"/> 폐 차 <input type="checkbox"/> 제작·판매자에 반품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input type="checkbox"/> 반출예정 <input type="checkbox"/> 도 난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삭제등록사실증명서 교부여부		<input type="checkbox"/> 교부 필요	<input type="checkbox"/> 교부 불필요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삭제등록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거주지/체류지 성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div>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제 호 자동차삭제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차 명		차 대 번 호	
	원 동 기 형 식		연 식	
	형식승인번호		용 도	
	최 초 등 록 일		사 용 기 간	
소유자	성명(기업명)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거주지/채류지			
삭제등록일자			증명서 용도	
삭제등록구분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준칙 제9조의 의하여 삭제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①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반출이행여부신고서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목적으로 삭제등록한 자동차의 반출이행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반출자 거주지/체류지
성명(기업명) (서명 또는 인)
거주(기업)등록번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일련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명	삭제등록일	반출증명서 발급일자

* 구비서류

1. 자동차별 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반출을 이행한 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5.11.20]

제 1 장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 제1조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①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첫등록 접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련번호는 ‘100’부터 정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류 및 규모 등과는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 제2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관리기관은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첫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부착, 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준칙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서식] 등록번호판재교부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등록증이나 체류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1부
 2.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등록증
- ③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④관리기관은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시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①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한다.

②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봉인의 위치) 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 부분에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형식

제5조 (등록번호판의 형식) ①등록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밀리미터로 한다.

②등록번호판의 도색은 황색지에 지역 기호표시는 남색으로 하며 자동차등록번호 및 테두리는 흑색으로 한다.

③등록번호판에 표시하는 지역 및 자동차등록번호, 테두리 기호는 1.3밀리미터 양각되어야 한다.

④등록번호판에는 지름 28밀리미터의 원형속에 ‘개성관리’라는 문자를 기재하되, 원형 및 문자는 음각되어야 한다.

제6조 (지역 기호표시) 등록번호판의 지역 기호표시는 ‘개성공업’으로 한다.

제7조 (자동차등록번호 형식) ①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 기호표시, 규모 기호표시, 세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뤄진 일련번호 순으로 구성되며, 각 기호표시 및 일련번호는 하이픈('-')으로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일련번호로만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성한다.

③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분 류	기 호
자동차 종류	버 스	1
	화물자동차, 특수차	2
	트랙터, 굴착기, 지게차	3
자동차 규모	소 형	1
	중 형	2
	대 형	3

제8조 (봉인의 형식)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관리기관이 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봉인에는 “개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봉인장치는 봉인 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3. 봉인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인의 지름 : 20밀리미터 내지 25밀리미터
 - 나. 봉인의 높이 : 7밀리미터 내지 10밀리미터
4.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이어야 한다.

부 칙(2005.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서식]

<p>* 제 호</p> <h2 style="margin: 0;">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h2> <p>*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p>				
신청인	성 명 (명칭)		거주등록번호 (기업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 록 번 호			
	차 종		용 도	
재 교 부 사 항 <input type="checkbox"/> 앞번호판 <input type="checkbox"/> 뒤번호판 <input type="checkbox"/> 앞·뒤번호판 <input type="checkbox"/> 재봉인				
재 교 부 사 유 <input type="checkbox"/> 분실·멸실·도난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갱신				
<p>‘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제11조제3항 및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청인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등록증이나 체류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1부 2.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등록증 				

6. 일반관리

-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 주요물자관리준칙
- 주차장관리준칙
-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 석유판매업준칙
-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 행정절차 운영준칙
- 출입증발급준칙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제정 2006.7.7]

[개정 2008.10.30]

[개정 2009.10.2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7조 및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은 영규정 제19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라 한다)의 제반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종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 규정 및 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준칙에 의한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요금) 관리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징수면제 및 할인)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징수) ①관리기관은 각종 허가 및 인가 등의 민원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 처리전에 수수료를 민원사무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정은행에 납부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등) ①관리기관은 제증명서 등의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첨부하여 소인하거나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 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이 준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민원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관리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아 그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입증지) 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 명의로 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현금납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0)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6)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구분	수수료항목		수수료율 및 금액	비 고
각종 인·허가 업 무	기업창설·등록 수수료		\$30	남측 :등록자본 4/1,000
	건축허가 수수료	10,000㎡ 이하	\$30	75천원
		30,000㎡ 이하	\$75	15만원
		100,000㎡ 이하	\$150	30만원
		100,000㎡ 이상	\$300	60만원
	기타 인·허가 수수료		\$30	-
	제증명서·확인원 발급 수수료 (부동산등록, 토지대장, 기업등록 부, 인감증명, 지적도 등)		\$1	-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5	남측의 1/2
가스시설 허가신청 수수료		\$20	남측의 1/2	
출입증 발급업무	발급수수료	출입증	추후확정	-
		통행증	추후확정	-
부동산 관련업무	등록·설정 수수료	건물소유권등록	취득가의 0.3%	남측의 1/10 수준
		토지이용권등록	취득가의 0.3%	"
		저당권 설정·변경	설정금액의 0.02%	"
		기타권리관계설정	설정금액의 0.02%	"
자동차 등록	등록수수료	신규·이전등록	\$20	남측 : 가액의 5%
		임시표식판	신규 \$10	원가산정에 의거
			갱신 \$3	
	말소등록	\$5	남측 7,500원/건	
	재교부 수수료	등록번호판·봉인	\$10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1	-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30	남측 5만원 수준	
기업관리	관리수수료		월노임총액 0.5%	-

※ 기업에는 지사(사무소, 영업소)가 포함된다.

※ 부동산 등록수수료 면제 : 기업이 개발업자로부터 최초로 토지이용권을 이전, 건축물 보존등록, 토지이용권·건축물 근저당권설정 최초 1회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제정 2004.12.17]

- 제1조 (목적)**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이하 “관리준칙”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반입된 주요물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리원칙)**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주요물자를 반입한 기업은 동 주요물자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 (관리대상)** 남북측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물품중 관계기관이 주요물자로 판정하여 개성공업지구로 반출을 승인한 물품은 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관리기간)** 관리기관은 남측 세관으로부터 통일부가 주요물자로 판정하여 개성공업지구로의 반출을 승인한 물품의 반출통관목록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동 물품이 남측으로 재반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동 물품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제5조 (관리담당자 지정·등록)** 관리기관 및 주요물자를 보유한 기업은 각각 주요물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기업은 지정한 관리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 (관리장비 설치 및 관리계획 보고)** ①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요물자가 관리구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주요물자의 최초 반입 7일전까지 제1항 설비의 설치계획과 운용계획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점검)** ①기업은 주요물자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방지시설, 가동현황,

자체점검 현황 등 주요물자에 대한 기업의 자체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시 조치사항) ①주요물자를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개성공업지구 밖의 북측지역으로 반출한 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북측 근로자가 제8조제1항의 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업체별 주요물자 관리 담당자는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본 준칙을 위반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 해고, 추방 등 징계를 해당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업은 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시정조치사항을 문서로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4. 12. 17)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지 2호서식]

2000 년 00 월 주요물자 점검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 200 년 월 일

수 신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발 신 :

(담당자 : 총무부 / 과장 홍길동 , 전화 :)

총괄

[단위 : 건]

항 목		전월현황	당월감소	금월현재	비 고
합 계					
구 분	1				
	2				
	3				
	4				

- 주의) 1. 점검결과는 매월 10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2. 망실, 폐기, 반출시 관련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전 확인절차 필요)

개성공업지구 주차장관리준칙

[제정 2008. 1. 24]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건축준칙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등록준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주차단위구획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

6. 주차구획 :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전체

제3조 (주차단위구획 설비기준) ①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 지점을 가각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 참조>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미터)

주차형식	출입구2개이상	출입구 1개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7.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6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설주차장의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관리기관이 이를 설치한다.

②관리기관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및 그 밖에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자동차(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노상주차장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의 징수 등 주차장 관리에 관한 청렴서약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징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부당한 이익을 관리기관에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관리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견인·보관·반환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주차위반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관리기관에게 견인·보관·반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관리기관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관리기관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노상주차장의 표식)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 이외에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설치등)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시는 <별표2>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별표3>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③노외주차장에는 일정비율이상(면적대비 5%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개성공업지구의 중심지역으로서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제22조에 따른다.

제15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관리기관이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를 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6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관리기관이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 및 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부설주차장의 규모가 300대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관리기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⑤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중 용도가 공장인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제21조에 의한다.

제18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4>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관리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리기관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2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기준)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재)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종업원 등을 포함)은 주차장 및 시설물을 그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출입제한, 물자반출제한,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법인 및 개인이 부담한다.

1. 제3조에서 제6조의 주차장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주차장 및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관리기관은 5회이상 주차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출입제한 등의 제재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제재에 불복이 있는 법인 및 개인은 관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1. 24)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적용 (타 용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아래 2-6의 사항에 따름)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당해 건축물은 적용 제외 - 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4.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600㎡당 1대(시설면적/600㎡) ○ 아파트형 공장은 시설면적 400㎡당 1대임 ○ 시설면적 50㎡당 1대의 자전거 주차장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6. 자전거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의 경우 시설면적 50㎡당 1대

[별표 2]

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성 명 (법인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주차장	④명 칭		
	⑤위 치		
	⑥주차장형태	자주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규 모	대 m ²	
	⑧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준칙 제1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없 음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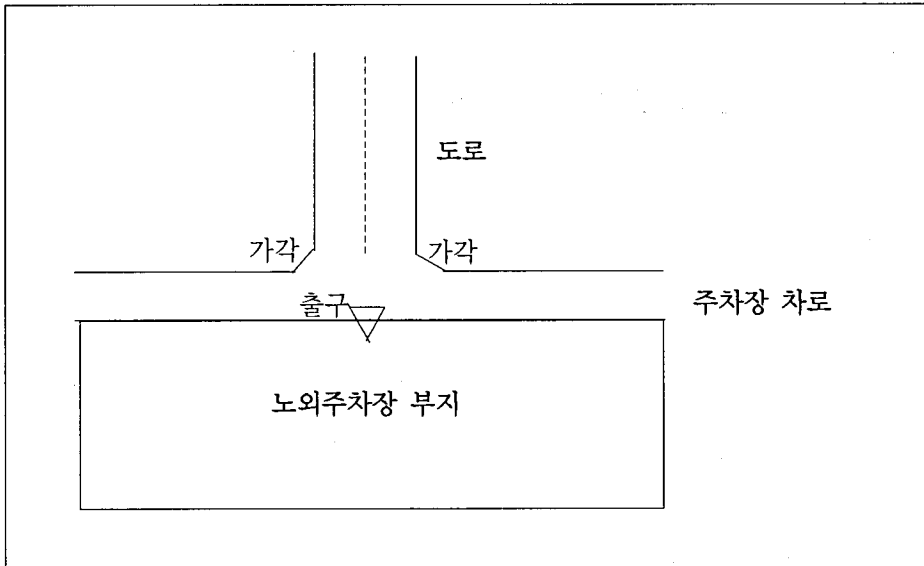
[별표 3]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설치자	①성 명 (법인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변 경 연 월 일			
⑤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⑤변 경 사 유			
주차장 관리준칙 제14조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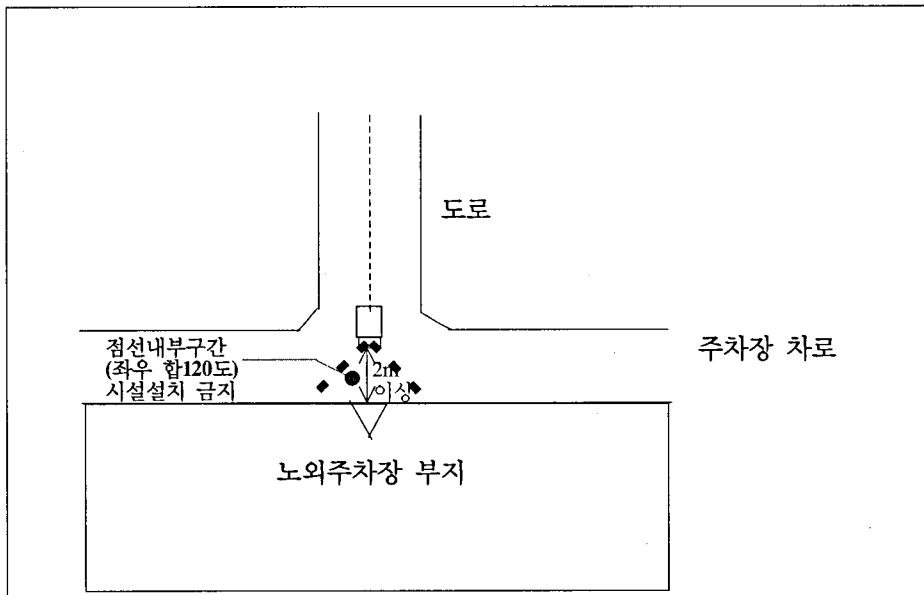
(별표 4)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성 명 (법인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시설물	⑤위 치		⑥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위 치		⑧주 차 대 수	대 m ²		
	⑨부지경계선으 로부터 거리		⑩주차장의 형태			
	⑪착공예정일		⑫준공 예 정 일			
자전거주차장	⑬시설면적					
	⑭설치장소					
<p>주차장 관리준칙 제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p>						
<p>※ 첨부서류(2~5의 서류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 5.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수료	없 음
수수료						
없 음						

<그림 1> 노외주차장 설비기준 1



<그림 2> 노외주차장 설비기준 2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제정 2006.9.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제5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라 함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별지 각 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2. “기업”이란 공업지구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자료제출)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통계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단, 기업은 경영상 긴급한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통계자료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 (관리기관 조사) ①관리기관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현지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보호 등) ①통계자료로서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수집된 통계자료중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통계자료 수집·관리업무 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자료 수집·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통계자료의 공개) 관리기관은 기업의 서면동의를 받아 수집된 통계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2006. 9. 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년 ()월 기업 통계 자료

(주식회사 ○○○)

업무담당자 : ○ ○ ○

연 락 처 : ○ ○ ○

(단위: 천불, 명, %)

1. 가동현황

월 가동일수	월평균 가동율	북측 근로자 급여		
		계	노동보수	사회보험료
일	%			

※ 「월평균가동율」 (%) = $\frac{\text{당월생산실적}}{\text{월간생산능력}} \times 100$

2. 생산 및 반출현황

제품명	생산현황			반출현황		
	전월	당월	연간누계	전월	당월	연간누계

▷ 품질: %(품질은 남측 제품 기준)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제정 2006.2.6]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내에서 기업책임자회의(이하 “책임자회의”라 한다)를 조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자회의 성립) 책임자회의는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회원의 구성) ①책임자회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정회원은 개성공업지구에 창설된 각 기업을 대표하는 1인이 된다.

③준회원은 개성공업지구에 창설될 각 기업을 대표하는 1인이 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자란 기업책임자 또는 그 기업책임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①개성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을 대표하는 자는 기업의 창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책임자회의의 정회원이 되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창설된 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책임자회의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책임자회의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 (기업책임자회의 등록) ①개성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의 기업책임자들은 책임자회의 등록을 위하여 책임자회의 규약, 공인,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책임자회의를 등록한다.

제6조 (임원의 구성) 책임자회의의 회장은 책임자회의 정회원 1인중에서 책임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7조 (임무) 책임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임무로 한다.

1. 입주기업의 친목도모
2. 입주기업간의 정보교류
3. 입주기업의 권익보호 사항에 관한 건의

4. 기타 개성공업지구와 입주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보고) 책임자회의는 규약의 변경, 임원의 변동, 회의 결의사항 등을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미규정사항) 책임자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책임자회의 규약 및 책임자회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 칙(2006. 2. 6)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제정 2006.7.7]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내 석유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직접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서식의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1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3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건부 등록)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등)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

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개시예정일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10조에 따른 품질유무 의무의 위반
4. 사업의 폐업 등
5.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②제1항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관리기관은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석유판매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받은 석유판매업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기관 소속직원의 사업장 출입 및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석유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수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선명령 등) 관리기관은 이 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위반한자 및 준칙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구 분	내 용
가. 시설기준 1) 저장시설 2) 주유기 3) 공중화장실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로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중벽탱크 등의 누출방지시설과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등을 설치할 것 2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나. 기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은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공단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외의 사항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석유판매업등록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소				
상 호		(전화번호 :)			
주된영업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kℓ)	
	주유기수(대)		부지면적(m ²)		
	기 타				
취급유종					
기 타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p>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신청인 (인)</p> <p>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계획서(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2. 주유기명세서 1부 3.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공급계약서 사본 1부 4.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시설명세서 1부 					

제 호

석유판매업 등록증

성명(대표자) :

상 호 :

소 재 지 :

취 급 유 종 :

판매구역(대리점에 한함) :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개성공업지구 준칙제 · 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제정 2005.2.3]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제9호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관리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준칙의 제정, 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칙의 제정 등) ①관리기관은 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 등은 서면 등을 이용하여 준칙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준칙의 날인) 준칙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관리기관 이사장이 서명한 후 날인한다.

제4조 (공포절차) ①준칙의 공포는 관리기관에 설치된 게시판 또는 관리기관이 발간하는 공보 등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②제1항의 공포에 있어 게시판 또는 공보 등에는 공포 준칙의 명칭을 게시하고 준칙의 전문은 관리기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을 게시할 수 있다.

③준칙의 공포일은 게시판 또는 공보 등에 제2항의 사실이 게시된 날로 한다.

제5조 (시행일) 준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5. 2. 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이전에 제정된 준칙은 제4조에 따라 공포함으로써 이 준칙에 따른 제·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성공업지구 행정절차 운영준칙

[제정 2009. 11. 20]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행정절차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명령, 강제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라 함은 관리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 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관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청문”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의견제출”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 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준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행정지도 등의 행 정절차에 대하여 다른 준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업 창설과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2. 하부구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사항
5.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7.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8. 소방에 관한 사항
9.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2.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고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16.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17. 주요물자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의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관리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관리기관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투명성) 관리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직권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부서는 처분기준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장은 처분기준종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처분기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는 홈페이지 게시, 배포,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직권 처분을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관계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처분전 의견청취) ①직권처분을 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③청문을 위해 청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청문주재자는 이사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④청문위원은 5인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문대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은 청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관계인의 출석진술은 의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부서는 청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지도) ①업무와 관련된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행정지도의 내용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내용·방침·기준 등을 미리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2009. 11. 20)

이 준칙은 2009. 11.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
 수 신

개성공업지구 행정절차 운영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견제출	부서명	
	주 소	개성시
	기 한	년 월 일 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뒷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는 관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

수 신

개성공업지구 행정절차 운영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청문	부서명	
	주 소	개성시
	일 시	년 월 일 까지
	장 소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뒷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성공업지구 출입증발급준칙

[제정 2008. 5. 13]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이하 “출입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외국인, 해외동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출입증 형식) ①출입증의 규격은 가로 8.5cm·세로 12.5cm로 하고 면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4면으로 한다.

②출입증에 표기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면(표지): 개성공업지구 출입증(상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하단)
2. 2면: 출입증 번호,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지, 유효기간, 발급일자
3. 3면: 동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직업, 국적), 체류등록확인, 출입확인
4. 4면: 체류기일 연장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은 전자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출입증의 유효기간) 출입증을 소지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7일이다.

제5조 (출입증 발급신청 등)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진 2매((3×4cm,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증 발급 등) 관리기관이 제5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고 출입관련 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증 발급대장 관리) 관리기관이 제6조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입증 등 발급사실 통보) 관리기관은 출입규정 제9조에 따라 출입증의 발급(재발급) 내역을 개성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관리기관이 이 준칙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 재발급 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2008. 5. 13)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사진) 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출입목적						
		체류기간						
		거주지			체류지(숙소)			

2	(사진) 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출입목적						
		체류기간						
		거주지			체류지(숙소)			

3	(사진) 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출입목적						
		체류기간						
		거주지			체류지(숙소)			

4	(사진) 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출입목적						
		체류기간						
		거주지			체류지(숙소)			

5	(사진) 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출입목적						
		체류기간						
		거주지			체류지(숙소)			

신청자 이름:

<서명>

신청일:

기관명 공인

* 본 양식은 전산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개성공업지구 출입증 발급대장

순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	직위	유효기간	증명서번호	출입목적	신청일	발급일

* 본 양식은 전산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7. 기업회계·감정평가·회계검증

- 기업회계기준
- 감정평가기준
- 회계검증준칙
- 회계검증기준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

[제정 2007.6.15]

[개정 2008.6.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이 아래부터는 규정이라 한다) 제 8조(기업회계기준의 작성)에 따라 기업의 회계와 회계검증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의 리용자가 기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심을 내릴수 있도록 재정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익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3조 (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한다.
2. 회계결산서의 양식 및 계시와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한다.
3. 중요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 계시, 금액에 대한 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4. 회계처리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로 비교할수 있도록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변경할수 없으며 만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리유, 미칠수 있는 영향을 해당 회계결산서에 주석으로 기입한다.
5. 회계처리와 회계결산서작성에서 계시와 금액을 중요성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6. 둘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적기초를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선택한다.

제4조 (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5조 (회계결산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 ① 회계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 주해와 주석으로 한다.

②회계결산서는 해당 회계년도와 전해 회계년도분을 비교하여 작성한다.

③회계결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는 계시식으로 작성한다.

④업종에 따르는 제조원가명세서와 그밖의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⑤회계결산서에는 리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중요 회계원칙 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해 및 주석을 첨부한다.

1. 주해는 회계결산서의 해당 계시 다음에 거래 내용을 간단한 문구 또는 수자로 괄호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석은 회계결산서의 해당 계시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란외 또는 별지에 그 기호에 따르는 설명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같은 내용의 주석이 둘이상의 계시에 련관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시에 대한 주석만 기입하고 다른 계시의 주석은 기호로만 표시할수 있다.

⑥법규에서 판매업과 제조업이외의 영업을 하는 기업의 회계결산서 용어와 표준양식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 (계시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회계처리과정에 이 기준에서 정한 계시가운데서 그 성격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것은 유사한 계시에 통합하여 기입할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계시를 정하지 않은 거래로서 그 성격 또는 금액이 중요한 경우 거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수 있는 계시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7조 (회계화폐, 금액단위) ①기업의 회계화폐는 US\$로 한다.

②기업의 규모가 크고 회계결산서리용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금액단위를 천, 만, 백만 US\$로도 할수 있다.

제8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내>란 대차대조표일부터 1년이다.

2. <특수관계자>란 다음의 기업 또는 개인이다.

가.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나. 해당 기업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출자비율법평가대상의 피투자기업

-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결의권행사를 통하여 해당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개인 및 그의 친척 또는 인척
 - 라. 해당 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영집단 및 그의 친척 또는 인척
 - 마. 다목 또는 라목의 개인 또는 경영집단 및 그들의 친척 또는 인척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기업
3. <일반경제거래>란 해당 기업의 정상적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이다.
 4. <정상가격>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를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당사자들사이에 거래될수 있는 가격이다.
- 제9조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의 제정)**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 기준의 집행과 관련한 업종별 회계처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 2 장 대차대조표

제10조 (대차대조표의 표시와 양식) ①대차대조표에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보고할수 있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재산, 채무 및 자본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의 양식은 부록 1에 따른다.

제11조 (대차대조표의 작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하며 재산은 류동재산 및 고정재산으로, 채무는 류동채무 및 고정채무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리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재산, 채무,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하며 재산과 채무 또는 자본의 해당 항목을 상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
3. 재산과 채무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류동재산 또는 고정재산, 류동채무 또는 고정채무로 구분한다.
4. 대차대조표에서 재산과 채무의 항목배렬은 류동성배렬법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리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가불금 또는 가수금 같은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에 적합한 계시로 표시하며 대

조계시 같은것은 대차대조표의 재산 또는 채무항목으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7. 장래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비용은 다음기 이후의 기간에 나누어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재산항목에 기입할수 있다.

제12조 (류동재산의 구분) 류동재산은 시좌재산과 물자재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 (시좌재산의 계시) 시좌재산의 계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현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행표 같은 현금대용증권과 시좌예금,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 그밖의 짧은 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현금등가물금액을 기입한다.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저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그밖의 정해진 형식의 금융상품으로서 단기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불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금액을 기입한다. 이 경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첨부한다.

3. 유가증권

증권시장에서 류통될수 있는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 가운데서 단기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한 유가증권금액을 기입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 지불거절 또는 조업중단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 류통될수 없는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판매채권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대금과 받을 수형금액을 기입한다.

5. 단기대부금

상환기한이 1년내인 대부금을 기입한다.

6. 미수금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받지 못한 채권의 금액을 기입한다.

7. 미수수입

해당 결산기에 속하는 수입가운데서 받지 못한 수입액을 기입한다.

8. 전불금

상품, 원자재 같은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지불한 금액을 기입한다.

9. 전불비용

미리 지불된 비용 가운데서 1년내에 비용으로 확정되는것을 기입한다.

10. 기타 시좌재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시좌재산을 기입한다.

제14조 (판매채권과 그밖의 채권의 양도액 및 할인액처리) ①판매채권과 그밖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할인할 때 그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채권에서 털어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채권과 그 밖의 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15조 (물자재산의 게시) 물자재산의 게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도착상품, 발송상품의 금액을 기입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건물과 그와 류사한 부동산을 상품에 포함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최종완성품, 부산물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3. 반제품

자기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4. 미성품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가공과정에 있는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5. 원자재

원료, 자재, 구입부분품, 미도착원자재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6. 저장품

소모품, 소공기구, 비품, 수리용 부분품 및 그밖의 저장품의 금액을 기입한다.

7. 기타물자재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물자재산금액을 기입한다.

제16조 (고정재산의 구분) 고정재산은 투자재산, 유형고정재산 및 무형고정재산으로 구분한다.

제17조 (투자재산의 게시) 투자재산의 게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장기금융상품

류동재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금액을 기입하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첨부한다.

2. 투자유가증권

류동재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금액을 기입한다.

3. 장기대부금

류동재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의 대부금을 기입한다.

4. 장기적판매채권

류동재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판매대금 및 받을 수형금액을 기입한다.

5.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건물 및 그밖의 부동산의 금액을 기입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첨부한다.

6. 보증금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같은것을 기입한다.

7. 기타 투자재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투자재산의 금액을 기입한다.

제18조 (유형고정재산의 게시) 유형고정재산의 게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건물

건물과 랭난방, 전기, 통신, 환기를 비롯한 건물부속설비의 금액을 기입한다.

2.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와 그밖의 토지에 부착되어있는 토목설비 또는 시설물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3. 기계장치

기계장치, 콘베아, 권양기, 기중기 같은 운반설비와 그밖의 부속설비의 금액을 기입한다.

4. 선박

선박과 그밖의 수상운반수단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5. 차량운반수단

철도차량, 자동차와 그밖의 륙상운반수단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6. 건설중 재산

유형고정재산의 건설을 위한 원자재비, 로력비 및 경비를 기입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같은것을 포함한다.

7. 기타 유형고정재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유형고정재산의 금액을 기입한다.

제19조 (감가상각루계액의 표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수단, 그 밖의 유형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루계액은 해당 재산계시에서 덜기형식으로 기입한다.

제20조 (무형고정재산의 게시) 무형고정재산의 게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토지리용권

공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하고 리익을 얻을수 있는 권리의 금액을 기입한다.

2. 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같은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3. 공업소유권

일정한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같은것의 금액을 기입한다.

4. 임차권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이 리용권을 가진 공업지구의 토지를 리용하고 리익을 얻을수 있는 권리의 금액을 기입한다. 임차권은 지상권을 포함한다.

5. 연구개발비

새 제품, 새 기술, 소프트웨어 같은것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할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효과와 리익을 확실하게 기대할수 있는것을 기입한다.

6. 기타 무형고정재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무형고정재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의 금액을 기입한다.

제21조 (무형고정재산의 표시) 무형고정재산은 그 상각액을 해당 재산에서 직접 덜기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입한다.

제22조 (채권 같은것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채권 같은것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계시에서 덜기하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제23조 (류동채무의 게시) 류동채무의 게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구입채무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외상구매대금과 물어줄 수형금액을 기입한다.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시좌돈자리잔고초과차입액과 1년내에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을 기입한다.

3. 미불금

일반경제거래밖에서 발생한 채무가운데서 미불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4. 전수금

주문공사, 주문품제조, 그밖의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미리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5. 예수금

일반경제거래밖에서 발생한 일시적으로 미리 받은 모든 금액을 기입한다.

6. 미불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불되지 않은 금액을 기입한다.

7. 미불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의 바치지 못한 금액을 기입한다.

8. 류동성장기채무

고정채무가운데서 1년내에 상환되는 채무금액 같은것을 기입한다.

9. 전수수입

받은 수입가운데서 다음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기입한다.

10. 단기채무충당금

1년내에 지출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게시에 기입한다.

11. 기타 류동채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류동채무로 한다.

제24조 (고정채무의 게시) 고정채무의 게시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1. 사채

1년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금액을 기입하며 사채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첨부한다.

2. 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을 기입하며 차입원천별 차입액, 차입용도, 리자률, 상환방법 같은것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3. 장기구입채무

류동채무에 속하지 않는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구매대금과 물어줄 수형금액을 기입한다.

4. 장기채무충당금

1년후에 지출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게시에 기입한다.

5. 기타 고정채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고정채무를 기입한다.

제25조 (자기사채의 처리) ①자기 회사의 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과 사채발행차금 같은것을 해당 게시에서 직접 덜기하고 그 취득경위 같은것은 주석으로 기입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때 장부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는 사채상환리의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게시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6조 (채무적성격의 충당금) ①해당 결산기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것이 확실하고 그 결산기의 수입에서 더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채무적성격의 충당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채무적성격의 충당금은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같은것을 포함한다.

③채무적성격의 충당금가운데서 년차적으로 분할하여 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모두 고정채무에 포함시킬수 있다.

제27조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 ①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에서 정한데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②회계년도말 현재 소요되는 모든 종업원의 퇴직금액과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의 설정잔고, 도중의 퇴직금지불액과 종업원퇴직금의 처리방법 같은것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28조 (사채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계시) ①사채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해당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덜기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②사채발행금액은 사채발행수수료와 그밖의 사채발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을 덜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에 전환권의 가치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 상환할증금을 가산한 금액은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으로 계산한다.

④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덜기계시로, 상환할증금은 사채상환할증금계시에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산계시로 각각 표시한다.

제29조 (전환권대와 신주인수권대가의 처리 및 표시) ①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덜기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하여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리자률로 할인한 금액이다. 유효리자률을 구할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채권, 채무의 리자률(이 아래부터는 동종시장리자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동종시장리자률의 계산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전 1년내에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한 만기를 가진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리자률을 적용할수 있다.

③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후 전환권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본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입한다.

제30조 (자본금의 구분과 기입)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같은것으로 구분한다.

②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해당 회계년도안에 자본증가, 주식배당 또는 그밖의 이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입한다.

제31조 (자본잉여금의 게시) 자본잉여금의 게시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입한다. 여기서 주식발행금액은 자본증가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그밖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을 덜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합병편차리의

합병하는 기업이 흡수되는 기업의 모든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이어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넘겨받은 순재산의 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기입한다.

3.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리익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덜기한 금액과 그밖의 자본잉여금을 기입한다.

제32조 (리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게시) 리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게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예비기금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입한다.

2. 자체기금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자체기금은 당기순리윤에서 예비기금과 리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기업규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 같은것을 기입하며 원천이 없을 경우에는 조월된 미처분리익잉여금에서 적립된것을 기입한다.

3. 미처분리익잉여금 또는 미처리손실금

해당 결산기 리익처분계산서의 미처분리익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계산서의 미처리손실금으로 표시하고 해당 결산기순리익 또는 결산기 순손실을 주해로 첨부한다.

제33조 (자본조정 의 게시) 자본조정의 게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주식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금액을 기입하고 취득경위, 앞으로의 처리계획 같은 것을 주석으로 첨부한다.

2.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또는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을 기입한다.

3. 해외영업환산이익 또는 해외영업환산손실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 같은것의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을 기입한다.

제 3 장 손익계산서

제34조 (손익계산서의 표시와 양식) ①손익계산서에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보고할수 있게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절하게 표시한다.

②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부록 2에 따른다.

제35조 (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손익계산서는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덜기전 손익과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밖의 영업을 하는 기업은 판매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수 있다.
2. 수입과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매 수입항목과 그와 관련된 비용항목을 대응시켜 표시한다.
3. 모든 수입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 그러나 수입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실현수입은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수입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며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제36조 (판매손익의 표시) 판매손익은 판매수입에서 판매원가를 덜기하여 표시한다.

제37조 (판매수입의 실현시점) ①상품, 제품의 판매수입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 실현 되는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탁판매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것으로 하며 시험리용판매액은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되는것으로 한다.

③건설물인도, 임가공, 봉사제공, 예약판매수입은 실행정도에 따라 실현되는것으로 한다. 그러나 건설공사, 제조, 봉사제공과 관련한 수입, 원가 또는 실행률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고 발생원가전액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④상품 또는 제품의 장기적인 분할판매인 경우 리자수입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실현되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리자의 계산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판매수입) ①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수입은 총판매수입에서 판매에누리, 반환, 판매할인금액을 덜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대금을 덜어주는 것은 판매에누리에 포함된다.

②반제품판매수입, 부산물판매수입, 작업폐설물판매수입, 수출수입, 장기분할판매수입 같은것이 총판매수입의 1%를 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③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수입이 총판매수입의 10%를 넘는 경우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39조 (판매원가) ①판매업인 경우 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해당 결산기상품구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덜기하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②제1항의 해당 결산기상품구입액은 상품의 총구입액에서 구입에누리, 반환, 구입할인을 덜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구입액을 덜어내는 것은 구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상품구입에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은 구입액에 포함된다.

④제조업인 경우 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해당 결산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덜기하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 생산 또는 구입, 그밖의 이유로 판매원가항목에서 덜기 또는 부가하여야 할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⑥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판매수입을 주석으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그와 련된 판매원가도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40조 (판매수입과 판매원가의 업종별구분) 판매수입과 판매원가는 업종별로 구

분하여 기입할수 있다.

제41조 (제조원가의 계산) 제품의 제조원가는 《개성공업지구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2조 (영업손익의 계산) 영업손익은 판매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덜기하여 표시한다.

제43조 (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판매 및 봉사제공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 및 유지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며 여기에는 판매 및 관리 인원로력비, 퇴직보조금, 문화후생비, 임차료, 대외사업비, 감가상각비, 무형고정 재산상각비, 조세공과금,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같은 판매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판매 및 관리인원로력비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같은 각종 로동보수가 속한다.

제44조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입방법)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해당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계시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45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표시) 고정재산의 내용년한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표시하고 해당 고정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공칭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표시한다.

제46조 (경상손익의 계산과 표시)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기타업무수입을 더하고 기타업무비용을 덜기하여 표시한다.

제47조 (기타업무손익의 내용) ①기타업무수입은 리자수입, 자기 주식의 배당금을 제외한 배당금수입,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환자시세편차소득, 외화환산이익, 출자비률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반환, 투자재산처분이익, 유형고정재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기업소득세 반환금액, 전년도오유수정이익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②기타업무비용은 리자비용, 기타 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물자재산감모손실, 환자시세편차손실,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출자비률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 투자재산처분손실, 유형고정재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기업소득세추가납부액, 전년도오유수정손실 같은것을 포함한다.

③토지리용권 또는 건물 같은것의 처분손익은 잔존금액청산날자, 소유권이전등록날자, 구입자가 사용할수 있는 날자 가운데서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

로 한다.

④원금 또는 리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리자 수입은 현금을 접수하는 시점에서 실현되는것으로 한다.

제48조 (환자시세편차손익) 환자시세편차소득 또는 환자시세편차손실은 외화재산의 회수 또는 외화채무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편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49조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리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적성격을 띤 외화재산 또는 외화채무를 환산하는 경우 환률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50조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의 계산과 표시)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은 경상손익에 우연리익을 가산하고 우연손실을 덜기하여 표시한다.

제51조 (우연손익의 내용) ①우연리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업무수입과 재산증여리익, 채무면제리익, 보험편차리익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②우연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업무비용과 재해손실 같은것을 포함한다.

제52조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53조 (당기순손익의 표시) 당기순손익은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에서 기업소득세를 덜기하여 표시한다.

제54조 (주당 순리익 등의 기입) 1주당 경상리익 및 1주당 당기순리익은 당기순리익에 주해로 첨부하고 그 계산근거를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 4 장 재산과 채무의 평가

제55조 (재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기입하는 재산의 금액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②교환, 증여, 그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금액은 정상가격을 취득원가로 하며 현물출자로 받은 재산은 출자자에게 교부된 주식발행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러나 건물을 제외한 같은 종류의 유형고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금액은 양도한 재산의 장부금액으로 할수 있다.

③유형고정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채권 같은 것을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해당 유형고정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④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고정재산의 생산, 구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리자비용과 그밖의 유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입하는 재산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6조, 제67조에서 정하지 않은 재산의 가치저하,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격의 급격한 저락 같은 원인으로 해당 재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지고 그 부족액이 중요한 경우 그것을 장부금액에서 직접 덜기하여 회수가능금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금액사이의 차액은 같은 재산에 대한 감액손실계시로 놓고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나 감액되었던 재산의 회수가능금액이 다음 결산년도 이후에 장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같은 재산에 대한 감액손실반환계시로 놓고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⑥제5항의 회수가능금액은 해당 재산의 순실현가능금액과 사용가치 가운데서 큰 금액으로 처리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⑧재산의 취득원가는 재산의 종류별 원가배분기준에 따라 매 회계년도에 배분한다.

제56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가운데서 주식, 채권은 구입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②유가증권의 단가를 정할 경우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때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볼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마감시세에 의한다. 그러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마감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전 거래일의 마감시세에 의한다.

④유가증권가운데서 주식과 채권의 장부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57조 (채권의평가) ①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채권의 예상현금류동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계산할수 있다.

②대손상각비는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존금액을 덜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경제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업무비용으로 처리한다.

③회수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58조 (물자재산의 평가) ①물자재산은 제조원가 또는 구입금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여기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또는 판매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판매가격환원법은 해당 기업의 업종이나 물자재산의 특성으로 볼 때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수 있다.

②물자재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금액으로 처리한다. 물자재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미성품의 시가는 실현할수 있는 순금액을 의미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자재의 시가는 현재의 대치원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물자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순실현가능금액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금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덜기한 금액을 의미하며 현재대치원가는 물자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구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필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④물자재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물자재산의 덜기계시로 표시하고 판매원가에 더한다. 물자재산의 장부상수량과 실제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판매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기타업무비용으로 구분한다.

⑤저가기준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가져왔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평가손실을 반환하며 물자재산의 평가손실반환은 판매원가에서 덜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금액과 시가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입한다.

제59조 (투자주식의 평가) ①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구입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투자주식가운데서 시장에서 유통될수 있는 투자주식은 정상가격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대차대조표금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계시에서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③투자주식가운데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주식은 출자비률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하고 장부금액과 대차대조표금액의 차이가 피투자기업의 당기순리익 또는 당기순손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비률법평가리익 또는 출자비률법평가손실계시에서 당기순리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리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경우에는 리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계시에서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특별한 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것으로 평가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비률법적용대상주식을 제외한 투자주식의 정상가격이 내려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계시에서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같은 투자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에서 덜거나 더한다. 그러나 다음 결산년도이후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을 계산한 같은 투자주식의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투자주식가운데서 출자비률법적용대상주식을 제외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주식을 취득원가에 따라 평가할 경우 순재산금액이 내려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재산금액으로 조정하고 최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계시에서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나 다음결산년도이후에 감가된 투자주식의 순재산금액이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감가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가손

실반환계시에서 당기리익으로 처리한다.

⑥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때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 시가의 계산은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순재산금액의 계산은 해당 주식발행기업의 대차대조표에 기입한 순재산금액에 따른다.

⑦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바꾸는 경우 새로운 투자주식의 대차대조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정상가격으로 표시하며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마감시세를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과 대차대조표금액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계시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⑧투자주식의 단가를 계산할때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투자주식의 종류별로 적용한다.

⑨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상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계시에서 계산하며 다음 결산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과 상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유가증권처분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덜거나 더한다.

⑪투자유가증권가운데서 출자금을 포함한 투자주식의 기업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재산금액 및 장부금액은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60조 (투자채권의 평가) ①투자채권의 취득원가는 구입금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여기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투자채권가운데서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이 다른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리자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리자수입에 더하거나 덜어낸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 투자채권의 장부금액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하며 그 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계시에서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④투자채권가운데서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수 있는 경우(이 아래부터는 만기보유채권이라 한다)에는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원가와 액면금

액이 다른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리자 룰법을 적용하여 더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때 투자채권의 정상가격이 내려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채권의 장부금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계시에서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같은 투자채권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에서 덜거나 더한다. 그러나 다음결산년도이후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을 계산한 같은 투자채권에 대한 평가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때 투자채권의 정상가격이 내려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채권의 장부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최초의 장부금액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계시에서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나 다음 결산년도이후에 감소되었던 투자채권의 정상가격이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채권이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가손실반환계시에서 당기리익으로 처리한다.

⑦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투자채권으로 바꾸는 경우 새로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정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과 대차대조표금액과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리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계시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⑧만기보유채권을 만기보유가 아닌 채권으로 바꾸는 경우 해당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정상가격으로 처리한다. 이경우 장부금액과 대차대조표금액의 차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⑨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제59조 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⑩ 투자채권의 단가계산은 제59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투자채권의 액면금액, 유효리자룰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 및 정상가격은 주식으로 기입한다.

제61조 (무상자본증가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주식배당을 포함한 자본잉여금과 리익잉여금의 자본이전에 의한 주식 및 출자몫의 취득은 재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제62조 (유형고정재산의 평가) ①유형고정재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재산의 제조원

가 또는 구입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재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대조가액으로 기입한다.

③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63조 (무형고정재산의 평가) ①무형고정재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표시한다.

②무형고정재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가운데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그러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해당 법규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수 없다.

제64조 (채무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입하는 채무의 금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제65조 (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처음부터 마지막상환을 할때까지의 기간에 유효리자률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반환하고 그 상각 또는 반환금액은 사채리자에 덜거나 더한다.

제66조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해당 채권, 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받아들이거나 지불할 총금액을 적절한 리자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제2항의 리자률은 해당 거래의 유효리자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유효리자률을 구할수 없거나 해당 거래의 유효리자률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같거나 또는 유사한 채권, 채무의 리자률(이 아래부터는 동종시장리자률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리자률을 기초로 적절하게 계산된 리자률을 적용하며 동종시장리자률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리자률을 적용할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서로 하여 해당 채권, 채무의 명목금액에서 덜기하는 형식으로 기입하고 적용한 리자률,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같은것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리자률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반환하고 그것을 리자비용 또는 리자수입계시로 계산한다.

제67조 (채권, 채무의 재조정) ①기업정리 또는 화해의 시작, 거래 당사자사이의 합의 같은 이유로 채권, 채무의 원금, 리자률, 기간을 비롯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채무의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리익계시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의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산할때 해당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쇄하고 남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재조정될 채권, 채무를 평가할때 할인률은 제6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채권, 채무가 발생할 당시의 적절한 리자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원금감면액을 덜어낸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계시로 놓고 해당 채권, 채무의 장부금액에서 덜기하는 형식으로 기입하며 현재가치를 계산할때 적용한 리자률, 채권, 채무의 재조정으로 하여 변경된 원금, 리자률, 기간 같은것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⑤제4항에 따르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제68조 (외화재산 및 채무의 환산) ①화폐적성격의 외화재산 및 외화채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률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표시한다.

②비화폐적성격의 외화재산 및 외화채무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채무를 부담한 당사의 적절한 환률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표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적절한 환률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리익계시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외화재산, 채무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⑤제1항의 화폐적성격의 외화재산 및 외화채무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판매채권, 구입채무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재산, 채무의 금액이 계약 또는 그밖의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된 해당 재산 및 채무로 표시한다.

그러나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적성격과 비화폐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 채무는 해당 재산, 채무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69조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 새끼회사 같은것의 외화환산) ①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 출자비률법적용대상기업의 외화표시재산, 채무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정한 기준화폐로 환산할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다.

②영업 및 재정활동이 공업지구의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 출자비률법적용 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재산, 채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률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률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률 또는 해당 회계년도의 평균환률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할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상쇄하여 그 차액을 해외영업환산손실 또는 해외영업환산리익계시에서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④제3항에 따르는 해외영업환산손실 또는 해외영업환산리익은 다음 결산년도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영업환산리익 또는 해외영업환산손실과 상쇄하여 표시하고 해당 지사, 출자비률법적용대상기업이 청산, 파산, 매각되는 회계년도의 우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70조 (금융파생상품의 처리) ①금융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재산, 채무로 계산하며 정상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금액으로 한다.

②금융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르는 금융파생상품거래인 경우 그 거래목적과 거래내용같은 것을 주석으로 기입하며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한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조월된 손익금액을 기입한다.

제71조 (공적보조금 등의 처리) 공적보조금을 원천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재산에서 덜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재산의 내용년한에 따

르는 상각금액과 상쇄하며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금액을 해당 재산의 처분손익에 덜거나 더한다.

제72조 (미불주식배당금조정) 미불주식배당금은 주식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자본 계시에 바꾸어 기입한다.

제73조 (회계변경) ①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회계결산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수 있을 경우 또는 회계규범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거나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한데 따라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수 있다.

②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지난 결산기들의 회계결산서들에까지 소급적용하며 그 루적된 결과를 미처분리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전결산년도 또는 그 이전결산년도의 회계결산서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한다. 비교회계결산서상의 최초의 회계기간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료회계결산서상 최초회계기간의 미처분리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결산년도 또는 그 이전 결산년도와 관련된 그밖의 재정활동자료도 다시 작성한다.

③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결산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④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과 그 정당성, 변경이 해당 결산기 회계결산서에 미치는 영향, 변경으로 인한 비교회계결산서상의 수정금액, 비교회계결산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회계변경년도와 바로 전 3년간 각 년도별로 다시 계산된 정상리익, 당기순리익, 주당정상리익, 주당순리익, 그밖의 중요변동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⑤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그 내용과 타당성, 변경으로 하여 해당 결산기 회계결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만일 해당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74조 (불확정상태) 불확정상태는 앞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정한 손실 또는 리익이 확정된다는 조건밑에서 그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이며 그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재산의 감소가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는 경우 그것을 회계결산서에 결산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

한다.

2.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재산의 감소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재산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확정상태의 내용, 불확정상태가 확정될때의 재정적영향, 금액추정이 어려운 리유 같은것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3. 리득이 발생할수 있는 불확정상태는 확정될때까지 회계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확정리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그 리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확정상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75조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처리)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회계결산서의 작성에 사용된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재산, 채무에 반영한다.
2.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회계결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회계결산서리용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3.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채무를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재산, 채무에 비정상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 5 장 손익처분계산서

제76조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의 표시 및 양식) ①리익처분계산서에는 리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조월리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한다.

②손실처리계산서에는 손실금의 처리사항을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조월손실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한다.

③리익처분계산서의 양식은 부록 3에, 손실처리계산서의 양식은 부록 4에 따른다.

제77조 (리익처분계산서의 게시) 리익처분계산서의 게시는 다음과 같다.

1. 미처분리익잉여금

전년도 조월리익잉여금 또는 전년도 조월손실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루적효과, 그 전해에 발생한 오유사항을 비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전년도회계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오유수정손익, 당기순리익 또는 당기순손실 같은것을 더하거나 덜어낸 금액으로 한다.

2. 자체기금 같은것의 인입액

자체기금 같은것을 인입하여 해당 결산기의 리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리익잉여금에 더하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3. 리익잉여금처분액

리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계시들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가. 예비기금

나. 리익잉여금처분에 따르는 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고금액을 비롯한 리익잉여금 처분액으로 한다.

다. 배당금

해당 결산기에 처분할 배당금액으로 하며 현금에 의한 배당과 주식에 의한 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주식의 종류별로 주당배당금액, 액면 배당률을 주해로 첨부하고 배당수입률, 배당추세, 배당금액의 계산내용은 주석으로 기입한다.

라. 자체기금

4. 다음년도 조월리익잉여금

미처분리익잉여금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에서 리익잉여금처분액을 덜기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제78조 (손실처리계산서의 계시) 손실처리계산서의 계시는 다음과 같다.

1. 미처리손실금

전년도 조월손실금 또는 전년도 조월리익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르는 루적효과, 그 전해에 발생한 오유사항을 비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전 결산년도회계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오유수정손익,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리익 같은것을 더하거나 덜어낸 금액으로 표시한다.

2. 손실처리액

- 가. 자체기금인입액
- 나. 예비기금인입액
- 다. 자본잉여금인입액

3. 다음년도 조월손실금

미처리손실금에서 손실처리액을 덜기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제79조 (전년도오유수정손익) ①해당 결산기에 발견한 전년도 또는 그 이전년도의 오유는 해당 결산기 손익계산서에 기타업무손익가운데서 전년도오유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중대한 오유에 대해서는 미처분리익잉여금을 수정한다.

②제1항의 중대한 오유는 회계결산서의 신뢰성을 엄중하게 손상시킬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유를 의미한다. 비교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유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회계결산서는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다.

③새로운 사건의 발생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년도오유수정손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전년도 또는 그이전년도들의 오유수정내용은 주석으로 기입하며 특히 중대한 오유를 수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오유로 판단한 근거, 비교회계결산서에 표시된 과거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비교회계결산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중대한 오유가 발생한 년도와 그 오유의 영향을 받는 년도별로 다시 계산된 경상리익, 당기순리익, 주당경상리익, 주당순리익, 그밖의 중요변동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제 6 장 현금류동표

제80조 (현금류동표의 표시와 양식) ①현금류동표는 기업의 현금류동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년도에 속하는 현금의 류입과 류출내용을 적절히 표시한다.

②제1항에서 현금은 제13조 제1호에서 정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장에서는 현금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③ 현금류동표의 양식은 부록 5와 6에 따른다.

제81조 (현금류동표의 구분과 표시) 현금류동표는 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

투자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 재정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기에 기초현금을 더하여 기말현금을 계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82조 (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 ①영업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상품 및 봉사의 구매, 판매활동으로서 제84조의 투자활동과 제85조의 재정활동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거래들이 포함된다.

②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의 류입에는 판매채권의 회수를 포함한 제품 같은것의 판매에 따르는 현금류입, 리자수입과 배당금수입, 그밖에 투자활동과 재정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류입이 포함된다.

③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의 류출에는 원자재, 구입채무의 결제를 포함한 상품 같은것의 구입에 따르는 현금류출, 그밖에 상품과 봉사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불기업소득세의 지불, 리자비용, 그밖에 투자활동과 재정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류출이 포함된다.

제83조 (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 ①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에서 직접법은 현금을 동반하고 발생한 수입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며 현금류입액을 원천별로, 현금류출액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현금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수입, 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판매수입과 판매원가에 현금의 류출, 류입이 없는 항목과 물자재산, 판매채권, 구매채무의 증감액을 더하거나 덜어내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③제1항에서 간접법은 당기순리의익 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류출이 없는 비용과 투자활동 및 재정활동에 따르는 비용을 더하고 현금의 류입이 없는 수입과 투자활동과 재정활동에 따르는 수입을 덜기하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류동재산 및 류동채무의 증가 또는 감소를 더하거나 덜어내어 표시하는 방법이다.

제84조 (투자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 ①투자활동에는 현금의 대부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투자재산, 유형고정재산 및 무형고정재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이 포함된다.

②투자활동에 따르는 현금의 류입에는 대부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투자재산, 유형고정재산 및 무형고정재산의 처분 같은것이 포함된다.

③투자활동에 따르는 현금의 류출에는 현금의 대부,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투자재산, 유형고정재산, 및 무형고정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현금류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불액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85조 (재정활동에 따르는 현금류동) ①재정활동에는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새로운 주식발행이나 배당금의 지불활동을 비롯한 채무 및 자본계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들이 포함된다.

②재정활동에 따르는 현금의 류입에는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차입, 수형,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같은것이 포함된다.

③재정활동에 따르는 현금의 류출에는 배당금의 지불,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채무의 지불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86조 (현금류동표의 작성방법 및 주식사항) ①현금류동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현금의 류입과 류출내용에 대해서는 결산년도중 증가 또는 결산년도중 감소를 상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짧은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류입과 류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입할수 있다.

2.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에 따르는 현금류입인 경우에는 발행금액으로 기입한다.

②다음의 사항은 주식으로 기입한다.

1. 현금의 류입과 류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고정재산의 취득, 유형고정재산의 연불구입, 무상자본 증가,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같은 현금의 류입과 류출이 없는 거래 가운데서 중요한 거래

2. 제83조 제2항에 따라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리의익 또는 당기순손실과 당기순리의익 또는 당기순손실에 더하거나 덜어낼 항목에 관한 사항

제 7 장 주식 및 부속명세서

제87조 (보충적주식사항) 제13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호와 제5호, 제24조 제1호와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6항, 제54조, 제55조 제4항과 제7항, 제

56조 제4항, 제58조 제6항, 제59조 제9항과 제11항, 제60조 제1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4항, 제68조 제4항, 제69조 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4항과 제5항, 제7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5조 제2호와 제3호, 제77조 제3호, 제79조 제4항,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사항을 제외한 다음의 사항은 보충적주식으로 기입한다.

1. 기업의 현상태, 주요영업내용,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
2. 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재산, 채무의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손익의 내용
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다음의 주요거래내용
 - 가. 판매, 구입거래 및 기타 거래
 - 나. 장기 또는 단기 채권과 채무
 - 다. 출자금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의 기업명, 주식수, 주식소유 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재산금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의 장부금액
- 라. 여신금융기관과 그 금액, 발생날자를 비롯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용
4.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내용
5. 보유한 무형고정재산의 토지리용권과 투자재산의 토지리용권의 공식적인 가격, 공식적인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취득원가
6.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7. 자본잉여금, 예비기금, 그밖에 법규에서 정한데 따라 리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8. 발행주식 가운데서 결의권이 제한되어있는 주식의 경우 그 내용
9. 진행중에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전망
10.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담보제공, 보증내용을 제외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보증의 내용
11. 해당 회계년도 개시일전 2년안으로 결산을 매꾼 경우에는 그에 충당된 자본잉여금, 리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해당 보충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기업리사회, 그밖의 권한있는 자의 승인날자
12.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로력비, 퇴직보조금, 문화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조세공과금을 비롯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시와

그 금액

13. 자연재해,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같은 불가항력사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결과
14. 기업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투자액,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 부산물 및 폐설물의 발생 및 처리 같은것에 대한 사항
15. 종업원에 대한 후생, 사회에 대한 기여의 내용
16. 최근 3년간 전문로동력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새로운 로동력채용비용, 비정상적이고 거액의 경우에 한하여 교육훈련비용 및 여기에 사용하는 유형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같은것에 대한 사항
17. 영업부문별 정보
18. 중단된 영업부문의 정보
19.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 전환조건 같은 발행내용
20. 차입계약서상의 중대한 위반사항
21. 그밖의 사항으로서 회계결산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회계결산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8조 (부속명세서) ①다음의 서류는 회계결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1. 유가증권명세서
2. 투자유가증권명세서
3.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명세서
4. 물자재산명세서
5. 투자부동산명세서
6. 유형고정재산명세서
7. 무형고정재산명세서
8. 단기차입금명세서
9. 장기차입금명세서
10. 사채보증명세서
11. 채무보증명세서
12. 충당금명세서

13. 제조원가명세서
14. 판매수입명세서
15. 판매원가명세서
16. 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
17. 감가상각비명세서
18. 잉여금명세서

②다음의 서류는 회계결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할수 있다.

1.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2. 판매채권명세서
3. 대부금명세서
4. 기타 시좌재산명세서
5. 투자재산명세서
6. 투자재산처분명세서
7. 유형고정재산처분명세서
8. 무형고정재산처분명세서
9. 구입채무명세서
10. 수리비명세서

부 칙(2007.6.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회계용어 비교

북 측	남 측
회계결산서	재무제표
계시	계정과목
주해	주기
출자비률법	지분법
일반경제거래	일반적상거래
정상가격	공정가액
채무	부채
재산	자산
대조계시	대조계정
시좌재산	당좌자산
물자재산	재고자산
행표	수표
정기저금	정기적금
받을 수형금액	받을 어음
전불금	선급금
전불비용	선급비용
발송상품	적송품
미성품	재공품
유형고정재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재산	무형고정자산
임차권	차지권
구입채무	매입채무
시좌돈자리잔고차입금	당좌차월
전수금	선수금
전수수입	선수수익
물어줄수형금액	지급어음
해외영업환산이익(손실)	해외사업환산대(차)
판매수입	매출액
반환	환입
문화후생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수입(비용)	영업외수익(비용)
환자시세편차소득(손실)	외환차익(차손)
우연이익(손실)	특별이익(손실)
대치원가	현행원가
조월	이연
공적보조금	국고보조금
미분주식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
불확정상태	우발상황
새끼회사	자회사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

[제정 2007.6.15]

제1조 (목적) 이 감정평가기준(이 아래부터는 기준이라 한다)은 회계검증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원이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감정평가원의 임무) ① 감정평가원은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감정평가원은 평가업무를 할 때 자기능력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같은 사유로 자기가 평가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감정평가원이 행하는 평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가격》이란 평가대상 토지리용권 같은것(이 아래부터는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사이에 보통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다.
2. 《정상임대료》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상물건의 현 상태에 맞게 일정한 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3.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 상태에 맞게 일정한 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4.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 상태에 맞게 일정한 수정을 가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5. 《원가법》이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보장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6.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보장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

는 경우 물리적감가, 기능적감가 또는 경제적감가 같은것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보장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바로 정하는 작업이다.

7. 《적산법》이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리틀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8.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입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룰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9.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입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것으로 기대되는 순리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제5조 (평가가액의 결정)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대료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평가목적, 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대료로 평가하는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평가시 특수한 조건이 동반될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대료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물건확인 의 원칙 등) ①감정평가원이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뢰할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감정평가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 또는 봉사(이 아래부터는 자문이라 한다)를 받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보고서에 그 자문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가격시점)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러나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날짜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순서) ①평가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작성

3. 대상물건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②합리적 또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순서를 조절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투자검증보고서의 기록사항) ①감정평가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1. 감정평가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2. 평가의뢰인
3. 평가목적
4. 평가조건
5. 가격시점, 조사기간 및 작성날짜
6.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 종별,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평가가격
8. 평가가격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대한 의견
9.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10. 전문가의 자문 같은 것을 받아 평가한 경우 그 자문 등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보고서에는 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원이 그 자격을 표시하고 수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방식의 적용) ①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다음의 방식 가운데서 이 기준에서 정한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하며 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또는 임대료(이 아래부터는 가격 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가방식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비교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

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수익방식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불합리하게 될 요인이 있을 때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증정보고서에 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감가수정방법) ①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정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대상물건의 감가누계액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내용년수는 경제적 내용년수로 한다.

제12조 (환원방법)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직접환원법 또는 할인현금수지 분석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정확한 물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①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호상간에 용도상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수 있다.

②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그것을 구분하여 평가할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일체로 리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체로 리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동산의 평가) 상품,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 제품, 생산품 및 기타 동산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다. 그러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본래의 용도로서 리용가치가 없는 동산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 (토지리용권의 평가) ①토지리용권은 평가대상토지리용권과 용도지역, 리용조건,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린근지역에 소재하는 등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토지이용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용권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은 토지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권의 사용, 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3. 토지이용권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동
4.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5. 은행 등 금융기관의 리자률의 변동
6.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제16조 (건물의 평가)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한다. 그러나 원가법으로 한 평가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 (건물과 토지이용권의 일괄평가 등) 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과 토지이용권을 일괄평가할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가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물가격과 토지이용권가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토지이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다. 그러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 (공장의 평가) 공장의 평가는 유형고정재산의 평가액과 무형고정재산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한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자동차의 평가)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다. 그러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자동차로서의 리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0조 (건설기계의 평가) 건설기계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한다. 그러나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로서의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1조 (기타 무형고정재산의 평가) ①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으로 한다. 그러나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무형고정재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 (임대료의 평가) ①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식 등의 평가) 토지리용권 등 외에 주식, 채권의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1. 주식

해당 회사의 재산, 채무 및 자본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재산총계에서 채무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재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는 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채권

상환일에 지불받게 될 원금과 리자를 합리적인 수익률과 가격시점에서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제24조 (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리용권 등의 가치평가인하) 소음, 진동 또는 환경오염 등(이 아래부터는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토지리용권 등의 가치인하분에 대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 (기타 물건의 평가) 제14조부터 제24조에 규정하지 않은 권리 등은 이와 유사한 물건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26조 (조언, 정보 등의 제공) ①감정평가원이 토지리용권 등의 리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이 아래부터는 정보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리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 등의 목적

2. 정보제공 등의 업무범위

3. 대상물건 및 자료수집의 범위

4. 정보제공 등의 의뢰조건 및 시점

②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부 칙(2007. 6. 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

[제정 2007.6.22]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제6조에 의해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이하 “검증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검증의 대상) ①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 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앞항에서 지적하지 않은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회계검증기준과 감정평가기준) 산업지구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 검증규정과 본 준칙의 시행을 위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검증기준과 감정평가기준을 정하여 그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한다.

제4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 등) ①검증규정 제8조에 의한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은 본 조가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공업지구관리기관은 남측공인회계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cpa.or.kr)에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 선정공고를 하고, 회계검증조직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③공업지구관리기관은 선정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적격 회계검증조직을 선정 후 적격 회계검증조직중 최저가 회계검증료를 제안한 2개 회계검증조직을 회계검증사무소 낙찰자로 선정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산업지구관리기관이 선정한 회계검증조직은 산업지구관리기관에 검증규정 제9조에 의한 설립신청서(이하 “설립신청서”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⑤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제5항에 의한 설립등록여부의 결정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의하여 회계사무소로 설립 등록을 한 회계검증조직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회계검증을 담당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계속 회계검증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의 자격) ①회계검증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일한자가 될 수 있다.

②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일한자가 될수 있다.

③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 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 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둔다.

제6조 (회계검증료) ①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규정 제20조에 의한 회계검증료를 매 2년마다 고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검증료는 회계검증사무소가 제안한 회계검증료를 참고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결정한다.

제7조 (손해보상준비금의 적립등) ①검증규정 제21조에 의한 손해보상준비금은 개성공업지구내 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단, 직전 회계연도 총수입액의 10%를 보험금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회계검증사무소는 그 소속 직원이나 회계검증원, 감정평가원이 회계감정 업무의 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③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사무소를 철수하는 경우에도, 철수한 날로부터 2년간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회계검증사무소는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안으로 검증보고서(투자검증보고서, 결산검증보고서 또는 청산검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②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검증사무소의 명칭을 기재하고 회계검증사무소 대표가 기명·날인한다.

③공업지구관리기관은 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최초 검증을 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최종 검증을 한다.

④공업지구관리기관은 최초 검증시 회계검증사무소에 대한 업무중지처벌, 벌금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낸다.

제9조 (회계검증보고서등의 비치·공시) ①기업은 기업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결산서와 검증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검증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증보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내의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기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기록장부) ①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은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검증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업무기록장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은 업무기록장부를 검증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업무기록장부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기록장부를 외부에 제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분쟁과 관련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 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2. 검증보고서에 대한 검증 및 윤리사항과 관련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 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 기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 칙(2007. 6. 22)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기준

[제정 2007.6.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계검증기준(이하“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이하 “검증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회계검증원이 회계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이 검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검증”이라 함은 회계검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말한다.
- 2 “회계검증원”이라 함은 회계검증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검증을 행하는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사무소 소속 회계검증원 각 개인을 총칭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검증기준의 기타 용어에 대한 해설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 (검증의 목적)

검증은 검증대상 회계결산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재무정보를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검증원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회계결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결산서의 이용자가 기업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검증의 고유한계)

- 1 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의견은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 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 2 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회계검증원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검증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회계결산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1) 합리적 확신을 얻지 못함
 - (2) 검증계획의 수립, 검증업무의 수행 및 판단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 (3)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이나 정당한 주의의무의 결여
 - (4) 검증기준의 미준수
- 3 회계검증원이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검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주어진 환경하에서 수행된 검증절차가 적절하였으며 검증보고서는 그러한 검증절차의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 4 회계검증원은 검증을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열람·등사·제출받은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진실하다고 신뢰한다. 따라서 기업의 임직원에게 의한 내부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판단은 회계결산서 검증의 범위가 아니다.

제5조 (검증기준의 기초)

이 검증기준의 기초로서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국제검증기준을 채택한다.

제6조 (검증기준의 적용)

- 1 회계검증원이 이 검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검증에 관련되는 사항의 중요성과 검증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검증기준의 제정은 불가능하므로 이 검증기준은 검증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리로 사용되어야 한다.
- 3 회계검증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검증기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업무기록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결산서검증의 일반원리 및 검증의 범위

제1조 (목적)

이장은 회계결산서검증의 일반원리, 검증의 범위 및 독립성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증의 일반원리)

1 회계검증원은 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독립성
- (2) 정직성
- (3) 객관성
- (4)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의무
- (5) 비밀유지
- (6)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
- (7) 제반 전문적 기준의 습득과 준수

2 회계검증원은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범위)

이 검증기준에 준거한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검증원은 이 검증기준,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 규정 및 검증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증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검증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1 (독립성의 개념) 회계검증원은 검증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신적 독립성 및 외관상 독립성을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1 (정신적 독립성) 정신적 독립성은 회계검증원이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검증의견을 표명할 때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훼손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적 자세를 말한다.

1.2 (외관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은 합리적이며 관련지식이 있는 제3자가 회계검증원의 정직성과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훼손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나 사실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2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업무의 유형) 검증의 사회적 성격상 검증과 관련된 주변상황이나 업무에 대하여 회계검증원이 완전한 독립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 검증기준에서 검증의 독립성이 훼손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이나 업무를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검증원은 특정 상황이나 업무가 검증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과 그 영향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독립성 훼손유형을 참고하여야 한다.

- (1) 회계검증원과 기업간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 (2) 회계검증원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경우
- (3) 기업의 경영자 또는 피고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4)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3 (독립성 훼손가능성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회계검증원은 경제적 이해관계 및 고용관계, 비검증업무 등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이 중대한 상황이나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예와 같은 적절한 안전장치(이하 이 장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한다)를 수립·운영함으로써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회계검증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합리적이며 관련 지식이 있는 제3자에게 독립성의 준수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계검증원의 전체구성원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조직내부의 정책과 절차 등 독립성 통제절차의 구축과 운영
- (2) 기업의 재정검열원과의 적절한 토의
- (3) 독립성 유지정책을 담당하는 적절한 내부조직 또는 인력의 운영
- (4) 기타 독립성의 훼손위험을 예방,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4 (독립성 상실)

4.1 (독립성 상실의 판단) 검증과 관련되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나 업무에 대하여 제도적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회계검증원 또는 합리적이며 관련지식이 있는 제3자가 판단하기에 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면 회계검증원의 독립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계검증원의 조직적인 제도적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회계검증원의 일부 구성원이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독립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4.2 (회계검증원의 대응절차) 회계검증원은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검증 또는 관련 비검증업무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검증원이 검증 또는 비검증업무의 착수 이전에 독립성 위반사유를 해소

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독립성위반사유를 검증의 종결전 단기 간내에 해소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무의 제한 등) 회계검증원은 독립성에 관한 이 장의 일반적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검증 또는 비검증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1 (인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회계검증원은 장기간의 검증,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 회계검증원과 피검증원간 상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의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회계검증원은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속하여 검증할 수 없으며 소속검증보조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회계검증원은 다음과 같이 재무적 이해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회계검증원과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사무소의 사원 및 당해 검증업무에 참여하는 회계검증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사무소의 사원 및 당해 검증업무에 참여하는 회계검증원 또는 그 배우자와 상당금액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 다만, 회계검증원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을 제외한다.
-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사무소의 사원 및 당해 검증업무에 참여하는 회계검증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회계검증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사무소의 사원 및 당해 검증업무에 참여하는 회계검증원에게 검증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 회계검증사무소, 회계검증사무소의 사원 및 당해 검증업무에 참여하는 회계검증원에게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기업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기업

② 회계검증원과 고용관계 등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단,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회계검증사무소와의 지분관계 등 재무적 이해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회계검증사무소의 사원 및 당해 검증업무에 참여하는 회계검증원 또는 그 배

- 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 또는 사용인으로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기업
-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회계결산서 등에 대하여 검증업무를 행한 회계검증사무소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에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는 기업. 담당사원이 아닌 사원의 경우에는 회계·결산 등 직접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있는 기업

5.2 (수행이 금지된 비검증업무) 회계검증원은 기업의 회계결산서를 검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회계기록과 회계결산서의 작성
- (2) 내부검증업무의 대행
-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4) 피검증기업의 재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회계결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재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5.3 (기업의 재정검열원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검증업무) 회계검증원은 법규상 금지된 업무는 아니지만 검증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중대한 비검증업무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회계검증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하여 독립성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기업의 재정검열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업무 담당사원과 비검증업무 담당사원간에는 과거 일정기간 및 비검증업무 수행완료일까지 인적교류가 없어야 하며 회계검증원은 이러한 내부적 차단외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1)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 (2) 인적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 (3) 자금조달 관련업무
- (4) 투자자문업무
- (5) 문단 5.2의 (4)에서 금지되는 경우 이외에 피검증 기업 이외의 제3자의 요청

에 의하여 피검증 기업의 재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회계결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기 위한 동 재산 등에 대한 실사(실사결과 가치평가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 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평가 또는 그 개선방안의 제시
- ② 제3의 용역자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하여 경영자 또는 제3의 용역자에게 권고 제공

5.4 (기업의 재정검열원 등과 협의가 필요한 비검증업무) 회계검증원은 세무조정 등 세무관련 업무와 같이 법규상 금지된 업무가 아니거나 검증 등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 기타 비검증업무에 대하여는 회계검증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하여 독립성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기업의 재정검열원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수행할 수 있다.

6 (관련문서의 보존) 회계검증원의 독립성통제절차 등 제도적 안전장치에 따른 독립성 준수확인서, 독립성 관련내부조직의 업무수행 기록, 비검증업무의 수행에 대한 기업의 재정검열원의 동의서 또는 협의기록 등 관련문서는 업무기록장부의 보존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제 3 장 검증계약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검증원이 기업과 검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과 기업은 검증을 착수하기 전에 검증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2조 (계속검증)

회계검증원은 계속검증의 경우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의 계약조건을 기업에 다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변경의 승낙)

- 1 회계검증원이 검증을 종료하기 이전에 검증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인증관련 서비스로 계약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그 요청의 수락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과 기업간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새로운 조건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 3 회계검증원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한정의견을 받게 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받게 될 상황에서 기업이 불리한 검증의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증계약을 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이에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3호의 상황에서 당초의 검증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사실 및 이유에 대하여 기업의 이사회·재정검열원 또는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 또는 규정상 의무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증의 품질관리**제1조 (목적)**

이장은 회계검증원의 전체조직과 개별검증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검증원조직 전체의 품질관리)

- 1 회계검증원은 모든 검증이 이 검증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검증원의 전체 조직과 개별 검증업무 양 차원에서 적절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조직의 전체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검증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참여자들이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개별검증의 품질관리)

- 1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원 조직전체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고려하여 개별 검증의 상황에 적합하게 품질관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개별검증의 품질관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

한 시간예산을 편성하고 검증참여자별로 검증에 투입한 시간을 업무기록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문서화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검증에 있어서 문서화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의견의 토대가 되며 검증이 검증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조 (업무기록장부의 형식과 내용)

- 1 회계검증원은 해당 검증에 대해 이해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충분하도록 완전하고 자세하게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업무기록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검증업무의 계획에 관한 사항
 - (2) 수행한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3) 상기 사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 (4) 검증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

제3조 (업무기록장부의 비밀유지, 보관, 보존 및 소유권)

- 1 업무기록장부의 소유권은 회계검증원에게 있다. 회계검증원은 업무기록장부의 비밀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업무기록장부는 검증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업무기록장부는 일반서류, 전산매체, 전자문서, 팩스 등 그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보고서일 이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스캐닝을 통한 시디롬이나 광파일 등의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제 6 장 부정과 오류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결산서 검증에서 부정과 오류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과 관련

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
- 3 회계검증원은 검증을 계획·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때 회계결산서가 부정과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회계검증원의 책임)

1 (검증계획과 토의)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의 수립시 회계결산서가 부정이나 오류에 따라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대하여 당해 검증에 참여하는 검증팀 구성원들과 토의하여야 한다.

2 (경영자에 대한 질문)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의 수립시 경영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1) 부정과 관련된 사항

①부정으로 인하여 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대한 경영자 자신의 평가 결과

②동 위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경영자가 구축한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

(2)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수준

(3) 기업에 영향을 미친 부정이나 현재 조사중인 부정의혹으로서 경영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

(4) 회계상의 중요한 오류를 경영자가 발견한 경우 그 내용

3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회계검증원은 이 회계검증기준 “제12장 검증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에 따라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과 오류의 결과로 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함에 있어서, 회계검증원은 의도적인 재무보고의 왜곡 또는 재산의 유용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4 (적발위험) 회계검증원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검증위험 즉,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회계결산서가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증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입증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원이 그 존재를 확인한 바 있는 각각의 부정

위험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결산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검증절차)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결산서 왜곡표시의 발견과 부정위험의 고려)

회계결산서의 왜곡표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과 관련된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의 왜곡표시가 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검증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없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결산서 왜곡표시의 평가 및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회계결산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회계결산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이로 인하여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문서화)

회계검증원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파악한 부정위험요소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4호의 규정과 같이 각 부정위험요소에 대한 검증절차 등 대응조치의 내용도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검증의 수행과정에서 부정위험요소가 파악되어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회계검증원은 해당 부정위험요소의 내용과 이에 대응한 회계검증원의 조치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7조 (부정과 오류에 대한 경영자확인서)

회계검증원은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운영 등 부정과 오류와 관련된 경영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2)의 경우 경영자는 수정반영하지 아니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경영자확인서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1) 경영자는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적절한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2) 경영자는 회계검증원이 지적하여 제시한 회계결산서의 왜곡표시 사항 중

기업이 이를 수정반영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그 개별금액 또는 합계금액의 영향이 회계결산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 (3)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정으로 의문시 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자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 중요사실들을 모두 회계검증원에게 공개하였다.
- (4) 경영자는 부정에 의하여 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대한 경영자 자신의 평가결과를 회계검증원에게 공개하였다.

제8조 (부정과 오류의 통보 등)

부정이나 부정으로 의문시 되는 사항 또는 오류에 의하여 회계결산서가 왜곡표시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러한 정보를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경우에 따라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1 (오류에 의한 왜곡표시)

1.1 오류에 의하여 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에게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검증기준 “제8장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내부감시기구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1.2 회계검증원이 지적하여 제시한 회계결산서 왜곡표시 사항 중 개별금액이나 합계금액이 회계결산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여 경영자가 회계결산서에 수정반영하지 않은 항목들은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 한다.

2 (부정에 의한 왜곡표시) 부정을 파악하였거나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입수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에 미치는 왜곡표시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이 문제를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에게 적시에 통보한다. 또한 회계검증원은 이 검증기준 “제8장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내부감시기구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 회계검증원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이나 적발과 관련하여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의 모든 중요한 취약점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검증원은 부정의 예방이나 적발과 관련하여 검증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나 경영자로부터 알게 된 내부통제의 모든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감시기구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회계검증원은 검증기준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기업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부정이나 오류의 내용을 보고할 수 없

으나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에 이를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계검증원이 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검증원이 발견한 부정과 부정으로 의문시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회계결산서가 왜곡표시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검증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검증계약체결 상대방에게 회계검증원이 전문가적 또는 법적으로 이를 보고 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
- (2) 검증계약의 해지가능성의 고려
- (3) 검증계약의 해지를 결정한 경우
 - ① 검증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에 관해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 및 내부감시기구와 토의
 - ② 검증계약체결 상대방 또는 감독기관에 검증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할 전문가적 또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제10조 (후임 회계검증원에 대한책임)

후임 회계검증원이 검증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오는 경우, 기존 회계검증원은 그 후임 회계검증원이 전문직으로서 해당 계약체결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언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재검증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회계검증원에게 후임 회계검증원과의 논의나 관련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기존 회계검증원은 후임 회계검증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계결산서검증에 있어서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

제1조 (목적)

1 이 장은 회계결산서검증에 있어서 기업의 제반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규정(이하 “법규”라 한다)의 고려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에 대하여 그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을 계획·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함에 있어, 기

업이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조 (법규준수에 대하여 회계검증원이 고려할 사항)

- 1 이 회계검증기준 “제2장 회계결산서검증의 일반원리 및 검증의 범위”에 따라 회계검증원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검증을 통하여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의 수립시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와 그 준수상황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여야 한다.
- 3 회계검증원은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와 그 준수상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후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 회계결산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법규위반의 유형을 파악하여야 한다.
 - (1) 기업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질문
 - (2) 관계 인·허가당국 또는 감독당국과의 교신문서 열람
- 4 제2조제3호의 경우, 회계검증원은 법규의 준수여부가 회계결산서상의 주요 금액과 공시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동 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의 주요 금액과 공시내용에 관한 경영자의 주장(이하 “경영자주장” 또는 “회계결산서의 경영자주장”이라 한다)을 검증할 때 동 법규의 준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5 회계검증원은 검증절차가 회계결산서에 대한 의견형성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법규위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6 회계검증원은 경영자가 회계결산서 작성시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법규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회계검증원에게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7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의 절차)

- 7.1 기업의 법규위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행위의 성격과 발생배경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계결산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타 추가적인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야 한다.

- 7.2 기업이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관련 발견사항을 문서화하고 경영자와 이 사항을 토의하여야 한다.
- 7.3 기업의 법규위반 의혹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증거의 결여로 인하여 검증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7.4 기업의 법규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다른 측면, 특히 기업의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법규위반 사항의보고)

1 (경영자 등에 대한 보고)

- 1.1 법규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회계검증원은 즉시 기업의 재정검열원, 경영자, 이사회 등 적절한 관련자와 협의하거나 또는 그들이 동 법규위반에 관하여 적절히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1.2 회계검증원은 제3조제1.1호에서 기업의 법규위반이 의도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관련자에게 지체없이 관련 발견사항을 알려야 한다.
- 1.3 기업의 법규위반 문제에 이사 또는 경영자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사실을 기업의 재정검열원이나 차상급경영자, 이사회 등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검증보고서 이용자에 대한보고)

- 2.1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위반 사항이 기업의 회계결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회계검증원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2.2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위반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함에 있어 기업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 2.3 법규의 위반이 기업에 의한 것인지 또는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 관련 상황에 의한 제약에 의한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러한 사실이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규제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회계검증원은 검증기준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기업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법규위반내용을 보고할 수 없으나

다른 규정에 이를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검증계약의 해지)

제2조제7.4호에 따라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여 동 회계검증원이 검증 계약을 해지할 때 후임회계검증원이 검증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오는 경우, 기존회계검증원은 그 후임회계검증원이 전문직으로서 해당계약체결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언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재검증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회계검증원에게 후임 회계검증원과의 논의나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기존 회계검증원은 후임 회계검증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검증원이 회계결산서검증에서 발생한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에 대하여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의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를 알게 된 경우 동 사항을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 (적합한 내부감시기구)

회계검증원은 재정검열원 등 내부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기구들을 파악한 후,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적합한 기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 - 협의사항 및 협의시기)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 등 회계결산서의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를 고려하고, 이를 내부감시기구와 적시에 협의해야 한다.

제 9 장 검증계획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계속검증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회계검증원이 검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도검증의 경우에는 이 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추가하여 “제18장 초도검증-기초잔액의 검증”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 (전반검증계획의 수립)

회계검증원은 전반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검증범위와 이의 수행방법을 정하고 관련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전반검증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의 예와 같다.

- (1)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
- (2)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 (3) 검증위험과 중요성
- (4)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 (5) 검증업무의 조정, 지휘, 감독 및 검토
- (6) 기타

제3조 (세부검증계획의 수립)

회계검증원은 전반검증계획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등 세부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4조 (전반검증계획 및 세부검증계획의 수정)

회계검증원은 검증절차의 수행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검증계획과 세부검증계획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사업에 대한 이해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검증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이해의 의미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검증에 적용하는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검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결산서, 회계검증원의 검증업무 또는 검증보고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거래 및 실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보유 또는 습득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에 대한 이해의 활용)

- 1 회계검증원은 검증참여자가 배정된 검증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검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파악한 사항이 회계결산서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계결산서의 경영자 주장과 모순이 없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장 검증의 중요성원칙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중요성과 검증위험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을 수행할 때 중요성 및 중요성과 검증위험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중요성)

회계검증원은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왜곡표시 사항이 회계결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결산서 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 1 회계결산서가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계검증원은 검증에서 발견된 왜곡표시 사항으로서 회계결산서에 수정반영되지 아니한 항목의 총합계액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2 경영자가 왜곡표시 사항을 회계결산서에 수정하기를 거부하고 회계검증원이 미수정 왜곡표시사항의 합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이 검증기준 “제30장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변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2 장 검증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검증위험에 대한 기본원리

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의 수립과 효과적 검증접근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검증원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검증위험을 평가하고 검증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 (고유위험)

회계검증원은 전반검증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회계결산서 수준에서의 고유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검증원은 세부검증계획의 수립시 그러한 고유위험 평가결과를 각 주요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상의 경영자주장과 연관시켜야 한다. 회계검증원이 전체 회계결산서 수준에서의 고유위험의 평가결과를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상의 경영자주장과 연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자주장에 대한 고유위험수준이 높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 1 (회계제도) 회계검증원은 다음 각 사항의 파악과 이해를 위하여 회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1) 기업의 주요 거래유형
- (2) 주요 거래유형 별로 각 거래가 개시되는 절차
- (3) 중요한 회계기록, 증빙서류, 회계결산서의 계정과목
- (4) 중요한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그 발생으로부터 회계결산서에 반영되기까지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절차

- 2 (통제환경) 회계검증원은 내부통제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 의식 및 행동을 평가하는데 충분하도록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 3 (통제절차)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하도록 통제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제4조 (통제위험)

1 (통제위험의 예비평가)

- 1.1 회계검증원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이해한 후 각각의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유형별로 경영자주장의 통제위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 상기 경영자주장에 대한 통제위험의 예비평가시 통제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경영자 주장과 관련된 내부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내부통제가 회계결산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발·수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예비평가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시사(test)를 수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통제위험의 이해와 평가의 문서화) 회계검증원은 업무기록장부에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1) 기업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이해를 통하여 파악한 사항
- (2)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

3 (내부통제의 시사)

3.1 회계검증원은 통제위험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통제의 시사를 수행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은 통제위험이 낮다고 평가할수록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운용사실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3.2 회계검증원은 내부통제의 시사를 수행한 결과 내부통제제도가 통제위험의 예비평가 단계에서 파악한 대로 설계·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4 (검증증거의 질과 적시성)

4.1 회계검증원은 이전의 검증에서 수행한 절차에 의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4.2 회계검증원은 기업의 내부통제가 회계연도 전체 기간동안 운용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5 (통제위험의 최종평가) 회계검증원은 입증절차의 결과와 기타의 검증증거에 근거하여 검증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통제위험의 최종 평가결과가 반영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적발위험)

1 회계검증원은 검증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회계검증원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대하여는 일정수준 이상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회계검증원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입증검증에서 더 많은

검증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입증검증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평가한 결과 중요한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의 경영자주장에 대한 적발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6조 (취약점의 통보)

기업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을 알게 된 경우, 회계검증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적합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 13 장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검증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컴퓨터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환경하에서 검증업무를 수행할때 회계검증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중요한 재무정보를 처리하는데 컴퓨터가 이용되고 있으면, 기업이 자체의 컴퓨터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외부 컴퓨터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정보시스템 환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2 회계검증원은 정보시스템 환경이 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기술과 능력)

회계검증원은 검증업무의 계획, 지시, 감독 및 그 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검증원은 검증업무에 고도의 전문적 정보시스템기술이 요구되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전문가가 이 회계검증기준 “제29장 전문가의 활용”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검증목적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

- 1 회계검증원은 이 회계검증기준“제12장 검증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검증접근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정보시스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의 검증을 계획할 때 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복잡성 그리고 검증대상이 되는 자료의

입수가능성 여부를 이해하여야 한다.

- 3 기업의 정보시스템이 중요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정보시스템 환경의 이해와 더불어 동 환경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4조 (위험의 평가)

회계검증원은 이 회계검증기준 “제12장 검증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경영자주장에 대해 정보시스템 환경하에서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검증절차)

회계검증원은 이 회계검증기준 “제12장 검증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검증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4 장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을 검증할 때 고려할 사항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을 검증할 때 회계검증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검증접근방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용역대행업체가 기업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회계검증원이 고려할 사항)

- 1 회계검증원은 용역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기업 전체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검증에 대한 연관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용역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업의 전체 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검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계검증원은 용역대행업체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은 기업의 활동 중 용역대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통제위험을 “최대”로 평가하되,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시사 결과에 따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낮출 수 있다.
- 3 기업의 내부통제를 이해하고자 함에 있어서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의 보고

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동 회계검증원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의 보고서)

- 1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의 보고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동 보고서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 회계검증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유용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3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이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수행한 시사의 결과가 회계검증원이 기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검증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회계검증원은 동시사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기업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결과 회계검증원의 통제위험평가수준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4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의 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에 용역대행업체 회계검증원의 보고서를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장 검증증거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검증을 수행할 때 입수하여야 하는 검증증거의 양과 질, 그리고 검증증거를 입수할때 적용되는 절차에 대하여 그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검증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

- 1 회계검증원은 내부통제의 시사로부터 수집된 검증증거가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검증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회계결산서의 경영자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3 회계검증원이 경영자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

회계검증원은 실물재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검증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시기는 수집하고자 하는 검증증거의 입수가능기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제 16 장 검증증거 - 구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

제1조 (목적)

이장은 회계결산서의 특정항목과 기타 공시사항에 대하여 이 검증기준 “제15장 검증증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고재산 실사입회)

- 1 회계결산서에서 재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검증원은 실사에 입회하여 재고재산의 존재와 상태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2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고재산 실사일에 입회하여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다른 일자를 정하여 적절히 재고재산을 실사하거나 입회·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의 실사일과 회계검증원의 실사 입회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시사하여야 한다.
- 3 재고재산의 특성이나 보관장소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 회계검증원은 대체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재고재산의 존재와 상태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수행결과 검증범위의 제한 사유가 제거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에 대한 질문)

- 1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 또는 청구사건이 인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계류중인 소송사건 또는 청구사건이 발견되었거나 그 존재가능성이 추정될 때 기업의 고문변호사나 담당변호사 등 소송사건 관련자와 직접

적인 교신을 모색하여야 한다.

- 3 회계검증원이 소송사건 관련자를 접촉하고자 계획함에 따라 기업이 동 관련자에게 접촉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하는 경우 동 서한은 회계검증원이 직접 발송하도록 하고 서한에는 기업의 경유없이 회계검증원에게 직접 답변 또는 회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4 경영자가 관련자와의 접촉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적인 검증절차로도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얻지 못하면 회계검증원은 검증범위의 제한으로 보아 한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

회계결산서에서 장기투자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평가와 공시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부문별 정보)

회계결산서에서 사업부문별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동 정보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 17 장 외부조회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검증원이 검증증거 수집의 방법으로 외부조회를 이용할 때의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경영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는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중요성과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결과
 - (2) 이미 계획된 타검증절차로부터 입수될 증거가 동 경영자주장의 검증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제2조 (외부조회설계)

회계검증원은 외부조회절차의 수행시 조회내용, 양식 등 관련사항을 개별 검증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 (경영자의 조회절차 생략요청)

- 1 특정 잔액이나 기타 정보의 조회실시에 대하여 경영자가 조회절차를 생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경영자의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고려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이 경영자의 요청에 동의할 때에는 대체적 검증절차를 통하여 조회를 계획했던 해당 금액이나 기타 정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이 경영자의 조회절차 생략요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외부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증범위의 제한으로 보아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외부조회 절차)

회계검증원은 조회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작성과 발송 및 조회서 회수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 1 (적극적 조회에 대한 미회신)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외부조회를 통해 검증증거를 입수하는 대신에 대체적 절차의 수행을 통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2 (회신결과의 신뢰성) 회계검증원은 회수된 조회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면 확인절차를 실시한다.
- 3 (추가적 검증절차) 조회절차와 대체적 절차로도 경영자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러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추가적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조회결과의 평가)

회계검증원은 외부조회 및 기타의 검증절차를 수행한 결과 회계결산서의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 18 장 초도검증 - 기초잔액의 검증

제1조 (목적)

이장은 기업의 회계결산서를 처음으로 검증하거나 전기회계결산서가 타회계검증원에 의해 검증을 받은 경우(이하“초도검증”이라 한다) 기초잔액의 검증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초도검증의 검증증거)

회계검증원은 초도검증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1) 기초잔액은 당기 회계결산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2) 전기 총계정원장의 마감잔액이 당기 총계정원장의 기초금액으로 정확히 이월되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히 수정이월 되었음.
- (3) 적절한 회계정책이 계속해서 적용되었으며, 회계정책의 변경은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었음.

제3조 (검증결론과 보고)

- 1 제2조를 포함하여 적절한 검증절차를 수행한 결과 기초잔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할수 없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 2 기초잔액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고 그 효과가 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지 않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중요성에 따라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3 기초잔액에 적용된 회계정책이 당기에 변경되었으나 이로 인한 영향이 적절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공시되지 않은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중요성에 따라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4 전기 검증보고서상의 검증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변형사유가 당기 회계결산서와 계속적으로 연관이 있고 중요하다면 회계검증원은 이에 따라 당기 검증보고서를 변형하여야 한다.

제 19 장 분석적 절차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검증의 수행에 분석적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계획단계 및 검증의 종결단계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때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의 분석적절차는 검증과

정의 다른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검증계획 단계에서의 분석적절차)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계획단계에서 기업의 사업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위험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의 종결단계에서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분석적절차)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종결단계에서 회계결산서가 기업의 사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원이 파악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비정상적 항목의조사)

분석적절차를 수행한 결과 다른 관련정보와 모순되는 경우 또는 예측치와 편차가 있는 중요한 변동이나 연관성을 파악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이를 조사하여 그 합리적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 20 장 표본검증과 기타의 추출방법에 의한 시사(test) 절차

제1조 (목적)

이장은 검증증거를 수집하여 시사하기 위한 표본의 추출절차 또는 기타의 추출방법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본 추출방법의 결정)

회계검증원은 검증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시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증증거를 입수할수 있도록 적절한 시사항목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증거의 수집과 검증위험의 고려)

회계검증원은 검증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검증위험을 평가하고, 동 검증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4조 (검증증거의 수집과 시사대상 항목의 추출방법)

회계검증원은 검증절차를 설계할 때 전수조사, 표본추출 등 시사대상 항목을 추출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표본의 설계)

회계검증원은 검증표본을 설계할 때 해당시사의 목적 및 표본추출 모집단의 속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표본의 크기)

회계검증원은 검증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표본위험이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표본의 추출)

검증표본을 추출함에 있어서 회계검증원은 모집단내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가능성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검증절차의 수행)

회계검증원은 검증표본으로 추출된 항목에 대해 특정시사의 목적에 적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오류의 성격과 원인)

회계검증원은 표본 시사의 결과 파악된 오류의 성격과 원인 그리고 동 오류가 특정 시사의 목적 및 다른 검증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오류의 추정)

회계검증원은 표본에 대한 입증절차에서 발견된 오류금액을 기초로 모집단 오류금액을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한 오류금액이 특정 시사의 목적과 검증의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표본시사 결과의 평가)

회계검증원은 표본시사의 결과를 기초로 모집단의 관련특성이 회계검증원의 예비적 평가와 동일한지 또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 21 장 회계추정치에 대한 검증

제1조 (목적)

이장은 회계결산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에 대한 검증의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증증거)

회계검증원은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절차)

1 회계검증원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절하게 공

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계추정치를 검증함에 있어서 회계검증원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 (2)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 (3)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

제4조 (검증절차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회계검증원은 회계추정치가 기업의 사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원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또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타 검증증거와 모순이 없는지 최종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 22 장 공정가치의 평가와 그 공시에 대한 검증

제1조 (목적)

이장은 회계결산서에 표시된 공정가치와 그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주요 재산과 채무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회계결산서에 공정가치로 추정되어 표시되거나 공시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계검증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재산, 채무 및 자본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문제는 최초로 거래를 기록할 때 발생될 수도 있고, 추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다.

제2조 (검증증거)

회계검증원은 기업이 측정하고 공시한 공정가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 및 관련 통제절차의 이해와 위험평가)

- 1 회계검증원은 효과적인 검증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과 그 공시 및 관련 통제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과 그 공시 절차를 이해한 후 검증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의 측정과 이에 대한 회계결산서 공시에 관련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가치 측정치와 그 공시의 적절성 평가)

- 1 회계검증원은 공정가치 측정치와 그 공시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2 기업이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시할때 기업회계기준에 경영자가 특정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가 요구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또한 경영자가 해당 특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3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여러가지 대안이 있거나 공정가치의 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기업이 적용한 측정방법이 기업의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 4 회계검증원은 기업의 공정가치의 측정방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가의 활용)

회계검증원은 공정가치에 대한 검증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가치의 측정치와 그 공시내용에 대한 시사)

회계검증원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를 기초로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치와 그 공시내용을 시사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중요한 가정, 평가모형 및 기초자료에 대한 시사)

- 1.1 회계검증원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자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적용한 중요한 가정이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치와 회계결산서상의 공시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1.2 회계검증원은 경영자가 공정가치 측정치와 공시내용을 도출할 때 사용된 자료를 시사하여야 하며, 공정가치 측정치가 해당 자료와 경영자의 가정들로부터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회계검증원은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 공정가치 측정치와 회계결산서 공시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

회계검증원은 기업이 행한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증수행 결과의 평가)

공정가치 측정치와 회계결산서 공시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회계검증원은 입수한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와 동 증거가 검증 중에 입수된 타 검증증거와 모순이 없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경영자확인서)

회계검증원은 공정가치의 측정에 대한 중요한 가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경영자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경영자확인서에는 경영자의 중요한 가정들에 포함된 계획과 조치에 대하여 경영자가 기업을 대표하여 실제로 수행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3 장 특수관계자

제1조 (목적)

이장은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과 검증 절차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증증거)

- 1 회계검증원은 경영자가 특수관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공시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검증절차를 수정 또는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왜곡표시의 발생위험이 통상적 기대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제3조 (특수관계자의 파악 및 관련 거래의 공시)

- 1 회계검증원은 경영자가 제공한 특수관계자의 목록을 검토하고 이의 완전성 여부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전기 업무기록장부상의 특수관계자 명단을 검토

- (2) 기업의 특수관계자 파악절차검토
 - (3) 경영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관계하고 있는 타기업이 있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
 - (4) 주요 주주의 명부 또는 주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주요 주주의 명단을 파악
 - (5)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의 검토
 - (6) 자기업 재정검열원 등 타회계검증원, 전임 회계검증원에게 특수관계자의 추가적 존재여부를 질문
 - (7) 기업소득세 신고서류 등 관계기관에 제공된 정보를 검토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의 공시가 적절한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1 회계검증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제공한 정보 이외의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통제위험의 예비적 평가과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승인과 이에 대한 기록의 통제절차가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파악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검증)

회계검증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파악된 경우 동 거래가 적절하게 기록되고 공시되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자확인서)

회계검증원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경영자확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1) 특수관계자 관련 제공정보의 완전성
- (2) 특수관계자 관련 회계결산서 공시의 적절성

제7조 (검증결론과 보고)

회계검증원이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할수 없거나 이에 관한 회계결산서 공시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검증보고서를 이에 적합하게 변형시켜야 한다.

제 24 장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에 대한 기본 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이 회계결산서와 검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검증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

- 1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서 회계결산서의 수정이나 공시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모두 파악하였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설계,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동 사건이 회계결산서에 적절하게 계상되고 공시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보고서일 후 회계결산서공표일 전에 발견한 사실)

- 1 검증보고서일 후 회계결산서 공표일(기업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전에 회계검증원이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경영자와 논의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이 검증한 회계결산서의 중요한 부분이 주주총회에서 수정되어 승인되었음을 통보받거나 알게 된 경우도 같다.
- 2 제3조제1호에 따라 새로운 검증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검증보고서의 일자(기업의 이사회가 수정회계결산서를 승인한 일자)보다 빨라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제2조제1호의 검증절차는 새로운 검증보고서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3 제3조제1호에서 회계검증원이 회계결산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영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를 재발행하여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4 검증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 재발행 검증보고서에는 기업이 이전에 발행된 회계결산서를 수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동 사항에 관한 수정회계결산서에 대

한 주석을 참조하라는 내용, 그리고 이전에 발행한 검증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특기사항문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결산서공표일 후에 발견된 사실)

- 1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고 검증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검증보고서의 변형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을 회계결산서공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회계결산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 이를 경영자와 논의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제3조제2호 내지 제3조제4호 는 회계결산서공표일 이후 발견된 사실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25 장 계속기업

제1조 (목적)

이장은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자 평가결과의 고려 등 기업의 회계결산서 작성에 적용된 계속기업가정에 대하여 회계검증원이 수행할 절차와 책임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속기업가정 고려)

회계검증원은 검증절차를 계획·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경영자가 회계결산서 작성의 전제로 삼은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계획시 고려사항)

- 1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의 수립시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전 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증거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되는 경우 수행해야 할 검증절차는 문단 6과 같다. 또한 동 사건이나 상황이 검증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검토)

- 1 회계검증원은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회계검증원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자에게 그 평가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경영자의 평가대상 기간 이후의 계속기업 문제)

회계검증원은 경영자의 평가대상 기간 이후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경영자가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제6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된 경우의 추가적 검증절차)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된 경우 회계검증원이 수행해야 할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경영자의 계속기업평가에 근거하여 작성한 향후 실행계획의 검토
- (2) 경영자의 향후 실행계획의 예상효과 또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타 요소의 영향에 대한 고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의 수집
- (3) 경영자의 향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영자확인서에 포함

제7조 (검증결과와 보고)

회계검증원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중요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 그 수집된 검증증거를 기초로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속기업가정이 적절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1.1 회계결산서에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 회계검증원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특기사항문단을 추가하여 검증보고서를 변형시켜야 한다. 특기사항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
- (2)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회계결산서의 해당주석을 참조하도록 언급
 - ①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능력에 대하여 중요한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자의 실행계획
 - ②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이

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는 재산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1.2 회계결산서에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황에 적절하도록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에는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

2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계검증원이 판단하였다면 동 사실의 회계결산서 주석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기업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기업의 회계결산서에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경영자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가 제4조 제2항의 회계검증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범위의 제한으로 보아 검증보고서를 변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6 장 경영자진술

제1조 (목적)

이장은 경영자진술을 검증증거로 사용하고 이를 평가하며 문서화하는 절차, 그리고 경영자가 적절한 진술을 거부할 때 회계검증원이 취하여야 할 행동 등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결산서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인정)

회계검증원은 경영자확인서, 승인된 이사회이사록 또는 경영자가 서명한 회계결산서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고 경영자는 회계검증원에게 제시한 회계결산서를 승인하였다는 관련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증거로서의 경영자진술)

1 회계검증원은 다른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자로부터 문서화된 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2 경영자의 진술이 타검증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관련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상황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의 기타진술의 신뢰성을 재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경영자가 회계검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진술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검증범위의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 27 장 타회계검증원의 검증결과 활용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결산서의 일부 부문을 타회계검증원이 검증하고 그 검증결과를 활용하여 주회계검증원이 자기 책임하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타회계검증원의 검증결과를 활용할 경우 타회계검증원의 검증결과가 회계검증원의 검증업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조 (주회계검증원으로서의 검증수입)

회계검증원은 업무참여 정도가 주회계검증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주회계검증원의 검증절차)

- 1 회계검증원이 타회계검증원의 검증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타회계검증원의 직업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타회계검증원이 수행한 업무가 회계검증원의 검증목적에 적절한지 충분하고 적합한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회계검증원은 타회계검증원이 발견한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검증원간 협조)

타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원이 그 검증결과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검증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검증보고서 고려사항)

타회계검증원의 검증결과를 활용할 수 없고 회계검증원이 타회계검증원에게 위임한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추가적 검증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의 구분표시)

회계검증원이 회계결산서 전반의 검증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일부 부문의 검증에 대하여 타회계검증원의 검증보고서만을 기초로 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전체 회계결산서에서 타회계검증원이 검증한 부문의 크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8 장 내부검증업무의 고려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검증원이 기업의 재정검열원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할 경우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외부회계검증원은 기업의 재정검열원이 수행한 업무와 동 재정검열원이 수행한 업무가 외부회계검증원의 검증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내부검증업무의 이해와 예비평가)

- 1 회계검증원은 검증계획의 수립과 효과적 검증접근방법의 개발에 도움을 얻기 위해 기업의 내부검증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2 기업의 내부검증업무가 외부검증의 특정 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계획단계에서 내부검증의 기능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내부검증업무의 평가와 시사)

기업의 내부검증의 특정 업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검증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하여야 한다.

제 29 장 전문가의 활용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검증증거의 입수방안으로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계검증원은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동 전문가의 업무가 검증목적에 적절하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전문가의 능력과 객관성)

1 회계검증원이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자격, 경험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회계검증원은 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가의 업무범위)

회계검증원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검증목적에 적절하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평가)

1 회계검증원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회계검증원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검증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2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결과가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타 검증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여 동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검증보고서 인용금지)

변형되지 아니한 적정의견 검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검증보고서에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0 장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1조 (목적)

이장은 기업의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독립된 회계검증원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제출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과내용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증의견)

1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의견 표명의 근거로서 검증증거로부터 도출한 결론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에 회계결산서 전체에 대한 검증의견을 명료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제3조 (검증보고서의 기본요소)

1 (제목) 검증보고서에는 이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제목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수신인) 검증보고서에는 검증계약에 따라 적절히 수신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입문단)

3.1 도입문단에는 기업의 명칭과 회계결산서의 종류, 대차대조표일 및 회계결산서의 회계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2 도입문단에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할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회계검증원의 책임은 이 회계결산서에 대해 실시한 검증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범위문단)

4.1 범위문단에는 검증이 회계검증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검증의 범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4.2 범위문단에는 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회계검증원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가지도록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4.3 범위문단에는 검증이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 (1) 회계결산서의 금액과 공시내용에 대한 증거를 시사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음.
- (2) 회계결산서의 작성에 적용된 회계원칙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3) 회계결산서의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중요한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4) 회계결산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4.4 범위문단에는 회계검증원이 수행한 검증이 의견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5 (의견문단) 의견문단에는 회계결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에 관해 회계검증원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6 (검증보고서 일자)

6.1 검증보고서 일자는 회계검증원이 의견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검증을 종료한 날로 한다.

6.2 회계검증원의 책임은 경영자가 작성하고 제시한 회계결산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검증보고서 일자에는 경영자가 회계결산서에 서명하고 승인한 일자 이후이어야 한다.

7 (회계검증원의 주소) 검증보고서에는 당해 검증을 책임지는 회계검증원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인쇄된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회계검증원의 명칭과 서명) 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검증원의 명칭을 기재하고 (단, 회계검증원의 명칭이 인쇄된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회계검증사무소 대표가 기명·날인한다.

제4조 (표준검증보고서)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5조 (변형된 검증보고서)

1 (검증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1.1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내용을 특기사항문단으로 기술함으로써 검증보고서를 변형시켜야 한다.

1.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래의 사건에 따라 해소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가 회계결산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이를 특기사항문단으로 기술하여 검증보고서를 변형시킬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증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1 회계검증원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검증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회계검증원은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한정의견은 한정사유의 영향을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2.2 회계검증원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회계결산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회계검증원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2.3 검증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검

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 2.4 회계검증원이 적정의견 이외의 검증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회계검증원은 그 사유를 검증보고서에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금액산정이 안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결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적정의견 이외의 검증의견표명)

- 1 (검증범위의 제한) 검증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에 검증범위의 제한 사실을 기술하며 또한 동 검증범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회계결산서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경영자와의 의견불일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과 그 적용방법 또는 회계결산서 공시내용에 대하여 회계검증원과 경영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가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 31 장 비교정보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비교정보에 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대상 회계결산서의 비교정보 표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는지 규명하여야 한다.

제2조 (비교회계결산서)

- 1 (회계검증원의 책임) 회계검증원은 비교회계결산서가 회계정책의 계속성, 전기공표 회계결산서와의 일관성 여부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2 (보고)

- 2.1 검증의견은 제시된 각 기간의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표명되기

때문에 회계검증원은 비교회계결산서의 각 기간별 회계결산서가 개별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검증보고서를 작성·발행하여야 한다.

2.2 비교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의견 표명시 계속회계검증원이 전기회계결산서에 관하여 전기검증의견과 다른 검증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문단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당기 신규회계검증원 - 추가요구사항)

3.1 (전기회계결산서를 타회계검증원이 검증한 경우)

3.1.1 전기회계결산서를 타회계검증원이 검증한 경우 당기회계검증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검증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1) 당기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에 당기에 대해서만 검증의견을 표명하고, 전기회계검증원은 전기 대차대조표일 후 사건에 대한 검토 등 필요한 추가적 절차를 수행한 후 비교표시된 전기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재발행
- (2) 당기 회계검증원은 당기에 대해서만 검증의견을 표명하고, 비교표시된 전기회계결산서는 타회계검증원에 의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검증보고서에 기술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

- ① 전기회계결산서는 타회계검증원에 의해 검증되었다는 사실
- ② 전기회계검증원의 검증의견의 종류. 만약 검증보고서의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적정의견 검증보고서에 특기사항문단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전기회계검증원의 검증보고서 일자
- ④ 전기회계검증원의 명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1.2 회계검증원이 당기회계결산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던 전기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였다면 경영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 회계검증원에게 기발행된 검증보고서에 첨부된 회계결산서를 수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전기회계검증원이 수정된 전기회계결산서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재발행하는데 동의하였으면 당기회계검증원은 제2조제3.1.1호의 절차를 따른다.
- (2) 전기회계검증원이 수정된 전기회계결산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증보고서의 재발행을 거부하면 당기회계검증원은 검증보고서의 도입문단에 전기검증보고서는 수정전 전기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표시한 의견임을 기재할 수 있다.

3.2 (전기회계결산서가 검증받지 아니한 경우)

- 3.2.1 전기회계결산서가 검증받지 않은 경우 회계검증원은 비교표시된 전기회계결산서는 검증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검증보고서에 언급하여야 한다.
- 3.2.2 검증받지 아니한 전기회계결산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경영자에게 전기회계결산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경영자가 수정을 거부한다면 당기 회계결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증보고서를 적절하게 변형시켜야 한다.

제 32 장 검증받은 회계결산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내의 기타의 정보

제1조 (목적)

- 1 이 장은 회계검증원이 사업보고서등과 같은 문서에 검증받은 회계결산서가 포함될 경우 회계검증원으로서 의견표명 할 의무가 없는 기타의 정보에 대해 고려할 사항에 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계검증원은 검증한 회계결산서와 기타의 정보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여야 한다.

제2조 (회계결산서와 기타의 정보간 중요한 불일치)

- 1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회계결산서와 기타의 정보간에 중요한 불일치를 파악한 경우 회계검증원은 검증한 회계결산서 또는 기타의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 2 검증한 회계결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계검증원은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3 기타의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계검증원은 중요한 불일치 내용을 검증보고서의 특기사항문단으로 표시할지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

- 1 기타의 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동 사항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 2 기타의 정보에 사실의 명백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경영자에게 기업의 법률고문 등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하

고 회신된 자문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기타의 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경영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적절한 추가조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검증보고서일 후 기타정보의 입수)

회계검증원이 검증보고서일 후 회계결산서와 기타의 정보간에 중요한 불일치를 파악하였으나 경영자가 회계결산서 또는 기타의 정보를 수정할 것을 거부할 경우 회계검증원은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3 장 소규모기업 회계결산서 검증의 특례

제1조 (목적)

이장은 회계검증원이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이고 총투자액이 US\$1,000,000 이하인 소규모기업의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규모기업 회계결산서검증의 예외적 상황)

- 1 이 기준은 국제검증기준을 그 기초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검증기준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절차가 합리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거래가 발생되고 이와 관련된 회계기록과 관련문서가 정교하게 작성·유지되고 있는 기업을 전제하여 제정된 것이다.
- 2 소규모기업도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킨다면 이 장을 제외한 검증기준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소규모기업이 제2조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검증원은 이 장을 제외한 검증기준의 내용 중 해당 소규모기업의 검증환경에 비추어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정한 바와 다르게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소규모기업의 검증기준 적용)

- 1 회계검증원이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경우 이 회계검증기준 제1장의 제6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업무기록장부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2 소규모기업의 조직구조상 적합한 내부감시기구가 없거나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

우 회계검증원은 이 검증기준 제8장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검증기준의 다른 장에서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3 (검증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

3.1 소규모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제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검증원은 이 검증기준 제12장의 제4조에서 요구하는 통제위험의 예비평가 및 내부통제의 시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소규모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검증원은 경영자에게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을 반드시 알리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4 회계검증원은 제3조제1호 내지 제3조제3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증거를 수집할 때 재고재산 실사입회 및 외부조회절차를 포함하여 기말현재의 계정잔액에 대한 입증절차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검증의견에 있어서 확신수준)

1 회계검증원은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검증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회계검증원이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 검증기준의 전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7. 6. 2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용어 해설표

번호	용어 및 해설
1	<p>검증(audit) : 회계결산서검증의 목적은 회계검증원이 회계결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회계검증원의 의견표명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검증목적은 기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 또는 기타정보의 검증에도 적용된다.</p>
2	<p>검증계약서(engagement letter) : 검증계약서는 회계검증원 위촉에 대한 승낙, 검증의 목적과 범위, 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책임범위 및 보고서의 형식 등을 문서화하고 확인시켜준다.</p>
3	<p>검증계획(planning) : 검증계획의 내용은 예상되는 검증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증전략과 세부적인 검증접근방법의 수립이 포함된다.</p>
4	<p>검증범위(scope of an audit) : 검증범위는 검증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증절차를 의미한다.</p>
5	<p>검증범위 제한(limitation on scope) : 검증범위가 제한되는 사례는 기업가제한을 한 경우, 검증 당시의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경우 또는 회계검증원의 판단으로 회계기록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검증절차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제한을 한 경우는 검증계약조건에 회계검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증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경우를 예로 들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한을 한 경우는 검증계약의 체결시기상 회계검증원이 재고재산의 실사인회를 할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들수있다.</p>
6	<p>검증보조자(assistants) : 개별검증의 회계검증원 이외의 검증참여자를 말한다.</p>
7	<p>검증업체(audit firm) : 검증업무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실체를 말한다.</p>
8	<p>검증위험(audit risk) : 회계검증원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는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부적합한 검증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검증위험은 고유위험, 통제위험 및 적발위험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위험(inherent risk) : 관련된 내부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정도로 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이 쉽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 통제위험(control risk) :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발생될 수 있는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도 기업이 운용하는 내부통제제도에 의하여 방지되지 못하거나 또는 적시에 적발되어 수정되지 못할 위험이다. • 적발위험(detection risk) :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존재하는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도 회계검증원의 입증절차에 의해서 적발되지 못할 위험이다.

번호	용어 및 해설
9	<p>검증의견(opinion) : 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 전체에 대하여 명료하게 표명된 검증의견이 기술되어 있다.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적정의견(qualified opinion) 을 표명한다.</p>
10	<p>회계검증원(auditor) : 회계검증원은 검증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증사무소와 이에 소속된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을 말한다. 이 검증기준에서 회계검증원은 경우에 따라 개별검증에 대하여 최종책임을 지는 자로서 당해 검증에 직접 참여한 담당이사 등을 말하며, 검증업체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회계검증원(continuing auditor) : 계속회계검증원은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검증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회계검증원이다. • 외부회계검증원(external auditor) : 외부회계검증원 및 외부검증의 용어는 검증대상 기업조직 내부의 내부검증 및 내부검증활동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 신규회계검증원(incoming auditor) : 신규회계검증원은 당기회계검증원으로서 직전연도의 회계결산서를 검증하지 아니한 회계검증원을 의미한다. • 타회계검증원(other auditor) : 주회계검증원이 아닌 회계검증원으로서 주회계검증원이 검증하는 회계결산서에 포함된 일부분의 재무정보의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계검증원이다. 이 경우 타회계검증원은 같은 이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검증업체와 제휴관계가 없는 회계검증원을 포함한다. • 검증참여자(personnel) : 검증참여자는 검증업체에 소속되어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인회계사와 전문직직원을 말한다. • 전기회계검증원(predecessor auditor) : 전기회계검증원은 기업의 회계검증원이었으나 당기회계검증원에 의해 교체된 회계검증원이다. • 주회계검증원(principal auditor) : 타회계검증원에 의하여 일부분이 검증된 회계결산서의 전체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는 회계검증원이다.
11	<p>업무기록장부(working papers) : 업무기록장부는 회계검증원의 검증계획,수행한 검증절차의 성격·시기·범위 및 그러한 검증절차의 수행 결과와 입수한 검증증거에 의한 결론의 기록이다. 업무기록장부는 필름, 전산기록매체 또는 기타의 형태로도 기록될 수 있다.</p>
12	<p>검증증거(audit evidence) : 검증증거는 검증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회계검증원이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검증증거는 회계결산서의 기초가 되는 원시증빙서류 및 회계기록과 기타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확인적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p>

번호	용어 및 해설
13	검사(inspection) : 검사의 방법은 기록이나 문서 또는 유형재산의 조사로 구성된다.
14	검토업무(review engagement) : 검토업무의 목적은 회계검증원이 검증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지는 않는 수준의 절차를 수행한 후 그 수행결과를 기초로 하여 동 회계결산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술하는데에 있다.
15	경영자(management) : 경영자는 집행임원과 기타 고위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 지원부서 임원이나 검증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한하여 경영자에 포함된다.
16	경영자주장(assertions) : 회계결산서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경영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기타형태의 진술을 말한다. 이 검증기준에서 '회계결산서에 의한 경영자주장'을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 경영자주장이라고 칭한다.
17	경영자진술(management representations) : 검증과정에서 회계검증원의 요구에 의한 답변으로 또는 경영자가 회계검증원에게 자발적으로 행한 진술을 말한다.
18	계산검증(computation) : 원시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산술적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재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9	계속기업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 : 계속기업가정은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까지 사업을 계속하며 사업을 청산하거나 중단시킬 의도나 필요성이 없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재산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정하에 순실현가능가치나 청산가치보다는 역사적취득원가 또는 재취득원가로 평가된다.
20	관찰(observation) : 타인이 수행하고 있는 절차나 과정을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종업원이 수행하는 재고재산실사의 관찰이나 검증증적을 남기지 않는 내부통제절차의 수행에 대한 관찰을 예로 들 수 있다.
21	기초잔액(opening balance) : 회계연도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잔액을 말한다.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을 근거로 하며, 전기의 거래와 회계정책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22	내부검증(internal auditing) : 내부검증은 기업조직내부에서 기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활동으로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감시를 주요기능으로 한다.
23	내부감시기구(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 내부감시기구란 기업을 감독·통제 및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구를 말한다. 내부감시기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달성, 재무보고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보고의 충실성에 대하여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경영자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는 내부감시기구에 포함된다.

번호	용어 및 해설
24	<p>내부감시관련 검증문제 (audit matters of governance interest) : 내부감시관련검증문제는 회계결산서 검증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서, 내부감시기구가 재무보고와 공시 과정을 감독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회계검증원이 판단한 사항으로서 검증의 수행결과 회계검증원이 주목하게 된 사항을 말한다.</p>
25	<p>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 :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자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절차(즉, 내부통제)로서 경영자의 목적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자의 목적은 경영정책의 준수, 기업 재산의 보호,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 및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적시 작성 등을 포함하여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부통제제도는 회계제도의 기능에 직접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다.</p>
26	<p>내부통제의 시사(tests of control) : 내부통제의 시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또한 시사(test)란 검증대상모집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조회, 검사, 관찰, 재계산, 재수행 등의 세부적 검증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가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p> <p>(2) 내부통제가 전 회계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의 여부</p>
27	<p>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subsequent events) :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와 대차대조표일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발생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p>
28	<p>문서화(documentation) : 검증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검증원이 작성 또는 수집하고 보관하는 자료를 업무기록장부화 하는 것을 말한다.</p>
29	<p>변형된 검증보고서(modified auditor's report) : 검증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이 기술되어 있거나 검증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검증보고서가 변형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검증보고서를 변형된 검증보고서라 한다.</p> <p>(1) 검증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사항 문단 : 회계결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주석에 상세히 기재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검증보고서에 특기사항문단을 추가함으로써 검증보고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기사항은 검증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계검증원은 회계결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도 특기사항문단으로 표시함으로써 검증보고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

번호	용어 및 해설
	<p>(2) 검증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 회계검증원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검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한다. •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 회계검증원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회계결산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회계결산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표명한다. •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 검증범위의 제한에 의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회계검증원이 충분하고 적합한 검증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 표명을 거절한다.
30	<p>부문(component) : 부문은 사업부, 지점, 자기업, 합작법인, 계열기업, 기타경제실체로서 그 재무정보가 주회계검증원이 검증한 회계결산서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p>
31	<p>부문별 정보(segment information) : 명확히 구별되는 부문(component)별,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되는 회계결산서 내의 정보를 말한다.</p>
32	<p>부정(fraud) : 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에 의한 고의적 행위를 의미하며, 회계결산서의 왜곡표시를 초래한다.</p>
33	<p>분석적 절차(analytical procedures) : 분석적절차란 중요한 비율 및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결과 기타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되는 금액과 편차가 일어나는 추세 또는 상관관계에 대한 세부적 검토도 포함된다.</p>
34	<p>법규위반(noncompliance) : 기업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법규와 상반되는 것을 의미한다.</p>
35	<p>불확실성(uncertainty) :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행위나 사건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되지만 회계결산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p>
36	<p>비교정보(comparatives) : 당회계기간과 비교목적으로 표시된 전기이전회계기간의 당기대응금액이나 기타 공시사항을 말한다. 비교정보는 다음과 같이 당회계기간의 회계결산서내에 표시될 수도 있고, 당회계기간의 회계결산서와 비교형식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대응전기수치(corresponding figures) : 당기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당기의 회계결산서에 표시된 전기수치를 말한다. 당기대응전기수치는 당기회계결산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한 회계결산서는 아니다.

번호	용어 및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회계결산서(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 : 전기회계결산서를 비교목적 으로 당기회계결산서와 같이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비교표시된 전기회계결 산서는 당기회계결산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7	<p>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material misstatement of fact) : 기타정보에 있는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검증된 회계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사항과 관계없는 기타 정보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 발생한다.</p>
38	<p>사업에 대한 이해(knowledge of the business) : 회계검증원의 경제전반 및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피검증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말한다.</p>
39	<p>세부검증계획(audit program) : 세부검증계획은 전반검증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정한다. 세부검증계획은 검증보조자 에게 일련의 지시서 및 검증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쓰인다.</p>
40	<p>오류(error) : 회계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비의도적인 흠결을 말한다.</p>
41	<p>왜곡표시(misstatement) :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흠결을 말한다.</p>
42	<p>용역대행업체(service organization) : 기업의 거래를 대신 집행하고 관련 수탁업무 를 관리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자료를 처리해주는 용역업체를 말한다(예 : 정보시스템용역업체).</p>
43	<p>입증절차(substantive procedures) : 입증절차는 회계결산서내에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는 사항의 적발을 위한 검증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사(test)를 말하며, 거래와 계정잔액에 대한 시사(tests of details of transactions and balances) 및 분석적절차로 구성된다.</p>
44	<p>입회(attendance) : 타인이 실시하는 절차의 전과정 또는 일부과정에 참석하는 행위 를 말한다. 예를들어 재고재산 실사에 입회함으로써 회계검증원은 재고재산을 검사 할 수 있고, 수량의 확인과 기록에 관한 절차가 규정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회계검증원이 직접 표본을 추출하여 수량을 확인할 수도 있다.</p>
45	<p>회계결산서(financial statements) : 회계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 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 및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 상태설명서로 구성된다.</p>
46	<p>회계결산서에 의한 경영자주장(financial statements assertions) : 회계결산서에 나타 난 경영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p>

번호	용어 및 해설
	<p>(1) 실재성(existence) : 재산이나 채무는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일자 현재 존재하고 있다.</p> <p>(2)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 재산이나 채무는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일자 현재 기업에 귀속되고 있다.</p> <p>(3) 발생사실(occurrence) :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동안 기업에 실제로 발생하였다.</p> <p>(4) 완전성(completeness) : 회계결산서에 기록되지 않은 재산, 채무, 거래나 사건 또는 공시되지 않은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p> <p>(5) 평가(valuation) : 재산이나 채무는 적절한 가치로 계상되었다.</p> <p>(6) 측정(measurement) : 거래나 사건은 올바른 금액으로 기록되었으며, 수익이나 비용은 적절한 기간에 배분되었다.</p> <p>(7) 회계결산서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 회계결산서의 구성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 분류 및 기술되어 있다.</p>
47	<p>적합성(appropriateness) : 검증증거의 질적척도로서 검증증거가 특정경영자주장과 그 신뢰성에 대하여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한다.</p>
48	<p>전문가(expert) : 회계 및 검증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p>
49	<p>조회(confirmation) : 조회란 회계결산서에 의한 경영자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관련 검증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p>
50	<p>중요성(materiality) : 회계결산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회계결산서상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는 중요성이 있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가 발생한 특정한 상황에서 판단되는 해당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성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본원적인 질적특성이라기보다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p>
51	<p>중요한 불일치(material inconsistency) : 검증받은 회계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사업보고서 등 기타의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같은 중요한 불일치는 이미 확보한 검증증거로부터 도출한 검증결론에 의문을 갖게 하며 나아가서 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원의 검증의견의 근거에 대하여도 의문을 유발시킬 수 있다.</p>
52	<p>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es) : 회계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말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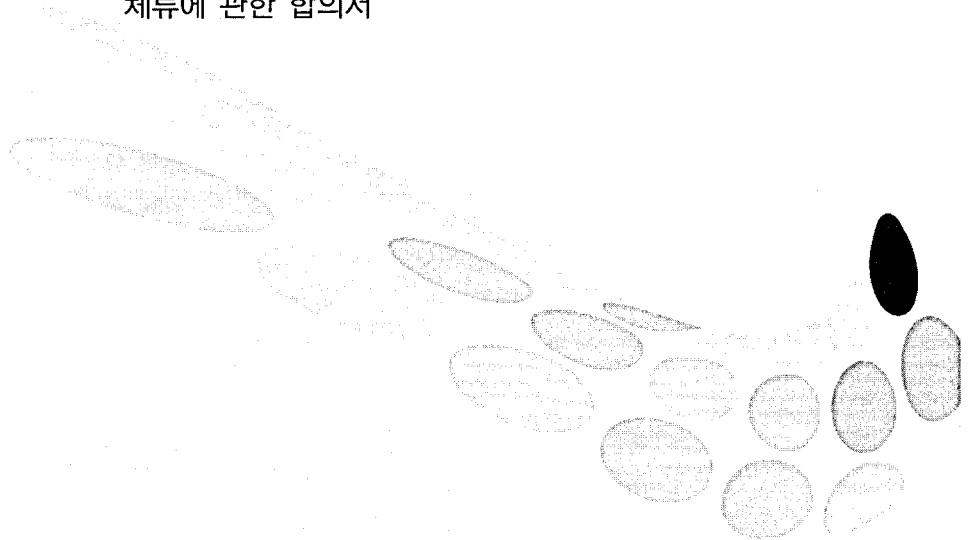
번호	용어 및 해설
53	질문(inquiry) :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에 관련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4	충분성(sufficiency) : 검증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확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검증증거의 양적 척도를 말한다.
55	컴퓨터를 이용한 검증기법(computer-assisted audit techniques, CAAT) : 검증도구로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6	컴퓨터정보시스템(computer information systems) : 컴퓨터정보시스템환경은 검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무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며, 정보시스템설비의 운영주체(기업 또는 제3자), 정보시스템설비의 종류나 규모는 묻지 않는다.
57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s) : 경영자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제환경내의 제반 정책과 절차를 말한다.
58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 내부통제제도와 기업 내에서의 그 중요성에 대한 경영자의 전반적 태도, 의식 및 활동내용을 말한다.
59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 당해 기업(일방)이 타기업 등(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무활동과 영업활동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자가 된다.
6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간에 자원 또는 의무가 이전되는 거래를 말한다.
61	<p>표본검증(audit sampling) : 특정계정잔액이나 거래에 속한 모든 표본단위, 즉 전체 항목(100%) 보다 적은 항목수에 대해 검증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계검증원이 표본으로 추출한 항목의 특성에 대한 검증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해당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형성하게 해 주거나 결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population) : 회계검증원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전체 자료집단 • 표본단위(sampling units) :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 • 계층화(stratification) : 모집단을 비슷한 속성(중중화폐가치)을 갖고 있는 표본단위로 구성된 부분적 모집단으로 나누는 과정
62	표본위험(sampling risk) : 표본에 근거한 회계검증원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검증절차를 적용하였다더라면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르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63	품질관리(quality controls) : 회계검증원이 수행한 모든 검증이 회계검증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검증원이 채택한 정책과 절차를 말한다.

번호	용어 및 해설
64	<p>확신(assurance) : 정보의 작성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주장의 신뢰성과 관련한 회계검증원의 만족을 말한다. 이러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검증원은 검증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고 결론을 표명 한다. 만족의 정도와 이에 따라 제공되는 확신의 수준은 수행된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p> <p>확신이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인증’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 검증업무 수행시 회계검증원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중요한 왜곡표시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합리적 확신의 형태로 절대적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여 검증보고서에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65	<p>회계제도(accounting system) : 기업이 재무기록의 유지를 위하여 거래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말하며, 이러한 회계제도에 의해 거래와 기타사건에 대한 식별-종합-분석-계산-분류-기록-요약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p>
66	<p>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 : 특정 사항의 정확한 측정수단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추정금액을 말한다.</p>



Ⅲ.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

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 진 식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통관	세관통과
물품	물건
말한다	의미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부	명단
상호	호상
통관절차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송화인
수하인	수화인
운송	수송
운송인	수송자
컨테이너	짐함
봉인의 이상유무	봉인의 상태
개장	개봉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통행차량, 차량	운수수단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 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 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

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 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 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방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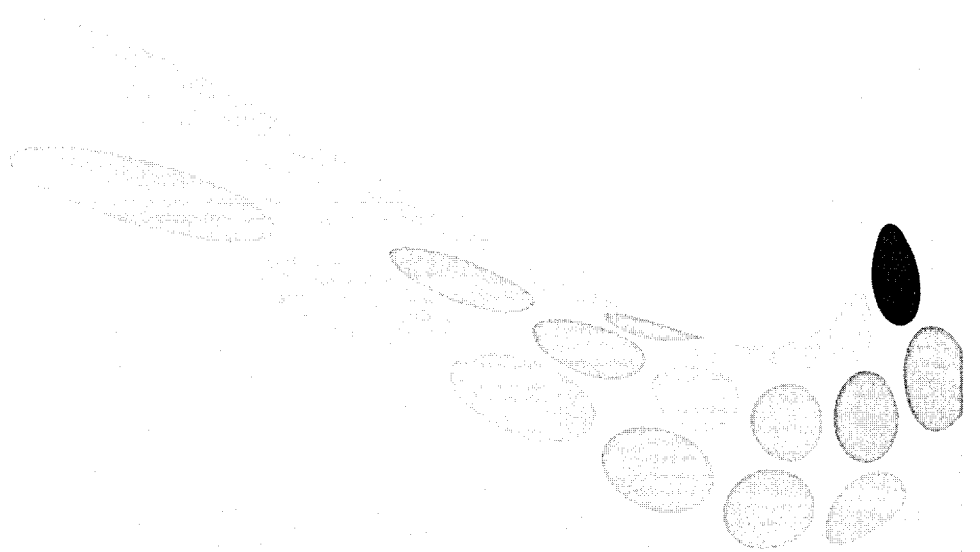
2004년 1월 29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정 세 현	내각책임참사	김 령 성



IV. 4대 경협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 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

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보장(제목에서)	북 측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몫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

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

- 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 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

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

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판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생활하는 주거	운영지
실질적인 관리장소	생활하는 살림집
건축장소, 건설, 설치,	실제적인 경영지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독자적인
수행이용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집합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

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 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 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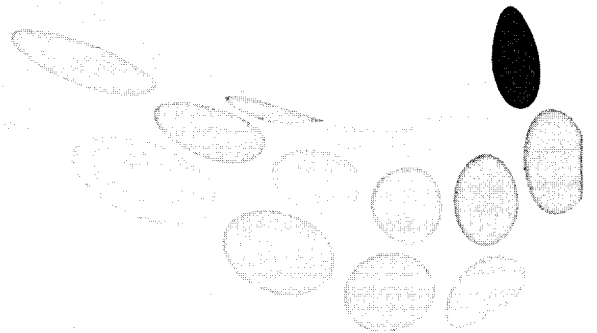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2000년	북 측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 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년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탈라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V. 기탁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 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

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다. 우편물
 -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상호	호상
송하인	판매자
수하인	구매자
운송수단	수송수단
생산장소	생산지
포장의 수 및 종류	포장/표식
중량	무게
발급일자	발급날자
한글	조선어
당해 물품	해당물품
인장	공인
도축	도살
냉동	랭동
냉장	랭장
쇠고기	소고기
송품장	적선문건
사유	리유
여행자	려행자
별송품	발송품
진위	진실성
서명	수표
부속서	부록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

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

라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 측	북 측
구성	조직
이하	이 아래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보좌인원	보장성원
중재인	재결원
기피신청	거부신청
이의신청	반대의견 제기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판정	재결
본다	인정한다
서면	문서교환 방식
서명	수표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열거	지적
교부	제시
분쟁해결절차	사건심리
서류	문건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장소
연락관	연락대표
수령	문서접수날자
문본	문건
원본	원문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자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 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⑤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정의	총칙
노선	로정
사항	문제
표지	표식
부착	표기
사실	정형
탑승인원	차량에 싣는 인원
적재화물	싣는 화물
위해	오염
각호	조항
상호주의 원칙	호상성의 원칙
귀책사유	잘못
지원	방조
소요비용	소비비용
부속서	보충합의서(부록)
문본	원문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안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 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 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

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 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월 1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부 록 1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

No.	직 명
1	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2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3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4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5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6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
7	자동차운전원
8	사고조사 담당직원

부 록 2-1 임시출입증

8cm			
10cm	임시출입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px;"> 사진 (2 × 2.5) </div> </td> <td style="padding: 5px;">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px;"> 사진 (2 × 2.5) </div>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px;"> 사진 (2 × 2.5) </div>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가		
	발행기관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발행번호 : 제 호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d> </tr> </table>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앞면> <뒷면> </div>			

부록 2-2 상시출입증

8cm			
10cm	상시출입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px;"> 사진 (2 × 2.5) </div> </td> <td style="padding: 5px;">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px;"> 사진 (2 × 2.5) </div>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px;"> 사진 (2 × 2.5) </div>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가		
	발행기관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발행번호 : 제 호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d> </tr> </table>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앞면> <뒷면> </div>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정의	북측 총칙
철도직원	철도일군
인명	사람
따른다.	준한다.
부여한	있는
사항	문제
개최	진행, 조직
정산	청산
일일	일간, 일
입환작업	차갈이작업
체류하는 동안	머무르는 기간
인도·인수	인수도
조정	조절
운송수단	운수수단
상호	호상
명시된	지적된
상시출입증	고정출입증
탑승인원	열차에 싣는 인원
적재화물	싣는 화물
총포류	총기류
운전정리실	운전지휘실
사실	정형
상황	정황
시행	집행
부속서	부록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하기로 하였다.
-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 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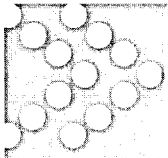
-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 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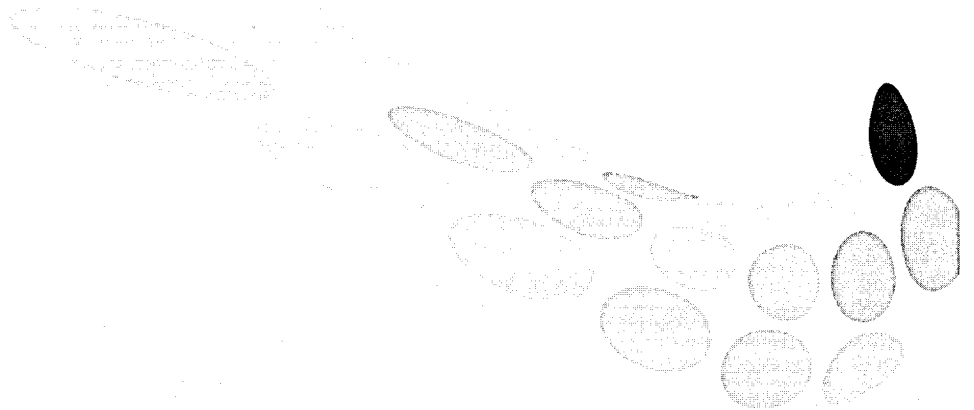
2007년 12월 13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차수 김일철



VI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5.21,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⑤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①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협의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 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④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개정 2008.12.31>)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

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②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 ③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 ④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의료기관 등) ①「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 ②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 5 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복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8484호, 2007.5.2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 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 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 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작성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주요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통일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관세청·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④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 (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입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투자의 지원) ①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②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 3 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경기도지사 또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④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

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 ⑥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노동부장관
 -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 4 장 조세·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출입확인 및 출발·도착의 보고) ①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같음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반입 신고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

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 5 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20조 (정관) ①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 (이사회)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관리청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⑤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

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도·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0281호, 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②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통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통일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8호, 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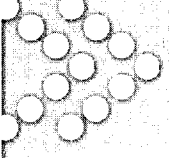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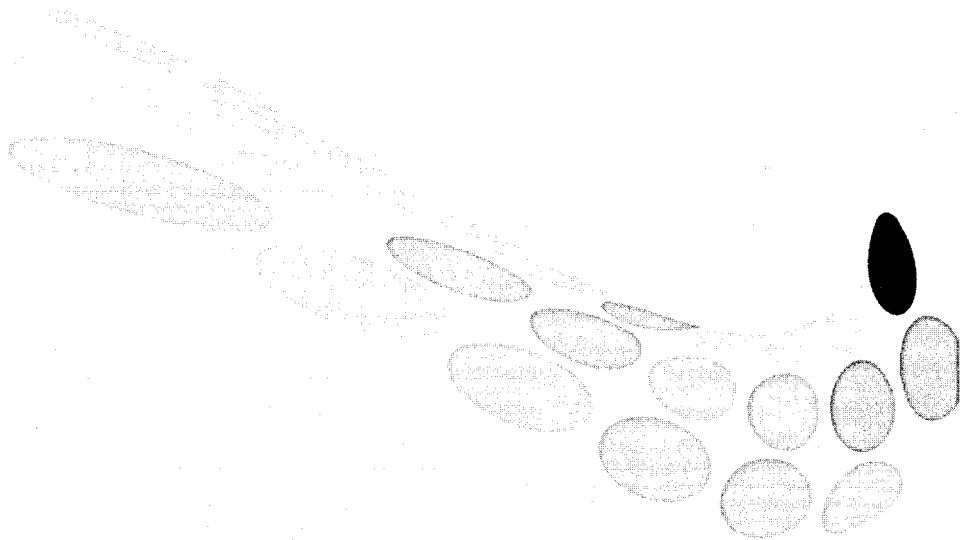
③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Ⅶ.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31] [법률 제9745호, 2009.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 (남북한 방문)**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 방문증명서”라 한다)
- ③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 ⑥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⑦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

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의2 (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삭제 <2009.1.30>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⑤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①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 (검역 등) ①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

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③삭제 <2009.5.28>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 (협조 요청)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의2 (업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3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

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 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4 (지도·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본조신설 2009.1.30]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부 칙 〈제4239호, 1990.8.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 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 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 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 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

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 칙 <제7539호, 2005.5.3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검역법) <제8364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191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57호, 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 칙 <제9745호, 2009.5.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준용규정 등) ①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

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

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접촉신고) 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⑤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 (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제19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 (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반입 유효기간
4. 반출·반입 승인 조건

③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협력사업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청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 (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

자적 관리체계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사무소·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 6. 「주세법」
- 7. 「교육세법」
- 8. 「식물방역법」
- 9.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1648호, 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제7조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 2009.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위 반 사 항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
5.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300만원 이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5호	300만원 이하
7.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	300만원 이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31] [통일부령 제52호, 2009.7.3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52호, 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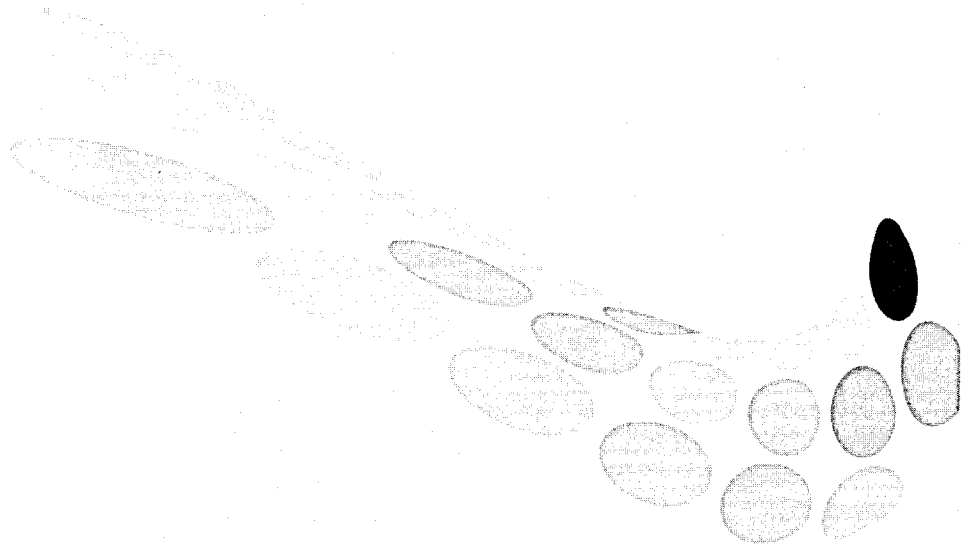
제4조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VIII 남북협력기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09.5.28] [법률 제9744호, 2009.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5.28]

제5조 (장기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 삭제 <1993.12.31>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용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5.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09.5.28]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 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 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 (일시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부 칙 <제4240호, 1990.8.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남배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남배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 내지 ⑪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 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의 원리금상환

⑧ 내지 <16>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7>까지 생략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744호, 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10.10] [대통령령 제21079호, 2008.10.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2005.12.14>

제4조 삭제 <2005.12.14>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3.3.6, 1994.12.23, 1999.5.24, 2005.12.14, 2008.2.29>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

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남한과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②제1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10>

제10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2.12.30>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전문개정 2008.10.10]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 (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 (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3237호, 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

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
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생략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
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 내지 <327>생략

부 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 내지 <109>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19180호, 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 〈제21079호, 2008.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 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2] [통일부령 제49호, 2008.1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 (협의회 의결사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1, 2003.2.6, 2004.5.14, 2008.12.2>

1.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이상의 보증
- 5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6, 2004.5.14, 2008.12.2>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도예의 기금사용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6. 삭제 <2008.12.2>

부 칙 〈제384호, 1991.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호, 1998.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7호, 20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호, 200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호, 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개성본사 :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3-1

• 전화 : 001-8585-2020

• FAX : 001-8585-2090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4층

• 전화 : 02-2095-5331

• FAX : 02-2095-5353

홈페이지 : www.kidmac.com

